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024-01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2020. 2. 24.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2. 24.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준조 (항공대 외래교수)

고재종 (선문대 교수)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현행 「축산법」의 개선방안	5
제1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도입	5
1. 개요	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의 유형	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의 「축산법」에의 도입 방안	7
제2절 축산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제도 도입 검토	11
1. 인·허가 의제의 의의	11
2. 인·허가 의제 조항 도입과 관련된 원칙	11
3. 「축산법」에의 인·허가 의제 조항 도입 문제	51
제3절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 검토	22
1. 의의	22
2. 염소, 사슴 등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검토	32
3. 우리나라 사육밀도 관련 제도	4
4. 사육면적 적정성 및 사육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93
5. 사슴·염소 적정 사육기준도입과 규제영향분석	94
제4절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의 입법화 방안	36
1. 과징금 제도 일반론	36
2. 축산 관련 법의 과징금 관련 규정 분석	57
3.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안 마련	49

제3장 주요 외국의 축산 관련 법제도	17
제1절 일본	197
1. 서 설	197
2. 축산 관련 대책	205
제2절 기타 주요 국가	321
1. 독 일	321
2. 프 랑 스	333
3. 미 국	339
4. 영 국	364
제3절 한국 「축산법」 제도에 대한 시사점	37
제4장 축산 관련 통합공고 및 현장점검표	9
제1절 서 론	399
1. APHA의 책임 범위	399
2. 현행 통합공고 입법례	399
3. 축산법에서의 통합공고의 근거 규정	42
제2절 통합공고	404
1. 통합공고 규정	404
2. 별 표	406
제3절 현장점검표	492
1. ‘종축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492
2. ‘부화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499
3. ‘정액등처리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505
4. ‘가축사육업(소)’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53
5. ‘가축사육업(돈)’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59
6.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55
7.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현장점검표	51

제5장 축산법령 체계화 방안	53
제1절 현행 축산법령 체계 분석	53
1. 체계화 필요성	533
2.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법령	53
3. 기타 부처의 축산 관련 법령	55
4. 축산관련법상의 가축과 축산물의 범주 비교 분석	5
제2절 일본의 축산관련법 체계	59
제3절 현행 「축산법」의 체계화 방안	50
1. 의 의	540
2. 「축산법」 조문 구성 개선안	52
제6장 결 론	54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63년 「축산법」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50차례에 가까운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축산법」 외에도 축산 관련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장식 축산업의 확산 등 축산업 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가축 질병의 급속한 확산, 환경오염 등이 있다. 현재, 한국 축산업에서도 산업화된 축산체계가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닭과 돼지를 필두로 한육우·낙농에까지 널리 확산된 공장식 축산은 가축사육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과 한국인의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 축산에 수반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도 계속 확대·심화되어 왔다. 유사한 농업조건 또는 경제 수준의 어떤 나라보다 밀집성이 큰 한국의 축산현장에서는 재활용 또는 재순환되지 않는 축산폐기물이 넘쳐나서 수질오염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항생제 오남용도 주로 축산에서 이뤄져 한국인의 항생제 내성률은 OECD 국가의 5~7배에 이른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사료 절약, 생산물의 규격화와 상품성 제고 등을 위한 항생제, 착색제, 항곰팡이제, 항산화제, 호르몬제 등의 다양한 약제는 배합사료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농장 내 만성화된 가축질병에 더해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대규모 동물전염병도 점점 빈발하는 추세이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는 농촌사회의 첨예한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및 HACCP의 도입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2001년 유기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2012년에는 산란계,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육우, 젖소, 염소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의 소관이 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본연의 업무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국내 축산업의 환경·생태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축산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통한 부처 간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축산법」은 다양한 사항들이 다른 축산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법」은 축산 관련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한 급변하는 축산 관련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축산 관련 법령, 특히 「축산법」의 체계적 정비방안과 가축 사육 관련 효율적인 통합점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에서는 현행 「축산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 인·허가 의제조항, 가축의 적정사육기준 및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절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과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축산 관련 다양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인·허가 의제 조항과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의 인허가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고 의제 조항의 신설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사육면적 적정성 및 사육기준 강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사슴·염소 적정 사육기준도입과 규제영향분석을 하였다.

한편,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축산법」은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본 보고서 제2장 4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의 조문과 별표 규정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매출액과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징금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의 조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통계청과 축산관련 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축산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외국의 축산관련 법제도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을 가진 일본의 축산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축산관련 법령들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축산법」에 반영할 만한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합공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조사·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합공고의 필요성 및 형식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축산관련 법령의 분석을 토대로 축산관련 통합공고 방안을 작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축산법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축산법」의 위상 정립과 이에 따른 「축산법」의 명칭 변경의 문제와 조문의 체계화 방안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현행 「축산법」을 굳이 축산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추도록 축산 및 축산업에 관한 총강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문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문화를 위한 목차를 편성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 현행 「축산법」의 개선방안

제1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도입

1. 개요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 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과 부칙 규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총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부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적용과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 사항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총칙 규정에 두되,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둔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입법례를 보면 “(다른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적용제외)”, “(○○법과의 관계)” 등의 제목을 다양하게 붙이고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위해 위 원칙에 따라 쓰기로 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의 유형

(1) 제1유형: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해당 법령이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

- 「물품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유형: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그 법령의 제정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 목적상 또는 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유형: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입법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유형: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과의 적용상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규정 방식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법령과의 저촉 문제 등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입법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의 「축산법」에의 도입 방안

(1) 축산관련 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술하다시피 축산업도 농업에 해당하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축산업의 기본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산법」의 개정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축산관련 법령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을 축산관련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도 동물이므로 이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보호 및 이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며, 가축의 적정 사육규모 등 축산관련 법의 적지 아니한 규정에도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이 없는 법률

- 「축산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소관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환경부 소관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없음

4)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축산법」에의 도입 방안

현행 「축산법」은 축산 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현행 「축산법」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규정들이 다른 법률에서 많이 발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법령들의 축산 관련 규정들은 「축산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많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식품기본법이라는 약칭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에 관한 기본법이고 축산업과도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관련 내용이 매우 적지만, 농업의 범주에는 축산업도 포함되어 있다(제3조 제1호 참조). 이 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제4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축산법」은 이 보고서 제5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가축의 개량, 등록 및 검정, 보호가축의 지정 등,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종축의 대여 및 교환, 가축의 인공수정 등, 수정사 관련규정,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정액증명서 등, 정액 등의 사용제한, 축산업의 허가 및 허가자 등과 관련된 사항, 종축과 축산물의 수입 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관련 사항, 축산자조금의 지원, 가축시장, 가축거래상인 관련 사항, 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물의 등급 관련 사항, 축산물 품질평가 관련 사항, 축산환경 개선 사항, 축산발전기금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현행 「축산법」은 기본법적 성격은 갖지 않고 있으며, 다른 축산관련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사항들이 많으며 다른 축산관련법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로 상충될 만한 특정한 분야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현행 「축산법」이 기본법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고 특정한 사항만을 다룬 것도 아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어떤 입법 모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결정이 쉽지 않다.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제1유형은 현행 「축산법」이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축산법」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유형을 채택한다면, “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당해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제2유형은 그 법의 제정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목적상 또는 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에 채택된다. 현행 「축산법」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므로 제2유형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인 제4유형의 경우 축산업도 농업에 속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와 상충되어 채택하기 어렵다.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제3유형은 현행 「축산법」이 특정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유형 중에서는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 범주에는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허가, 축산물 등급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제2절 축산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제도 도입 검토

1. 인·허가 의제의 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사업의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발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법률에도 인·허가 의제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발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법률에도 인·허가 의제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이제는 인·허가 의제제도가 너무 남발되어 서로가 서로를 의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축산법」에서의 인·허가 의제 조항의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2. 인·허가 의제 조항 도입과 관련된 원칙

(1) 법률에 인·허가 의제 대상 명시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인·허가가 의제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제 대상 인·허가를 관련 근거 조항과 함께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인·허가가 의제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제 대상 인·허가를 관련 근거 조항과 함께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

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의 제목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또는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을 사용하며, 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의제 대상 인·허가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제대상 인·허가를 일일이 열거하여야 한다.

농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령이 아닌 타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의 인·허가에 대해 「축산법」에서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면 미리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2) 협의 시 의제 효력 발생 규정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의제되어서는 안 되므로,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 제도를 두게 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당연히 협의가 전제 요건이라 하더라도 의제 규정과 협의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의와 관련 없이 당연히 의제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협의를 거친 인·허가만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된 인·허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도 의제되어 변경되는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3)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주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는 주된 인·허가 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그 통보 의무는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두는 것이 타당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많은 인·허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법률에 관련 통보 규정을 두기도 한다.

(4)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주된 인·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나 해석례가 일관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 중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인·허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이므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허가가 의제될 때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어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하는 입법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서 의제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다. 또한, 다수의 이해에 관계되는 인·허가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라면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 관리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같은 취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이행보증금, 부담금, 조성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된다. 현실적으로 주된 인·허가의 소관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전문성이 없고, 근거 자료나 공부(公簿)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담당 행정청에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허가가 의제된 이후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권한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법례와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자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있다.

(6)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간주 등 도입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속한 인·허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나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주된 인·허가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협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일괄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조건부 인·허가 의제, 협의 간주 등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7) 인·허가 의제의 효과

1) 절차의 간소화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인·허가 부서가 일원화된다는 점이다.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면 의제대상 인·허가의 소관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이와 같이 여러 인·허가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인·허가절차를 밟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2) 구비서류의 감축

주된 인·허가를 할 때에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제적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구비서류외에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으로서는 그 실제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게 되는 바, 실제로는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서의 구비서류는 줄어 들지 아니한 채,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자료를 요구받게 되어 아예 당초부터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게 된다.

(8) 인·허가 의제의 효력발생시기

인·허가의 의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그러나 의제대상 인·허가에 대하여 효력발생시기가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축산법」에의 인·허가 의제 조항 도입 문제

(1) 축산 분야의 단계별 인·허가 관련 사항

1단계 교육이수(「축산법」)

2단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축산법」)

3단계 축사시설 건축허가(「건축법」), 적정사육기준허가(「축산법」 시행령)

* 2,3단계의 경우 축산규제의 입지규제, 환경규제 관련 법규도 포함됨

4단계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가축분뇨법」)

5단계 가축사육시 초지관리(「초지법」), 가축분뇨관리(「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녹색성장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생관리·방역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복지인증제(「동물보호법」), 친환경인증(「환경농어업법」)

6단계 가축출생시 이력제 관리(「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의한 법률」)

7단계 가축판매시 축산물등급제(「축산법」),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축산 관련 법률에서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시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동 법 동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8호). 그러나, 「건축법」은 「축산법」상의 사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축산관련 인·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많지만, 영업허가 또는 특정한 영업의 수행과 관련된 허가 사항등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는 축산관련 법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축산 관련하여서는 인·허가 의제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축산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 도입

1) 개 요

현재 「축산법」 등 축산과 직접 관련된 법률 중에서는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축산법」 제2조 제8-2호에 의하면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등 영업허가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축산법」 제22조에 의하면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등은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축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요컨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축산업의 허가 등에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의 허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등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축사의 인허가 의제 문제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축산법」상의 축사의 설치 허가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축산법」에서 축사의 설치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축사와 장비 등의 구비가 축산업 허가의 필수요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요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도 축사 등에 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도입하기 어렵다.

2) 「건축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

(가) 건축허가와 다른 허가 등의 의제

축사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 4. 생략

5.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건축법」은 축사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한편,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나) 허가권자의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 제6항)

(다) 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7항)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건축신고의 건축허가 간주

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단서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서 생략)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3) 「산지관리법」과 축사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와 같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서도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의 설치(제5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항에서는,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가.목) 및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자(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라.목)을 포함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4) 「농지법」과 축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의 범주에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된다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 그러한 시설의 부지가 포함된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를 상기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때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요컨대, 농지를 축사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러한 사육동물로는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또한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2조 제3항).

6) 결 어

축산관련 인·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많지만, 영업허가 또는 특정한 영업의 수행과 관련된 허가 사항등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영업허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는 그 영업이 매우 다양하고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축산관련 법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시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축산법」상의 사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축산법」상 축사의 설치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축사와 장비 등의 구비가 축산업 허가의 필수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도 축사 등에 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도입하기 어렵다. 한편 축사의 설치와 관련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은 모두 「건축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축사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상 모두 축사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는 불필요하다.

제3절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 검토

1. 의 의

공장식축산(factory farming system)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축의 생리에 맞는 사육보다는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가축을 집약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육류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사육방식이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동물복지형 축산에 비해 많기 때문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육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ICT 등 시스템을 통해 일괄 또는 개체별 관리가 용이하며, 기계화 등을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요컨대,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공장식 축산은 사육가축의 생리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집단적 질병발생의 위험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예 : 광우병)의 등장,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대규모 농장에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영세한 농가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적절한 사육관리를, 그리고 제8조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 환경, 질병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 시행령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을 별표 1에서 설정하고 있다. 별표 1에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관련하여 한우, 육우 및 젖소의 경우 각각 성장단계별·시설형태별로 마리당 사육시설면적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정하고 있다. 닭의 경우 중

계·산란계, 산란 육성계, 육계별로 시설형태에 따라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정하고 있다. 오리는 산란용과 육용의 구분에 따라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정하고 있다.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며 여기에서는 별표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U 등의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그 결과물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복지개념의 적용이 유럽 등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국내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유럽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고 있다.

동물복지 개념의 축산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생산성 저하문제로 인한 소득보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통단계에서 운송이나 도축 과정에서의 동물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소비단계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요컨대,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소비자가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할 수 있는 적정가격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부분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유럽 및 미국 및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동물복지 차원의 축종별 적정사육기준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염소, 사슴 등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검토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1) 한우·육우, 2) 젖소, 3) 돼지, 4) 닭, 5) 오리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염소, 사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용역과제인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마련 연구』에서도 언급되

어 있지 않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사례 및 염소와 사슴의 경우, 사육농장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축산법」 시행령의 한우·육우, 젓소 등의 적정사육기준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3. 우리나라 사육밀도 관련 제도

(1) 축산업 허가기준

1) 한·육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된 2004년에 최초 제정되었고, 이 때 돼지의 두당 소요면적은 육성돈 0.6㎡, 비육돈 0.9㎡이었고 산란계는 0.042㎡ 이었다. 이후 2008년에 육성돈과 비육돈은 0.45㎡와 0.8㎡로 완화 조정되었고, 오리의 소요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산란계 소요면적을 0.05㎡으로 높였다. 한육우는 성장단계에 따라 마리당 2.5~10.0㎡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성장단계별 한·육우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 주: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2) 젓 소

젓소는 시설형태별로 마리당 4.3~16.5㎡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성장단계별 젖소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m²)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갈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틀 방식	8.3	8.3	8.3	6.4	4.3

<표 3> 일관사육 시 젖소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m²)

시설 형태	갈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틀 방식
마리당 평균면적	12.8	8.6	9.0

- 주 : 1. 계류식: 착유·건유 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갈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틀 방식: 착유 우사는 프리스틀, 나머지는 갈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돼 지

돼지는 성장단계별로 마리당 0.3~16.5m²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표 4> 성장단계별 돼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m²)

구분	용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틀)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주 1. 용돈: 성숙한 수돼지(교배에 활용되는 수돼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돼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돼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돼지
7. 새끼돼지: 초기(젓먹이 돼지), 후기(젓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2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4) 산란계

산란계는 마리당 0.025~0.075㎡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표 5> 산란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마리)	비 고
산란계	케이지(cage)	0.075	
	평사	9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	100일령까지 사육

5) 육 계

육계의 무창계사는 ㎡당 33~39kg, 케이지는 마리당 0.046㎡로 규정되어 있다.

<표 6> 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6) 오리

오리의 산란용은 마리당 0.333㎡, 육용은 0.246㎡로 규정되어 있다.

<표 7> 오리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m²/마리)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	
육용 오리	0.246	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 적용

(2) 동물복지축산 기준**1) 한·육우**

- 동물복지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함
 - ① 주요 기록사항은 1) 전체 바닥면적, 2) 칸막이 축사, 깔짚이 깔린 장소의 수, 3) 연령·체중·급이/급수 및 깔짚이 깔린 장소와 비교한 소의 수 등을 포함함
 - ②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는 각 축사의 출입구나 그 부근에 게시해야 함
-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은 흠을 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코팅 처리 등을 하여야 함
- 통로는 동물 두 마리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해야 함
- 우세한 동물에 의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막다른 통로의 수를 최소화 하도록 함
- 우사는 가능한 자연광과 바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
- 우사 및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는 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
 - ① 우사 및 사육시설은 소에게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며, 운동장에 소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카우 브러쉬(cow brush)를 활용할 수 있음
- 우사 내 깔짚이 깔린 누울 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8> 한육우 체중별 동물복지 깔짚 면적

(단위 : m²)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총 면적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m²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m² 이상의 깔짚을 제공해야 함

2) 젖 소

- 우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우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
- ③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를 설계·관리해야 하며 해충, 기생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④ 우사 내 깔짚이 깔린 누울 자리를 제공해야 함. 우사 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깔짚은 잘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심각하게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야 함
- ⑤ 소를 계류하여 사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함

- 씨수소 우리는 다른 소의 활동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함
 - ① 관리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소용 구속시설과 비상출구를 갖춰야 함
- 송아지 우리는 열 스트레스와 극심한 온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함
 - ① 송아지 우리는 외풍을 막으면서도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함
 - ② 송아지 우리는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송아지를 밧줄로 매는 것은 금지함
 - ③ 송아지는 온도변화에 취약하므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을 설치하여야 함
- 격리실 및 분만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충분한 수의 격리실 및 분만실을 갖추고 격리 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함
 - ②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어야 함
 - ③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함
- 소의 모든 이동로와 출입문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26도 이하 경사지지 않아야 함

<표 9> 젖소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

(단위 : m²)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총 면적
경산우	착유우	8	16.5
	건유우	6.5	13.5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총 면적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 ① 개별우상(Free stall)을 이용할 경우, 개별우상 바닥전체에 깔짚을 깔아주거나 바닥용 매트를 제공해야 함
 - ② 소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있어야 함
 - ③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함
 - ④ 소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함
 -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함
 -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함
 - ④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됨
-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 이상의 깔짚을 제공해야 함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음
- ①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울타리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함

- ① 전기 철책은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해야 함
- ②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하고, 급사책(Feed fence) 등 급이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치해야 함

3) 돼 지

-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0> 돼지 체중별 동물복지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 면적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²	최소 소요면적, m ²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 ① 배설물 청소는 2회/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함
-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공간은 벽, 층 등으로 구분되어야 함
- ③ 단,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의 면적을 소요면적의 33%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1> 돼지 체중별 동물복지 깔짚 최소 소요 면적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²
30~60 미만	0.8
60 이상	1.3

- ① 배설물 청소 및 깔짚 보충·교체를 1회/3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사육단계별 권장 온도 등 참고, 이하 같음)되는 경우에는 60kg 이상의 최소 소요면적을 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2> 돼지 체중별 동물복지 깔짚 최소 소요 면적(정기적 깔짚보충시)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
30~60 미만	1.4
60 이상	1.6

- 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3> 돼지 동물복지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 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	최소 소요면적, ㎡
후보돈	0.92	2.3
임신돈	1.3	3.0
웅돈	-	6.8

- ① 단,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에는 임신돈 3.5㎡, 후보돈 2.5㎡, 웅돈 7.5㎡ 이상의 소요 면적을 제공하여야 함
-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돈의 최소 소요면적을 2.6㎡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또한 돈방 당 사육규모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 까지 소요면적을 감할 수 있음

○ 휴식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됨
- ②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보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의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함
- ③ ②에도 불구하고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물관리 (6)에 해당하는 보조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가능한 휴식공간의 바닥은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함
- ④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함
- ⑤ 돼지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함
-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함
- ④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됨

4) 산란계

-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궤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함
-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함.(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
-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이고,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7마리 이하여야 함

5) 육 계

-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
 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
 - 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 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됨
 - 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
 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
- 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육계 1,000수당(토종닭 800수당, 삼계 1,700수당) 헷대 2m를 제공해주어야 함
 - ② 궤의 굵기는 직경 3~6cm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고 폭이 약 4cm인 사각형 모

양의 화를 권장한다) 화와 화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화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0~100cm 높이어야 함

- ③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닭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함
- ④ 화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함
- 가능한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쪼는 물건(양배추등 각종 채소류,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함
 - ② 깔짚은 충분히 깔아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함
 - ④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주어야 하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화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함
- 계사 내 닭의 최소 사육밀도는 아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육계·토종닭 : 19수 이하 및 30kg/m² 이하
 - 삼계 : 35수 이하 및 30kg/m² 이하

6) 오리

○ 오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오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오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양시설을 갖추어야 함
- ③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오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
- ④ 오리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오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됨
- ⑤ 오리는 관리자가 모든 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오리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⑥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오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
- ⑦ 사육시설은 오리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함

○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오리는 언제든지 잘 건조되고 깨끗한 깔짚이 깔린 휴식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② 모든 오리사 내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며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다만 음수시설 부근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③ 음수시설 부근이 슬랫형태의 바닥이라면 전체 바닥면적의 25%이하여야 함
- ④ 깔짚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함

- ⑤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주어야 함
- ⑥ 깔짚은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계절별로 아래의 최소 소요량 이상 제공함

<표 14> 오리 계절별 깔짚 소요량

(단위 : 톤)

계절별	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	
	최소 소요량	권장 소요량
봄(3~5)	0.7	0.9
여름(6~8)	1.0	1.3
가을(9~11)	0.7	0.9
겨울(12~2)	1.3	1.8

- 오리의 최소 사육밀도는 산란오리는 6.8kg(2마리)/㎡ 육용오리는 10.2kg (3마리)/㎡ 을 초과해서는 안 됨

7) 염 소

- 축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축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염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
 - ③ 축사는 염소가 서있는 상태에서 앉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설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④ 축사는 정상적인 휴식자세로 설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이어야 함
 -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염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

- ⑥ 악천후(특히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축사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⑦ 출입문은 염소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함
- 울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모든 울타리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높이가 1.0~1.2m 정도이어야 한다.
 - ② 전기 철책은 접촉 시 염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해야 한다.
 - ③ 급이시설과 관련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한다.
-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
 -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④ 염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⑤ 깔짚은 청결, 건조하고, 곰팡이가 없으며 수시로 보충해주어야 한다
- 사육밀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① 염소무리의 크기, 축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② 모든 염소가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함.
 - ③ 축사는 체중별 두당 최소 축사면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슬랫바닥 축사인 경우 최소 축사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5> 염소 동물복지 가축사육시설 면적

종류	깔짚 제공면적(m ²)	최소 소요면적(m ²)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 개방식 흙바닥 축사의 경우 슬랫바닥 축사에 비해 1.5배의 면적을 제공해야 함

4. 사육면적 적정성 및 사육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1) 사육면적 허가기준 적정성

- 좁은 공간에 많은 가축을 키웠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단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람 건강에 대한 위해부문이고, 두 번째는 가축 생산성 저하부문임.
- 인간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형태는 대기오염 물질의 국지적 발생으로 인한 축산업 종자사와 인접지역 사람에게의 피해로서 암모니아, 황하수소, 유기성 미세 먼지(organic dust) 및 잠재적 병원성을 내포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장시간 노출은 질병발생을 야기(de Rooij 등, 2016; McEachran 등, 2015; Ssematimba 등, 2012; Schenker 등, 1998) 함
- 특히 대한민국, 미국동부, 유럽과 러시아 및 일본에서는 집약적 농업부문이 미립자(particulate matter)발생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기오염 관련 사망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Lelieveld 등, 2015)되었음.
- 또한, 축사 및 분뇨에서 대량 생성되는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은 토양 비료로서는 우수하나, 생성 후 에어로졸 형태로 유지되었을 때 인근지역 대기의 미세오염물질 농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Bauer 등, 2016; Brunekreef 등, 2015; Lelieveld 등, 2015; Vieno 등, 2016)되었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발생한 분

뇨에 대한 적정처리시설 부재 및 미이용 시 인근 상·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질산염 오염 등을 야기함으로써 인근지역 거주자를 질병에 노출(Cullen, 2017)시킬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당시,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 75%가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에서 발생¹⁾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집약식 축산은 다른 형태로 인간건강 또는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해요인 생성 위험성을 갖는데, 인수공통질병 발병 및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내성균) 등 고위험성 질병원 생성의 문제점이 있음
- 시설 내 사육환경에서 높은 입식밀도는 모든 축종에서 온·습도, 공기질, 신체적 제약에서 오는 고통, 사회적 활동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따라 가축건강악화 및 생산성 감소를 유발(Albright와 Arave, 1997; Boe 등, 2006; FAWC, 2003; Gyax 등, 2007; Gupta 등, 2007; Jarvis 등, 1996; Knowles 등, 1998; Lawrence, 1994; Rabaste 등, 2007; Ruiz de la Torre와 Manteca 1999; Schmolke 등, 2003; Turner 등, 2000; Weeks 등, 2008) 할 수 있음.

<표 16> 고밀도 사육이 주요 생산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

축종	내용	결과 인용문헌
한·육우	섭취량 및 증체량 감소	Gonyou 등, 1992 de Haer와 de Vries, 1993 Gehlbach 등 (1996) Morand-Fehr와 Doreau, 2001 Boe와 Færevik, 2003 Li 등, 2010
	질병발생 및 질병 이환율 증가	Brown-Brandl 등, 2006 Wathes 등, 1988 Gorden and Plummer, 2010 Woolums 등, 2009 Bach 등, 2011 Lee 등 2007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A brief guid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zoonoses.

축종	내용	결과 인용문헌
		Pithua 등, 2009 Torsein 등, 2011 Gay와 Barnouin, 2009
젖소	서열다툼 및 공격성 심화	Huzzey 등, 2006
	유량 및 유질 감소	Bach 등, 2008 Hill 등, 2007
	섭취량 감소 및 반추행위 감소	Huzzey 등, 2006 Hill 등, 2007 Fregonesi 등, 2007 Christophe 등, 2009 Grant, 2008
	부상·질병 발생을 증가 및 회복시간 증가	Oltenacu와 Algers 2005 John Webster, 2011 Krawczel 등, 2008 Cook, 2002 Guard, 2002 Nishida 등, 2004
돼지	체계적 개체관리의 어려움 발생	Waterhouse 1996, Stott 등, 2012
	서열다툼 및 공격성 심화	Oh 등, 2010 Sinisalo 등, 2012; Ellen 등, 2014; Grams 등, 2015 Harley 등, 2014
	사료섭취량 및 일당증체량 감소	Wolter 등, 2000 DeDecker 등, 2005 Kerr 등, 2005 Kornegay 등, 1993 Edmonds 등, 1998 Brumm 등, 2001 Wolter 등, 2002 Zhang 등, 2013 Van Heugten 등, 1996 Hyun 등, 2005

축종	내용	결과 인용문헌
	스트레스 가중 및 면역력 감소	Pearce 등, 2013 Hemsworth 등, 2002 Bryer 등, 2011 Valros 등, 2013 Van Heugten 등, 1996 Kelly, 1980 Oh 등, 2010 Hemsworth 등, 2013 Zhang 등, 2013 Barnett 등, 1992 Weng 등, 1998 Salak-Johnson 등, 2007
산란계	부상(카니발리즘 포함)·질병 발생을 및 폐사율 증가	Dawkins 등, 2004 Bessei, 2006 Estevez, 2007 Tanaka와 Hurnik, 1992 Abrahamsson과 Tauson, 1995 Abrahamsson과 Tauson, 1997 Weber 등, 2003
	사료섭취량 및 산란율 감소	Abrahamsson 등, 1996 Tauson 등, 1999 Preisinger, 2000
육계	사료섭취량, 증체량 및 사료효율 감소	Purond 등, 1995 Rosemary와 Estevez, 2001 Feddes 등, 2002 Dozier 등, 2005 Estevez, 2007 J. Beloor 등, 2010 Guardia 등, 2011
	육품질 저하	Bilgili와 Hess, 1995 Dozier 등, 2006 Tong 등, 2012 Özcan 등, 2015

축종	내용	결과 인용문헌
	질병·부상 저항력 감소 및 폐사율 증가	Villagr�a 등, 2009 Beloor 등 2010 Hall, 2001 Dozier 등 (2006) Estevez, 2007 Dawkins 등, 2004 Gurbakhsh Singh Sanotra 등, 2010
오리	섭취량, 사료효율 및 증체량 감소	Osman, 1993 Baeza 등, 2003 Xie 등, 2014
	육생산량 감소	Osman, 1993

(2) 사육면적 적정성검토

1) 한육우

- 현재 국내 한우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에서 방사식은 번식우 10㎡, 비육우 7.0㎡ 및 송아지에서 2.5㎡으로 규정되고 있음.
- 가축사육환경에 복지개념 반영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기관 및 비영리기구에서 제시된 육우의 사육면적 기준은 성우에서 3~11㎡으로서 국내 면적기준 7㎡는 유럽 사육면적 기준의 평균 이상의 사육면적 제공을 규정하고 있었음.
- 또한 미국의 사육면적 권장 수준은 4.64㎡로서 국내 기준의 약 66% 넓이의 사육면적을 제공하였고, 일본의 사육면적 권장 수준은 600kg 기준 2.4㎡임에 따라 국내 기준의 약 34% 넓이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준을 대표적인 국제 사육면적 기준들과 비교했을 시 현재 국내 사육면적 기준은 적정수준 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기준은 강제성을 가진 규제형태를 가짐으로서 생산자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한·육우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젓 소

- 현재 일관사육 시 국내 젓소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깔짚방식에서 12.8㎡, 프리스틀 방식에서 9.0㎡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착유 경산우와 건유 경산우는 깔짚방식 기준으로 16.5㎡와 13.5㎡의 사육면적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 유럽의 주요 기관 및 비영리기구에서 제시된 젓소 성우의 사육면적 기준은 약 7~11㎡으로서, 국내 규정된 최소기준 9㎡와 비교 시 비슷한 수준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시하였음
- 또한 미국의 젓소 성우의 사육면적 권장 수준은 4.64㎡로서 국내 기준의 약 52% 넓이의 사육면적을 제공하였고, 일본의 사육면적 권장 수준은 600kg 기준 2.4㎡임에 따라 국내 기준의 약 27% 넓이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준을 대표적인 국제 사육면적 기준들과 비교했을 시 현재 국내 사육면적 기준은 세계적 사육면적 증가 기조에 비추어 적정수준 내 있으며, 특히 생산자에 대한 고려가 깊은 미국·일본에 비해 넓은 면적제공의 기준을 가짐에 따라 현재의 국내 젓소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국내 실정과 개선 방향성, 양면에 비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돼 지

- 국내 돼지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용돈 6.0㎡, 군사체계에서 후보돈, 종부대기돈 및 분만돈사를 각 2.3㎡, 2.6㎡ 및 3.9㎡, 그리고 비육돈에게는 0.8㎡의 사육면적 제공이 규정되어 있음.
- 국내 기준을 수치화된 국제 사육면적 기준 등과 비교했을 시 유럽 기준 모돈과 분만사 면적 제공 수준은 두당 1.64~3.5㎡와 3.8㎡로서 국내 사육면적 기준 2.3~2.6㎡ 그리고 3.9㎡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육돈 또한 유럽 사육면적 기준이 0.8~1.0㎡으로 제시되어 국내 기준 0.8㎡을 포함하고 있었음.
- 미국은 모돈사를 2.79㎡로 획일 기준하였고 분만돈사는 4.46㎡으로 기준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비하여 약 12~13% 넓은 사육면적 제공을 제시하였으나, 비육돈의 경우 두당 0.56㎡ 제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비육돈 사육면적 기준 0.8㎡에 비하여 30% 가량 협소하였음.

- 가까운 일본의 돼지에 대한 적정사육면적 제시의 경우 번식돈 일괄로 두당 1.08㎡의 사육면적 제시가 있었고 비육돈에는 두당 0.56㎡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기준을 대표적인 국제 사육면적 기준들과 비교했을 시 현재 국내 사육면적 기준은 미국에 대비했을 때 모돈사와 분만돈사가 약 12%~13% 협소하였으나, 유럽 기준과 비교 시 평균 수준의 기준이었고, 일본에 비해서는 모돈 기준 66%, 비육돈 기준 30% 넓은 면적제공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돼지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선진국 기준 대비 평균 수준의 면적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산란계

- 국내 산란계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케이지 형태에서 0.075㎡/마리, 평사에서 9수당 1㎡(약 0.11㎡/마리), 그리고 산란육성계는 케이지에서 100일령 까지 0.025㎡/마리의 사육면적 제공이 규정되어 있음.
- 유럽의 주요 기관 및 비영리기구에서 제시된 산란계의 사육면적 기준은 수당 0.11㎡로 국내 평사 기준 0.11㎡과 같으며 미국의 경우 국내 사육면적 기준에 비해 약 127% 큰 크기의 사육면적 제공이 제시되어 전체적으로 국내 수준과 비슷하였다. 또한 일본은 케이지 사육에서 수당 0.043~0.056㎡의 사육면적을 권장함으로써 현재의 국내 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사육면적 제시가 있었음.
- 하지만 32일령 내외 출하일령을 갖는 육계와 달리 약 2년의 경제수명을 갖는 산란계의 경우 가금의 생리학적 악습과 더불어 사육밀도 등의 사육환경 체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²⁾이 타축종에 비해 커 유럽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9년, Council Directive 1999/74/EC³⁾를 제정함으로써 2012년까지 수당 최소 0.075㎡의 공간제공을 하는 케이지를 사용토록 하였고, 이후 케이지 사용 폐지를 결정하였음.
- 국내 산란계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선진국 기준 대비 평균 수준의 면적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report. 2008. Opinion of the Scientific panel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on a request from the commission related to the welfare aspects of various systems of keeping laying hens. The EFSA Journal.

3)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의 EC(European Commission :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입법·시행된 가금류 복지 조약

-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유럽과 같이 사육환경 중 케이지 사육 폐지가 각국 국내법으로서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대안 수립 요구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5) 육 계

- 현재 국내 육계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무창계사 $39\text{kg}/\text{m}^2$ (약 19수⁴)/ m^2 , 개방계사 자연환기 $33\text{kg}/\text{m}^2$ (약 16수/ m^2)로 규정되어 있으며 케이지 사육에서는 0.046m^2 /마리 사육면적 제공이 규정되어 있음.
- 유럽의 주요 기관 및 비영리기구에서 제시된 육계의 사육면적 기준은 육계 성계에 서 1m^2 당 13~19수를 권장함에 따라 국내 육계 사육기준 약 16~19수는 유럽 사육면적 수준에 합당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육계 사육면적 기준은 단위면적당 사육총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미국은 $29.5\text{kg}/\text{m}^2$ 으로서 국내 $33\sim 39\text{kg}/\text{m}^2$ 대비 약 112~132% 넓은 사육면적 제공을 권장하였고, 일본의 경우 $33\sim 42\text{kg}/\text{m}^2$ 의 사육면적 제공으로 국내 기준 대비 비슷한 수준의 육계 사육면적 제시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들에 국내 육계 사육면적 기준을 대조하였을 때 현재 국내 사육면적 기준은 적정수준 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기준은 강제성을 가진 규제형태를 가짐으로서 생산자 입장 고려 시 낮은 수준의 허가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6) 오리

- 국내 오리의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산란용 오리와 육용오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란용 오리는 수당 0.333m^2 , 육용오리는 수당 0.246m^2 이고 육용오리에서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 사육 시 수당 0.15m^2 의 사육면적 제공이 규정되어 있음.
- 국내 기준을 수치화된 국제 사육면적 기준 등과 비교했을 시 현재 오리의 국내 사육면적 기준은 유럽의 수당 0.203m^2 , 미국의 수당 0.093m^2 및 호주의 수당 0.125m^2 의 사육기준들 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에 따라 국내 오리 사육에서 사육면적 부문에 대한 복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4) 최근 국내 육계 평균 출하체중을 2.0kg 으로 하여 산술하였음. 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6월·12월호 및 2018년 5월호. 축산관측 육계.

7) 염소 및 사슴

- 국내외 염소 및 사슴에 대한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염소의 경우 동물복지 사육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염소는 대부분 털색이 검은 염소이며 주로 산에서 기른다 하여 산양으로 불려왔음. 그러나 외국산 흑염소가 도입되어 국내흑염소와 교잡이 이루어짐으로써 외모와 털색으로는 교잡흑염소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흑염소의 종류는 재래흑염소, 교잡 흑염소, 보어(Boer)종, 키코(Kiko), 누비안종이 있으나 외국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염소농가의 사육방식은 축사형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사형+방사형이 28.6%, 방사형이 17.9% 순으로 나타남.

<표 17> 사육방식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축사형	15	53.5	53.5
방사형	5	17.9	71.4
사사형+방사형	8	28.6	100.0
합계	28	100.0	

자료 ; 김기현 외, 국가단위 염소개량방향 설정을 위한 소비실태 및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2018, (사)한국 축산경제연구원

- 국외에서는 염소사육이 방사형태로 이루어져 사육밀도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방사형 염소사육이 17.9%로 낮아짐에 따라 사육면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육면적은 동물복지 염소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 타 축종 역시 동물복지 사육면적과 허가제 면적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음.

	사육단계	허가제 기준(A)	동물복지 기준(B)	A/B
한우	번식우	10	10	1.00
	비육우	7	7	1.00
	송아지	2.5	2.5	1.00
젖소	착유우	16.5	16.5	1.00
	건유우	13.5	13.5	1.00
	미경산우	10.8	10.8	1.00
	육성우	6.4	6.4	1.00
	송아지	4.3	4.3	1.00
돼지	후보돈	2.3	2.3	1.00
	임신돈	1.4	3	0.47
	옹돈	6	6.8	0.88
	비육돈	0.8	1	0.80
산란계		0.075	0.111	0.68
육계		0.045	0.052	0.87

- 염소 최소사육면적은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육면적은 동물복지 염소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슴은 소목 사슴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5아과(亞科)에 17개 속(屬), 39종(種), 그리고 200여 개의 아종(亞種)으로 분류된다. 몸길이 30~310cm, 어깨높이 20~235cm이며⁵⁾, 소형종에서 대형종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부지역의 개체가 남부지역에 비해 30% 정도 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육되는 사슴은 꽃사슴, 레드디어 및 엘크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들 모두 적록속에 속하는 사슴이며 그 외에도 사불상, 순록 및 펠로디어 등이 소수 사육되고 있다.⁶⁾

5) 국립생물자원관의 동물정보에 의하면, 사슴은 몸길이 90~190cm(수컷), 90~150cm(암컷), 어깨높이(체고) 70~130cm(수컷), 60~110cm(암컷), 몸무게 50~130kg(수컷), 25~80kg(암컷)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소에 비해 몸무게는 훨씬 적으나 몸길이는 소의 2분의 1이 넘는다.

6)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b/psbk/kidofcomdtyDtl.ps?pageIndex=1&pageSize=10&menuId=PS00067&sSt>

<표 18> 국내에서 사육되는 주요 사슴의 체중

구분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생시 체중(kg)	3-5	7.5	16-18
체중(kg)	암: 50-60 수: 80-100	암: 80-100 수: 100-150	암: 300-350 수: 350-450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양록장(養鹿場)은 대개 1마리당 20평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며, 높이 3m의 철책을 치고 평소에는 한 우리에 몰아 넣는다 (발정기에는 암컷 10마리에 수컷 1마리씩 넣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이러한 설명은 밀집사육이 아니라 방목사육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염소는 소목 소과에 속하며, 무리 동물이므로 서로 섞이는데 어렵다. 염소는 한 공간에서 자란 염소들이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섞인다. 야생 염소류는 어깨높이 약 1m이며, 무게는 수컷 60~90kg, 암컷 45~60kg이다.⁸⁾
- 한편, 염소도 자연 상태에서 광우병에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고 사슴도 사슴광우병(광록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슴과 염소의 밀집 사육기준은 소의 경우를 참조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는 길이 310cm 무게 450~1000kg 정도이다. 사슴의 경우에는 송아지와 유사한 수준에서, 염소는 송아지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에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송아지는 방사식 및 계류식 모두 마리당 2.5㎡로 하고 있다.

5. 사슴·염소 적정 사육기준도입과 규제영향분석

(1)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에 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dPrdlstCode=LP024184&sStdTchnlgyCode=GG01&sRdaStdPrdlstCode=LP&kidofcomdtyNo=21124.

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762/>

8)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961&cid=40942&categoryId=32626>.

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2의2호)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행정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의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2019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유형은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된다.

<표 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과 기준

작성유형	기준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u>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

(2) 염소와 사슴의 사육시설 면적 도입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및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따라서 여기에서 보듯이 허가대상은 일정한 사육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업이다. 「축산법」 제22조 제3항은 제1항제4호(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염소와 사슴은 염소와 사슴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은 아니며 등록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행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에서는 염소와 사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염소와 사슴의 사육시설 면적을 등록요건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행정규제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4조의2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별표 1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내용

1) 규제의 내용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염소·사슴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2. 규제조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3. 위임법령	축산법 제22조제2항		
	4. 유형	신설	5. 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적으로 염소 및 사슴에 대한 사육면적 허가 기준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염소의 경우 동물복지 사육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하여 염소와 사슴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국외에서는 염소사육이 방사형태로 이루어져 사육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방사형 염소사육이 17.9%로 낮아짐에 따라 사육면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규제내용	○ 염소와 사슴 사육 축산업 등록자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 부과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염소와 사슴 사육 축산업 등록자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1. 영향평가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관리제 (단위: 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 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가.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5) 생략 6) 염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구분</td> <td>마리당 면적</td> </tr> <tr> <td>성축</td> <td>2.5㎡/마리</td> </tr> <tr> <td>육성축</td> <td>0.5㎡/마리</td> </tr> <tr> <td>자축</td> <td>3.0㎡/마리</td> </tr> </table>	구분	마리당 면적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
구분	마리당 면적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								
<신 설>	7) 사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구분</td> <td>마리당 면적</td> </tr> <tr> <td>성축</td> <td>2.5㎡/마리</td> </tr> <tr> <td>육성축</td> <td>0.5㎡/마리</td> </tr> <tr> <td>자축</td> <td>3.0㎡/마리</td> </tr> </table>	구분	마리당 면적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
구분	마리당 면적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								

2)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가) 추진 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염소와 사슴의 경우 과거부터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왔고, 산지초지를 통한 친환경 축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그 사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염소와 사슴 사육은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요 축종인 소·돼지·닭·오리의 경우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염소, 산양포함), 사슴 등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함.

-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1) 한우·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오리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염소, 사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및 질병예방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염소와 사슴의 축사 시설 관리 등이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은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 반면 특수가축의 사육기반은 매년 위축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기타 가축통계’에 따르면 염소의 경우 전체 농가 가운데 10마리 미만을 키우는 농가는 약 50% (6260가구)로 절반이 소규모 부업농 형태의 영세농가이며, 전업규모 (300마리 이상) 농가는 1.7% (215가구) 수준에 불과함.

- 사슴 역시 10마리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61% (1270가구)를 차지했고 전업규모(50마리 이상) 농가는 5.4%(114가구)에 불과함.

- 사육기반 위축은 축산정책에서 특수가축이 소외되는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 정책은 한우·양돈 등 사육규모가 큰 축종 위주로 수립될 수밖에 없고, 특수가축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특수가축은 소·돼지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들기 때문에 고령화로 기존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령층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분뇨 생산량이 적어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기 쉬움. 특히 염소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되는 바, 방목할 수 있어 산지 생태축산에 적합한 데다 환경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임

<표 20> 염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연도	사육규모별 가구수				
	합계	1~4두	5~9두	10~19두	20~29두
'98	59,775	40,614	9,394	4,220	1,707
'99	54,171	36,874	8,803	3,808	1,437
'00	51,585	34,733	8,391	3,820	1,578
'01	50,824	34,058	8,391	3,876	1,515
'02	45,231	28,834	7,934	3,740	1,526
'03	43,008	25,854	7,923	4,063	1,610
'04	41,649	23,407	8,137	4,506	1,748
'05	40,874	22,526	8,276	4,505	1,770
'06	34,823	18,753	7,235	3,774	1,579
'07	27,555	15,129	5,573	2,894	1,301
'08	20,534	11,660	3,831	1,911	863
'09	17,049	9,321	3,554	1,812	727
'10	15,093	7,651	3,071	1,806	974
'11	14,092	6,739	3,025	1,785	778
'12	12,342	5,481	2,595	1,678	752
'13	10,291	4,356	2,161	1,467	675
'14	10,212	4,357	2,085	1,384	679
'15	10,367	3,879	2,154	1,559	767
'16	11,860	4,058	2,380	1,973	897
'17.12	12,295	3,822	2,438	2,048	1,105

출처: 2017 他家畜統計

<표 21> 사슴 사육규모별 가구수

	사육규모별 가구수							
	계	1~9두	10~49 두	50~ 99두	100~ 199두	200~ 299두	300~ 499두	500 이상
'8	10,873	6,582	3,893	336	45	9	6	2
'99	11,369	7,089	3,889	318	54	8	10	1
'00	12,137	7,591	4,097	365	60	13	9	2
'01	12,564	7,784	4,318	371	77	6	6	2
'02	12,337	7,672	4,194	379	77	6	8	1
'03	11,501	7,160	3,875	368	80	10	5	3
'04	10,874	6,744	3,617	414	81	13	1	4
'05	9,892	6,246	3,232	323	76	10	1	4
'06	8,849	5,615	2,850	286	80	12	4	2
'07	7,937	5,005	2,579	266	69	11	6	1
'08	6,095	3,879	1,863	224	108	17	2	2
'09	5,996	3,842	1,901	193	50	8	1	1
'10	5,369	3,557	1,590	163	49	4	5	1
'11	4,266	2,790	1,322	119	29	1	4	1
'12	4,011	2,614	1,253	110	27	4	2	1
'13	3,309	2,092	1,082	99	26	7	2	1
'14	2,816	1,750	943	88	26	6	2	1
'15	2,505	1,546	828	98	24	7	1	1
'16	2,210	1,346	750	75	31	6	1	1
'17.12	2,077	1,270	693	89	19	4	1	1

출처: 2017 他家畜統計

(나) 규제 대안의 검토 및 선택

가) 몇 가지 규제대안과 주요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기준 유지 (적정 사육기준 없음)
	내용	○ 사슴과 염소 사육을 위한 등록 시에 적정 사육기준에 관한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 사슴과 염소 사육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내용	○ 이 경우에는 사슴과 염소 사육업의 시설 기준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정 사육기준도 도입될 것임
규제대안2	대안명	○ 사슴과 염소 사육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시설 점검 강화
	내용	○ 담당 공무원들이 사슴과 염소가 다른 축산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나) 규제대안의 검토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축산관련 법에 따라 별다른 규제 없이 사슴 또는 염소 사육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 부담 없음	○ 사슴 또는 염소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인해 위생 상태가 악화되고 동물복지의 관념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음
규제대안1	○ 사슴과 염소 사육업의 허가제 도입	○ 사슴과 염소 사육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규제대안2	○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철저한 점검	○ 현행 법상으로는 마땅한 점검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축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때문에 사슴과 오리 사육에 대해서 까지 철저한 점검을 하기 위한 일손이 부족함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가축사육농가/단체	○ 한국염소축산업협회 및 한국사슴협회 ○ 염소 및 사슴 축산 농가	의견 수렴
정부(환경부)	- 없음	

라)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 반영
 - 피규제집단인 한국염소축산업협회 및 한국사슴협회의 등록 요건 강화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자정 노력을 확인하였음
 - 다만, 수단적 측면에서 일방적인 사후 규제 아닌 농가 교육·지도 및 시설 지원이 병행된 관리 차원의 규제 방향 요구 의사를 수렴하였음

(다) 규제목표

- 사슴과 염소의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동물 복지 관념에 부합하도록 하여, 환경 개선 노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축사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내에서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 및 지속 성장을 달성하고 축산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를 받게 되는 사슴·염소 사육농가 입장에서 등록을 위한 적정사육 기준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수반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임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영향평가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② 경쟁영향평가

축산업의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농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과 생산 또는 품질과 상품, 서비스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중기영향평가

사슴·염소 사육을 위한 적정 사육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특정된 규제는 아니므로 해당 없음

라) 기타 고려사항

①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축산업의 등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 관련 없음

② 일몰설정 여부

사슴·염소의 적정 사육기준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그 기준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의 지속 시행 필요

③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축산업 허가 등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마)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① 해외사례

- 조사 결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또는 생산성 제고의 관점에서 사슴, 염소, 양 등의 사육시설에 관한 고려는 있으나 법령에 의한 규제수단은 없음
- 그 사육방식이 방목 방식이기 때문에 판단됨
- 우리나라와 사육 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슴·염소의 사육기준은 없음

② 유사입법사례

- 없음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가)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건에는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사슴·염소 사육농가는 도입되는 사슴·염소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가축분뇨 배출 및 악취 등과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관련된 법적 사항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자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노력을 도모함에 따라 적정 사육기준의 준수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집행가능성

①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축산업 등록 관련 업무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어 등록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여건 상 문제는 없음

②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적 집행 가능성 문제 없음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 경과

-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준비 단계이므로 추진경과는 생략함

(나) 향후 평가계획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토록 할 계획임

(다) 종합결론

- 국내외적으로 염소 및 사슴에 대한 사육면적 허가기준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밀집사육이 아닌 방목사육 방식이 널리 퍼져 있어 굳이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하여 염소와 사슴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제4절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의 입법화 방안

1. 과징금 제도 일반론

(1) 과징금의 의의

-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범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매우 그 유형이 다양하며, 그 이유는 해당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과징금의 금액도 개개의 법령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소관부처이 법령들간에도 과징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산정근거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징금에 대해 어떠한 법령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하여야 할 모델을 찾아 내기 어려운 것이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유형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 구분된다.

(2) 과징금의 유형

1)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과징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0. 12. 31.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격인하 명령일부터 가격인하 시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명령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은 허가처분 등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 다만, 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에까지 금전적 제재로의 대체(代替)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경우의 영업이익 환수는 과징금부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지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다.

3)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 금전적 제재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두 유형과 다르다.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일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전적 제재가 제재부과금, 부가금, 부과금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관적 의의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3) 과징금 부과 규정 도입시 유의 사항

1)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둘 것

-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법률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는 부과권자, 부과사유, 상한액 내지 부과금액 산출기준, 체납 시의 강제징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임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의 중복적·불균형적 제재의 회피

- 2009년 8월 26일 법제처,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의하면 과태료·과징금은 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이며 중복적·불균형적 제재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 권고된 바 있다.
- 그 논거로서,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는 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불균형적이고, 자율적인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 것이고,
- 심지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금전제재와 중복되지 않는

지를 검토해야 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재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거나 매우 신중하게 병치할 것(법제처 자료) 등이 추천되고 있다.

○ 그러나,

① 과거 국가경쟁력위원회는 한 정권기에만 존재한,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 일시 존재한 임시기관이었던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던 기관이며,

② 후발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설치한다고 하여, 국회를 거친 형사법상 벌금까지 정비할 것이 권고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며

③ 여러 가지 제재를 병치하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처벌과 제재를 위하여 권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④ 이 점들에 대하여 모든 사법판단들은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학설/판례 모두 여러 제재의 병치를 긍정한다.

○ 과태료와 과징금 및 벌금은 모두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이지만 아래와 같이 부과목적·부과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22>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 구별

	과태료	과징금	벌금
개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재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
부과주체	행정청/법원(이의제기시)	행정청	법원
불복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비송사건절차법(이의제기시)	행정소송	형사소송

○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부과,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부과,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부과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 벌칙의 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폐지
-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또는 과징금액에서 벌금 감액
-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벌금) 준치

3) 부과요건·금액 합리화

-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및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 * 사후이행 가능한 의무위반시 먼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개선, 과태료·과징금 차등기준의 확립 등 추진
- 질서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분류 → 분야별로 합리적 조정
 - *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정비(기초생활수급자의 감경 등)
 - * 위반횟수 및 위반기간 등에 대한 과태료 차등기준 정비

4) 행정청은 과태료·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산금 징수 가능

- * 반면, 과태료·과징금이 과오납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이자 지급규정 마련

(4)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도입 기준과 규정 방식

1) 도입 기준

- 현행법상 과징금은 그 도입 목적도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정 방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징금 중

가장 입법례가 많은 유형이고 「축산법」을 비롯한 축산 관련 법령에서도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도소매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 그러나 차츰 자동차관리업, 건설업, 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는 사업에까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왔는데, 이는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행정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결하고 행정청도 과징금 수입을 특정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공익성이 약한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면 영업정지처분이 갖던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게 된다.
-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 규정

-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되, 취소·정지 규정은 하나의 조문(또는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소·정지 규정과는 다른 조문(또는 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과징금 부과 요건에 영업정지사유 외에 공익성에 관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앞에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와 같은 공익성 요건 관련 표현을 둔다.

- 과징금액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매출액·비용 등과 연계하려면 ‘○○원 이하’라는 표현 대신에 ‘……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3) 과징금의 부과 기준

- 과징금부과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살려 과징금부과사유를 영업정지사유와 연계한다. 대통령령에서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할 때에는 정지처분사유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영업정지사유의 일부만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하려면 해당되는 영업정지사유를 일일이 적시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는 개별 영업정지기간은 다른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을 주로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은 동일한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과징금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 부처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 영업정지 부과기준은 부령에,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두면서, 상호간의 부과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부과기준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개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편, 과징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때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상 가중 감경규정을 두면서 가중하는 경우의 과징금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례(「해운법 시행령」제24조제2항)도 있다.

4) 영업정지기간과 매출금액 등을 반영한 과징금 산정방식 규정

-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거나 사업규모나 업체별 매출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징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어 과징금 부과 제재 효과가 없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 매출금액,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입법 모델]

[대통령령]

제○조(과징금부과기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에 다 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조(또는 별표 ○)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천만원(법률상 상한액)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등 급	연간 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 이하	○○원
2	○○ 초과 ~ ○○ 이하.	○○원
.	.	.
.	.	.
.	.	.
.	○○ 초과	○○원

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한다.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맡기려 할 때에는 부과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즉,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려할 때에만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고금관리법령에는 납부기한이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20일로 하려는 경우에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물론 개별법령의 필요에 따라 납부기한을 15일, 30일, 60일 등으로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납부기한을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한 15일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서식은 원칙적으로 국고금관리법령과 지방재정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개별법령에서 서식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규정하도록 한다.
-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청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이나 청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과징금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반복하는 것과 연계시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행강제금 등과 비교하여 일반적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입법 모델]

[대통령령]

-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가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령]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호서식 및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다.

6) 납부기한의 연장과 과징금의 분할납부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한다.

○ [입법 모델]

[법률]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행정청은 제○조에 따라 영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예시)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예시)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예시)
-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와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원을 말한다.
- ③ 법 제○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법 제○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행정청은 법 제○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예시)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예시)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예시)

7) 과징금의 징수

-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개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와 달리 정하려는 때에만 별도 규정을 둔다.
- 또한,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과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다.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

-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과징금 미납 시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징금 징수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 영업정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일반적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9) 과징금의 귀속·강제징수 및 과징금의 용도

(가) 과징금의 귀속·강제징수

- 과징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률에서 “제○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 특별회계(또는 ○○기금)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을 둔다.
- 강제징수 규정은 법률에 두되, 징수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생략 -

(나) 과징금의 용도

-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징금의 무계획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도 검토하도록 한다.

2. 축산 관련 법의 과징금 관련 규정 분석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과징금 규정례

1) 법률 제5조7의 과징금 규정

- 「축산법」 외의 적지 아니한 다른 축산관련법에서도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징금처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7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변경신고 사항을 30일 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호(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행령 개정안의 과징금 관련 본문과 별표의 주요 내용

(가) 본문의 주요 내용

-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6조(과징금의 독촉), 제7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 본문의 과징금 관련 규정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과징금의 독촉)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7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별표의 과징금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 1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영업정지기간 별(예컨대 1개월, 3개월, 6개월)로 과징금의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함(이러한 방식은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과는 다름)

가) 일반기준

① 영업 1개월의 기준

- 영업 1개월은 30일을 기준을 한다.

② 매출액의 기준

-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분일수를 곱하여 처분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출

③ 누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가산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산정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④ 과징금액의 감경

- 법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 법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법 준수 노력,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 감경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비율이 큰 하나의 기준을 적용
-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함

나) 개별기준: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변경신고 사항을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경우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 (법제5조의4에 열거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연간매출액을 1등급(1억원 이하)부터 33등급(400억 초과)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연간 매출액 차이는 등급이 올라갈 때 마다 점진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음) 등급별로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2만원(1등급)부터 1,381원(33등급)까지 등급이 올라갈 때 마다 점진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음.

나. 법 제5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목의 연간 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 위반의 경우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

* 법 제9조 제1항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규정례

1) 관련 규정

○ 환경부 소관 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과징금 처분에 관한 2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 제18조의2 제1항: 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제33조 제1항: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2) 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 법률 규정

○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4: 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별표

<일반 기준>

-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가중하는 경우에도 1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별기준>

- 또한 개별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사용일수×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별 부과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돼 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1
1,000㎡ 이상 2,000㎡ 미만	0.2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2,000㎡ 이상 3,000㎡ 미만	0.4
3,0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10,000㎡ 미만	1
10,000㎡ 이상	2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1
900㎡ 이상 2,400㎡ 미만	0.2
2,400㎡ 이상 3,600㎡ 미만	0.4
3,6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6,000㎡ 미만	1
6,000㎡ 이상	2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2,500㎡ 이상 7,500㎡ 미만	0.3
7,500㎡ 이상 12,500㎡ 미만	0.6
12,500㎡ 이상	1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715마리 이상	0.3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75마리 이상	0.3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3

3)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가) 법률 규정

「가축분뇨법」 제3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금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3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행령 규정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6은 영업정지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위반행위 별로 1억 원부터 5천만원까지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별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및 2회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고 3회 위반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및 2회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의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5천만원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					5천만원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					7천만원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					1억원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					1억원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몰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5천만원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가) 과징금 부과 가능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과 시행령 별표 6의 상이함

- 법률에서는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 6은 4호 및 5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나) 영업정지기간을 과징금 금액과 결부시킴

- 시행령 별표 6은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별 영업정지기간과 결부시켜 정하고 있다.

○ 위반 행위별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액에 대한 별표 6의 상이한 설정

- 또한 별표 6은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누고 있으며 그러한 구분에 따른 기간별 과징금액은 위반행위별로 차이가 있다. 영업정지 기간 (1개월, 3개월 및 6개월)이 동일한 경우에도 위반행위별로 부과하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 (1개월, 3개월 및 6개월)별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정하고 있지만,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및 3개월이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6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때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이상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유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해서만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6개월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해서만 각각 2천만원,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6개월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만 5천만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만 7천만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만 1억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음)

다) 영업지정기간에 따른 과징금 가중

- 과징금을 영업정지 기간별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약취방지법의 과징금 규정>

법 른 제12조 제1항: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음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과징금 규정례

1) 법률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2) 시행령 규정

- 시행령 제26조는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과징금의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일반 기준>

* 일반기준 중에서 「축산법」 시행령 마련시 참고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과징금 산정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을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류·품목 제조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4) 기타 법령의 과징금 규정례 참고사항

1) 비료관리법

(가) 법률 규정

- 비료관리법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시행령 규정

- 비료관리법 시행령은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고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음

○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음
- *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은 과징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별 기준>

-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기간(1개월, 2개월 및 3개월)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즉,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기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에 대해 ①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③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가중은 없음.

2) 「악취방지법」

- 환경부 소관법률인 「악취방지법」 제12조 제1항: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35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자가 처음 적발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3.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안 마련

(1) 「축산법」상의 축산업 허가

1) 가축의 정의

- 「축산법」 제2조에 의하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을 말한다.

2) 축산업의 정의

-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3) 허가 대상 축산업 등

(가) 허가 대상 축산업

-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축산업중에서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 등

처리업 및 3.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축산업 중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

- 「축산법」 시행령은 13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가축 종류 및 사육업의 면적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허가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가축 종류는 소·돼지·닭 및 오리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전에는 소·돼지·닭 및 오리 별로 나누어 사육시설면적을 정하고 있으나, 2016년 2월 23일 이후에는 소·돼지·닭 및 오리 모두에 적용되는 사육시설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비해 허가 대상이 되는 사육시설의 면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다.

허가 대상 축산업의 유형

유형	비고
1) 종축업 가) 종돈업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 종축업은 돼지, 닭, 오리와 관련 * 소의 종축업은 없음
2) 부화업	부화업은 닭, 오리와 관련
3) 정액등처리업	소, 돼지와만 관련
4) 소정의 (시기별로 다른 사육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나) 돼지 사육업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및 오리와 관련되어 있음

(다) 허가 대상 변경사항

-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4) 축산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

- 법 제22조 제2항은 축산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
 - * 「축산법」 제2조 8의2호: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음(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전 별표 1 개정)

○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상기 2호와 3호에 규정된 매몰지와 축사 장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없으며 2019년 10월 10일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령(이하 “10. 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이라 함) 제3조와 제14조 제2항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호 가목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10. 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제3조는 「축산법」 제2조 8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호 나에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제14조 제2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 확보 및 축사·장비 등의 설치·구비에 관한 기준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그 밖에 축산업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1호 가. 및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축사 부지 내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매몰기준에 부합하는 매몰지를 확보하도록 함(10. 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1호가목 신설)

-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10. 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 허가 제한하는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10. 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등록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업을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사육업'으로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축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 「축산법」의 관련 규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나)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의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9)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등에 따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가축의 재사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별기준>

가.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장비 등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5조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	법 제25조제1항 제6호	영업의 전부정지	허가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8호	허가 취소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9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 「축산법」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1호와 제4호 외에도 제2호, 제5호 또는 8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시행령에서 취소하도록 한 입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결국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3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4가지 위반행위이다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10호: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 소관 법률인 「가축분뇨법」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축산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지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그러한 사유들 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있다.

○ 또한 「축산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 「축산법」 시행령의 영업정지의 규정이 「축산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소하여 반영하고 있는 바, 「축산법」과 그 시행령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3),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의 전부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의 전부 6개월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축사·장비 또는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9)시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의 전부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6)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7)에는 모두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위반 중에서 별표 2 제2호가목6와 별표 2 제2호가목7의 경우를 가장 엄격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1회 위반시의 경우에 한해 영업 전부 3개월 정지에 같음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2회 위반시에는 무조건 영업취소를 하여야 한다.

- 반면에 별표 2 제2호가목 3호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을 하더라도 영업취소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3회 위반 시까지는 영업정지에 같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2회 위반시까지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3회 위반시에는 영업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 제25조의2 제4항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이다.

(2) 「축산법」 과징금 관련 규정

- 「축산법」은 2019년 8월 27일 과징금 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항이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이에 따라 그 시행 앞에 앞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축산법」>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축산법」 제25조의2 제1항은 축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제25조제1항의 3호부터 10호의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지만,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축산법」 제25조의2 제4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 개정안 별표 2에 의하면 4가지 사유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횟수별 영업정지 기간 등 처분기준이 다르다.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4가지 사유들 중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 모두에 대해 매출액과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축업, 부화업 및 정액등처리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사유별 영업정지 기간 등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을 할 것인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이상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균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과징금 처분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본문 규정 마련

1) 개요

- 이 장의 1. 과징금 제도 일반론에서 살펴보았지만, 「축산법」 시행령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고려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법률의 시행령에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여러 법 시행령의 과징금 규정은 시행령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있고 상이한 내용도 있다. 아래에서는 「축산법」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 시행령의 과징금 규정은 시행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축산법」의 경우에는 벌금과 과징금의 중복 부과 규정은 없다.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위반행위, 위반횟수등을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로 규정하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2) 시행령 본문의 규정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한다는 조항 → 필수
-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가? → 긍정적으로 검토
- 가중 사유를 두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 상한을 정할 것인가? → 긍정적으로 검토
- 과징금의 부과 납부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통지 → 필수
-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일내에 납부하도록 할 것인가? (천재 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7일 이내 납부 요구→ 필수)
- 수납기관의 영수증 발급 및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권자에 통보 → 필수
- 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영수증 서식에 관한 규정 → 필수 (시행령 보다는 시행규칙에 별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음)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인정 여부 → 통상적으로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는 바, 「축산법」에는 납부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긍정적으로 검토
-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 → 「축산법」 제25조의2 제2항은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은 불필요함.

○ 「축산법」 시행령 본문 예시>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축산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1과 같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영업정지 기간 및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상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시행령 본문에 포함되는 과징금 관련 조항들이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규정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징금의 독촉’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항의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유사하다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축산관련 법과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제15조의4(과징금의 독촉) 시·도지사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축산법」시행령의 과징금에 관한 별표 규정 마련 시의 고려사항

1) 「축산법」 시행령의 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별표와 과징금 관련 별표의 관계

(가) 개요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위반행위, 위반횟수등을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로 규정하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일반기준은 영업정지 사유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개별기준은 법률에 따른 처분사유를 규정하되, 유사 법령 및 같은 법령 내의 유사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정도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설정한다.

(나)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의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과 과징금 관련 별표의 관계

- 「축산법」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10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에 관한 별표는 과징금의 부과와 연계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즉, 10.10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유별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축산법」 제25조의2 제4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업정지 또는 취소 사유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대상 및 과징금의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사육규모·매출액 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
- 그러나, 영업정지기준에 관한 별표와 과징금에 관한 별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

우는 어떤 법령의 시행령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새로운 과징금 입법모델로서 과징금 관련 별표를 별표 2와 연계시켜 작성하려면 매우 다양한 세부 기준을 조합시켜야 하므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매우 정직한 분석이 필요하다.

-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령은 영업정지기간 및 취소는 위반행위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영업취소를 하기 전이 영업정지 기간도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제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축산법」 제25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든 종축업자, 부화업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자로 설정할 것인가 또는 일정한 매출액 또는 사육규모를 가진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제25조의2 제1항은 1억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령은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별 영업정지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이를 무시하고 매출액·사육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도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과징금액의 산정시에 영업정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또는 사육규모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의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 아래는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의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이다. 과징금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의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이므로 등록취소 및 그와 관련된 영업정지 기준은 이 보고서의 검토대상이 아니다.

○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의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 1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9)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등에 따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가축의 재사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영업의 전부정 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 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 지 6개월
4)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사육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5조 제1항제4호	허가 취소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법 제25조 제1항제5호	허가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허가 취소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9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 생략 -

- 「축산법」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1호와 제4호 외에도 제2호, 제5호 또는 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3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4가지 사유이다. 또한 「축산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 「축산법」 시행령의 영업정지의 규정이 「축산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소하여 반영하고 있는 바, 「축산법」과 그 시행령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3),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의 전부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의 전부 6개월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축사·장비 또는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9)시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의 전부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6)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안 별표 2 제2호가목7)에는 모두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의 전부 1개월 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에서 명확히 처분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 * 10호: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지만 전혀 다루고 있지 아니한 제10호는 일단 영업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보고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따라서 10.10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위반 중에서 별표 2 제2호가목6와 별표 2 제2호가목7의 경우를 가장 엄격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1회 위반시의 경우

에 한하여 영업 전부 3개월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2회 위반시에는 무조건 영업취소를 하여야 한다.

- 반면에 별표 2 제2호가목 3호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을 하더라도 영업취소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3회 위반 시까지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2회 위반시까지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3회 위반시에는 영업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 고려 사항

- 「축산법」 제25조의2 제4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육규모와 매출액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별표의 개별 규정에서 과징금의 금액 기준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의 과징금에 관한 별표에서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과징금 산정방법)으로 구분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누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축산법」은 과징금의 한도를 1억으로 설정하고 있고 10.10.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위반사유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은 과징금 1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 4천만원, 영업정지 6개월은 과징금 1억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허가 대상 축산업 중에서 과징금 부과가능한 것을 어떠한 업종인가, 그러한 업종들에 대한 수익을 고려한 영업정지 기간별 매출액 또는 사육규모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 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증
-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
-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증

* 아래에서는 가축사육업중 산란계와 육계는 구분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축산업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과 사육규모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것인가, 사육규모 또는 매출액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이 더 합리적인 이유는 사육규모가 특정한 연도 내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하려면 연평균 사육규모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종축업과 부화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하였다.

< '별표 2-1 과징금의 부과' 입법안 제시 >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 종사자중에서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 별로 1개월, 3개월 및 6개월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연간 매출액이 제2호 각목에서 정한 10등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영업의 전부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한다.
- 다. 영업정지 기간별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축업 및 부화업 종사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연간 평균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제2호 각목에 따라 산출한다.
- 라. 연간 매출액과 연간 사육규모는 각각 해당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 및 평균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마.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종축업

- 1) 종돈업
- 2) 종계업
- 3) 종오리업

나. 부화업

- 1) 닭 부화업
- 2) 오리 부화업

다. 가축사육업

-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 가) 한우 사육업
 - 나) 젖소 사육업
- 2) 돼지 사육업
- 3) 닭·오리 사육업
 - 가) 닭 사육업
 - (1) 산란계
 - (2) 육계 사육업
 - 나) 오리 사육업

<참고 사항>

○ 이 보고서에서 별첨한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⁹⁾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두당 또는 수당 순수익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육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육업의 순수익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 물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정확하게 연관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9)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통계청의 축산관련 자료에는 정액등처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다. 또한, 젖소 사육업 등 일부 축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축산업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 축산계열화법과 같이 과징금 금액의 가산 및 감경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관련 법률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누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가산>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산정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과징금액의 감경>

- 법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 법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법 준수 노력,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 감경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비율이 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5)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방안 분석

1) 개 요 (제1안 및 제2안)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과징금 금액 산출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1안은 개별적인 축산업종에 대해 순수익을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익률을 고려하고, 시행령 별표 2의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처분 기간인 1개월, 3개월, 6개월 등에 얻을 수 있는 수익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였다. 수익률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설치된 축사 등의 시설의 감가상각이나 가축의 소득창출 가능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에 대한 산출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를 통하여 매출액, 비용과 순수익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1안은 과징금 최대한도가 1억이고 영업정지 최대기간이 6개월임으로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 또는 사육규모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구간의 설정도 순수익 금액에 상당한 정도로 비례하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구간에 관한 등급간에도 매출액이나 사육규모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려면 영업정지로 인해 입는 영업손실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지만 개개의 축산업종의 연도별 수익성이 크게 다르고 사육규모별로도 수익성이 크게 다른 경우도 있어 이 보고서에서 산출한 과징금의 부과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제1안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 영업정지 기간인 6개 이내에 과징금 최대한도 1억을 초과하여 순수익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징금의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누적 부과는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였다. 과징금 금액을 순수익보다 다소 높게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누적하여 적용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이다.

제2안은 제1안과는 달리 별표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과 연계하지 않고 당해 축산업의 수익률이 아닌 소득률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1일 단위로 설정하였다. 제2안은 매출액 또는 사육규모의 업체 분포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구간에 관한 등급간에도 매출액이나 사육규모의 증가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고 등급은 매출액이나 사육규모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면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동일한 과징금 금액이 부과되는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업체간의 매출액이나 사육규모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사실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업체중에

서 매출액이나 사육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제도의 적용으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제1안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의미하지만¹⁰⁾ 소득률은 매출액 대비 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득률과 수익률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2) 제1안

축산업자 중에서 종축업, 부화업, 및 정액등 처리업을 하는 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아닌 영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종축업

현재 종축업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86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종돈업, 종계업 및 종오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각각 175개 업체, 555개 및 131개 업체이다.

가) 종돈업

종돈업체 175개 업체 중 허가만 받고 종돈 두수가 0인 4개 업체를 제외하면 최저 11두 부터 28,914두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어 업체별 종돈규모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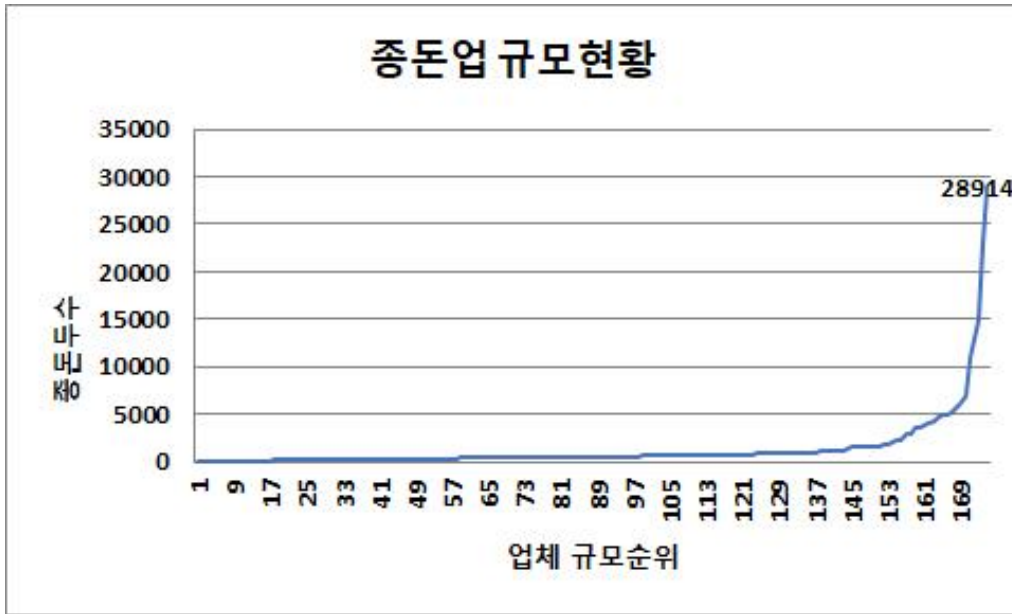
<표 23> 종돈업체의 보유종돈 규모 분포

종돈규모(두)	150 미만	150~299	300~449	450~599	600~749	750~899
종돈업체(수)	20	24	37	16	22	8
종돈규모(두)	900~ 1,049	1,050~ 1,199	1,200~ 1,349	1,350~ 1,499	1,500~ 1,649	1,650~ 1,799
종돈업체(수)	10	3	3	0	6	2
종돈규모(두)	1,800 ~ 1,999	2,000~ 2,999	3,000~ 4,999	5,000~ 9,999	10,000~ 14,999	15,000 이상*
종돈업체(수)	2	5	7	6	3	3

* 15,000두, 23,000두 28,924두 사육업체가 각각 1개

10) 기업이 일정한 영업 기간에 올린 이익이 기업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수량, 특히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대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이익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매출액 수익률, 자산에 대한 비율이 자산 수익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수익률 (일경제, 매경닷컴)

<그림 1> 종돈업 규모순위별 종돈수의 현황



<표 24> 모돈 두당 연간 총수입, 비용합계 및 순이익 분석 (출처: 종돈협회 제공 자료)

단위 : 원

구분	GGP(모돈 두당)	GP(모돈 두당)
연간 총수입(A)	8,296,299	7,894,866
연간 비용합계(B)	6,866,850	6,401,300
연간 순이익(A-B)	1,429,450	1,493,565
1일 순이익	3916.39(약 4,000)	4091.6(약 4,000)
연간 수익률 [(A-B)/B]	17%	18%
연간 2억 순이익 매출 (모돈 두수)	1,176,470,588 (141.8두)	1,111,111,111 (140.7두)

* 총수입 = 비육돈두당 총수입평균(371,698) × MSY(MSY는 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 18두 + 매출 상승비율

* 비용합계 = 비육돈두당 비용합계평균(323,298) × MSY 18두 × 비용상승비율

* 종돈장 별 판매두수 및 판매형태에 따라 변화가 많음

○ 종돈업 과징금 부과 관련 분석

- 모든 두당 수익은 GGP와 GP 사이에 위와 같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GGP와 GP의 모든 두당 연간매출액은 약 8,000,000원이며, 모든 두당 연수익은 평균 약 1,460,000원이며, 따라서 모든 두당 일수익은 약 4,000원이다.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금액은 연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종돈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연간 순수익 2억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모든 규모)은 대략적으로 1,150,000,000원이며 종돈업체 175개 중 20개 업체 미만이어도 그 범주 내에 있다. 따라서 전체 종돈업체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150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한편, 종돈업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종돈업장의 종돈 규모는 0두부터 28,914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돈 규모구간을 나누어 과징금을 부과하되, 30,000두를 상한으로 하여 30,000두에 대해 6개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설정을 하는 방안은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무력화하게 된다.

○ 연 매출액이 약 “1,200,000,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25> 종돈 과징금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연간 매출액	보유 두수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80,000 미만 (10두 미만)	40,000	5두	4	600	1,800	3,600	600	1,800	3,600
2	800,000 이상 160,000 미만	120,000	15두	4	1,800	5,400	10,800	1,800	5,400	10,800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연간 매출액	보유 두수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0두 이상 20두 미만)									
3	160,000 이상 240,000 미만 (20두 이상 30두 미만)	200,000	25두	4	3,000	9,000	18,000	3,000	9,000	18,000
4	240,000 이상 320,000 미만 (30두 이상 40두 미만)	280,000	35두	4	4,200	12,600	25,200	4,200	12,600	25,200
5	320,000 이상 400,000 미만 (40두 이상 50두 미만)	360,000	45두	4	5,400	16,200	32,400	5,400	16,200	32,400
6	400,000 이상 480,000 미만 (50두 이상 60두 미만)	440,000	55두	4	6,600	19,800	39,600	6,600	19,800	49,600
7	480,000 이상 560,000 미만 (60두 이상 70두 미만)	520,000	65두	4	7,800	23,400	46,800	7,800	24,000	4,000
8	560,000 이상 640,000 미만 (70두 이상 80 두 미만)	600,000	75두	4	9,000	27,000	54,000	9,000	27,000	54,000
9	640,000 이상 720,000 미만 (80두 이상 90두 미만)	680,000	85두	4	10,200	30,600	61,200	10,200	31,600	612,0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연간 매출액	보유 두수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0	720,000 이상 800,000 미만 (90두 이상 100두 미만)	760,000	95두	4	11,400	34,200	68,400	11,400	34,200	68,400
11	800,000 이상 880,000 미만 (100두 이상 110두 미만)	840,000	105두	4	12,600	37,800	75,600	12,600	37,800	75,600
12	880,000 이상 960,000 미만 (110두 이상 120두 미만)	920,000	115두	4	13,800	41,400	82,800	13,800	41,400	82,800
13	960,000 이상 1,040,000 미만 (120두 이상 130두 미만)	1,000,000	125두	4	15,000	45,000	90,000	15,000	45,000	90,000
14	1,040,000 이상 1,120,000 미만 (130두 이상 140두 미만)	1,080,000	135두	4	16,200	48,600	97,200	17,000	48,000	100,000
참고	1,120,000 이상 1,200,000 미만 (140두 이상 150두 미만)	1,160,000	145두	4	17,400	52,200	104,400	17,400	52,200	104,000

* 1두당 연간매출액: 약 8,000,000원

** 최고 등급인 14등급에서만 과징금 금액을 약간 증액하여 6개월 과징금 금액이 1억이 되도록 하였음

나) 종계업 및 종오리업

① 종계업

- 종계업의 경우 종계업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종계수 0) 업체를 제외하면, 555개 업체별로 400수에서 220,000수까지 그 규모가 크게 다르다.

<그림 2> 종계업 규모순위별 종계수 현황



[육용종계]

- * 육종육계 10,000수 기준으로 종란 낱품은 1수당 162개
- * 종란 1개당 생산비 220원, 낱품단가 280원, 농가수입 60원 (순수익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함)

<육종육계 10,000수를 사육하는 경우>

- 연간매출액: 162개×280원(낱품단가)×10,000수= 453,600,000원
- 연간조수익: 162개×60원×10,000수= 97,200,000원
- 연간순수익: 97,200,000원× 0.7= 68,040,000원
- * 1수당 연간순수익= 6,804원 (농장별로 다르지만 농가별 평균 순수익은 조수익의 70% 수준)

<표 26> 육계 1수당 연간매출액과 순수익

단위 : 원

구분	육종육계	산란종계	토종종계	평균
1수 연간매출액	45,360	90,000	66,240	67,200
1수 연간조수익	9,720	18,000	9,240	12,320
1수 연간순수익	6,804	12,600	6,468	8,624
1일 순수익	18.6	34.5	17.7	23.6

- 1수당 순수익과 1수당 연간매출액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24원 및 70,000원으로 계산한다.

[산란종계]

○ 산란종계 1수 당 병아리 90수 생산하고 수당 1,000원(원가는 750 내지 800원이며 여기에서는 800원으로 계산함)에 판매하고 농가별 평균 순수익은 조수익의 70% 수준이다.

<산란종계 10,000수를 사육하는 경우>

- 연간매출액: 90수(병아리)×10,000수×1,000원(병아리판매가격 기준)= 900,000,000원
- 연간 조수익: 90수(병아리)×10,000수×200원= 180,000,000원
- 연간순수익(조수익에서 원가 감액한 금액): 180,000,000원×0.7= 126,000,000원
- * 1수당 연간순수익= 12,600원 (병아리 시세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할 때에는 수익은 거의 없음)

[토종종계]

○ 토종종계 10,000수 기준 1수 당 병아리 120수를 생산하고 병아리 1수당 평균시세 552원(병아리 수당 평균 생산비용 원가는 475원)에 판매하고 농가별 평균 순수익은 조수익의 70% 수준이다.

<토종종계 10,000수를 사육하는 경우>

- 연간매출액: 종란 120개×10,000수×552원= 662,400,000원
- 연간 조수익: 종란 120개×10,000수×77원(552원-475원)= 92,400,000원
- 연간순수익(조수익에서 원가 감액한 금액): 92,400,000원×0.7= 64,680,000원

* 1수당 순수익: 6,468원

○ 종계업 과징금 부과 분석

- 종계업의 경우 육용 종계, 산란 종계, 및 토종 종계의 10,000수당 매출액과 연간 순수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징금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종계를 구분하여야 하겠지만, 현행 축산법상 그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 3가지 종계들의 1수당 연 매출액 평균은 672,000원이고 1수당 1일 순수익 평균은 23.6원이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700,000원과 24원으로 설정하였다.
 -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금액은 연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종계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연간 순수익 2억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1,750,000,000원이며 사육규모는 약 25,000수이다. 상기 그림 5 종계업 규모순 위별 종계수 현황에 의하면 50%이상의 종계업자들이 25,00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현재 종계업 최대 사육규모는 220,000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220,000수를 상한으로 하여 220,000수에 대해 6개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설정을 하는 방안은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무력화하게 된다.
- 연 매출액이 1,750,000,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27> 종계 과징금 부과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은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210,000 (약 3,000수) 미만	15,000수	0.024	1,080	3,240	6,480	1,080	3,240	6,480
2	210,000 이상 350,000 미만 (3,000수 이상 5,000수 미만)	4,000수	0.024	2,880	8,640	17,280	2,880	8,640	17,280
3	350,000 이상 490,000 미만 (5,000수 이상 7,000두 미만)	6,000수	0.024	4,320	12,960	25,920	4,320	12,960	25,920
4	490,000 이상 630,000 미만 (7,000수 이상 9,000수 미만)	8,000수	0.024	5,760	17,280	34,560	5,760	17,280	34,560
5	630,000 이상 770, 000 미만 (9,000수 이상 11,000수 미만)	10,000수	0.024	7,200	21,600	43,200	7,200	21,600	43,200
6	770,000 이상 910,000 미만 (11,000수 이상 13,000수 미만)	12,000수	0.024	8,640	25,920	51,840	8,640	25,920	51,840
7	910,000 이상 1,050,000 미만 (13,000수 이상 15,000수 미만)	14,000수	0.024	10,080	30,240	60,480	10,080	30,240	60,480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8	1,050,000 이상 1,190,000 미만 (15,000수 이상 17,000수 미만)	16,000수	0.024	11,520	34,560	69,120	11,520	34,560	69,120
9	1,190,000 이상 1,330,000 미만 (17,000수 이상 19,000수 미만)	18,000수	0.024	12,960	38,880	77,760	12,960	38,880	77,760
10	1,330,000이상 1,470,000 미만 (19,000수 이상 21,000수 미만)	20,000수	0.024	14,400	43,200	86,400	14,400	43,200	86,400
11	1,470,000 이상 1,610,000 미만 (21,000수 이상 23,000수 미만)	22,000수	0.024	15,840	47,520	95,040	15,840	47,520	95,040
12	1,610,000 이상 1,750,000 미만 (23,000수 이상 25,000수 미만)	24,000수	0.024	17,280	51,840	103,680	17,280	51,840	100,000

* 1수당 연간매출액은 700,000원

② 종오리업

종오리업체 중에서 영업을 사실상 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하면 131개 업체별 규모는 최저 1,260수에서 최대 80,400수에 걸쳐 있다.

<그림 3> 종오리업 규모순위별 종오리수 현황



<7,935수 종오리 사육기준>

종오리 1수당 연간 매출액= 127,280원

종오리 1수당 연간 비용= 74,880원

10,000원 (종오리 1수당 기본비용: 종오리대금 8,000원, 회비 1,000원 및 자조금 1,000원)
 + 102kg(연간 사료섭취량)×530원(평균 사료단가)×9523수(수컷포함 평균마리수)=7935수
 (암컷 마리수)= 74,880원

종오리 1수당 연간 조수익 = 52,400원

종오리 1수당 연간 순수익 = 36,680원

* 받은 통계자료에서는 순수익 산출 기준이 없어서 닭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순수익률을 조수익의 70% 기준으로 함)

○ 종오리업 과징금 부과 분석

-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수당 연간매출액을 약 130,000원, 연간 기준 순수익을 36,000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1수당 1일 순수익은 약 100원이다.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금액은 연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종오리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연간 순수익 2억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780,000,000원이며 사육규모는 약 6,000수이다.
 - 상기 그림 6 종오리업 규모순위별 종계수 현황에 의하면 종오리업체중에서 불과 하위 30% 정도가 약 6,000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6,000수를 초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까지 포함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한다면 부당한 혜택을 입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연 매출액이 약 780,000,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28> 종오리업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오리 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65,000 미만 (500수 미만)	250수	0.1	750	2,250	4,500	750	2,250	4,500
2	65,000 이상 130,000 미만 (500수 이상 1,000수 미만)	750수	0.1	2,250	6,750	13,500	2,250	6,750	13,500
3	130,000 이상 195,000 미만 (1,000수 이상 1,500수 미만)	1,250수	0.1	3,750	11,250	22,500	3,750	11,250	22,5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오리 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4	195,000 이상 260,000 미만 (1,500수 이상 2,000수 미만)	1,750수	0.1	5,250	15,750	31,500	5,250	15,750	31,500
5	260,000 이상 325,000 미만 (2,000수 이상 2,500수 미만)	2,250수	0.1	6,750	20,250	40,500	6,750	20,250	40,500
6	325,000 이상 390,000 미만 (2,500수 이상 3,000수 미만)	2,750수	0.1	8,250	24,750	49,500	8,250	24,750	49,500
7	390,000 이상 455,000 미만 (3,000수 이상 3,500수 미만)	3,250수	0.1	9,750	29,250	58,500	9,750	29,250	58,500
8	455,000 이상 520,000 미만 (3,500수 이상 4,000수 미만)	3,750수	0.1	11,250	33,750	67,500	11,250	33,750	67,500
9	520,000 이상 585,000 미만 (4,000수 이상 4,500수 미만)	4,250수	0.1	12,750	38,250	76,500	12,750	38,250	76,500
10	585,000 이상 650,000 미만 (4,500수 이상 5,000수 미만)	4,750수	0.1	14,250	42,750	85,500	14,250	42,750	85,500
11	650,000이상 715,000미만 (5,000수 이상 5,500수 미만)	5,250수	0.01	15,750	47,250	94,500	15,750	47,250	94,500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오리 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2	715,000 이상 780,000 미만 (5,500수 이상 6,000수 미만)	5,750수	0.01	17,250	51,750	103,500	17,250	51,750	100,000

* 1수당 연간매출액: 약 130,000원

(나) 부화업

가) 닭 부화업

- 병아리 10,000수 사육기준, 병아리 1수 평균 시세 495원, 병아리 1수 생산비 450원 (따라서 1마리 당 조수익 45원)
 - 10,000개의 종란이 부화기에 입란할 경우 약 75% (7,500수)의 병아리가 발생
 - 10,000개(종란)×75%×450원(병아리생산비) = 3,375천원(1회 입란 기준이며 통상 월 8회 입란)
 - 육용계 1,000개 종란 부화의 경우의 연간 1수당 순수익
 - 연간 매출액: 10,000개(종란)×75%×495원(병아리생산비)×8회(월간 입란횟수)× 12개월 = 356,400,000원
 - 연간 조수익: 10,000개(종란)×75%×45원×8회(월간입란횟수)×12개월 = 32,400,000원
 - 연간 순수익: 22,680,000원 (32,400,000원 ×0.7)
 - 1수당 연간 순수익: 2,268원
 - 1수당 1일 순수익: 약 6원
- * 장기간 병아리가격 하락으로 2019년에는 부화장은 이익은 없거나 적자

○ 닭 부화업 과징금 부과 분석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금액은 연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닭 부화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수당 연간매출액을 약 35,000원, 1수당 연간 순수익을 6원으로 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순수익 2억 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약 3,150,000,000원이며 사육규모는 약 100,000수이다.

○ 연매출액 3,1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

<표 29> 부화업(닭)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총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350,000 미만 (10,000수 미만)	5,000	0.006	900	2,700	5,400	900	2,700	5,400
2	350,000 이상 700,000 미만 (10,000수 이상 20,000수 미만)	15,000	0.006	2,700	8,100	16,200	2,700	8,100	16,200
3	700,000 이상 1,050,000 미만 (20,000수 이상 30,000수 미만)	25,000	0.006	4,500	13,500	27,000	4,500	13,500	27,000
4	1,050,000 이상 1,400,000 미만 (30,000수 이상 40,000수 미만)	35,000	0.006	6,300	18,900	37,800	6,300	18,900	37,800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5	1,400,000 이상 1,750,000 미만 (40,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45,000	0.006	8,100	24,300	48,600	8,100	24,300	48,600
6	1,750,000 이상 2,100,000 미만 (50,000수 이상 60,000수 미만)	55,000	0.006	9,900	29,700	59,400	9,900	29,700	59,400
7	2,100,000 이상 2,450,000 미만 (60,000수 이상 70,000수 미만)	65,000	0.006	11,700	35,100	70,200	11,700	35,100	70,200
8	2,450,000 이상 2,800,000 미만 (70,000수 이상 80,000수 미만)	75,000	0.006	13,500	40,500	81,000	13,500	40,500	81,000
9	2,800,000 이상 3,150,000 미만 (80,000수 이상 90,000수 미만)	85,000	0.006	15,300	45,900	91,800	15,300	45,900	91,800
10	3,150,000 이상 3,500,000 미만 (90,000수 이상 100,000수 미만)	95,000	0.006	17,100	51,300	102,600	17,000	50,000	100,000

* 1수당 연매출액: 약 35,000원

나) 오리 부화업

○ 7,935수 오리의 사육기준

- 1수당 연간 매출액: $1\text{수} \times 296\text{개} \times 0.75(\text{연평균 부화율}) \times 1,167\text{원}(2018\text{년도 새끼오리 평균가격}) = \underline{259,074\text{원}}$

- 1수당 연간 비용 = $296\text{개} \times 430\text{원}(\text{종란대금 지급}) + 296\text{개} \times 150\text{원}(\text{부화 및 운송비}) = \underline{171,680\text{원}}$

* 비용 중에서 인건비, 약품비, 수도광열비 등 추가 지출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

- 1수당 연간 조수익 = $259,074\text{원} - 171,680\text{원} = \underline{87,394\text{원}}$

- 1수당 연간 순수익 = $87,394\text{원} \times 0.5 = \underline{43,697\text{원}}$

* 제출받은 통계자료에서는 순수익 산출 기준이 없어서 닭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순수익률을 조수익의 70% 기준으로 하되, 수도광열비와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50%로 산정함)

○ 오리 부화업 과징금 부과 분석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연 1억 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오리 부화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수당 연간 매출액을 260,000원, 1수당 1일 순수익을 120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면 연간 순수익 2억 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약 1,300,000,000원이며 사육규모는 약 5,000수이다.

○ 연매출액 1,300,000,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30> 부화업(오리)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종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130,000 미만 (500수 미만)	250	0.12	900	2,700	5,400	900	2,700	5,400
2	130,000 이상 260,000 미만 (500수 이상 1,000수 미만)	750	0.12	2,700	8,100	16,200	2,700	8,100	16,200
3	260,000 이상 390,000 미만 (1,000수 이상 1,500수 미만)	1,250	0.12	4,500	13,500	27,000	4,500	13,500	27,000
4	390,000 이상 520,000 미만 (1,500수 이상 2,000수 미만)	1,750	0.12	6,300	18,900	37,800	6,300	18,900	37,800
5	520,000 이상 650,000 미만 (2,000수 이상 2,500수 미만)	2,250	0.12	8,100	24,300	48,600	8,100	24,300	48,600
6	650,000 이상 780,000 미만 (2,500수 이상 3,000수 미만)	2,750	0.12	9,900	29,700	59,400	9,900	29,700	59,400
7	780,000 이상 910,000 미만 (3,000수 이상 3,500수 미만)	3,250	0.12	11,700	35,100	70,200	11,700	35,100	70,2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연간매출액 (사육규모)	구간 중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8	910,000 이상 1,040,000 미만 (3,500수 이상 4,000수 미만)	3,750	0.12	13,500	40,500	81,000	13,500	40,500	81,000
9	1,040,000 이상 1,170,000 미만 (4,000수 이상 4,500수 미만)	4,250	0.12	15,300	45,900	91,800	15,300	45,900	91,800
10	1,170,000 이상 1,300,000 미만 (45,00수 이상 5,000수 미만)	4,750	0.12	17,100	51,300	102,600	17,100	51,300	100,000

* 1수당 연매출액 260,000원

(다) 정액등 처리업

- 생산비 통계만 나와 있음

항목	구분	월간(천원)	1두분(원)
합계		66,087	13,217

월매출액과 수익성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가축 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젃소) 사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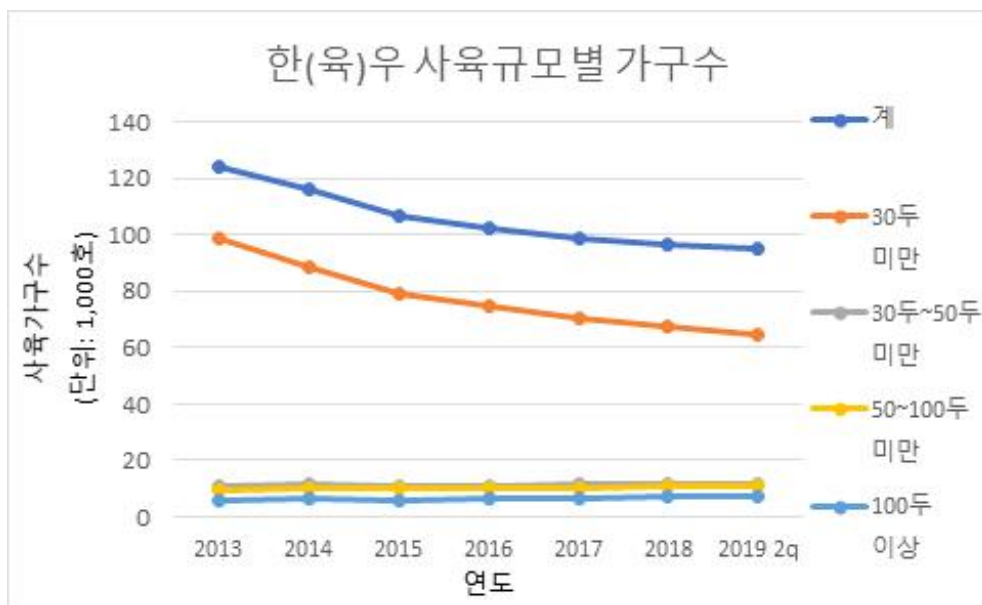
① 한우 사육업

<표 31> 한(육)우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 천호

구분	계	30두미만	30두~50두미만	50~100두미만	100두이상
2013	124.2	98.4	11	9.1	5.7
2014	116.4	88.2	11.8	10.2	6.2
2015	106.5	79.4	11.2	9.8	6.1
2016	102.2	74.7	11.2	9.9	6.4
2017	98.6	70.2	11.3	10.4	6.7
2018	96.5	67.3	11.6	10.7	6.9
2019 2q	94.8	64.6	11.7	11.1	7.3
평균	105.60	77.54	11.40	10.17	6.47

<그림 4> 한우 사육규모별 가구수



<표 32> 최근 5년동안의 한우 사육규모별 두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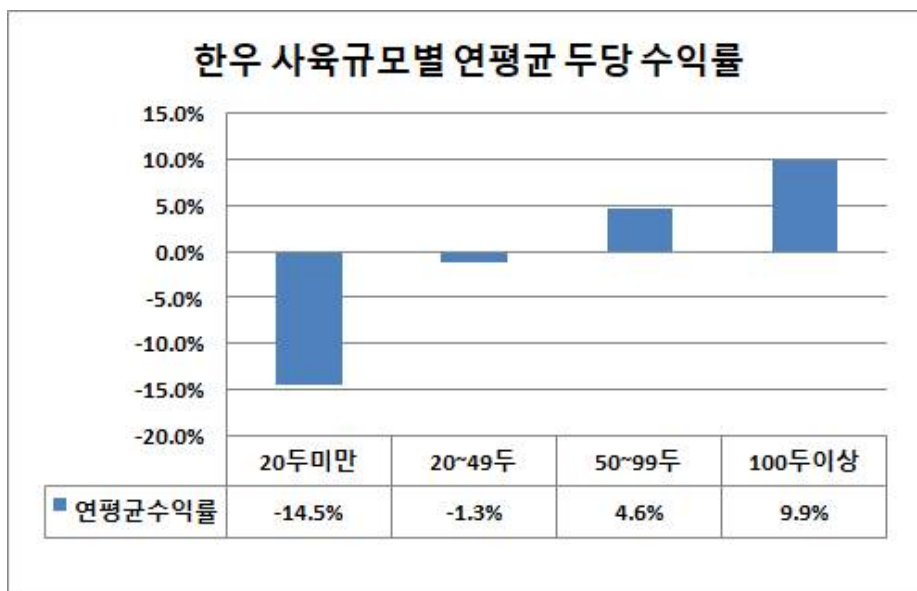
비목별	2014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6,009,285	6,408,128	6,466,471	6,551,646	6,414,444
일반비(B)	5,553,330	5,582,171	5,848,197	5,806,474	5,726,154
비용합계(C)	7,393,241	6,776,304	6,675,424	6,410,587	6,706,964
소득(A-B)	455,955	825,957	618,274	745,172	688,290
순수익(A-C)	-1,383,956	-368,176	-208,953	141,059	-292,520
비목별	2015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7,049,295	7,167,083	7,290,796	7,182,653	7,183,277
일반비(B)	5,566,373	5,763,014	5,992,493	6,013,782	5,887,215
비용합계(C)	7,327,730	7,028,246	6,851,606	6,622,375	6,867,510
소득(A-B)	1,482,922	1,404,069	1,298,303	1,168,871	1,296,062
순수익(A-C)	-278,435	138,837	439,190	560,278	315,767
비목별	2016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7,898,698	8,414,637	8,683,275	8,550,159	8,458,068
일반비(B)	6,522,841	6,294,607	6,579,827	6,548,122	6,496,396
비용합계(C)	8,478,168	7,615,765	7,417,815	7,087,639	7,469,854
소득(A-B)	1,375,857	2,120,030	2,103,448	2,002,037	1,961,672
순수익(A-C)	-579,470	798,872	1,265,460	1,462,520	988,214
비목별	2017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7,667,105	7,659,210	7,708,015	7,999,017	7,804,676
일반비(B)	6,861,864	6,668,653	6,614,199	6,531,258	6,628,866
비용합계(C)	9,184,428	8,032,970	7,435,459	7,067,850	7,671,892
소득(A-B)	805,241	990,557	1,093,816	1,467,759	1,175,810
순수익(A-C)	-1,517,323	-373,760	272,556	931,167	132,784

비목별	2018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8,015,522	8,276,431	8,410,387	8,462,568	8,349,847
일반비(B)	7,303,281	7,349,422	7,345,071	7,143,916	7,261,511
비용합계(C)	9,564,621	8,961,120	8,399,274	7,710,321	8,406,394
소득(A-B)	712,241	927,009	1,065,316	1,318,652	1,088,336
순수익(A-C)	-1,549,099	-684,689	11,113	752,247	-56,547

<표 33> 한우 사육규모별 최근 5년 평균 두당 수익현황

사육규모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7,327,981	7,585,098	7,711,789	7,749,209	7,642,062
연평균 비용(B)	8,389,638	7,682,881	7,355,916	6,979,754	7,424,523
연평균 순수익(A-B)	-1,061,657	-97,783	355,873	769,454	217,540
연평균 수익률[(A-B)/B]	-14.5%	-1.3%	4.6%	9.9%	2.8%

<그림 5> 한우 사육규모별 연평균 두당 수익률



한우 사육업은 사육규모간의 두당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두당 수익률은 20두 미만에서는 - 14.5%, 20두 이상 49두 이하에서는 - 1.3%, 50두 이상 99두 미만에서는 4.6%, 100두 이상에서는 9.9% 등 사육규모가 클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4구간에서의 두당 평균수익률은 2.8%이고 두당 평균 수익은 217,540원이지만, 20두 미만에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50두 이상만 상정하는 경우에는 두당 연평균 평균수익률은 약 7.3%이고 두당 연평균 순수익은 564,754원이다. 아래에서는 사육규모별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 한우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한우 부화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7,500,000원, 두당 1일 순수익은 순수익은 1,550원으로 설정하면, 연간 순수익 2억 원을 얻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약 2,850,000,000원이고 사육두수는 약 380두이다.

○ 사육규모 380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34> 한우 사육업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한우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50두 미만 (375,000 미만)	25두	1.55	1,163	3,488	6,975	1,163	3,488	6,975
2	50두 이상 80두 미만	65두	1.55	3,023	9,068	18,135	3,023	9,068	18,135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한우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375,000 이상 600,000미만)								
3	80두 이상 110두 미만 (600,000 이상 825,000 미만)	95두	1.55	4,418	13,253	26,505	4,418	13,253	26,505
4	110두 이상 140두 미만 (825,000 이상 (1,050,000미만)	125두	1.55	5,813	17,438	34,875	5,813	17,438	34,875
5	140두 이상 170두 미만 (1,050,000 이상 (1,275,000 미만)	155두	1.55	7,208	21,623	43,245	7,208	21,623	43,245
6	170두 이상 200두 미만 (1,275,000 이상 1,500,000 미만)	185두	0.55	8,603	25,808	51,615	8,603	25,808	51,615
7	200두 이상 230두 미만 (1,500,000 이상 1,725,000 미만)	215두	1.55	9,998	29,993	59,985	9,998	29,993	59,985
8	230두 이상 260두 미만 (1,725,000 이상 1,950,000 미만)	245두	1.55	11,393	34,178	68,355	11,393	34,178	68,355
9	260두 이상 290두 미만 (1,950,000 이상 2,175,000 미만)	275두	1.55	12,788	38,363	76,725	12,788	38,363	76,725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한우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0	290두 이상 320두 미만 (2,175,000 이상 2,400,000 미만)	305두	1.55	14,183	42,548	85,095	14,183	42,548	85,095
11	320두 이상 350두 미만 (2,400,000 이상 2,625,000 미만)	335두	0.55	15,578	46,733	93,465	15,578	46,733	93,465
12	350두 이상 380두 미만 (2,625,000 이상 2,850,000 미만)	365두	1.55	16,973	50,918	101,835	16,973	50,918	100,000

* 1두당 연간 매출액: 약 7,500,000원

② 육우 사육업

<표 35> 육우 사육규모별 두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최근 5년: 2014년부터 2018년)

비목별	2014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3,600,998	3,705,182	3,506,619	3,402,791	3,514,669
일반비(B)	3,981,975	3,856,271	3,778,649	3,755,901	3,824,408
비용합계(C)	5,389,526	4,785,709	4,444,532	4,239,868	4,606,343
소득(A-B)	-380,977	-151,089	-272,030	-353,110	-309,739
순수익(A-C)	-1,788,528	-1,080,527	-937,913	-837,077	-1,091,674
비목별	2015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제2장 현행 「측산법」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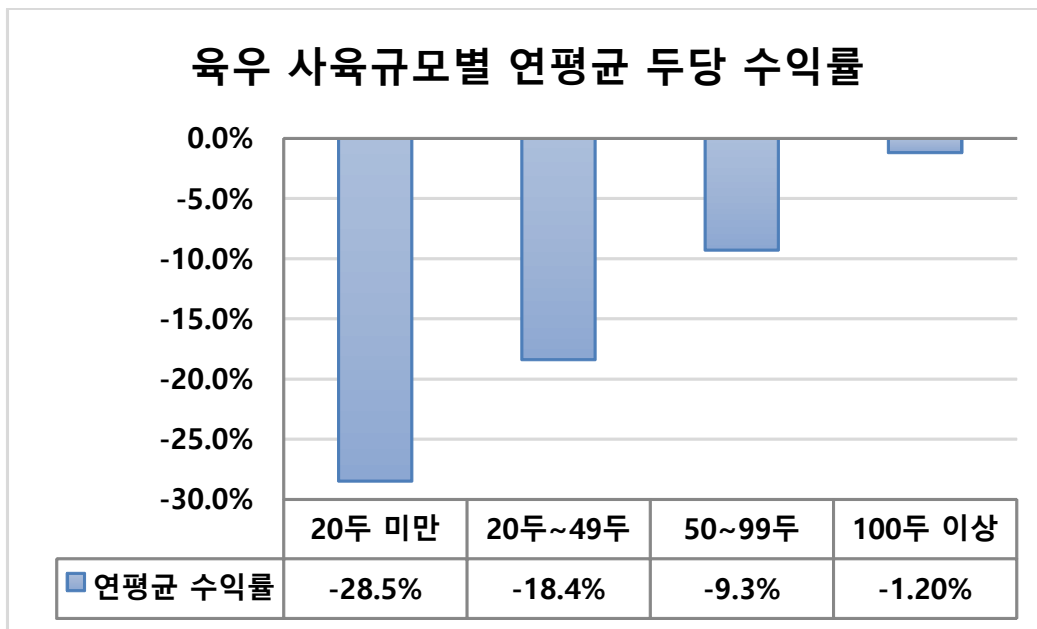
총수입(A)	4,430,109	4,266,706	4,723,232	4,266,478	4,373,999
일반비(B)	3,789,528	3,831,598	3,764,080	3,883,640	3,837,648
비용합계(C)	5,312,705	4,762,068	4,466,979	4,287,332	4,580,671
소득(A-B)	640,581	435,108	959,152	382,838	536,351
순수익(A-C)	-882,596	-495,362	256,253	-20,854	-206,672
비목별	2016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4,194,572	4,257,672	4,392,148	4,354,404	4,318,797
일반비(B)	3,909,638	3,890,850	4,124,032	3,498,562	3,736,915
비용합계(C)	5,501,849	4,997,333	4,794,321	3,889,944	4,493,296
소득(A-B)	284,934	366,822	268,116	855,842	581,882
순수익(A-C)	-1,307,277	-739,661	-402,173	464,460	-174,499
비목별	2017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4,029,225	3,868,658	3,990,336	3,687,975	3,849,811
일반비(B)	4,007,797	3,960,696	4,003,926	3,621,978	3,837,276
비용합계(C)	5,889,923	5,205,063	4,767,411	4,022,489	4,802,797
소득(A-B)	21,428	-92,038	-13,590	65,997	12,535
순수익(A-C)	-1,860,698	-1,336,405	-777,075	-334,514	-952,986
비목별	2018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4,431,021	4,268,985	4,476,801	4,620,566	4,503,384
일반비(B)	4,693,715	4,061,932	3,970,198	3,749,819	4,036,158
비용합계(C)	6,851,293	5,219,197	4,779,884	4,149,567	4,995,562
소득(A-B)	-262,694	207,053	506,603	870,747	467,226
순수익(A-C)	-2,420,272	-950,212	-303,083	470,999	-492,178

<표 36> 육우 사육규모별 최근 5년 평균 두당 수익현황

단위 : 원

사육규모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4,137,185	4,073,441	4,217,827	4,066,443	4,123,724
연평균 비용합계(B)	5,789,059	4,993,874	4,650,625	4,117,840	4,887,849
연평균 순수익(A-B)	-1,651,874	-920,433	-432,798	-51,397	-764,125
연평균 수익률 [(A-B)/B]	-28.5%	-18.4%	-9.3%	-1.2%	-14.4%

<그림 6> 육우 사육규모별 연평균 두당 수익률



○ 20두 미만, 20~49두, 550~99두, 100두 이상의 구간 등 전 구간에서 5년 동안 적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육우의 경우 과징금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 별도로 과징금 금액 산출을 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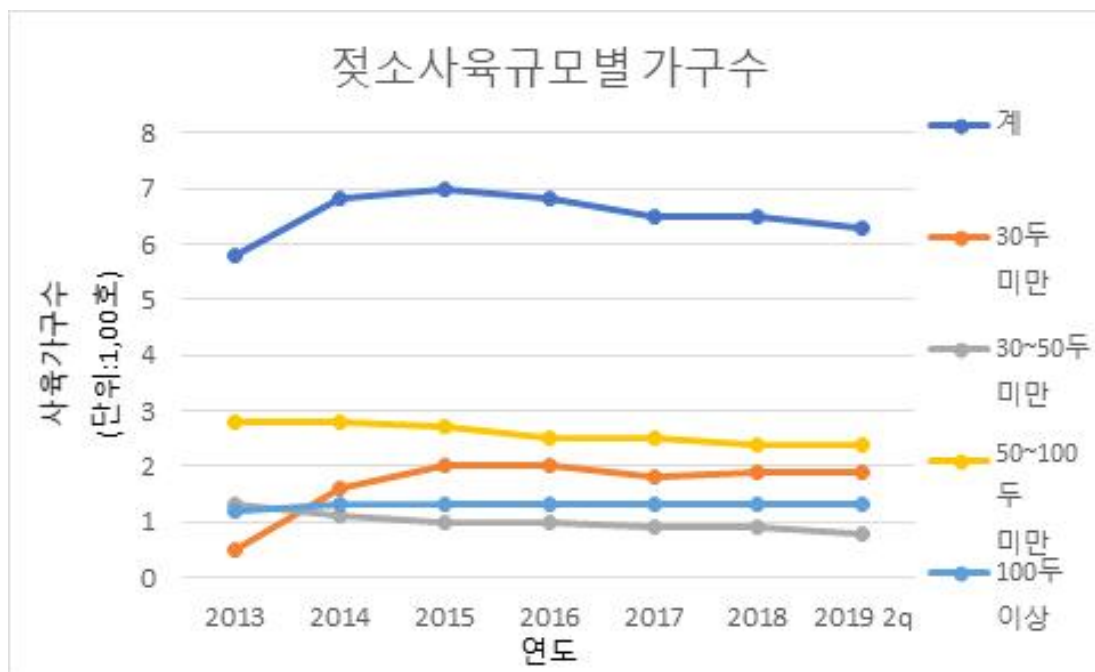
③ 젖소 사육업

<표 37>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 천호

구분	계	30두미만	30~50두미만	50~100두미만	100두이상
2013	5.8	0.5	1.3	2.8	1.2
2014	6.8	1.6	1.1	2.8	1.3
2015	7	2	1	2.7	1.3
2016	6.8	2	1	2.5	1.3
2017	6.5	1.8	0.9	2.5	1.3
2018	6.5	1.9	0.9	2.4	1.3
2019 2q	6.3	1.9	0.8	2.4	1.3
평균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그림 7>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표 38> 젖소 사육규모별 두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최근 5년: 2014년부터 2018년)

비목별	2014				
	40두미만	40~59두	60~79두	80두이상	평균
총수입(A)	8,737,260	9,454,199	9,808,581	9,973,894	9,729,867
일반비(B)	6,010,333	5,858,222	5,949,145	6,302,317	6,150,362
비용합계(C)	7,781,678	7,389,265	7,244,623	7,263,447	7,307,384
소득(A-B)	2,726,927	3,595,977	3,859,436	3,671,577	3,579,505
순수익(A-C)	955,582	2,064,934	2,563,958	2,710,447	2,422,483
비목별	2015				
	40두미만	40~59두	60~79두	80두이상	평균
총수입(A)	8,919,691	9,781,137	10,274,468	10,222,039	10,056,865
일반비(B)	5,859,632	5,725,738	5,884,192	6,311,768	6,112,944
비용합계(C)	7,536,300	7,193,676	7,248,385	7,231,388	7,248,049
소득(A-B)	3,060,059	4,055,399	4,390,276	3,910,271	3,943,921
순수익(A-C)	1,383,391	2,587,461	3,026,083	2,990,651	2,808,816
비목별	2016				
	40두미만	40~59두	60~79두	80두이상	평균
총수입(A)	9,061,369	9,828,654	10,030,658	10,242,149	10,069,238
일반비(B)	6,039,367	5,956,921	5,793,990	6,384,146	6,187,822
비용합계(C)	7,850,183	7,403,045	7,010,250	7,187,164	7,225,143
소득(A-B)	3,022,002	3,871,733	4,236,668	3,858,003	3,881,416
순수익(A-C)	1,211,186	2,425,609	3,020,408	3,054,985	2,844,095
비목별	2017				
	40두미만	40~59두	60~79두	80두이상	평균
총수입(A)	8,848,729	9,792,916	10,052,902	10,169,452	9,997,775
일반비(B)	5,807,651	6,071,286	5,797,132	6,388,819	6,188,584
비용합계(C)	7,684,293	7,524,413	6,992,046	7,216,604	7,250,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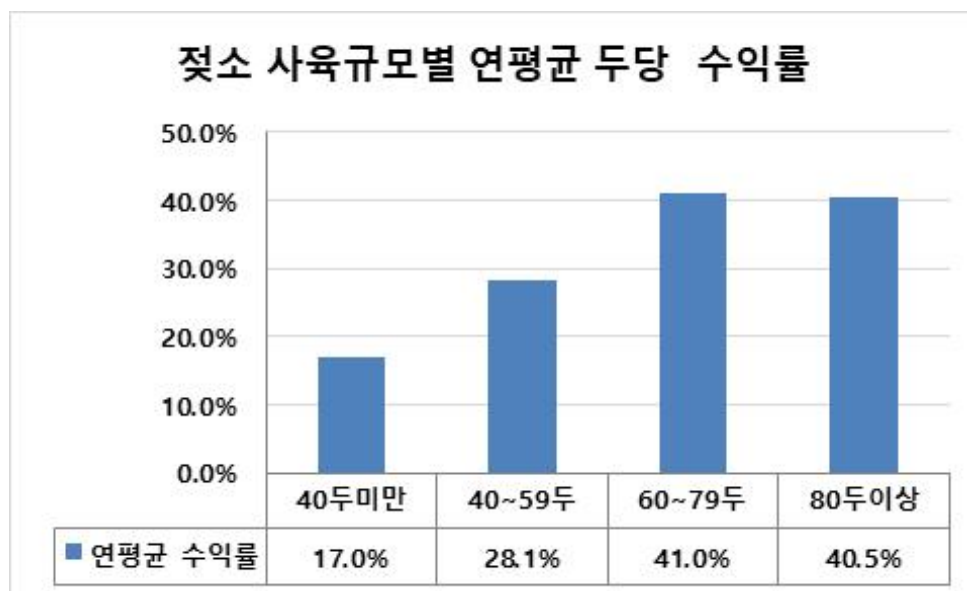
소득(A-B)	3,041,078	3,721,630	4,255,770	3,780,633	3,809,191
순수익(A-C)	1,164,436	2,268,503	3,060,856	2,952,848	2,746,798
비목별	2018				
	50두미만	50~69두	70~99두	100두이상	평균
총수입(A)	9,555,179	9,841,777	9,896,610	10,489,961	10,115,771
일반비(B)	6,348,007	6,237,556	6,246,259	6,209,164	6,240,806
비용합계(C)	8,269,198	7,663,175	7,415,358	7,015,634	7,379,570
소득(A-B)	3,207,172	3,604,221	3,650,351	4,280,797	3,874,965
순수익(A-C)	1,285,981	2,178,602	2,481,252	3,474,327	2,736,201

<표 39> 젖소 사육규모별 최근 4년 평균 두당 수익현황

단위 : 원

사육규모	40두미만	40~59두	60~79두	80두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9,024,446	9,454,199	10,041,652	10,151,884	9,668,045
연평균 비용합계(B)	7,713,114	7,377,600	7,123,826	7,224,651	7,359,798
연평균 순수익(A-B)	1,311,332	2,076,599	2,917,826	2,927,233	2,308,248
연평균 수익률	17.0%	28.1%	41.0%	40.5%	31.65 %

<그림 8> 젖소 사육규모별 연평균 두당 수익률



- 젓소의 경우에는 40두 미만, 40~59두, 60~79두, 80두 이상 전 구간에서 모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 40두 미만 구간에서는 1두당 연평균 매출액이 9,024,446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이 1,200,115원이다.
 - 40~59두 구간: 1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9,841,777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이 2,305,022원이다.
 - 60~79두 구간: 1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10,012,644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이 2,830,511원이다.
 - 80두 이상 구간: 1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10,219,499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이 3,036,652원이다.
- 여기에서 보다시피 젓소 사육업이 경우에는 사육규모에 따라 연평균 1두당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는 약 1,000,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도 사육규모가 클수록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육규모에 따른 1두당 수익률 증가를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시에 반영하려면 사육규모 별로 일정한 비례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비례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 젓소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젓소 사육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9,500,000원, 두당 연평균 순수익은 약 2,700,000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1일 평균순수익은 약 5,500원이다. 연간 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려면 약 110두를 사육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약 1,045,000,000원이다.
- 사육규모 110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40> 젖소 사육업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젖소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10두 미만 (95,000 미만)	5두	7.4	1,110	3,330	6,660	1,110	3,330	6,660
2	10두 이상 20두 미만 (95,000 이상 190,000 미만)	15두	7.4	3,330	7,425	14,850	3,330	7,425	14,850
3	20두 이상 30두 미만 (190,000 이상 285,000 미만)	25두	7.4	5,550	12,375	24,750	5,550	12,375	24,750
4	30두 이상 40두 미만 (285,000 이상 380,000 미만)	35두	7.4	7,770	17,325	34,650	7,770	17,325	34,650
5	40두 이상 50두 미만 (380,000 이상 475,000 미만)	45두	7.4	9,990	22,275	44,550	9,990	22,275	44,550
6	50두 이상 60두 미만 (475,000 이상 570,000 미만)	55두	7.4	12,210	27,225	54,450	12,210	27,225	54,450
7	60두 이상 70두 미만 (570,000 이상 665,000 미만)	65두	7.4	14,430	32,175	64,350	14,430	32,175	64,350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젓소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8	70두 이상 80두 미만 (665,000 이상 760,000 미만)	75두	7.4	16,650	37,125	74,250	16,650	37,125	74,250
9	80두 이상 90두 미만 (760,000 이상 855,000 미만)	85두	7.4	18,870	42,075	84,150	18,870	42,075	84,150
10	90두 이상 100두 미만 (855,000 이상 950,000 미만)	95두	7.4	21,090	47,025	94,050	21,090	47,025	94,050
11	100두 이상 110두 미만 (950,000 이상 1,045,000 미만)	105두	7.4	23,310	51,975	103,950	23,310	51,975	100,000

* 두당 연매출액: 약 9,500,000원

나) 돼지 사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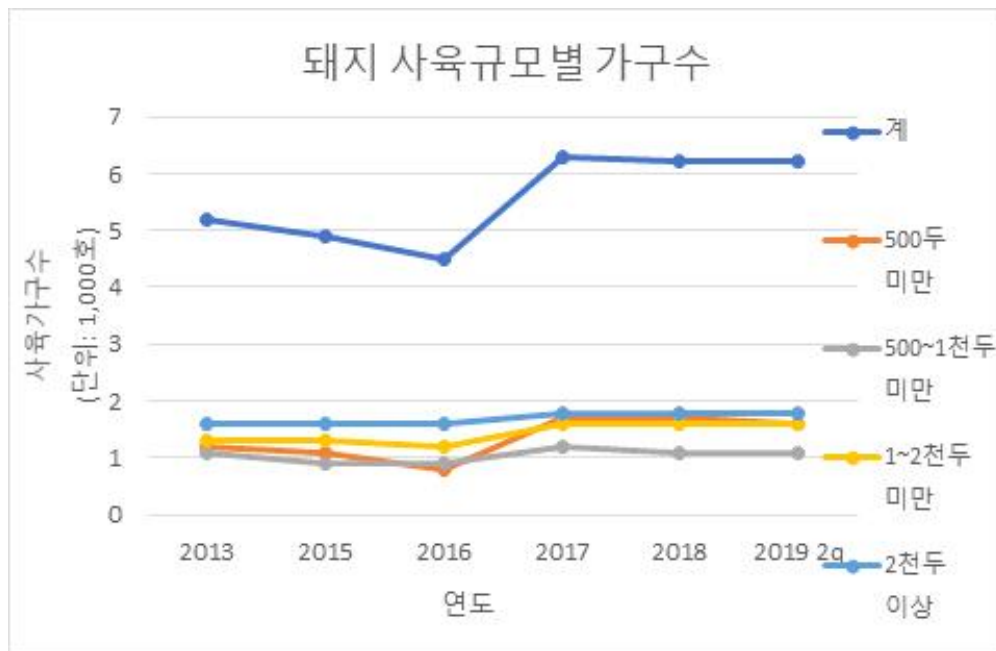
<표 41> 돼지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 천호

구분	계	500두미만	500~1천두미만	1~2천두미만	2천두이상
2013	5.2	1.2	1.1	1.3	1.6
2015	4.9	1.1	0.9	1.3	1.6
2016	4.5	0.8	0.9	1.2	1.6
2017	6.3	1.7	1.2	1.6	1.8

구분	계	500두미만	500~1천두미만	1~2천두미만	2천두이상
2018	6.2	1.7	1.1	1.6	1.8
2019 2q	6.2	1.6	1.1	1.6	1.8
평균	5.6	1.4	1.1	1.4	1.7

<그림 9> 돼지 사육규모별 가구수



<표 42> 비육돈 사육규모별 두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최근 5년: 2014년부터 2018년)

비목별	2014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397,735	391,282	397,163	400,811	398,089
일반비(B)	334,482	312,125	294,594	293,740	301,289
비용합계(C)	361,624	328,515	305,614	302,432	313,608
소득(A-B)	63,253	79,157	102,569	107,071	96,800
순수익(A-C)	36,111	62,767	91,549	98,379	84,481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비목별	2015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408,487	406,374	414,533	400,066	404,220
일반비(B)	324,881	305,275	287,385	286,718	293,658
비용합계(C)	355,424	323,013	300,088	296,252	307,077
소득(A-B)	83,606	101,099	127,148	113,348	110,562
순수익(A-C)	53,063	83,361	114,445	103,814	97,143
비목별	2016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394,242	384,362	386,526	380,085	382,972
일반비(B)	338,136	302,566	304,032	273,379	288,565
비용합계(C)	370,138	318,897	316,286	282,701	301,273
소득(A-B)	56,106	81,796	82,494	106,706	94,407
순수익(A-C)	24,104	65,465	70,240	97,384	81,699
비목별	2017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400,846	394,776	414,176	408,554	406,600
일반비(B)	361,199	325,015	324,400	291,884	307,836
비용합계(C)	396,584	342,603	336,923	301,542	321,006
소득(A-B)	39,647	69,761	89,776	116,670	98,764
순수익(A-C)	4,262	52,173	77,253	107,012	85,594
비목별	2018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총수입(A)	380,185	371,742	371,997	370,029	371,698
일반비(B)	363,035	333,075	288,416	296,672	309,075
비용합계(C)	400,021	352,928	300,570	305,998	323,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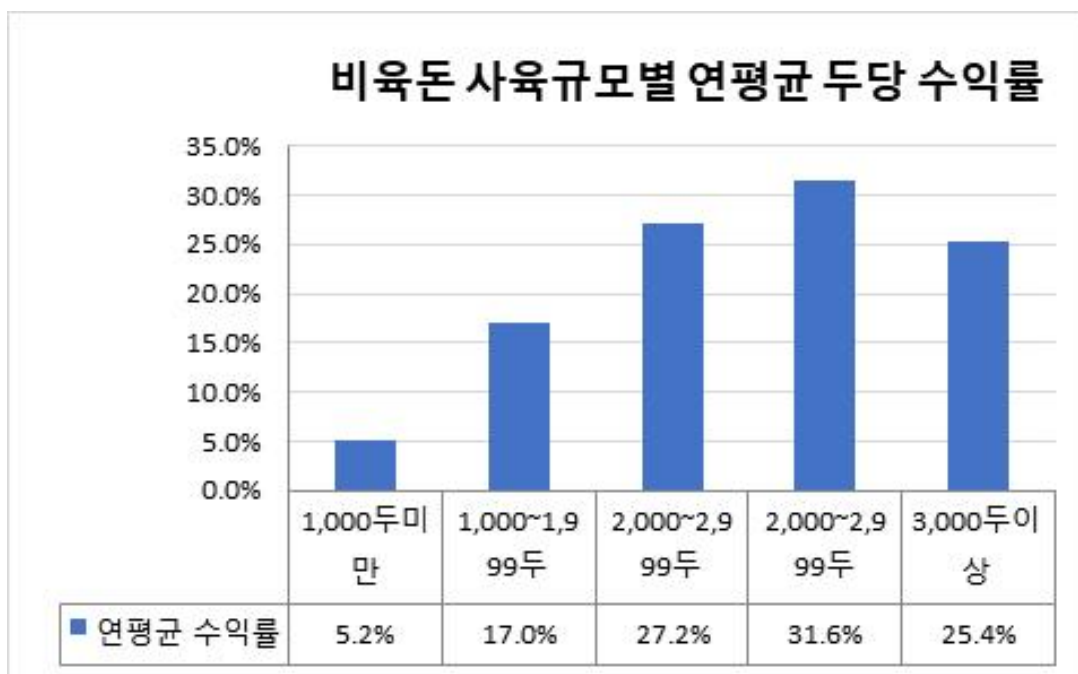
소득(A-B)	17,150	38,667	83,581	73,357	62,623
순수익(A-C)	-19,836	18,814	71,427	64,031	48,400

<표 43> 비육돈 사육규모별 최근 5년 평균 두당 수익현황

단위 : 천원

사육규모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2,999두	2,000~2,999두	3,000두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396,299	389,707	396,879	391,909	392,716	393,502
연평균 비용합계(B)	376,758	333,191	311,896	297,785	313,252	326,576
연평균 순수익(A-B)	19,541	56,516	84,983	94,124	79,463	66,925
연평균 수익률	5.2%	17.0%	27.2%	31.6%	25.4%	21.1%

<그림 10> 비육돈 사육규모별 연평균 두당 수익률



- 돼지 사육업이 경우 사육규모별 연평균 매출액과 1두당 연평균 수익률을 다음과 같다.
 - 1,000두 미만: 1두당 연평균 매출액 380,185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은 19,541원이다. → 1두당 연평균 수익 약 20,000원
 - 1,000~1,999두: 1두당 연평균 매출액 389,707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 56,516원이다. → 1두당 연평균 수익 약 55,000원
 - 2,000~2,999두: 1두당 연평균 매출액 396,879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 84,983원이다. → 1두당 연평균 수익 약 85,000원
 - 3,000두이상: 1두당 연평균 매출액 391,909원이고, 1두당 연평균 수익 94,124원이다. → 1두당 연평균 수익 약 95,000원
- 이상에서 보다시피 사육규모의 증가에 따라 1두당 연평균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1두당 연평균 수익은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1,000두 미만의 경우에는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1두당 연평균 수익이 적다. 또한 1,000두 이상의 경우에도 사육규모에 따라 1두당 연평균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돼지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돼지 사육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 아래에서는 과징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두당 연간 매출액은 400,000원으로, 1두당 연간 수익은 약 80,000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1두당 일평균 수익률은 약 220원이다. 연간 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려면 약 2,700두를 사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약 1,080,000,000원이다.
- 사육규모 2,700두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44> 사육업(돼지) 과징금 기준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돼지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300두 미만 (120,000 미만)	150두	0.22	990	2,970	5,940	990	2,970	5,940
2	300두 이상 600두 미만 (120,000 이상 240,000 미만)	450두	0.22	2,970	8,910	17,820	2,970	8,910	17,820
3	600두 이상 900두 미만 (240,000 이상 360,000 미만)	750두	0.22	4,950	14,850	29,700	4,950	14,850	29,700
4	900두 이상 1,200두 미만 (360,000 이상 480,000 미만)	1050두	0.22	6,930	20,790	41,580	6,930	20,790	41,580
5	1,200두 이상 1,500두 이상 (480,000 이상 600,000 미만)	1350두	0.22	8,910	26,730	53,460	8,910	26,730	53,460
6	1,500두 이상 1,800두 미만 (600,000 이상 720,000 미만)	1650두	0.22	10,890	32,670	65,340	10,890	32,670	65,340
7	1,800두 이상 2,100두 미만 (720,000 이상 840,000 미만)	1950두	0.22	12,870	38,610	77,220	12,870	38,610	77,220
8	2,100두 이상 2,400두 미만 (840,000 이상 960,000 미만)	2250두	0.22	14,850	44,550	89,100	14,850	44,550	89,100

등급	사육규모 (연간매출액)	구간 사육 돼지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9	2,400두 이상 2,700두 미만 (960,000 이상 1,080,000 미만)	2550두	0.22	16,830	50,490	100,980	16,830	50,490	100,000
*	2,700두 이상 3,000두 미만 (1,080,000 이상 1,200,000 미만)	2850두	0.22	18,810	56,430	112,860			

* 1두당 연간매출액: 약 400,000원

다) 닭(산란계, 육계) · 오리 사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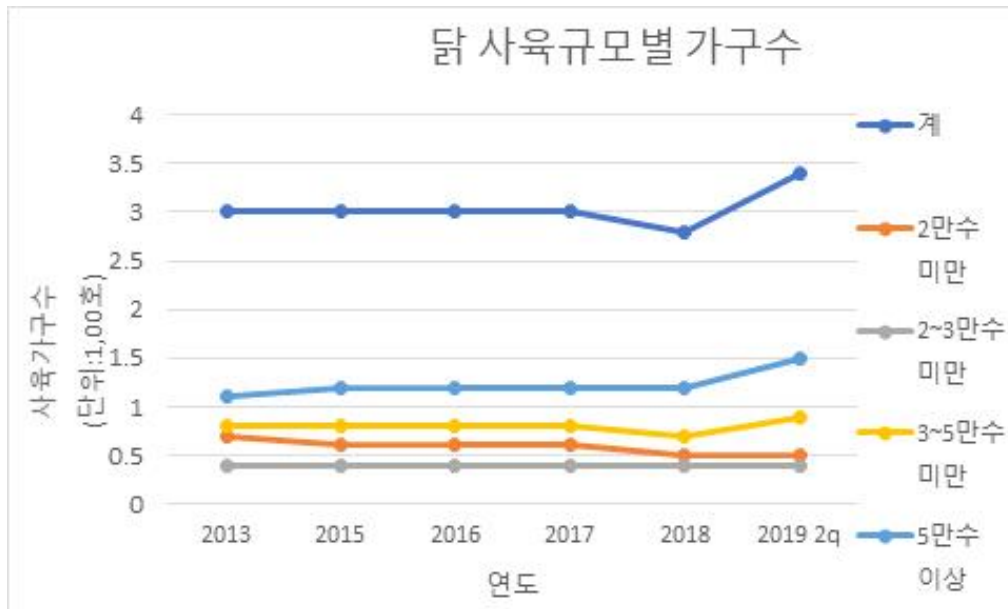
① 닭 사육업

<표 45>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 천호

구분	계	2만수 미만	2~3만수미만	3~5만수미만	5만수 이상
2013	3	0.7	0.4	0.8	1.1
2015	3	0.6	0.4	0.8	1.2
2016	3	0.6	0.4	0.8	1.2
2017	3	0.6	0.4	0.8	1.2
2018	2.8	0.5	0.4	0.7	1.2
2019 2q	3.4	0.5	0.4	0.9	1.5
평균	3.0	0.6	0.4	0.8	1.2

<그림 11>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산란계>

<표 46> 산란계 사육규모별 후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최근 4년 : 2014년부터 2017년)

비목별	2014				
	20,000수 미만	20,000~29,999수	30,000~39,999수	4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33,797	34,923	34,440	36,005	35,693
일반비(B)	30,716	30,909	30,946	29,650	29,875
비용합계(C)	35,721	34,169	33,056	30,896	31,546
소득(A-B)	3,081	4,014	3,494	6,355	5,818
순수익(A-C)	-1,924	754	1,384	5,109	4,147
비목별	2015				
	20,000수 미만	20,000~29,999수	30,000~39,999수	4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31,770	31,707	31,106	33,077	32,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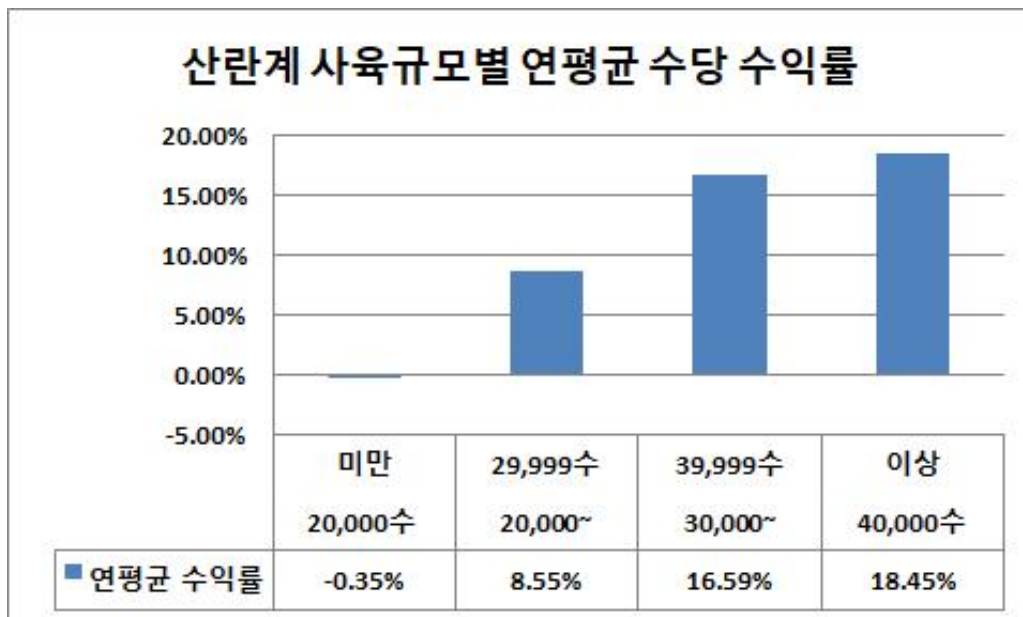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일반비(B)	30,080	28,251	28,954	28,870	28,916
비용합계(C)	35,500	31,477	30,682	30,026	30,449
소득(A-B)	1,690	3,456	2,152	4,207	3,896
순수익(A-C)	-3,730	230	424	3,051	2,363
비목별	2016				
	20,000수 미만	20,000~ 29,999수	30,000~ 39,999수	4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30,291	29,854	34,666	29,997	30,260
일반비(B)	28,689	27,791	30,475	26,595	26,964
비용합계(C)	34,261	31,217	32,279	27,712	28,445
소득(A-B)	1,602	2,063	4,191	3,402	3,296
순수익(A-C)	-3,970	-1,363	2,387	2,285	1,815
비목별	2017				
	20,000수 미만	20,000~ 29,999수	30,000~ 39,999수	4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41,682	43,837	46,652	42,140	42,399
일반비(B)	31,996	29,391	29,816	28,857	29,097
비용합계(C)	37,339	32,543	32,402	29,949	30,585
소득(A-B)	9,686	14,446	16,836	13,283	13,302
순수익(A-C)	4,343	11,294	14,250	12,191	11,814
비목별	2018				
	20,000수 미만	20,000~ 39,999수	40,000~ 79,999수	8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7,489	23,438	22,695	26,480	25,682
일반비(B)	30,768	28,374	27,478	26,043	26,647
비용합계(C)	35,757	30,915	29,032	26,870	27,898
소득(A-B)	-3,279	-4,936	-4,783	437	-965
순수익(A-C)	-8,268	-7,477	-6,337	-390	-2,216

<표 47> 산란계 사육규모별 최근 4년 평균 수당 수익현황

사육규모	20,000수 미만	20,000~29,999수	30,000~39,999수	40,000수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34,385	35,080	36,716	35,305	35,372
연평균 비용(B)	34,506	32,316	31,492	29,805	32,030
연평균 순수익(A-B)	-121	2,764	5,225	5,500	3,342
연평균 수익률	-0.35%	8.55%	16.59%	18.45%	10.81%

<그림 12> 산란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수당 수익률



-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000수 미만, 20,000~29,999수, 30,000~39,999수, 40,000수 이상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통계를 잡고 있으나, 2018년에는 20,000수 미만, 20,000~39,999수, 40,000~79,999수, 80,000수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통계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로 1수당 총수입(매출액)과 수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000수 미만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1수당 순수익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 20,000~29,999수 구간에서는 4년 연평균 총수입(매출액)은 43,837원, 4년 연평균 1수당 순수익은 2,729원이지만 연도별 순수익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의미있는 통계로 보기 어렵다. → 계산의 편의상 연평균 1수당 수익을 2,500원으로 설정하고 20,000수의 연평균 수익을 계산해보면 50,000,000원이다. 따라서 월 약 4,000,000원이다.
 - 30,000~39,999수 구간에서는 4년 연평균 1수당 총수입(매출액)은 46,652원, 4년 연평균 1수당 순수익은 4,611원이지만, 연도별 수익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 40,000수 이상 구간에서는 4년 연평균 1수당 총수입(매출액)은 35,305원, 4년 연평균 1수당 순수익은 5,659원이다.
- 산란계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이상에서 보듯이 사육규모 별로 1수당 순수익이 차이가 난다. 반면에 40,000수 이상의 1수당 연평균 매출액이 30,000~39,999수 구간의 1수당 연평균 매출액보다 적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육규모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산란계 사육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 아래에서는 과징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수당 연매출액은 35,000원, 1수당 연간 순수익은 3,342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수당 1일 순수익은 9원이다. 따라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려면 약 65,000수를 사육하여야 한다.
- 사육규모 65,000수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48> 산란계 사육업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사육규모	구간 사육 산란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5,000수 미만	2,500수	0.009	675	2,025	4,050	675	2,025	4,050
2	5,000수 이상 10,000수 미만	7,500수	0.009	2,025	6,075	12,150	2,025	6,075	12,150
3	10,000수 이상 15,000수 미만	12,500수	0.009	3,375	10,125	20,250	3,375	10,125	20,250
4	15,000수 이상 20,000수 미만	17,500수	0.009	4,725	14,175	28,350	4,725	14,175	28,350
5	20,000수 이상 25,000수 미만	22,500수	0.009	6,075	18,225	36,450	6,075	18,225	36,450
6	25,000수 이상 30,000수 미만	27,500수	0.009	7,425	22,275	44,550	7,425	22,275	44,550
7	30,000수 이상 35,000수 미만	32,500수	0.009	8,775	26,325	52,650	8,775	26,325	52,650
8	35,000수 이상 40,000수 미만	37,500수	0.009	10,125	30,375	60,750	10,125	30,375	60,750
9	40,000수 이상 45,000수 미만	42,500수	0.009	11,475	34,425	68,850	11,475	34,425	68,850
10	45,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47,500수	0.009	12,825	38,475	76,950	12,825	38,475	76,950
11	50,000수 이상 55,000수 미만	52,500수	0.009	14,175	42,525	85,050	14,175	42,525	85,050
12	55,000수 이상 60,000수 미만	57,500수	0.009	15,525	46,575	93,150	15,525	46,575	93,150
13	60,000수 이상 65,000수 미만	62,500수	0.009	16,875	50,625	101,250	16,875	50,625	100,000
*	65,000수 이상 70,000수 미만	67,500수	0.009	18,225	54,675	109,350			

1수당 연평균 매출액: 약 35,000원

<육계>

<표 49> 육계 10수당 사육규모별 두당 총수입, 일반비, 비용합계, 소득 및 순수익 현황
(최근 5년: 2014년부터 2018년)

단위 : 원

비목별	2014				
	30,000수 미만	30,000~ 39,999수	40,000~ 49,999수	5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2,326	23,798	22,452	19,486	20,584
일반비(B)	20,063	20,254	19,859	17,843	18,558
비용합계(C)	21,390	21,480	20,813	18,638	19,464
소득(A-B)	2,263	3,544	2,593	1,643	2,026
순수익(A-C)	936	2,318	1,639	848	1,120
비목별	2015				
	30,000수 미만	30,000~ 39,999수	40,000~ 49,999수	5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2,495	21,412	19,893	18,277	19,100
일반비(B)	20,362	19,324	17,139	17,054	17,515
비용합계(C)	21,716	20,278	18,069	17,926	18,434
소득(A-B)	2,133	2,088	2,754	1,223	1,585
순수익(A-C)	779	1,134	1,824	351	666
비목별	2016				
	30,000수 미만	30,000~ 39,999수	40,000~ 49,999수	5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0,769	20,203	18,898	17,708	18,325
일반비(B)	20,150	20,353	17,813	16,390	17,230
비용합계(C)	21,841	21,488	18,773	17,147	18,118
소득(A-B)	619	-150	1,085	1,318	1,095
순수익(A-C)	-1,072	-1,285	125	561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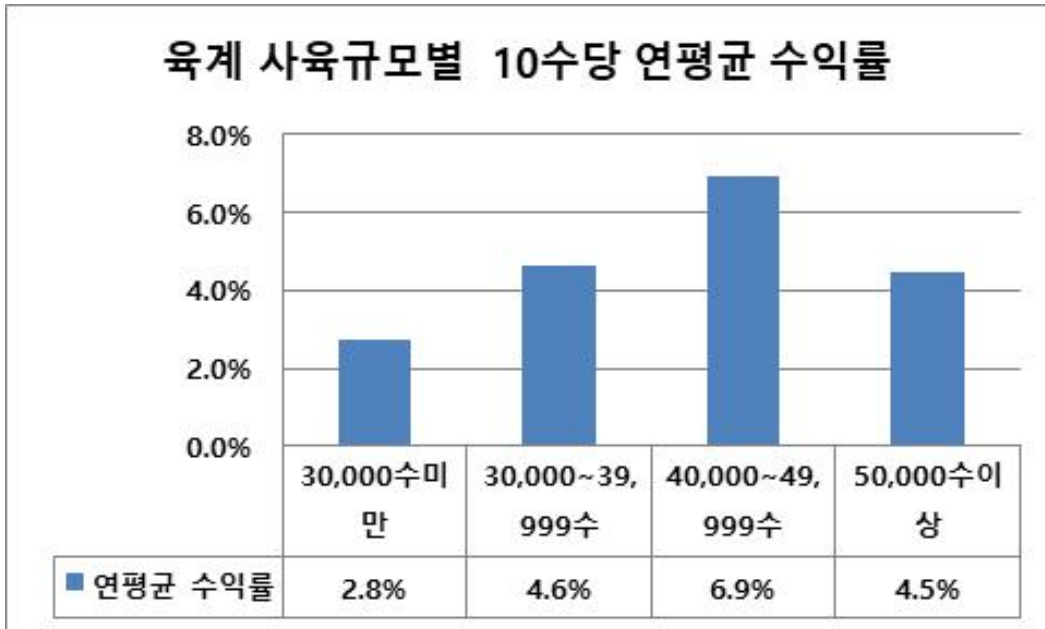
비목별	2017				
	30,000수 미만	30,000~ 39,999수	40,000~ 49,999수	5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4,058	21,702	20,060	18,665	19,461
일반비(B)	20,419	18,967	17,448	16,542	17,124
비용합계(C)	22,295	20,031	18,382	17,250	17,971
소득(A-B)	3,639	2,735	2,612	2,123	2,337
순수익(A-C)	1,763	1,671	1,678	1,415	1,490
비목별	2018				
	30,000수 미만	30,000~ 49,999수	50,000~ 69,999수	70,000수 이상	평균
총수입(A)	23,172	20,462	19,600	18,942	19,682
일반비(B)	18,561	18,366	16,979	17,492	17,628
비용합계(C)	20,435	19,433	17,953	18,081	18,474
소득(A-B)	4,611	2,096	2,621	1,450	2,054
순수익(A-C)	2,737	1,029	1,647	861	1,208

<표 50> 사육규모별 육계 10수당 연평균 수익

단위 : 원

사육규모	30,000수 미만	30,000~ 39,999수	40,000~ 49,999수	50,000수 이상	평균
연평균 총수입(A)	22,412	21,515	20,181	18,616	20,681
연평균 비용합계(B)	21,811	20,819	19,009	17,740	19,845
연평균 순수익(A-B)	1,029	973	1,383	794	1,045
연평균 수익률	4.7%	4.6%	6.9%	4.5%	5.18 %

<그림 13> 육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수익률



○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0,000수 미만, 30,000~39,999수, 40,000~49,999수, 50,000수 이상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통계를 잡고 있으나, 2018년에는 30,000수 미만, 30,000~49,999수, 50,000~69,999수, 70,000수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통계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 30,000수 미만: 육계 10수 당 연평균 총수입 (매출액)은 22,412원이고, 육계 10수 당 연평균 순수익은 602원이다. → 1수당 연평균 순매출액은 약 2,200원이고 1수당 연평균 순수익 약 60원
- 30,000~39,999수: 육계 10수 당 연평균 총수입 (매출액)은 21,779원이고, 육계 10수 당 연평균 순수익은 960원이다. → 1수당 연평균매출액은 약 2,200원이고 1수당 연평균 순수익 약 96원
- 40,000~49,999수: 육계 10수 당 연평균 총수입 (매출액)은 20,326원이고, 육계 10수 당 연평균 순수익은 1,317원이다.→ 1수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2,000원이고 1수당 연평균 순수익은 약 130원

- 50,000수 이상: 육계 10수 당 연평균 총수입 (매출액)은 18,534원이고, 육계 10수 당 연평균 순수익은 794원이다. → 1수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1,900원이고 1수당 연평균 순수익 약 80원

○ 육계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이상에서 보듯이 육계의 경우 사육규모 별로 1수당 순수익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1수당 매출액 및 순이익과 사육규모의 비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징금 부과 기준 산정의 편의를 위해 1수당 연평균 매출액 2,000원 1수당 1일 순수익은 0.3원으로 설정하였다.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산란계 사육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연간 순수익2억원을 올리려면 210,000수를 사육하여야 한다.

○ 사육규모 210,000수 미만인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

<표 51> 육계 사육업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사육규모	구간 사육 육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10,000수 미만	5,000수	0.0003	450	1,350	2,700	450	1,350	2,700
2	10,000수 이상 30,000수 미만	20,000수	0.0003	1,800	5,400	10,800	1,800	5,400	10,800
3	30,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40,000수	0.0003	3,600	10,800	21,600	3,600	10,800	21,600
4	50,000수 이상 70,000수 미만	60,000수	0.0003	5,400	16,200	32,400	5,400	16,200	32,400
5	70,000수 이상 90,000수 미만	80,000수	0.0003	7,200	21,600	43,200	7,200	21,600	43,200

등급	사육규모	구간 사육 육계수 중간값	1수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처분 같음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6	90,000수 이상 110,000수 미만	100,000수	0.0003	9,000	27,000	54,000	9,000	27,000	54,000
7	110,000수 이상 13,000수 미만	120,000수	0.0003	10,800	32,400	64,800	10,800	32,400	64,800
8	130,000수 이상 150,000수 미만	14,000수	0.0003	12,600	37,800	75,600	12,600	37,800	75,600
9	150,000수 이상 170,000수 미만	160,000수	0.0003	14,400	43,200	86,400	14,400	43,200	86,400
10	170,000수 이상 190,000수 미만	180,000수	0.0003	16,200	48,600	97,200	16,200	48,600	97,200
11	190,000수 이상 210,000수 미만	200,000수	0.0003	18,000	54,000	108,000	18,000	54,000	100,000

② 오리 사육업

- 통계청의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한국오리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 오리 생체 1수당 수익

<표 52> 오리 생체 1수당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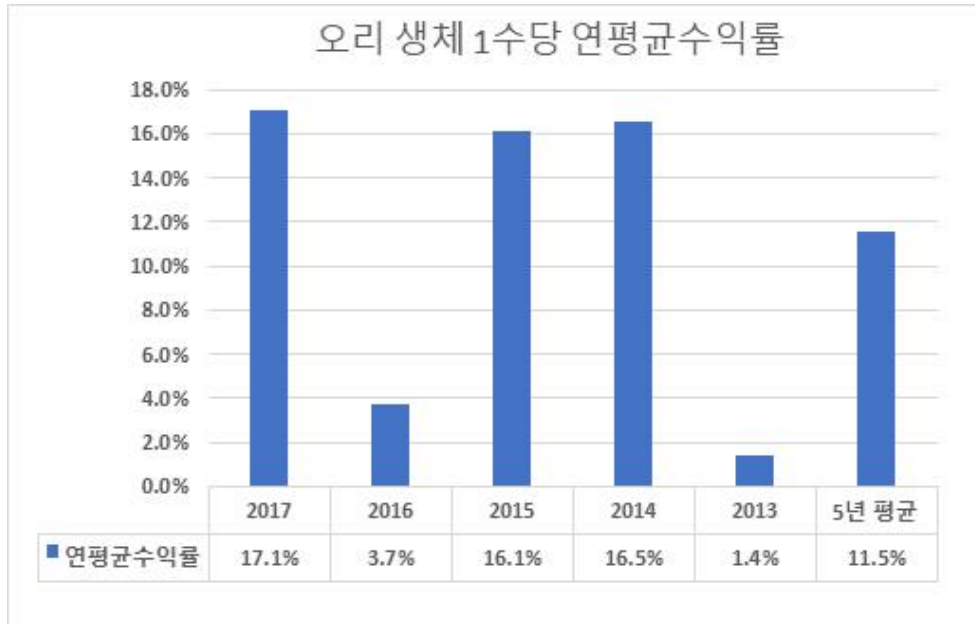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생산비	조수익	추정 매출액*	수익
2017	6,237	8,805	15,042	2,568
2016	5,226	5,630	10,856	404
2015	5,376	7,436	12,812	2,060
2014	5,711	7,974	13,685	2,263
2013	6,127	6,306	12,433	179
5년 평균	5735	7230	12,966	1,495

<출처 : 한국오리협회>

* 생산비와 조수익의 합계를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14> 오리 생체 1수당 연평균 수익률



○ 오리 사육업의 과징금 부과 분석

-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오리 1수당 연간 매출액은 13,000원 1수당 연간 수익은 1,500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1수당 1일 수익은 약 4원이다.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연간 순수익 2억을 올리는 오리 사육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의 순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연간 순수익을 올리려면 약 150,000수를 사육하여야 한다.

○ 사육규모 150,000수 미만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

<표 53> 오리 사육업 과징금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사육규모	구간 사육 오리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는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	10,000수 미만	5,000수	0.004	600	1,800	3,600	600	1,800	3,6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사육규모	구간 사육 오리수 중간값	1두당 1일 순수익	기간별 순수익 (구간 중간값 적용)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는 과징금의 금액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2	10,000수 이상 30,000수 미만	20,000수	0.004	2,400	7,200	14,400	2,400	7,200	14,400
3	30,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40,000수	0.004	4,800	14,400	28,800	4,800	14,400	28,800
4	50,000수 이상 70,000수 미만	60,000수	0.004	7,200	21,600	43,200	7,200	21,600	43,200
5	70,000수 이상 90,000수 미만	80,000수	0.004	9,600	28,800	57,600	9,600	28,800	57,600
6	90,000수 이상 110,000수 미만	100,000수	0.004	12,000	36,000	72,000	12,000	36,000	72,000
7	110,000수 이상 130,000수 미만	120,000수	0.004	14,400	43,200	86,400	14,400	43,200	86,400
8	130,000수 이상 150,000수 미만	140,000수	0.004	16,800	50,400	100,800	16,800	50,400	100,000
*	150,000수 이상 170,000수 미만	160,000수	0.004	19,200	57,600	115,200			
*	170,000수 이상 190,000수 미만	180,000수	0.004	21,600	64,800	129,600			

3) 제2안

<표 54>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 ('19.12.31.기준)

구분	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소계	돼지	닭	오리	소계	닭	오리	
허가	1,093	801	154	511	136	216	156	60	76
등록		-	-	-	-	-	-	-	-
합계	1,093	801	154	511	136	216	156	60	76

구분	가축사육업										
	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소계	한우	육우	젖소		소계	산란	육계		
허가	68,187	55,951	49,215	1,451	5,285	5,605	5,610	1,779	3,831	1,021	-
등록	55,187	45,313	43,670	497	1,146	2,423	2,533	921	1,612	235	4,683
합계	123,374	101,264	92,885	1,948	6,431	8,028	8,143	2,700	5,443	1,256	4,683

(가) 과징금 부과 개요

- (과징금 성격)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부과대상) 축산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자 (5개 사항)
 - 1)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4)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5)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28.시행 예정)
- (부과 한도) 1억원 이하
- (부과 시 고려사항) 부과대상 업종, 매출액, 사육규모
- (부과 업종) 축산업 허가자(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나) 업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가) 종축업

① 종돈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연간 매출액(연 사육규모를 매출액으로 환산)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통계 기준으로 종돈 사육규모별 등급을 우선 구분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 연간매출액 : 연간 종돈 사육규모 × 종돈 1두당 연 수입(457천원)
 - 구간별 종사자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등급 수(9등급)’, ‘최저등급’, ‘최고등급’ 매출액 설정
 - * (최저등급) 연간 매출액 0.9억원 미만(분포하위 11.7%), (최고등급) 22.5억원 이상(분포상위 9.4%)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연 매출액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매출값 적용)× 해당업종 소득률(20.2%)* / 365일
 - * (종돈 1두 기준) 연간총수입 : 457천원, 연간소득 : 92천원, 소득률 : 20.2%
- <출처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한국농축협회>

<표 55> 종돈업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영업자 분포 비율 (%)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9,000 미만	2	11.7	20.2
2	9,000 이상 13,500 미만	6	12.9	20.2
3	13,500 이상 18,000 미만	9	14.0	20.2
4	18,000 이상 22,500 미만	11	12.9	20.2
5	22,500 이상 31,500 미만	15	12.9	20.2
6	31,500 이상 45,000 미만	21	13.5	20.2
7	45,000 이상 90,000 미만	37	9.9	20.2
8	90,000 이상 225,000 미만	87	9.4	20.2
9	225,000 이상	125	9.4	20.2

- * 등급간격: 영업자 빈도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등급 간격 구성(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 참고)
 - 다만, 관련 영업종사자 수(171개소)가 매우 적고, 사육·매출규모별 영업자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등급 간 분포비율을 균등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 소득률: 해당 영업에 대한 통계청 등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수입, 조수익 등 소득 자료 참고

<표 56> 종돈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9,000 미만 (200두 미만)	4,500		2	20개	11.7%	0.202
2	9,000 이상 13,500 미만 (200두 이상 300두 미만)	11,250	6,750	6	22개	12.9%	
3	13,500 이상 18,000 미만 (300두 이상 400두 미만)	15,750	4,500	9	24개	14.0%	
4	18,000 이상 22,500 미만 (400두 이상 500두 미만)	20,250	4,500	11	22개	12.9%	
5	22,500 이상 31,500 미만 (500두 이상 700두 미만)	27,000	6,750	15	22개	12.9%	
6	31,500 이상 45,000 미만 (700 이상 1,000 미만)	38,250	11,250	21	23개	13.5%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7	45,000 이상 90,000 미만 (1,000두 이상 2,000두 미만)	67,500	29,250	37	17개	9.9%	
8	90,000 이상 225,000 미만 (2,000두 이상 5,000두 미만)	157,500	90,000	87	16개	9.4%	
9	225,000 이상 (5,000두 이상)	225,000		125	16개	9.4%	
				합계	546	100	

[두당 연수입 : 457,189원]

② 종계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연간 매출액(연 사육규모를 매출액으로 환산)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통계 기준으로 종계 사육규모별 등급을 우선 구분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 연간매출액 : 연간 종계 사육규모 × 종계 1두당 연 수입(36천원)
 - 구간별 종사자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등급 수(7등급)’, ‘최저등급’, ‘최고등급’ 매출액 설정
 - * (최저등급) 연간 매출액 3.6억원 미만(분포하위 8.8%), (최고등급) 18억원 이상(분포상위 14.1%)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연 매출액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매출액 적용)× 해당업종 소득률(30.8%)* / 365일
 - * (종계 1두 기준) 연간총수입 : 36천원, 연간소득 : 11천원, 소득률 : 30.8%

<출처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한국종축협회>

<표 57> 종계업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농가	소득률
			분포 비율 (%)	(%) (연소득/ 연수입)
1	36,000 미만	15	8.8	30.8
2	36,000 이상 54,000 미만	38	10.4	30.8
3	54,000 이상 72,000 미만	53	18.5	30.8
4	72,000 이상 90,000 미만	68	17.4	30.8
5	90,000 이상 126,000 미만	91	15.4	30.8
6	126,000 이상 180,000 미만	129	15.4	30.8
7	180,000 이상	152	14.1	30.8

* 등급간격: 영업자 빈도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등급 간격 구성(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 참고)

- 다만, 관련 영업종사자 수(546개소)가 매우 적고, 사육·매출규모별 영업자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등급 간 분포비율을 균등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소득률: 해당 영업에 대한 통계청 등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수입, 조수익 등 소득 자료 참고

<표 58> 종계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36,000 미만 (10,000수 미만)	18,000		15	48개	8.8%	0.308
2	36,000 이상 54,000 미만 (10,000수 이상 15,000수 미만)	45,000	27,000	38	57개	10.4%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 · 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3	54,000 이상 72,000 미만 (15,000수 이상 20,000수 미만)	63,000	18,000	53	101개	18.5%	
4	72,000 이상 90,000 미만 (20,000수 이상 25,000수 미만)	81,000	18,000	68	95개	17.4%	
5	90,000 이상 126,000 미만 (25,000수 이상 35,000수 미만)	108,000	27,000	91	84개	15.4%	
6	126,000 이상 180,000 미만 (35,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153,000	45,000	129	84개	15.4%	
7	180,000 이상 (50,000수 이상)	180,000	27,000	152	77개	14.1%	
				합계	546개	100	

[수당 연수입 : 36,449원]

③ 종오리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연간 매출액(연 사육규모를 매출액으로 환산)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통계 기준으로 종오리 사육규모별 등급을 우선 구분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 연간매출액 : 연간 종계 사육규모 × 종오리 1두당 연 수입(85천원)

- 구간별 종사자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등급 수(7등급)’, ‘최저등급’, ‘최고등급’ 매출액 설정
 * (최저등급) 연간 매출액 3.4억원 미만(분포하위 14.0%), (최고등급) 17억원 이상 (분포상위 9.3%)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연 매출액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매출액 적용)× 해당업종 소득률(41.2%)* / 365일
 * (종오리 1두 기준) 연간총수입 : 85천원, 연간소득 : 35천원, 소득률 : 41.2%

<출처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한국농축협회>

<표 59> 종오리업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농가 분포 비율 (%)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34,000 미만	19	14.0	41.2
2	34,000 이상 51,000 미만	48	16.3	41.2
3	51,000 이상 68,000 미만	67	20.9	41.2
4	68,000 이상 85,000 미만	86	16.3	41.2
5	85,000 이상 119,000 미만	115	13.2	41.2
6	119,000 이상 170,000 미만	163	10.1	41.2
7	170,000 이상	192	9.3	41.2

* 등급간격: 영업자 빈도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등급 간격 구성(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 참고)
 - 다만, 관련 영업종사자 수(129개소)가 매우 적고, 사육·매출규모별 영업자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등급 간 분포비율을 균등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소득률: 해당 영업에 대한 통계청 등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수입, 조수익 등 소득 자료 참고

<표 60> 종오리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34,000 미만 (4,000수 미만)	17,000		19	18개	14.0%	0.412
2	34,000 이상 51,000 미만 (4,000수 이상 6,000수 미만)	42,500	25,500	48	21개	16.3%	
3	51,000 이상 68,000 미만 (6,000수 이상 8,000수 미만)	59,500	17,000	67	27개	20.9%	
4	68,000 이상 85,000 미만 (8,000수 이상 10,000수 미만)	76,500	17,000	86	21개	16.3%	
5	85,000 이상 119,000 미만 (10,000수 이상 14,000수 미만)	102,000	25,500	115	17개	13.2%	
6	119,000 이상 170,000 미만 (14,000수 이상 20,000수 미만)	144,500	42,500	163	13개	10.1%	
7	170,000 이상 (20,000수 이상)	170,000	25,500	192	12개	9.3%	
				합계	129개	100	

[수당 연수입 : 85,278원]

나) 부화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연간 매출액(연 사육규모를 매출액으로 환산)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통계 기준으로 부화업 사육규모별(1회 입란규모) 등급을 우선 구분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 연간매출액 : 연간 입란규모 × 1알당 연 수입(782원)
 - 구간별 종사자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등급 수(8등급)’, ‘최저등급’, ‘최고등급’ 매출액 설정
 - * (최저등급) 연간 매출액 1,500만원 미만(분포하위 8.5%), (최고등급) 6억원 이상(분포상위 5.1%)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연 매출액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매출액 적용)× 해당업종 소득률(33.8%)* / 365일
 - * (1알 기준) 연간총수입 : 782원, 연간소득 : 264원, 소득률 : 33.8%

<출처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산란계협회·오리협회>

<표 61> 부화업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1	1,500 미만	1	8.5	33.8
2	1,500 이상 3,000 미만	2	15.3	33.8
3	3,000 이상 4,500 미만	3	15.3	33.8
4	4,500 이상 7,500 미만	6	10.2	33.8
5	7,500 이상 15,000 미만	10	15.3	33.8
6	15,000 이상 30,000 미만	15	15.3	33.8
7	30,000 이상 60,000 미만	42	15.3	33.8
8	60,000 이상	56	5.1	33.8

- * 등급간격: 영업자 빈도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등급 간격 구성(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 참고)
 - 다만, 관련 영업종사자 수(216개소)가 매우 적고, 사육·매출규모별 영업자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등급 간 분포비율을 균등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 소득률: 해당 영업에 대한 통계청 등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수입, 조수익 등 소득 자료 참고

<표 62> 부화업(닭)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70,000 미만 (20,000수 미만)	35,000		9	13개	9.6%	0.091
2	70,000 이상 175,000 미만 (20,000수 이상 50,000수 미만)	122,500	87,500	31	12개	8.9%	
3	175,000 이상 350,000 미만 (50,000수 이상 100,000수 미만)	262,500	140,000	65	12개	8.9%	
4	350,000 이상 525,000 미만 (100,000수 이상 150,000 미만)	437,500	175,000	109	11개	8.1%	
5	525,000 이상 875,000 미만 (150,000수 이상 250,000수 미만)	700,000	262,500	175	17개	12.6%	
6	875,000 이상 1,225,000 미만 (250,000수 이상 350,000수 미만)	1,050,000	350,000	262	16개	11.9%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7	1,225,000 이상 1,750,000 미만 (350,000수 이상 500,000수 미만)	1,487,500	437,500	371	12개	8.9%	
8	1,750,000 이상 2,450,000 미만 (500,000수 이상 700,000수 미만)	2,100,000	612,500	524	13개	9.6%	
9	2,450,000 이상 3,500,000 미만 (700,000수 이상 1,000,000수 미만)	2,975,000	875,000	742	9개	6.7%	
10	3,500,000 이상 7,000,000 미만 (1,000,000수 이상 2,000,000수 미만)	5,250,000	2,275,000	1,309	10개	7.4%	
11	7,000,000 이상 (2,000,000수 이상)	7,000,000	1,750,000	1,745	10개	7.4%	
				합계	135개	100	

[알당 연수입 35,640원]

<표 63> 부화업(오리)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1,500 미만 (20,000수 미만)	750		1	5개	8.5%	0.338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 · 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2	1,500 이상 3,000 미만 (20,000수 이상 40,000수 미만)	2,250	1,500	2	9개	15.3%	
3	3,000 이상 4,500 미만 (40,000수 이상 60,000수 미만)	3,750	1,500	3	9개	15.3%	
4	4,500 이상 7,500 미만 (60,000수 이상 100,000수 미만)	6,000	2,250	6	6개	10.2%	
5	7,500 이상 15,000 미만 (100,000수 이상 200,000수 미만)	11,250	5,250	10	9개	15.3%	
6	15,000 이상 30,000 미만 (200,000수 이상 400,000수 미만)	15,750	4,500	15	9개	15.3%	
7	30,000 이상 60,000 미만 (400,000수 이상 800,000수 미만)	45,000	29,250	42	9개	15.3%	
8	60,000 이상 (800,000수 이상)	60,000	15,000	56	3개	5.1%	
				합계	59개	100%	

[알당 연수입 782원]

다) 정액등처리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연간 매출액(연 사육규모를 매출액으로 환산)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통계 기준으로 번식용가축 보유규모별 등급을 우선 구분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 연간매출액 : 번식용가축 보유두수 × 1두당 연 수입(14,520천원)
 - 구간별 종사자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등급 수(5등급)’, ‘최저등급’, ‘최고등급’ 매출액 설정
 - * (최저등급) 연간 매출액 4.5억원 미만(분포하위 19.4%), (최고등급) 30억원 이상(분포상위 5.6%)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연 매출액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매출값 적용)× 해당업종 소득률(9.1%)* / 365일
 - * (씨가축 1두 기준) 연간총수입 : 14,520천원, 연간소득 : 1,320천원, 소득률 : 9.1%

<출처 : 축산업 허가등록정보(agrix), 종축협회 등>

<표 64> 정액등 처리업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45,000 미만	6	19.4	9.1
2	45,000 이상 75,000 미만	15	25.0	9.1
3	75,000 이상 150,000 미만	28	30.6	9.1
4	150,000 이상 300,000 미만	56	19.4	9.1
5	300,000 이상	75	5.6	9.1

* 등급간격: 영업자 빈도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등급 간격 구성(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 참고)

- 다만, 관련 영업종사자 수(76개소)가 매우 적고, 사육·매출규모별 영업자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등급 간 분포비율을 균등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 소득률: 해당 영업에 대한 통계청 등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수입, 조수익 등 소득 자료 참고

<표 65> 정액처리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매출환산액 (사육규모)	사육규모 구간 최저·최대매출환산액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소득률
		구간별 중간값	구간 증가값		수	비중	
1	45,000 미만 (30두 미만)	22,500		60,000	7개	19.4%	0.091
2	45,000 이상 75,000 미만 (30두 이상 50두 미만)	60,000	37,500	150,000	9개	25.0%	
3	75,000 이상 150,000 미만 (50두 이상 100두 미만)	112,500	52,500	280,000	11개	30.6%	
4	150,000 이상 300,000 미만 (100두 이상 200두 미만)	225,000	112,500	560,000	7개	19.4%	
5	300,000 이상 (200두 이상)		75,000	750,000	2개	5.6%	
합계					36개	100.0	

라) 가축사육업

①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한우>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11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10마리 미만(분포하위 5.5%), (최고등급) 500마리 이상(분포상위 3.6%)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1,644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120만원) × 연간회전율(0.5) / 365일 = 1,644원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

<표 66> 한우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10마리 미만	1	5.5	16.3
2	10마리 이상 20마리 미만	2	7.6	16.3
3	20마리 이상 30마리 미만	4	7.7	16.3
4	30마리 이상 40마리 미만	6	7.7	16.3
5	40마리 이상 50마리 미만	7	7.2	16.3
6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12	24.6	16.3
7	100마리 이상 200마리 미만	25	22.5	16.3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8	2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41	8.3	16.3
9	3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	58	3.6	16.3
10	400마리 이상 500마리 미만	74	1.7	16.3
11	500마리 이상	82	3.6	16.3

<표 67> 한우 사육업 과징금 산출 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 증가		수	비중	
1	10 미만		5	1	161,812개	5.5%	1,644원
2	10 이상 20 미만	15	11	2	223,681개	7.6%	
3	20 이상 30 미만	25	10	4	227,643개	7.7%	
4	30 이상 40 미만	35	10	6	226,374개	7.7%	
5	40 이상 50 미만	45	10	7	211,485개	7.2%	
6	50 이상 100 미만	75	30	12	723,381개	24.6%	
7	100 이상 200 미만	150	75	25	660,512개	22.5%	
8	200 이상 300 미만	250	100	41	243,834개	8.3%	
9	300 이상 400 미만	350	100	58	106,033개	3.6%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 증가		수	비중	
10	400 이상 500 미만	450	100	74	51,341개	1.7%	
11	500마리 이상			82	104,863개	3.6%	
				합계	2,940,959개	100.0	

<육우>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7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20마리 미만(분포하위 81.1%), (최고등급) 100마리 이상(분포상위 1.6%)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726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53만원) × 연간회전율(0.5) / 365일 = 726원
-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

<표 68> 육우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1	20마리 미만	1	81.1	12.0
2	20마리 이상 30마리 미만	2	5.5	12.0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3	30마리 이상 40마리 미만	3	2.7	12.0
4	40마리 이상 50마리 미만	4	2.1	12.0
5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5	4.2	12.0
6	100마리 이상 200마리 미만	11	2.8	12.0
7	200마리 이상	15	1.6	12.0

<표 69> 육우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1	10 미만	5		0	4,867개	66.3%	726원
2	10 이상 20 미만	15	10	1	1,084개	14.8%	
3	20 이상 30 미만	25	10	2	405개	5.5%	
4	30 이상 40 미만	35	10	3	200개	2.7%	
5	40 이상 50 미만	45	10	4	152개	2.1%	
6	50 이상 100 미만	75	30	5	306개	4.2%	
7	100 이상 200 미만	150	75	11	204개	2.8%	
8	200 이상 300 미만	250	100	15	74개	1.0%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9	300 이상 400 미만	350	100	25	18개	0.2%	
10	400 이상 500 미만	450	100	33	13개	0.2%	
11	500 이상			36	18개	0.2%	
				합계	7,341개	100.0	

<덧소>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8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10마리 미만(분포하위 19.5%), (최고등급) 200마리 이상(분포상위 5%)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1만411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380만원) × 연간회전율(1) / 365일 = 1만411원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

<표 70> 젓소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1	10마리 미만	5	19.5	38.2
2	10마리 이상 20마리 미만	16	5.5	38.2
3	20마리 이상 30마리 미만	26	4.9	38.2
4	30마리 이상 40마리 미만	36	5.4	38.2
5	40마리 이상 50마리 미만	47	7.8	38.2
6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78	36.5	38.2
7	100마리 이상 200마리 미만	156	18.6	38.2
8	200마리 이상	208	1.8	38.2

<표 71> 젓소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1	10 미만	5		5	1,258개	19.5%	10,411원
2	10 이상 20 미만	15	10	16	355개	5.5%	
3	20 이상 30 미만	25	10	26	316개	4.9%	
4	30 이상 40 미만	35	10	36	349개	5.4%	
5	40 이상 50 미만	45	10	47	503개	7.8%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6	50 이상 100 미만	75	30	78	2,352개	36.5%	
7	100 이상 200 미만	150	75	156	1,199개	18.6%	
8	200 이상 300 미만	250	100	208	99개	1.5%	
9	300 이상 400 미만	350	100	364	15개	0.2%	
10	400 이상 500 미만	450	100	468	4개	0.1%	
11	500 이상			521	1개	0.0%	
				합계	6,451개	100.0	

② 돼지 사육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8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500마리 미만(분포하위 27%), (최고등급) 500마리 이상(분포상위 6%)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466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8.5만원) × 연간회전율(2) / 365일 = 466원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

<표 72> 돼지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 연수입)
1	500마리 미만	13	26.8	23.6
2	500마리 이상 1,000마리 미만	38	18.1	23.6
3	1,000마리 이상 2,000마리 미만	77	25.8	23.6
4	2,000마리 이상 3,000마리 미만	128	13.4	23.6
5	3,000마리 이상 4,000마리 미만	179	6.2	23.6
6	4,000마리 이상 5,000마리 미만	230	3.6	23.6
7	5,000마리 이상	255	6.0	23.6

<표 73> 돼지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두)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두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1	500 미만	250		130,000원	1,661개	26.8%	510원
2	500 이상 1,000 미만	750	500	380,000원	1,122개	18.1%	
3	1,000 이상 2,000 미만	1500	750	770,000원	1,596개	25.8%	
4	2,000 이상 3,000 미만	2500	1000	1,280,000원	827개	13.4%	
5	3,000 이상 4,000 미만	3500	1000	1,790,000원	385개	6.2%	
6	4,000 이상 5,000 미만	4500	1000	2,300,000원	224개	3.6%	
7	5,000 이상			2,550,000원	373개	6.0%	
				합계	6,188개	100.0	

③ 닭 사육업

<산란계>

<산출기준>

<p>□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수(10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등급) 사육규모 5,000마리 미만(분포하위 4%), (최고등급) 200,000마리 이상(분포상위 8%) <p>□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12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4,300원) × 연간회전율(1) / 365일 = 12원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p>

<표 74> 산란계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5,000마리 미만	3	4.4	13.2
2	5,000마리 이상 10,000마리 미만	9	10.3	13.2
3	10,000마리 이상 20,000마리 미만	18	17.2	13.2
4	20,000마리 이상 30,000마리 미만	30	11.1	13.2
5	30,000마리 이상 40,000마리 미만	42	7.1	13.2
6	40,000마리 이상 50,000마리 미만	54	7.1	13.2
7	50,000마리 이상 100,000마리 미만	90	21.9	13.2
8	100,000마리 이상 150,000마리 미만	150	12.3	13.2
9	150,000마리 이상 200,000마리 미만	210	0.0	13.2
10	200,000마리 이상	240	8.4	13.2

<표 75> 산란계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수)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수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개)	비중(%)	
1	5,000 미만	2,500		3	44개	4.4%	12월
2	5,000 이상 10,000 미만	7,500	5,000	9	104개	10.3%	
3	10,000 이상 20,000 미만	15,000	10,000	18	173개	17.2%	
4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	10,000	30	112개	11.1%	
5	30,000 이상 40,000 미만	35,000	10,000	42	72개	7.1%	
6	40,000 이상 50,000 미만	45,000	10,000	54	72개	7.1%	
7	50,000 이상 100,000 미만	75,000	30,000	90	221개	21.9%	
8	100,000 이상 150,000 미만	125,000	50,000	150	124개	12.3%	
9	150,000 이상 200,000 미만	175,000	50,000	210	0	0.0	
10	200,000 이상			240	85개	8.4%	
				합계	1,007개	100.	

<육계>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10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5,000마리 미만(분포하위 1.4%), (최고등급) 200,000마리 이상(분포상위 1%)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3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소득(189원) × 연간회전율(6.5) / 365일 = 3원
-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자료 활용(승인통계)>

<표 76> 육계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 비율 (%)	마리당 소득률 (%) (연소득/연수입)
1	5,000마리 미만	1	1.4	9.4
2	5,000마리 이상 10,000마리 미만	2	1.8	9.4
3	10,000마리 이상 20,000마리 미만	5	4.7	9.4
4	20,000마리 이상 30,000마리 미만	8	9.8	9.4
5	30,000마리 이상 40,000마리 미만	11	14.7	9.4
6	40,000마리 이상 50,000마리 미만	14	17.4	9.4
7	50,000마리 이상 100,000마리 미만	23	40.9	9.4
8	100,000마리 이상 150,000마리 미만	38	8.2	9.4
9	150,000마리 이상 200,000마리 미만	53	0.0	9.4
10	200,000마리 이상	60	1.0	9.4

<표 77> 육계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단위: 수)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수당 일평균 소득
	규모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1	5,000 미만	2,500		10,000원	21개	1.4%	3원
2	5,000 이상 10,000 미만	7,500	5,000	20,000원	27개	1.8%	
3	10,000 이상 20,000 미만	15,000	7,500	50,000원	71개	4.7%	
4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	10,000	80,000원	148개	9.8%	
5	30,000 이상 40,000 미만	35,000	10,000	110,000원	222개	14.7%	
6	40,000 이상 50,000 미만	45,000	10,000	140,000원	262개	17.4%	
7	50,000 이상 100,000 미만	75,000	30,000	230,000원	617개	40.9%	
8	100,000 이상 150,000 미만	125,000	50,000	380,000원	124개	8.2%	
9	150,000 이상 200,000 미만	175,000	50,000	530,000원	-	0.0%	
10	200,000 이상	200,000	25,000	600,000원	15개	1.0%	3
합계					1,507개	100%	

[수당 일평균 소득은 회전율 6.5 적용]

④ 오리 사육업

<산출기준>

- 등급구분 기준 : 사육규모
- 통계청 ‘가축동향(사육규모별 가구수)’ 통계 기준으로 사육규모 등급 구분
 - ‘등급 수(10등급)’ 및 ‘최저등급’·‘최고등급’별 사육규모를 설정
 - * (최저등급) 사육규모 5,000마리 미만(분포하위 3%), (최고등급) 30,000마리 이상(분포상위 8%)
-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
- 등급 내 사육규모 중간값(최고등급은 해당 사육마릿수 적용) × 해당가축 1마리 당 1일 평균소득(18원)*
 - * 최근 5년간 마리당 평균사육비(1,300원) × 연간회전율(5) / 365일 = 18원
 - 오리 소득자료는 통계청의 공식통계가 없음을 따라 오리협회 자료 활용
- <출처 : 통계청의 ‘가축동향’, ‘한국오리협회’ 평균위탁사육비 자료 활용>

<표 78> 오리 사육업 사육규모 구간별 과징금 금액

등급	사육규모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농가 분포비율 (%)
1	5,000마리 미만	5	3.2
2	5,000마리 이상 10,000마리 미만	14	17.6
3	10,000마리 이상 20,000마리 미만	27	35.6
4	20,000마리 이상 30,000마리 미만	45	35.6
5	30,000마리 이상	54	8.0

<표 79> 오리 사육업 과징금 산출근거

단위 : 만원

등급	사육규모 (단위: 수)			과징금 1일 금액	농장 규모별 분포		수당 일평균 소득*
	규모 범위	규모별 중간값	중간값 구간증가		수	비중	
1	5,000 미만	2,500		5	17개	3.2%	18원
2	5,000 이상 10,000 미만	7,500	5,000	14	93개	17.6%	
3	10,000 이상 20,000 미만	15,000	7,500	27	375개	71.2%	
4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	10,000	45	-	-	
5	30,000 이상	30,000	5,000	54	42개	8.0%	
				합계	527개	100%	

* [수당 일평균소득은 회전을 5 적용]

4) 결 어

축산업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과징금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축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볼 때, 과징금 최대 1억은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므로 5억 또는 10억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과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영업정지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하나의 별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주요 외국의 축산 관련 법제도

제1절 일본

1. 서설

(1) 업무 개요

일본에서 축산은 국민의 식생활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근래 주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이 중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는 국민들에게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축산 농가 등의 경영 안정이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의 실저에 따라 생산의 진흥·합리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정비, 우수한 가축의 도입, 가축의 개량·증식, 초지의 조성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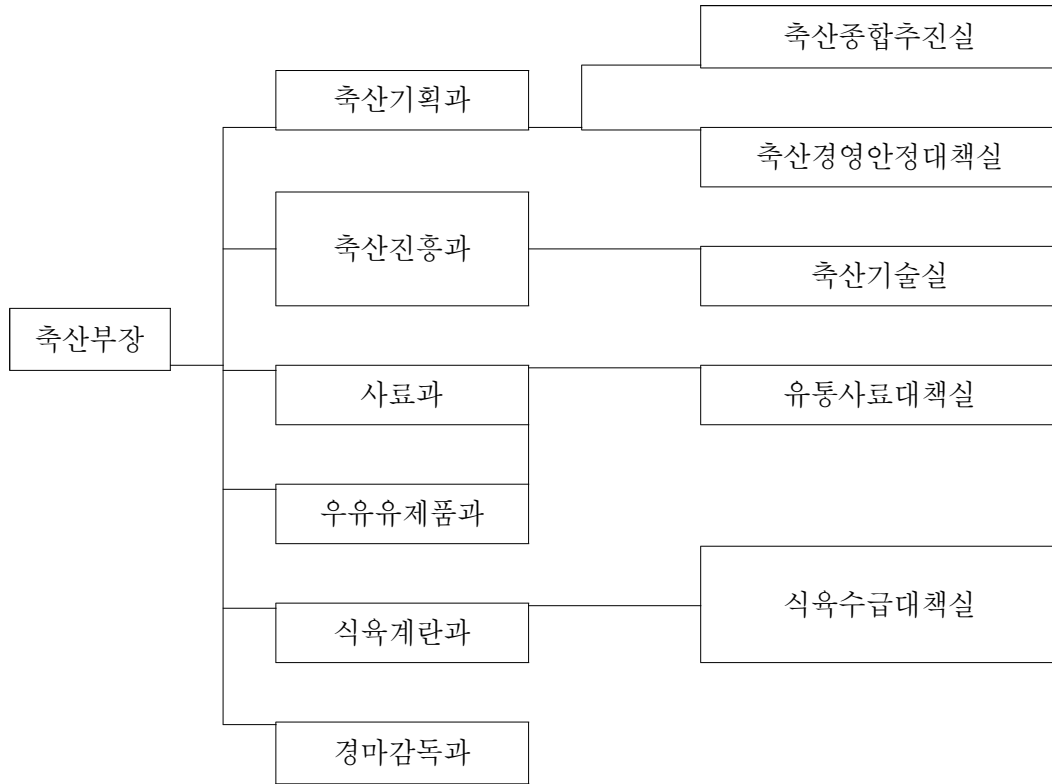
둘째, 축산 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가격안정 제도, 육우용 송아지 및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 교부금의 교부, 농가에 대한 경영지도, 배합 사료 가격의 안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축산물의 유통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육 센터, 우유 처리 시설 등의 유통 시설의 정비·통합, 소매 단계에서 축산물의 적정 표시 및 판매의 지도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 급식용 우유의 공급에 대한 조성 등 축산물의 소비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대중오락으로 정착되어 있는 중앙 및 지방 경마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여 경매 팬들의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조직도

농림수산부 생산국 내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



(참고 : 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1_tiku_ippan/index.html)

(3) 관련 법령

-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¹²⁾

이 법률은 주요한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교부금 내지 생산자 보급교부금 등의 교부 또는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 축산물의 수급의 안정 등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축산 및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화 36년(1951년) 12월 30일에 시행된 법이

11) 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1_tiku_ippan/img/soshikiz.jpg.

12) http://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hourei_etc-34.pdf.

며, 가장 최근의 개정으로는 평성 28년(2016년) 12월 16일에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동 법률의 구성은 제1편 총칙, 제2편 육용우(肉用牛) 및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제3장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의 교부, 제4장 지정 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및 절		조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총칙	
		제2조	정의	
제2장	*1	제3조		
제3장	제1절(생산자 보급교부금 등의 교부)	제4조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의 교부	
		제5조	연간 판매계획의 작성 등	
		제6조	총교부대상 수량	
		제7조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에 관련한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인정 등	
		제8조	생산자 보급금의 단가	
		제9조	제1호 대상사업자에 의한 생산자 보급금의 교부 등	
	제2절(집송유 조정금의 교부)	제10조	제1호 대상사업자의 지정	
		제11조	지정 공시 등	
		제12조	업무규정의 변경	
		제13조	지정의 해제	
		제14조	집송유(集送乳) 조정금의 교부	
		제15조	집송유 조정금의 금액 등	
	제16조	지정사업자에 의한 집송유 조정금의 교부		
	제4장	지정유제품의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	제17조	지정유 제품 등의 수입
			제18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기구에 대한 매도
			제19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매입 가액
제20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재매도	
제21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재매도 가액	

장 및 절		조문	내용
		제22조	준용
		제23조	지정유 제품 등의 매도
		제24조	
		제25조	지정유 제품 등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지정유 제품 등의 교환
제5장	잡칙	제2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제28조	지도 및 조언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0조	사무의 구분
제6장	벌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1 : 육용우 미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 동법 시행령13)

이 시행령은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시행령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문	내용
제1조	육용우의 율령
제2조	법률 제2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유제품
제3조	법 제2조 제3항의 정령에서 정한 우유
제4조	가공 원유류의 수량의 인정 단위 기간
제5조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인정

13) http://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hourei_etc-41.pdf.

조문	내용
제6조	동일유업자의 2 이상의 유업공장에서 관련한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산출방법 등의 특례
제7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제8조	지정의 해제
제9조	법 제1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유제품
제10조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에 대한 매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법 제18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용도
제12조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승락
제13조	담보의 제공
제14조	일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의한 매도와 관련한 매도예정가격
제15조	특별매도에 관련한 매도예정가격
제16조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제17조	사무의 구분

○ 동법 시행규칙¹⁴⁾

이 시행규칙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57조 및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문	내용
제1조	지정 식육의 규격
제2조	법 제2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유제품인 탈지유에 대한 거래 방법
제3조	가공원료유의 규격
제4조	지정 유제품의 규격
제5조	지정 식육의 보관 또는 판매에 관한 계획의 인정 신청 수속
제6조	지정 식육의 보관 또는 판매에 관한 계획의 인정 기준

14) http://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hourei_etc-31.pdf.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조문	내용
제7조	근처 중앙 도매 시장 또는 지정 시장
제8조	특별 매도 수량 기준
제9조	특별 매도의 기간 기준
제10조	특별 매도 가능한 기타의 기준
제11조	매입하지 않는 기타의 경우
제12조	연간 판매계획의 첨부 서류
제13조	연간 판매계획의 기재 사항
제14조	연간 판매계획의 기준
제15조	교부대상 수량의 산출
제16조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제17조	생유수탁판매에 관련한 위탁 또는 생유매수판매에 관련한 매도를 한 자에 대한 보고
제18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9조	정당한 이유에 관련한 지정의 요건
제20조	업무규정에 관한 지정의 요건
제21조	지정신청서 및 업무규정의 제출
제22조	업무규정의 변경
제23조	집송유 조정금의 교부
제24조	계약에 따른 기구에 대한 매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가산액의 감액
제26조	계약에 따른 매도된 지정유 제품 등의 매입의 가격
제27조	준용
제28조	특별 매도한 수량의 기준
제29조	특별 매도한 기간 기준
제30조	특별 매도가 가능한 기타의 경우
제31조	군도부현 지사가 보고를 시킬 수 있는 경우
제32조	보고

- 가공원료유 수량인정 등 사무실시요령¹⁵⁾

이 실시요령은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더불어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인정 및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용도에 따른 구분별 생유 처리 수량, 거래 수량 및 거래 가격의 확인(수량 인정 등이라 함)의 사무 실시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 목적). 이 실시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문	내용
제1(목적)	
제2(대상 생유)	
제3(대상유업공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유업공장의 범위 2. 하나의 유업공장의 범위 3. 유업공장 간에 있어서 생유이 반출입
제4(가공원료유의 수량 등 파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유의 유통실태의 파악 2. 유업자의 보고의 징수 3. 교부대상사업자의 보고의 징수 4. 기타 자의 보고의 징수 5. 보고의 내용의 검증 6. 출입검사 7. 보고서 및 출입검사의 결과 등의 취급
제5(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산출과 통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블록 내의 동일한 유업자가 복수의 유업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광역유업공장) 2. 1 이외의 유업공장의 경우(단독 유업공장) 3.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통지 4. 교부대상사업자별의 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산출과 통지 (령 제5조 제4항)
제6(가공원료유의 수량의 인정)	
제7(생유의 용도별 처리수량과 더불어 거래수량 및 가격의 산출과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별 처리 수량의 산출 2. 용도별 거래수량 등의 보고의 징수

15) http://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hourei_etc-42.pdf.

조문	내용
제8(기타)	1. 생유거래계약 2. 유업공장의 파악 3. 전국련(全国連) 재위임판매
제9(유제품 원단위표)	

- 농림수산성 고시

○ 축산경영안정법 시행령 제10조 관련¹⁶⁾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1 또는 2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청림현(靑森縣), 악수현(岩手縣), 궁성현(宮城縣), 추전현(秋田縣), 산형현(山形縣) 및 복도현(福島縣)의 구역
2. 이바라키현(茨城縣), 도치기현(栃木縣), 군마현(群馬縣), 기옥현(埼玉縣), 천엽현(千葉縣), 동경도(東京都), 신내천현(神奈川縣), 산이현(山梨縣) 및 정강현(静岡縣)의 구역
3. 신석현(新潟縣), 부산현(富山縣), 선천현(石川縣) 및 북정현(福井縣)의 구역
4. 장야현(長野縣), 기부현(岐阜縣), 애지현(愛知縣) 및 삼중현(三重縣)의 구역
5. 자가현(滋賀縣), 경도부(京都府), 대판부(大阪府), 병고현(兵庫縣), 내량현(奈良縣) 및 화가산현(和歌山縣)의 구역
6. 조취현(鳥取縣), 도근현(島根縣), 강산현(岡山縣), 광도현(広島縣) 및 산구현(山口縣)의 구역
7. 덕도현(德島縣), 향천현(香川縣), 애원현(愛媛縣) 및 고지현(高知縣)의 구역
8. 복강현(福岡縣), 좌하현(佐賀縣), 장기현(長崎縣), 태본형(熊本縣), 대분현(大分縣), 궁기현(宮崎縣) 및 녹아도현(鹿兒島縣)의 구역

16) http://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hourei_etc-2.pdf.

○ 축산경영안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관련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경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역의 명칭	구역
대도구역(大島区域)	대도정(大島町), 이도촌(利島村), 신도촌(新島村) 및 신진도촌(神津島村)의 구역
삼택도구역(三宅島区域)	삼진촌(三宅村) 및 어장도현(御蔵島村)
팔장도구역(八丈島区域)	팔장정(八丈町) 및 청도촌(靑ヶ島村)의 구역
소립원구역(小笠原区域)	소립원촌(小笠原村)의 구역
동경구역(東京区域)	동경도(東京都)의 구역 중 대도구역(大島区域), 삼택도구역(三宅島区域), 팔장도구역(八丈島区域) 및 소립원구역(小笠原区域)을 제외한 구역

2. 축산 관련 대책

(1) 축산농가·관계 단체에 대한 지원

-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이용할 목적에 대한 다양한 용자보 조사사업의 소개(낙농, 육우경영, 양돈, 양계). 이 중에서 낙농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육우경영, 양돈 및 양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¹⁷⁾

○ 낙농사업에 대한 지원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1. 낙농경영의 안정 도모	낙농경영의 안동을 도모 목적	(ALIC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 우유유제품과 보조금 기획반	대상 사업자	- 가공원료유(탈지분유·버터 등, 치즈, 생크림 등을 위한 생유)에 보조금 등을 교부

17) 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1_zigyo/index.html.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ALIC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 안정대책 사업 - 우유 유제품과 보즈금 기획반	대상 사업자	- 가공원료유의 전국 평균유가가 직근 3년 평균을 하회한 경우에 그 차액의 8할을 보전한다.
2. 낙농생산 기반의 강화	프리스틀 외양간이나 밀킹팔라를 정비 희망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터 사업 - 축산기획과 추진반	민간단체	- 축산 클러스터 계획에 자리매김된 중심적인 경영체에 대해 축사의 정비를 지원
		(일반예산) 신규사업으로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 교부금 - 생산국 총무과 생산추진실계상-축산기업과 추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 등	- 협업법인의 경영개시나 신생산시스템의 실시·보급 등을 위한 우사나 밀킹 팔러의 시설 정비를 지원
		(용자제도) - 농업근대화자금 -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 시설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이농농장을 활용하여 규모의 확대 희망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터 사업 - 축산 기획과추진반	민간단체	농협이나 공사 등이 매입 또는 창비한 이농적지 등에 있어서 가축의 도입, 축사 등의 보개수를 실시하고 규모 확대를 하는 자에 대한 대응 지원
	젖소후계우 (乳用後繼牛) 를 도입·증두 희망	(일반예산) 젖소·번식우 증두자금 확보의 원활화 사업 (보험료 면제)- 축산기획과 금융·세제반	민간단체	젖소 암소의 계획적인 증두를 위해 가축의 구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의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 협회에 의한 채무보증 보증료를 면제
젖소후계우를	(ALIC사업)	민간단체	후계자에 대한 초임우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도입·증두 희망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우유 유제품과 생란반 (生乳班)		도입이나, 육성우의 지 역내 유통을 촉진
		(용자제도) - 농업근대화자금 -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젓소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젓소후계우를 증두하기 이하에 우사개수나 간이우사를 정비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우유 유제품과 생란반	민간단체	젓소후계우의 증두를 도 모하기 위하여 축사개수 자재의 공동구입, 간이 시설·장치의 도입을 지원
	육성우의 사고율 저하, 젓소우의 공용기간의 연장을 도모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 업-우유 유제품과 생란반	민간단체	생산자단체가 행한 육성 우의 사고율저하 대책 (백신 등), 공용기간의 연장지원(건유중의 발급 보호, 유방염방지), 저열 스트레스 경감, 사육환 경의 개선(우상 매트 등) 등, 생유생산기반의 확보·강화를 위한 지원
	우량 젓소를 도입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축산진흥과 기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우군검정에 가입한 낙농 가가 우량한 젓소를 도 입에 따른 지원
	지역에서 지속적인 후계우의 생산체제 정비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축산진흥과 기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지역에서 후계우를 지속 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원본이 되는 초 임우이 도입을 지원
	국산치즈의 경쟁력을 강화 희망	(ALIC사업) 국산유제품 등 경쟁력 강화 대책사업-우유 유제품과 보조금 기획반	민간단체	치즈를 위한 생유의 고 품질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낙농가가 더한층 사 육관리의 고도화나 유질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관리에 임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환경부하를 경감 희망	(일반예산) 지속적 생산강화대책 사업 중 환경부하경감형 낙농경영지원사업(에코낙농사업)-축산기획과 경영기획반	도도부현 협의회 생유생산자	분뇨의 환원 등에 필요한 사료작부면적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낙농가가 행한 환경부하경감의 대응 지원
	젖소후계우의 공급에 필요한 젖소 암소를 도입 희망	(일반예산) 사료생산기반이 활용촉진 긴급 대책사업 중 공공목장활용생산기반 강화 지원대책	농업자단체 등 지방공공단체	생산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목장이 젖소후계우의 공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젖소암소의 도입을 지원
낙농경영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계승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취농(就農)을 희망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터 사업 - 축산 기획과추진반, 지역진흥반	민간단체	- 축산클러스터 계획에서 중심적인 경영체로 자리매김한 신규취농자 등에 대하여 시설정비, 기계도입, 가축도입을 지원
		(일반예산) 농업인재력강호하 총합지원사업-경영국 취농·여성과	도도부현, 시정촌, 민간단체	- 농협이나 공사 등이 매입 또는 차입한 이농적지(離農跡地)에 있어서 축사 등의 보·개수를 실시,신규취농자 등에 대한 대출 지원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 지원 교부금(이 중 지역 일꾼 육성 지원 타입 및 선진적 농업경영 확립 지원 타입)	시정촌 등	- 차세대를 담보하는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하여 취농전후에 필요한 자금의 교부나 농업법인 등에 고용되는 형태로 취농에 대하여 지원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 사업-축산기획과 경영 기획반	민간단체	- 지역의 일꾼이 용자를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용자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받아, 농업용기계·시설의 도입 지원 (확충부분) - 경영이탈농가의 자산의 유효활동이나 신규취농자의 확보, 장래 지속가능한 경영체의 창출 등을 지원 - 농업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설치, 기계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낙농가의 후계자가 지원을 받기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민간단체	- 일꾼으로 자리매김한 후계자에 대하여 초임우의 리스도입, 축사의 증개축 등을 지원
	낙농도우미로서 기술 습득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공모단체	- 낙농도우미조합이 행한 고용전 연수나, 실천 연수, 임시도우미의 출역지원, 면허취득 등의 낙농도우미의 확보나 인재육성의 지원 - 학생이 인터쉽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
4. 지역전체에서 수익력 향상 희망	지역전체의 새로운 대처 희망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사업-축산기획과추진반, 지역진흥반	민간단체	- 수익력을 향상시킬 새로운 대처를 실증하기 위한 조사, 분석 등을 지원
		(일반예산) 축산경영체질강화지원자금(클러스터 자금)-축산기획과금융·세제반	민간단체	- 지역의 제후를 코디네이트하는 인재 육성 지원 - 의욕있는 축산농가의 투자의욕을 지원하는 기존의 부채 일괄상환자금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클러스터 자금)을 융통
	수익성의 향상에 필요한 시설정비, 기계정비 희망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 사업-축산 기획과추진반, 지역진흥반	민간단체	축산 클러스터 계획에 맞는 중심적 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정비, 기계 도입을 지원
	이농하는 낙농가 등의 젖소를 계승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우유 유제품과 생유반	민간단체	지역내에서 생유 생산을 증진하는 낙농가나 규모를 축소하는 낙농가의 젖소의 계승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
	지역에서 생산성 강화 희망	(일반예산) 축산·낙농생산력 강화 대책사업 중에서 낙농 경영개선대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성관비리 정액·수정란을 활용한 우량 우유 후계소의 확보 및 화우(和牛) 수정란의 이식에 의하여 낙농경영의 화자우(和子牛) 생산 등의 대처에 대한 조성
5. 저비용화·생력화·고부가가치화 등의 대처 희망	낙농도우미를 활용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축산기획과경영기획반	공모단체	상병(傷病)시(질병, 사고, 육아, 연수 등)의 낙농도우미 이용 등의 추진에 대처하는 낙농도우미 조합으 지원
	착유로봇이나 포유로봇 등의 생력화 기계도입 희망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사업-축산기획과추진반, 지역진흥반 (일반예산) 지속적인 생산강화 대책사업 중 축산경영체 생산성향상대책-축산진흥과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민간단체	- 축산클러스터계획에 자리매김한 중심적인 경영체에 대하여 착유로봇이나 포유로봇 등의 생력화 기계의 도입을 지원 - 노동부담경감·생력화 및 사육관리기술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계·장비 도입 지원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ALIC사업) 낙농노동성력화 추진 시설 등 긴급정비대책 사업-축산진흥과가축개량 추진반	민간단체	- 낙농가에 있어서 노동 부담경감에 이바지하는 성력화 기계장비의 동비과 일체적인 시설의 정비 지원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축산기획과추진반, 지역진흥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가의 조직 단체 등	- 축사와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착유로봇을 활용한 성력적인 생유생산의 확대나 포유로봇을 활용한 초조기이유(超早期離乳)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
젖소의 개량 희망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 사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생산자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품종(홀스타인 종 이외)의 수정란 도입을 지원
더위대책을 시행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우유 유제품과 생유반	민간단체	더위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자재·기재(선풍기등)의 공동구입이나 기술지도 등을 지원
사육(飼養) 환경의 개선 도모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사업-우유 유제품과 생유반	민간단체	- 추위 스트레스의 경감, 쾌적성을 배려한 사육환경의 개선(우상 마트등)에 의한 공용기간의 연장 대처를 위한 지원
송아지의 사고율 저하 희망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사업-우유 유제품과 생유반	민간단체	- 송아지의 손모(損耗)방지대책을 지원
		(일반예산) 축산·낙농생산력강화대책사업 중 번식성 등 향상 대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 송아지 손모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대처등(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에 대한 지원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트사업- 축산 기획과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 축산클러스트의 계획으로 자리매김한 포육·육성센터의 정비 등의 대처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나 기계의 도입을 지원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사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 젖소를 광역적으로 예약하는 방안을 지원
6. 젖소의 능력향상을 도모	검정시설을 정비 희망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 등	검정시설의 정비 등을 조성
	젖소의 개량을 희망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화 대책사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생산자집단 민간단체 등	- 젖소 개량을 위한 사육관리, 체형 데이터의 수집, DNA 해석정보를 활용한 생애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처 방법 지원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 종합대책사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도도부현 단체	- 젖분비(泌乳) 지속성이 높은 젖소이 개량을 하기 위하여 계노믹 평가에 필요한 샘플의 수집이나 검사 등을 조성 - 우군(牛群) 검정에 가입한 낙농가가 우량 젖소를 도입하는 방안 지원
성판별기술에 의한 고능력을 가진 유아용 암소 생산 희망	(일반예산) 축산·낙농생산력 강화 대책사업 중 낙농경영 개선 긴급대책-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민간단체	성판별 정액·수정란을 활용한 우량 유용후계우(乳用後繼牛)의 확보에 대한 조성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수정란 이식관계의 시설을 정비 희망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가의 조직단체 등	수정란 공급시설의 정비 조성
7. 사료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자급사료의 증산을 도모	경작포기지 등을 이용하여 방목 시행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사업-사료과 사료생산계획반	민간단체	- 축산 클러스트 계획으 로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적 경영체가 행하 고, 방목에 필요한 전목 기(電牧器) 등의 도입 지원 - 경사지 등을 발급 경작 법(蹄耕法)이나 농사를 짓지 않음에 따라 방목 지로서 이용하기 위한 목책(牧柵)의 정비나 종 자대(種子代) 등을 지원
	수전방목의 희망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 조직 단체 등	지역에서 작성하는 「수 전풀 활용 비전」에 따라 수전방목 등의 경축제휴 (耕畜連携)를 포함한 산지 조성을 위한 대응 지원
	수전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조사료(粗飼 料)를 생산 희망	(일반예산) 수전활용의 직접 지불 교부금-정책통관관부곡물과	농업자, 취락(集落) 영농	실수요자(축산농가 등) 과의 품질 등의 조건을 포함한 이용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전에 있어서 사료 작물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사료작물의 작부면적에 대응한 교부 금의 교부
	콘트랙터, TMR센터 정비, 기능 강화 희망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사업-사료과 사료생산진흥반	민간단체	축산 클러스트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 적인 경영체가 시행, 자 급사료의 증산이나 품질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정비, 기계 도입을 지원
		(일반예산) 강한 농가·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사료과사료 생산진흥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	국산조사료난 사료용 쌀 의 조제·보관시설의 정 비 등을 지원
		(일반예산) 사료생산기반 이용활용 촉진 긴급대책사업 중 고품질 TMR공급지원 대책-사료과 초지정비 사업반	사료생산 조직 농업자집단 등	완전혼합사료(TMR)의 품질개선계획을 책정한 TMR센터가 계획에 따 라 행하는 병커 사일로 의 보·개수의 방안 등 지원
	사료생산 조직의 작업의 효율화 희망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화 대책사업 중 사료생산 이용체계 고효율화대책- 사료과사료생산진흥반	사료생산 조직	ICT기수의 실장과 새로 운 작업체계의 도입에 의한 고효율적 작업체계 의 구축 지원
	공공목장의 새로운 활용방법 검토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화 대책 사업 중 사료생산 이용체계 고효율화대책 (육용우·낙농기반 강화대책 중 공공목장 활용형)-사료과 초지정비 계획조정반	민간단체	공공목장을 가지고 있는 초지기반을 활용한 효율 적·성력적인 사료생 산·사육관리가 실행을 위한 검토나 초지개량 등의 대처방안 지원
	공공목장의 기능강화나 유효 활용 대처 희망	(일반예산) 사료생산기반 이용활용 촉진긴급대책사업 중 공공목장 활용생산기반 강화지원사업-사료과초지 정비계획조정반	민간단체 도도부현 등	- 생산기반강화계획을 책 정하여, 계획에 기하여 행한 하기(夏期) 예탁부 터 주년(周年) 예탁으로 전환 등의 대처 방안 지 원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 콘트랙터나 생산조합이 이용율이 저하한 공공목장 등을 유효활용하기 위하여 행한 기계도입이나 시설 개수 등의 대처 방안 지원
	생산성이 높은 사료생산에 대처 희망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화 대책 사업 중 초지생산성 향상대책-사료과 초지 정비사업반	농업자집단 등	불안정한 기상에 대응한 위험분산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고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지개량의 대처 방안 지원
		(일반예산) 사료생산기반 이요활용 촉진긴급대책사업 중 초지난방제잡초제거대책 사업-사료과 초지정비사업반	민간단체	난방제잡초제거계획을 책정하여, 계획에 따라 난방제잡초의 제거나 제거대책의 활용·보급 등의 대책 지원
	국산농후 사료의 생산 등에 대처 희망	(일반 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화대책사업 중 국산사료 자원생산이용확대 대책-사료과 사료생산계획반	민간단체 농업자 단체 등	자실용(子實用) 옥수수 등 국산 농후사료의 생산·이용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처 방안 지원
	초지의 정비 등 시행 희망	(일반예산) 농업경쟁력 강화 농지 정비사업 중 초지 축산기반정비사업-사료과 초지정비사업반	도도부현 사업지정 법인	대형기계화체계에 대응한 사료기반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주산지에서의 초지 정비 등에 조성
		(일반예산) 농산어촌지역 정비교부금 중 초지축산기반 정비 사업-사료과초지정비사업반	도도부현 사업지정 법인	지방의 재량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에서의 초지 정비 등에 조성
		(일반예산)	충승현	충승현의 재량에 따라 지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충승(沖繩)진흥공공투자교부금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사료과초지정비사업반	사업지정 법인	역영농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료생산에 관련한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하여 초지 정비 등에 조성
	초지의 정비 등 시행	(용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 채초(採草)방목지를 대 여할 때 필요한 자금, 목야의 개량·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 용자 - 채초방목지의 배수개 량, 토양개량 등의 정비 에 필요한 자금 용자
	남은 음식 등 미이용자원을 사료서 활용하여 사용 희망	(일반예산) 축산생산력·생산체제강 화대책사업 중 국산사료 자원생산 이용 확대대책- 사료과사료이용조정반	농협, 농업자 등이 제휴하여 조직한 단체 민간단체 등	지역의 협의회 등이 미 이용자원을 사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사나 기재의 동비 등 방 안 지원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터 사업- 사료과 사료이용조정반		민간단체	축산클러스터 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 적 경영체가 시행, 에코 피드나 미이용자원의 보 관·가공·급여에 필요 한 시설정비, 기계도입 을 지원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사료과 사료이용조정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	미이용자원의 사료화에 필요한 복수의 축산경영 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정비 지원	
(용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남은 음식을 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정비 등에 필 요한 자금 용자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조사료의 광역유통을 도모 희망	(일반예산) 축산 클러스터 사업-사료과사료생산진흥반	민간단체	- 축산 클러스터계획으로 자금매김한 지역의 중심적 경영체가 시행, 자금사료의 증산이나 품질의 향상 등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정비, 기계 도입 지원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사료과사료생산진흥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	국산조사료의 광역유통 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복수의 축산경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정비 지원
8. 축산물의 생산부터 가옥, 판매까지 시행	축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정비 희망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 수제 종합지원교부금-축산기획과추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 조직 단체 등	생산자가 스스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축산물가공 시설의 정비 지원
		(일반예산) 축산클러스터사업-축산기획과추진반	민간단체	축산 클러스터계획에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적인 경영체에 대하여, 축산물가공, 전시, 판매 시설의 정비 지원
		(ALIC사업) 국산유제품 등 경쟁력 강화대책사업-우유유제품과유업반	유업자	치즈공방 등 치즈를 제조하는 자가 대처 방법, 제조에 관련한 규모 확대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지원
		(재투자금)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식료산업국산업체휴과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주)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6차산업화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출자 등의 지원 실시
		(일반예산) 식료산업·6차산업화교	도도부현 민간단체 등	농림어업자가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하여, 제도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부금 중의 가공·직판 시설 정비-식료산업국 산업제휴과		자금 등 용자를 활용하 여 6차산업에 대처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가 공·판매 시설 등의 정 비를 지원
		(용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농축산물의 수요를 개척 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 축산물의 가공품 등의 조사 및 개발 등에 필요 한 자금 용자
		(재투자금)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식료산업국산업제휴과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주)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 어 6차산업화의 대처에 대하여 출자 등의 지원 실시
		(일반예산) 식료산업·6차산업화교부 금 중 가공·직판의 추진- 료산업국산업제휴과	도도부현 민간단체등	농림어업자가 다양한 사 업자와 제휴하여 행한 신상품개발, 판로 개척 등 지원
	국내판로의 개척, 신상품 개발 등에 대처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우유 유제품과 생유과	민간단체	생유생산자 등이 제조하 는 우유, 유제품의 수요 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 술연수나 판로확대 등의 대처 방법 추진
		(일반예산) 외식산업 등과 제휴하여 축산물의 수요확대대책 사업- 우유유제품과 유업반	민간단체	산지와 외식산업 등과 제휴하여 국산축산물을 활용하여 신상품의 개발 을 위한 개술 개발 등 지원
	국내판로의 개척, 신상품 개발 등에 대처	(ALIC사업) 국산유제품 등 경쟁력 강화대책사업-우유유제품과 유업반	민간단체	국산치즈를 제조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술연수회 의 개최나 해외 연수 참 가, 브랜드화를 위한 국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내 콘테스트의 개최, 국제 콘테스트의 참가 등 지원
9. 유통비용의 삭감, 유업의 합리화, 소비확대 도모	생유의 유통 비용 삭감이나 유업의 합리화 도모	(일반예산) 강한 농업, 담당수제 종합지원교부금-우유유제품과 유업반	유업재편 협의회 등	에어컨 스테이션이나 유업공장의 시설 신증설·폐기,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유업공장의 폐기
		(일반예산) 가공시설재편 등 긴급대책 사업 중 유업공장의 기능강화-우유유제품과유업반	유업자	수입품과의 경합이 적은 품목의 제조 라인의 전환을 지원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우유유제품과생유반	민간단체	생유의 집송유 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대형 탱크로리, 생유검사기구의 도입, 저유시설의 감용화(減容化)·보개수 등 지원
		(융자제도) 농업금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등	유업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우유·유제품의 안정공급, 소비확대 도모	(일반예산) 학교급식용우유 공급추진 사업-우유 유제품과 유업반	유업자, 생산자 등이 구성한 조직	조건불리지역의 학교급식용우유의 공급, 자기 지식의 생유를 사용한 저온살균우유의 학교급식으로 공급, 소중학교 등의 우유음용의 확대 지원
		(ALIC사업) 낙농경영지원종합대책사업-	민간단체	국산우유·유제품의 소비 유지·정착을 도모하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우유유제품과 생유반, 유업반		기 위하여, 소비자·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행한 낙농이해 양성 등 대응 추진
		(일반예산) 국산유제품 등 경쟁력 강화대책사업-우유유제품과 유업반	민간단체	국산치즈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치즈를 일본의 식문화에 접목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치즈의 가치의 PR, 전시에 의한 보급활동의 강화 지원
	신제품 제조 설비 도입	(융자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중소유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자금제도 식용우유공장, 유제품제조시설 드요이 갱신, 개량, 신설,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10. 수출에 대처 방안	자사 또는 자가에서 제조한 우유·유제품을 수출할 때 바이어 등과의 관계 희망	(일반예산) 해외 수요확대·상류(商流)구축에 대처 강화-식료산업국수출촉진과	JETRO등	사업자 등이 수출에 관한 상담이나 견본을 시에 출전 등을 할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에서 지원받음
		(일반예산) 글로벌산지마다 긴급대책 중 축산물수출산지 긴급대책-우유유제품과 유업반	민간단체	수출국에서 수출에 관련한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해금국(解禁国)·지역 등의 마켓 조사, 과제해결을 위한 검토회 등을 지원
	우유·유제품의 해외시장의 개척 희망	(일반예산) 글로벌산지마다 긴급대책 중 축산물 수출산지 긴급대책-우유 유제품과	민간단체	수출국에서의 수출에 관련한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해금국·지역 등의 시장조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유업반		사, 과제해결을 위한 검토회 등을 지원
		(재투자금)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식료산업국 산업제휴과	(주)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	농림어업자에 의한 수출이나 식품사업자에 의한 수출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에 대하여 출자 등의 지원 실시
		(일반예산) 식료산업·6차산업화교부금 중의 가공, 직판의 추진-식료산업국 산업제휴과	도도부현, 시정촌, 민간단체 등	농림어업자가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하여 행한 신상품개발·관료개혁 등을 지원
11. GAP에 대처	축산 GAP의 인증 취득 희망	(일반예산) 지속적 생산강화 대책사업 중 축산 GAP확대추진 가속화-축산진흥과 가축개량센터 조저안	민간단체 등	축산생산자에 의한 GAP 인증 취득 등의 대처 지원
12.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자금 등을 활용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	(융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일본정책 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시설 등의 취득, 개량, 조성, 가축의 구입,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안정적 경영을 위한 단기운전 자금 차입	(융자제도)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스ーパ- S 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농업경영개선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사료대, 소축대 등)을 융자
	이미 다른 축종을 사육하지만, 새로이 낙농경영에 대처 희망	(융자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새로운 낙농경영에 대처를 위하여, 농지나 시설의 개량, 취득, 조성, 가축의 구입,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새로운	(융자제도)	일본정책	비용의 삭감에 이바지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생산방식, 내지 새로운 가공사업에 대처 희망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금융공고 등	하기 위한 선구적인 기술이나 스스로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 융자
	매상이 감소하여 긴급적인 운전자금 차입	(용자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
부채의 차환(借換)	(ALIC사업) 축산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중 대가축·앵돈특별지원 자금-축산기획과 금융·세제반	(공사)중앙 축산회,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		상환이 곤란한 부채의 차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통
	(용자제도) 농업경영부담경감지원자금이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부채의 상환의 곤란하게 된 농업자에 대하여 그 상환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의하여 악화된 경영을 개선 희망·한 번 경영을 중지한 후 재개를 위한 자금 차용	(ALIC사업) 축산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중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	(공사)중앙 축산회,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		BSE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경영에 대하여 저리자금을 융통
	(용자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재해 등의 발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자에 대하여 저리자금을 융자
ABL(동산 담보유자)의 도입을 위한	(ALIC사업) 축산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중 축산동산담보유자	민간단체		ABL(동산담보유자)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토회의 개최나 과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추진체계 구축	도입추진사업-축산기획과 금융·세제반		제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을 지원함과 더불어 ABL추진체제의 모델 실증을 지원
13. 환경대책에 대한 대처 희망	가축배설물의 처리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계·시설을 정비	(일반예산)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중의 축산환경종합정비사업-사료과 초지정비사업반	도도부현 사업지정 법인	지방의 재량에 따른 지역영농의 계속에 필요한 가축배설물처리에 관련한 대처방안 지원을 위하여 초지의 조성정비와 더불어 행한 가축배설물 토지환원시설 등의 정비 조성
		(일반예산) 충승진흥공공투자교부금 중의 축산환경 종합정비 사업-사료가 초지정비 사업반	충승현 사업지정 법인	충승현의 재량에 의하여 지역영농의 계속에 필요한 가축배설물처리에 관련한 대처 방안의 지원을 위하여 초지의 조성정비와 더불어 행한 가축배설물 토지환원시설 등의 정비 조성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수제 종합지원교부금 중의 산지기간시설 등의 지원 형태-축산진흥과 환경보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 조직 단체 등	지역농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부과한 농업법인이나 농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산지의 수익력 강화와 담당자의 경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용기계·시설의 도입 지원
	퇴비사(堆肥舎) 등의 보수	(ALIC사업) 퇴비사 등 장수명화(長壽命化) 추진사업-축산진흥과 환경보전반	민간단체 생산단체 등	퇴비사 등 경년 열화의 실태조사, 장수명화를 위한 보수의 실증이나 보수 매뉴얼의 작성 지원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출산주변 환경의 개선	(일반예산) 강한 농업·담당수제 중등바지원교부금-축산진 흥과환경보전반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	축산에 기인한 배수나 악 취에 의한 주변환경의 영 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화처리시설이나 탈취시설의 정비 조성
		(융자제도) 농업든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협계통 금융기관 등 일본정책 금융공고 등	정화처리시설 등 정비에 필요한 자금 융자
14 위생대책에 대처 방안	소의 백혈병의 감염확대방지 대책	(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위생대책사업- 소비·안전동물위생과 방역업무반	공모단체 등	소의 백혈병의 발생 능 장 등에서의 자주검사나 고 위험 소의 등태, 공 동방목장에서 자주검사 및 흡혈곤충의 구제 대 책 등 조성
	요네병 (Johne病)의 청정화에 대처	(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위생 대책사업-소비·안전동물 위생과 방역업무반	공모단체 등	- 요네병의 자주검사 및 검사육성 소의 자주 등 태의 추진을 조성 - 요네병 방역을 추진하 기 위하여 강습회의 개 최 지원
	소의 바이러스성 설사·점막 병의 청정화에 대처	(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 위생대책 사업-소비·안전국동물위생 과 방역업무반	공모단체 등	- 지속감염소의 적발에 필요한 검사, 지속 감염 소의 등태, 백신의 접종 조성 - 본병의 방역대책을 추 진하기 위한 강습회 개 최 조성
	사육위생 관리의 향상 대처	소비·안전국동물위생과 방역업무반(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 위생대책사업-	공모단체 등	사육위생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의 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위생지도를 받은 경우의 비용 조성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농장에서 발생하는 만성질병 등의 청정화·발생 예방 대처	(일반예산) 소비·안전대책 교부금 (펀드)-소비·안전국동물위생과 방역업무반	도도부현 등	- 지역 실정에 따른 질병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매뉴얼에 준거한 강습회, 위생검사, 농장에서의 모델적인 대응 등을 지원 - 만성질병 청정화의 모델적인 대응 지원 - 농장에서의 HACCP의 보급·정착을 지원 - 야생동물의 침입방지 대책이나 소독 등 농장 바이오 보안의 향상에 임하는 지역의 자재(방조넷, 소독장치 등)의 정비를 지원
		(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위생대책사업	공모단체 등	관계자 일체로 되는 구성에서 지역 카르텔·농장카르텔의 작성, 관리, 의사에 의한 위생관리지도 등 지원
	흡혈곤충이 매개하는 질병 등 발생 예방	(일반예산) 가축위생 종합대책 중의 가축생산농장위생대책사업-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보건위생반	공모단체 등	대상질병발생지역에서 조직적인 백신 접종에 대한 조성
	만약의 구제역에 대한 대비	(ALIC사업)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사업-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보건위생반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	생산자 스스로 적립을 하고, 전염성질병(구제역, 우역, 우폐역)의 발생시에 경영재개까지 필요한 경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조직 조성
	지역의	(일반예산)	도도부현,	올아웃(all out) 등에 의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가축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축사 정비	강한 농가·담당 수제 종합지원 교부금-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보건위생반, - 축산기획과추진반	시정촌, 농업자 조직 단체 등	한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축사 정비 조성합
15. 재해 대비	정전시에 대비하여 비상용 전원을 정비	(ALIC사업) 축산경영 재해 종합대책 긴급지원사업 중 낙농 경영 재해긴급 지원대책 사업-우유유제품과 생유반	민간단체	정전시에 도 착유를 계속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비상용 전원의 정비 등 지원
16.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 도모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 등에서 가축 개량체제를 재구축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농업생산 대책교부금-축산진흥과 가축개량추진반	생산자집단, 농협 등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의 피해를 당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자집단 등에 의한 고능력의 번식용 소의 도입, 고능력 소의 수정란의 도입 지원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당한 지역에서의 초지의 생산력 회복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농업생산 대책교부금-사료과 초지정비계획조정반	생산자단체, 농협, 공공목장 등	- 피해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초지의 생산성의 회복을 위한 이하의 대응을 지원 ① 번중식, 수확기 드이 사료생산기계의 리스 도입이나 벵갈 사이로, 사료보관고, TMR센터 등의 시설, 방목지나 목장 등의 방목관련시설의 수리 및 재정비 ② 초지생산성향상 대책, TMR센터나 유사시의 사료의 안정공급에 기여할 광역유통거점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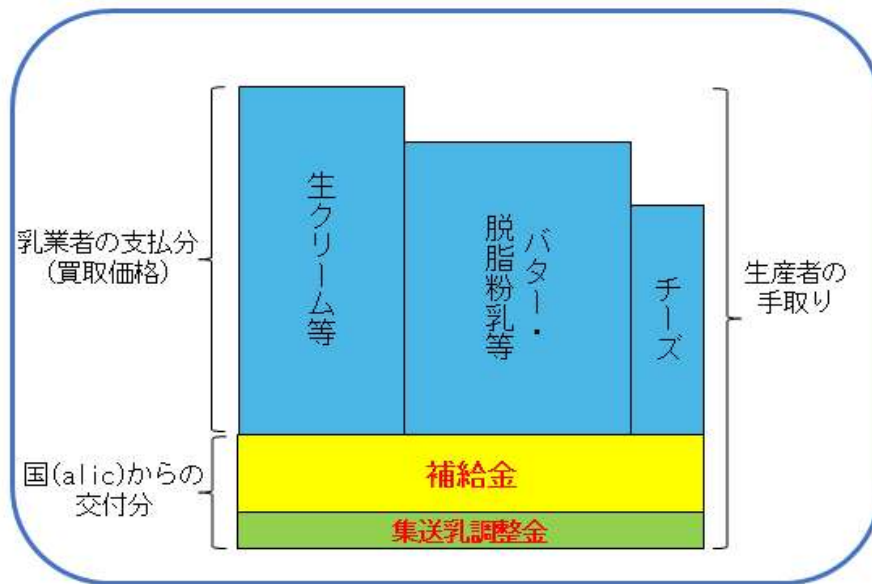
지원 희망 사항	구체적 내용	대응하는 사업 등	실시주체 또는 창구	사업 등 특징
				③ 목초의 품종·품목전환이나 반전경·심경 등의 방사성물질의 흡수억제대책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를 당한 지역에서 초지의 조성, 정비 등 시행	(특별회계) 농산어촌지역 부흥 기반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사료과초지정비사업반	특정도도현, 사업지정 법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구역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농의 계속에 필요한 사료생산에 관련한 조직 지원을 위하여 초지의 정비, 초지의 이용 등에 필요한 시설 정비 조성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당한 지역에서 가축배설물의 처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계·시설 등 정비	(특별회계) 농산어촌지역 부흥 기반 종합정비사업 중 축산환경 종합정비사업 - 사료과 초지정비사업반	특별도도현, 사업지정 법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구역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역 영농의 계속에 필요한 가축배설물 처리에 관련한 조직 지원을 위하여 초지의 정비, 초지의 이용 등에 필요한 시설 정비 조성
<p>* 이 외에도 북해도 단진(胆振) 동부지진이나 태풍의 재해의 복구·부흥에 관련하여 농림수산성 자료 참조</p> <p>* ALIC사업은 (독)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실시하는 「경영안정대책」 및 「축산업진흥사업」을 말한다.</p> <p>* 용자제도는 축산기획과 금융세제반 이외에서 담당</p>				

(2) 각종 축산 경영 안정 대책

- 가공원료류 생산자보조금제도

본 사업의 목적은 향후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는 유제품에 생유를 주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 수급 상황에 따른 유제품의 안정 공급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공 원료유에 대해 생산자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다. 또한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집송유 조정금을 교부함으로써, 생유의 수급의 안정이나 낙농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보조금의 구조는 가공 원료유로서 대상 용도로 만든 생유의 실적 수량에 따라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등이 지급된다. 또한 집유를 거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지정사업자”로서 지정되어 가공으로 만든 양에 따라 집송유 조정금이 교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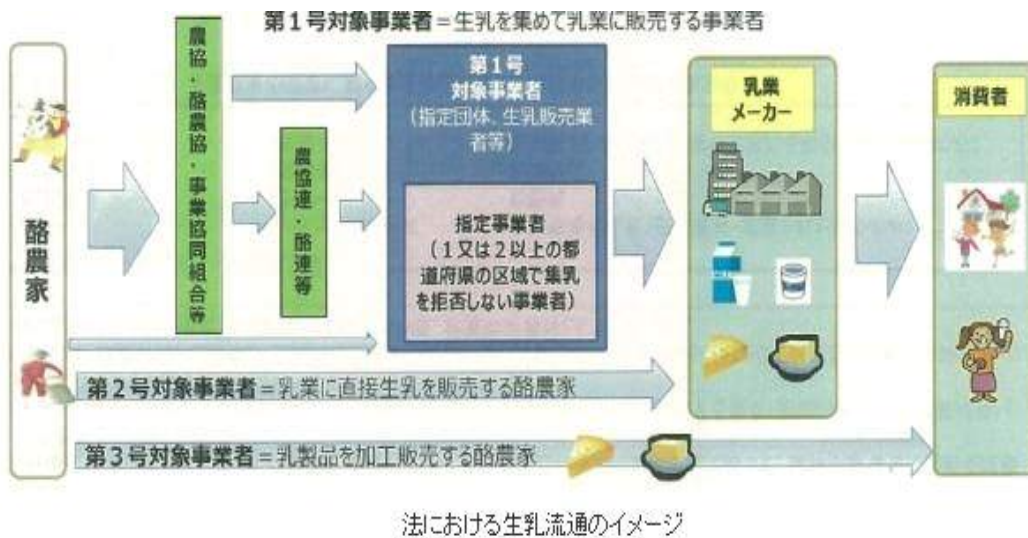
교부대상의 유제품은 다음과 같다.

- 【対象となる乳製品 = 特定乳製品】
- ・バター
 - ・脱脂粉乳
 - ・全脂加糖れん乳
 - ・脱脂加糖れん乳
 - ・ナチュラルチーズ
 - ・クリーム
 - ・濃縮乳
 - ・脱脂濃縮乳
 - ・全脂無糖れん乳(缶に密封・滅菌されたもののみ)
 - ・全粉乳
 - ・加糖粉乳
 - ・脱脂乳(子牛(ほ)育用。省令で定める取引方法のもののみ)

대상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 대상사업자로 구분된다.

제1호대상사업자 : 지정단체, 생유판매업자 등, 생유를 모아 유업에 판매하는 사업자
 제2호대상사업자 : 유업에 직접생유를 판매하는 낙농가
 제3호대상사업자 : 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낙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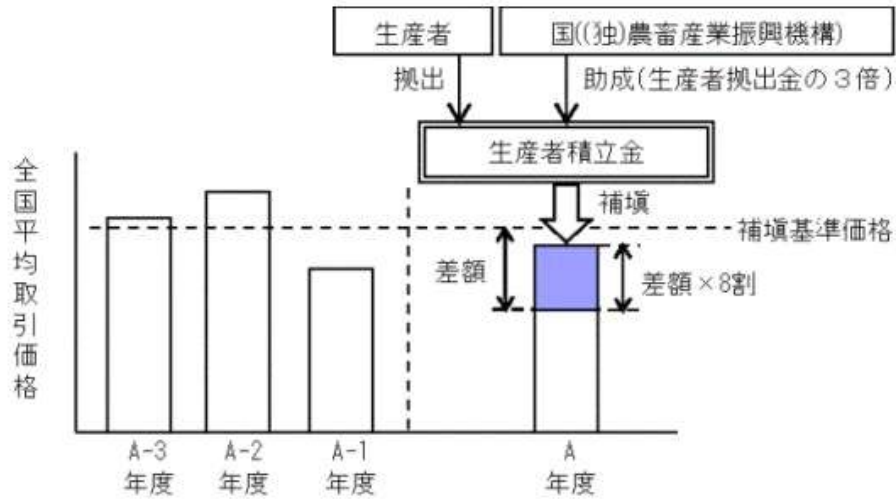
법에 근거한 생유유통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가공 원료유 가격이 수급 변동 등에 의해 하락했을 경우에, 생산자의 거출과 국가의 조성금에 의한 생산자 적립금에 의해 그 일정 부분을 보전하고,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제도와 일체가 되어 낙농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지고 생유의 재생산 확보 및 우유 유제품의 안정 공급에 이바지함에 있다.

사업의 구조로는 가공 원료유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과거 3년간의 평균 거래 가격)을 밑돌았을 경우에, 생산자에 보전금(차액의 8할)을 교부한다.



(図)加工原料乳生産者経営安定対策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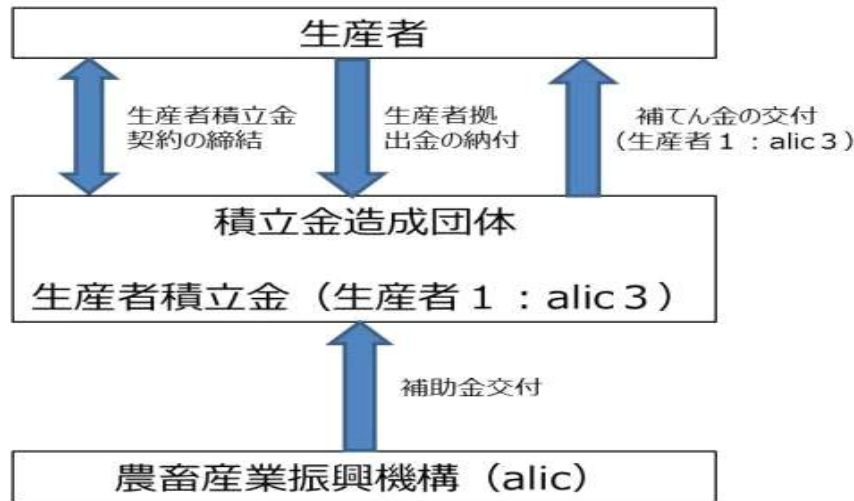
대상자는 ① 제1호 대상 사업자(농협·농협연이나 매수판매업자 등)을 통해서 생유를 유업자에게 판매하는 낙농가, ② 스스로 생산한 생유를 유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낙농가(제2호 대상 사업자), ③ 스스로 생산한 생유를 스스로 유제품으로 가공 판매(자가 제조 위탁 제조)낙농가(제3호 대상 사업자)이다.

사업 대상 기간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도중 참가는 원칙적으로 신규취농인 종사자에 한정)

사업의 절차와 방법은 생유의 거래 형태에 따라, 단체 방식과 직접 교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먼저, 단체 방식이란 제1호 대상 사업자(적립금 마련 단체)를 통해서 유업자에게 판매하는 낙농가 종사자 전용의 방식이다. 출하처의 적립금 조성 단체와 생산자 적립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무 절차는 적립금 조성 단체와 실시한다.

団体方式
(積立金造成団体に出荷する者)



※ 적립금 조성 단체인 호쿠렌 농업협동조합연합회(ホクレン農業協同組合連合会), 동북 생유 판매 농업협동조합 연합회(東北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관동 생유판매 농업협동조합 연합회(関東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북륙낙농업 협동조합 연합회(北陸酪農業協同組合連合会), 동해 낙농업 협동조합 연합회(東海酪農業協同組合連合会), 근기 생유 판매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近畿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중국 생유 판매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中国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사국생유판매농업 협동조합 연합회(四国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구주생유판매농업 협동조합 연합회(九州生乳販売農業協同組合連合会), 충승현 낙농농업 협동조합(沖縄県酪農農業協同組合), 이사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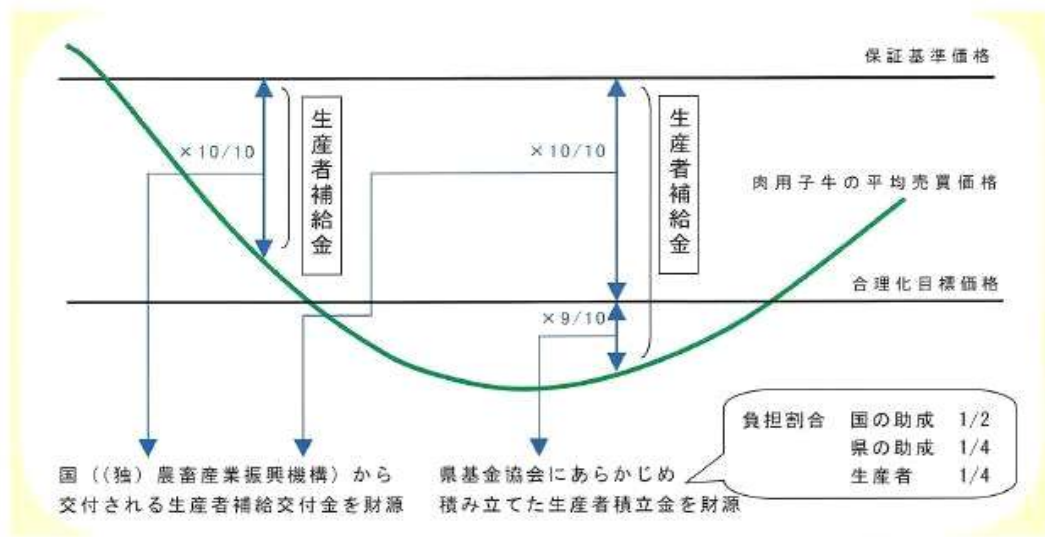
다음으로 직접 교부 방식이란 이하의 어느 한 종사자가 직접 기구에 신청하여 기구와 사무 수속을 행한다. 이하의 종사자라 함은 ① 적립금 조성 단체 이외의 제1호 대상 사업자를 통해서 생유를 유업자에게 판매하는 낙농가, ② 스스로 생산한 생유를 유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낙농가(제2호 대상 사업자), ③ 스스로 생산한 생유를 스스로 유제품으로 가공 판매(자가 제조 위탁 제조)하는 낙농가(제3호 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서류의 송부나 각출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생산자 종사자나 기구가 직접 하여야 한다.18)

18) 서류의 작성 사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조금 제도

본 제도의 목적은 육용 송아지의 가격이 떨어져 보증기준 가격을 밑돌았을 경우에 생산자에 대해 생산자 보조금을 교부하고, 육용 송아지의 생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구조를 보면, 생산자 보조금은 육용 송아지의 평균 매매가격(품종별·분기마다)이 농림수산대신이 매년도 결정하는 보증기준 가격을 하회하였을 때 교부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마다 농림수산대신이 고시하는 육용 송아지의 평균 매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육용 송아지를 판매 또는 자가보유하고 있으면 생산자 보조금이 교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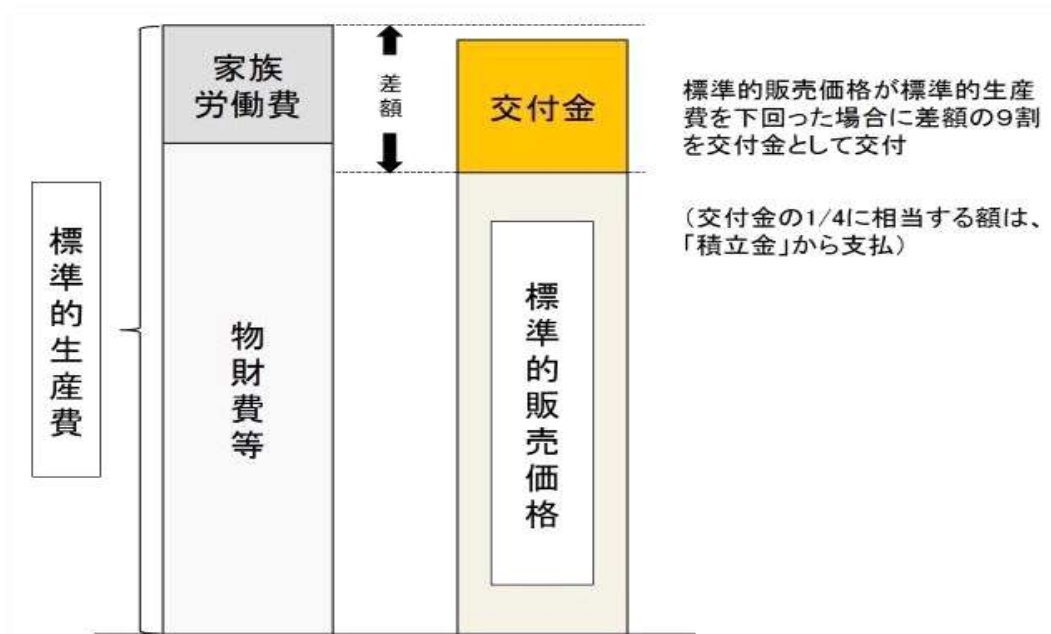
(図)肉用子牛生産者補給金制度

본 제도의 대상자는 육용 송아지의 생산자이며, 제도 가입과 보조금의 교부까지의 사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자가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여러 수속이 사무 위탁처를 통해 지정협회(도부현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기금협회)와의 사이에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절차란 ① 제도 가입, ② 개체 등록, ③ 부담금의 납부, ④ 판매·보유의 확인, ⑤ 보조금의 교부의 순이다.

- 육용우 비육(肥育)경영안정교부금제도

이 제도는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표준적 판매 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였을 경우에, 육용우의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9할을 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육용우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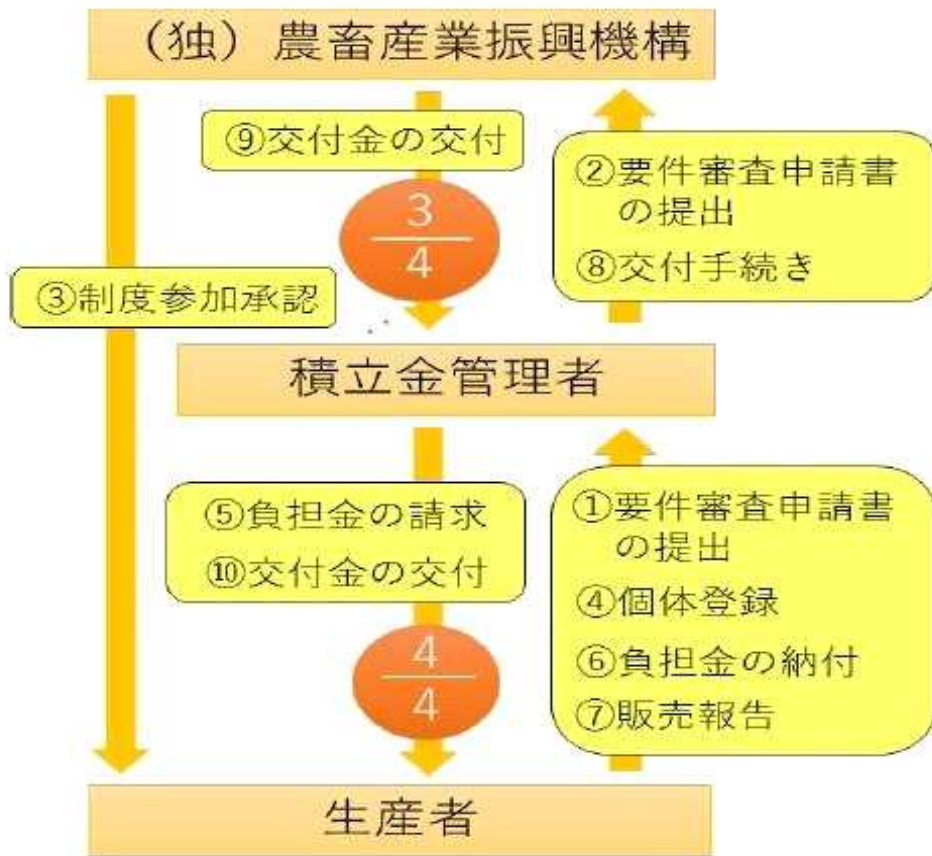
이 제도의 구조는 매월 표준적 판매 가격(총 수익)과 표준적 생산비(생산 비용)를 산출하고, 만약 표준적 판매 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의 9할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부금의 액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용우 생산자가 적립금 관리자 또는 기구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적립된 “적립금”에서 “적립금으로 받는 금액”로 지급되고, 나머지 3/4에 상당하는 액수(국비)은 “교부금으로 지급액”으로 기구가 지불한다.



(図)肉用牛肥育経営安定交付金制度(牛マルキン)

생산자의 주요 요건으로는 육용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육용우의 비육을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나. 다만, 자본금의 액수가 3억엔을 넘고,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는 회사, 폭력단원 등 축산 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등은 제외된다.

업무의 대상 연한은 3년간이다. 다만, 최초 업무대상연한이 2018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육용우의 생산자는 업무 대상 연간의 첫 해(주)에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완료 후 “등록 생산자”로 등록된다. 다만, 신규 참가자는 업무 대상 연한의 도중이라도 위의 요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부담금 납부와 교부금의 교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립금 관리자 방식과 직접 교부 방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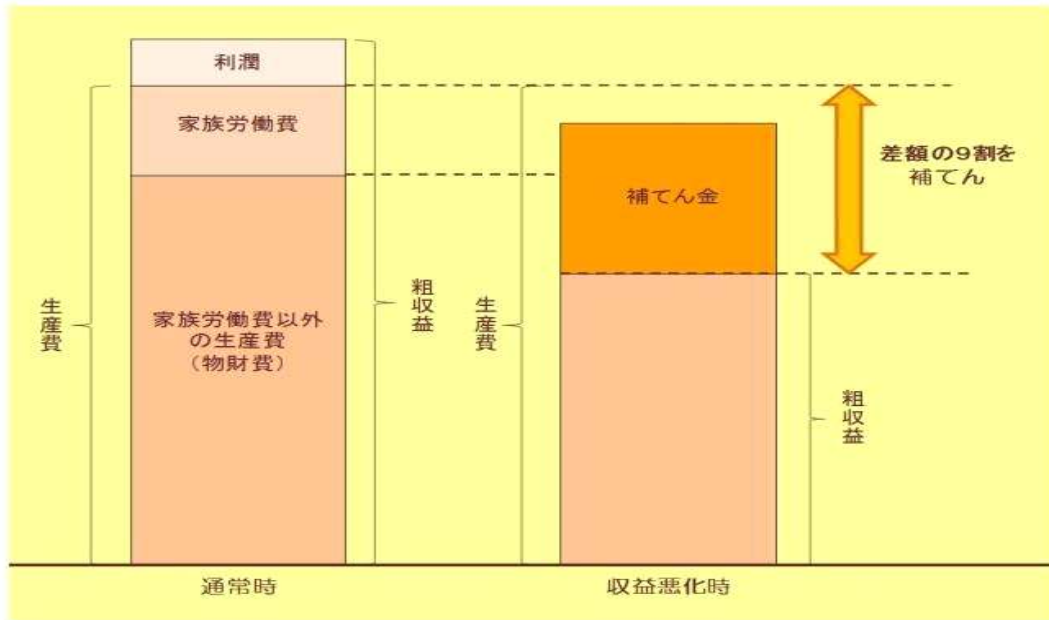


-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이 특별대책사업은 육용우의 비육 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에, 생산자의 출연과 기구의 보조에 의한 조성한 기금에서 대략 수익과 생산비와의 차액 9할¹⁹⁾을 보전함으로써

19) 송아지 가격 급등으로 육용우 비육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8년도 조치로 보전율을 8할에서 9할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써 육용우. 비육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용우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출연과 기구의 보조(생산자:기구=1:3)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며, 원칙적으로 분기(당분간은 월마다)의 비육우 1마리당 평균 매출 총 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하회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분의 9할이 보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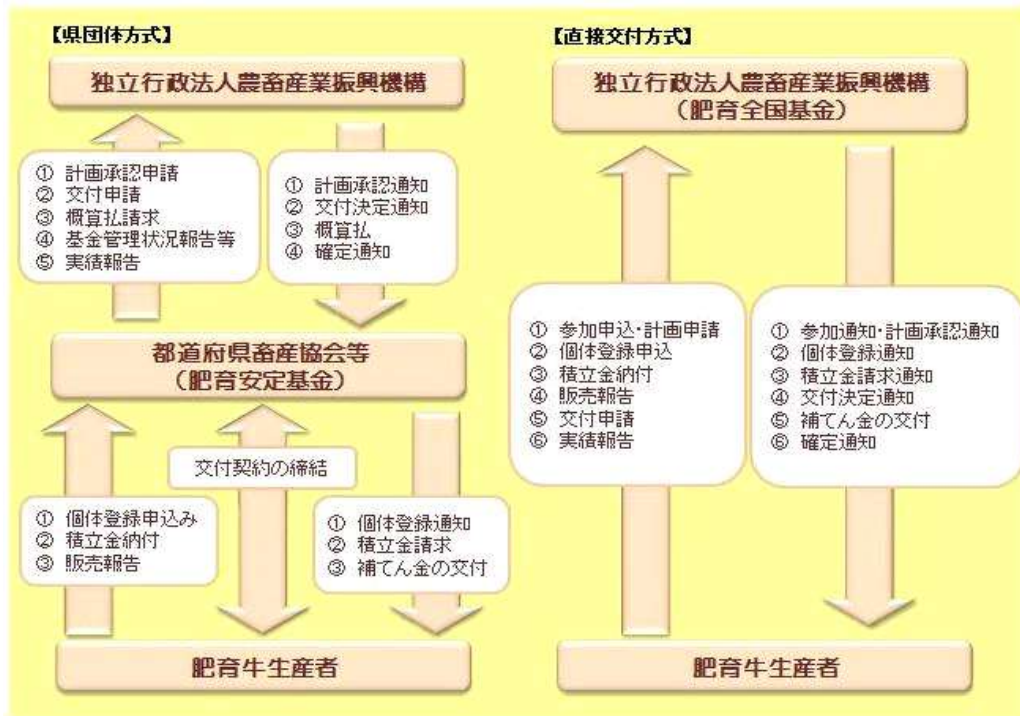


〈图1〉肉用牛肥育経営安定特別対策事業

사업 대상자는 ① 도도부현을 범위로 하는 민간단체, ② 비육우 생산자이다. 다만, 자본금 3억엔을 넘고 종업원 300명을 넘어선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원칙으로서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에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비육우는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① 만 17개월령 이상일 것, ② 적립금이 납부되었을 것, ③ 대체로 10개월 이상 연속한 기간 비육된 것일 것, ④ 번식 또는 착유용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 ⑤ 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이사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상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업의 절차와 방법으로는 현 단체 방식과 직접 교부 방식의 2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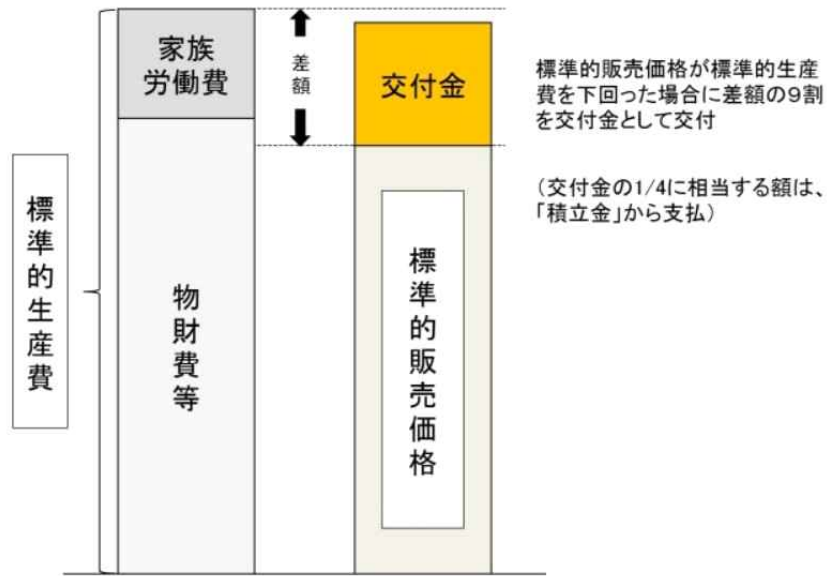


(図2)肉用牛肥育経営安定対策事業の手続

- 육돈경영안정교부금제도

이 제도는 축산 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표준적 판매 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였을 경우에, 육돈의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9할을 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육돈의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분기마다 표준적 판매 가격(총 수익)과 표준적 생산비(생산 비용)를 산출, 만약 표준적 판매 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할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부금의 액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돈의 생산자가 기구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적립된 “적립금”에서 “적립금으로 받는 금액”로 지급되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액수(국비)은 “교부금으로 지급액”으로 기구가 지불한다. 만약 분기 종료시에 산출하여, 해당 분기에 교부금의 교부가 없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있어 다음 분기에 통산하여 산출합니다.



(図1)肉豚経営安定交付金制度(豚マルキン)

(참고)

○ 표준 판매가격 주산물 가격과 부산물가액 합산

· 주산물 가격

농림수산성에서 거래 가격이 공표된 25개 시장에서 평가된 돼지고기(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것을 제외)의 평균지육가격(엔화/kg)에 평균지육중량을 곱해서 얻은 액수

· 부산 물가액

농림수산성의 “비육돼지 생산비”의 “부산물가액(사고축(事故畜), 판매된 아기돼지, 번식암돼지, 종수돼지 및 구비)”의 액수(내장·원피 값은 포함하지 않음)

○ 표준 생산비 ⇒사료비, 노무비, 기타 비용 및 축과 관련된 경비의 합계

사료비, 노무비, 기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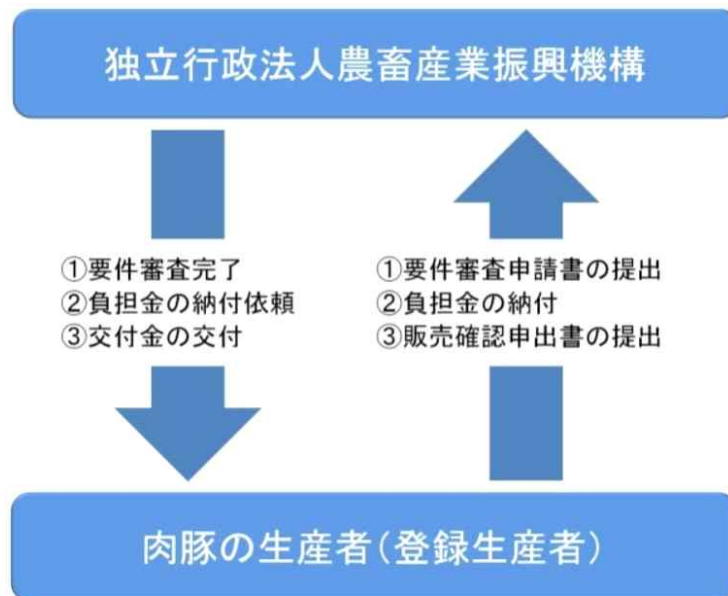
농림수산성의 “비육 돼지 생산비”의 “비용 합계(물재비(物財費)(사료비, 광열 수도비,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등) 및 노동비)”, “지급 이자” 및 “지불 지대”의 금액(비용 합계의 비목(費目) 중에 농림수산성의 “농업 물가 지수”의 조사 대상이 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비육 기간(7개월)의 가격에 물가 조정)

○ 도축에 관계된 경비

25개 시장의 도축과 관련한 경비(도축 검사 수수료와 축산 해체료, 도축장 사용료, 냉장고 보관료(1일분 상당) 및 등급료)를 각 시장에서의 보통 이상으로 설정된 돼지고기의 총 거래 인원수에서 가중 평균해서 얻은 액수

생산자의 주요 요건으로는 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육돈의 비육을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액수가 3억엔을 넘고,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는 회사, 폭력단원 등 축산 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등은 제외된다.

업무대상연한은 3년간이며, 첫 번째 업무 대상 연한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육돈 생산자는 업무 대상 연간의 초년도²⁰⁾에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 심사는 육돈 생산자가 직접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육돈 생산자는 “등록 생산자”로서 등록된다. 서류의 송부나 부담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생산자”와 기구가 직접 주고받는다. 다만, 서류의 작성 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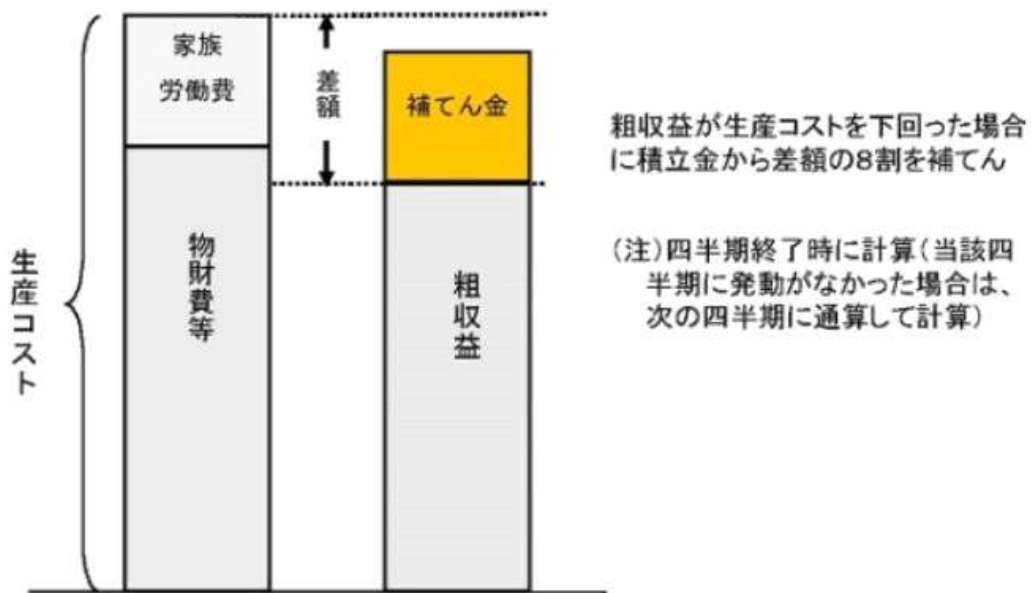
(圖2)肉豚經營安定交付金制度の手續書

20) 신규진입은 업무대상연한 도중에라도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육돈경영안정화대책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양돈 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조(粗)수익과 생산코스트의 차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양돈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업의 구조는 분기마다 매출 총수익과 생산 비용을 계산(注), 평균 매출 총수익이 평균 생산비용을 하회하였을 경우에, 생산자와 기구의 적립금(적립 비율은 생산자 : 기구=1:1)에서 그 차액의 8할을 보전금으로 교부한다.



(図1)養豚経営安定対策事業

(참고)

○ 평균 조수익 ※ ⇒ 주산물 가격과 부산물가액 합계

· 주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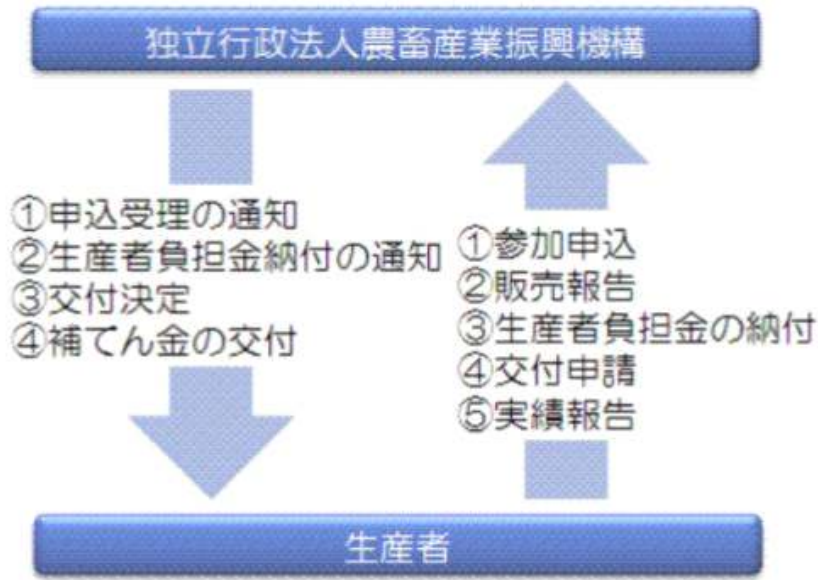
28개 시장(10개의 중앙도매시장+18개의 지정 시장)의 보통 이상의 평균지육(枝肉)가격(엔화/kg)에 보통 이상의 평균지육중량을 곱해서 얻은 액수

<p>· 부산 물가액</p> <p>농림수산성의 “비육돼지 생산비 조사”의 “부산물가액(판매된 구비, 새끼돼지, 번식암돼지, 종수돼지 등)”의 액수.</p> <p>※ 내장·원피 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p> <p>○ 평균 생산비용 ⇒ 물재비 등 노동비와 축경비 합계</p> <p>· 물재비(物財費) 등 노동비</p> <p>농림수산성의 비육돼지 생산비 조사의 합계비용 합계(물재비(사료비, 광열수도비,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등) ※ 및 노동비), 지불이자 및 “지불지대” 금액</p> <p>※ 비용 합계의 비목의 가운데 농림수산성 “농업 물가 지수”의 조사 대상이 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비육 기간(7개월)의 가격에 물가 조정</p> <p>· 도축 경비</p> <p>28개 시장의 도축 경비(도축 검사 수수료와 축산 해체료, 도축장 사용료, 냉장고 보관료(1일분 상당) 및 등급료)를 각 시장에서의 보통 이상으로 설정된 돼지고기의 총 거래 인원 수에서 가중 평균해서 얻은 액수</p>
--

사업 대상자는 양돈사업자(경축(耕畜) 제휴, 에코 피드 활용 등의 대응에 노력하려는 자)이다. 다만, 자본금 3억엔을 넘고 종업원 300명을 넘어선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에 계속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실시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판매한 사업 대상 육돈에 대한 양돈 보전금의 교부가 완료될 때까지(중도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새로 양돈 경영에 참가한 자에 한한다)이다.

사업관련 서류는 양돈사업자가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부나 적립금(생산자 부담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와 기구가 직접 주고받는다. 물론 서류의 작성 사무 등은 위탁이 가능하다.



(図2) 養豚経営安定対策手続

(3) 축산관계 용자제도

-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용자제도

분류	민간금융기관 (은행, 신용금고 등) (농업근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 충승진흥개발금융공고
장기운전자금	○	○ (농림어업안전망 자금, 슈퍼-L 자금, 농업개량자금)
시설·기계의 정비	○	○ (농림어업시설자금, 슈퍼-L 자금, 경영체육성장화자금, 농업개량자금)
가축의 도입	○	○ (슈퍼-L자금, 경영체육성장화 자금 농업개량자금)
분뇨처리시설	○	○ (농림어업시설자금, 슈퍼-L 자금, 경영체육성장화자금, 농업개량자금, 축산경영환경조화 추진자금)

분류	민간금융기관 (은행, 신용금고 등) (농업근대화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 충승진흥개발금융공고
초지의 개량·조성	○ (사업비 1,800엔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	○ (슈퍼-L자금, 경영체육성장화자금, 농업개량자금, 농업기반조성자금)
초지이용에 관련 농업용 시설	○	○ (슈퍼-L자금, 경영체육성장화자금, 농업개량자금)
<p>참고</p> <p>주: 어떤 자금이라도 상환 연수는 거치연수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각 자금은 우측에 기재한 금리나 상환(거치 3년 이내)년수 이외에도 차입요건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농업자 : 상환 15년 이내 거치 7년 이내, 금리 0.20-0.25% - 인정농업자 이외 : 상환 1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금리 0.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L자금: 상환 25년 이내, 거치 10년 이내, 금리 0.20-0.30% - 농림 어업 안전망 자금: 상환 10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금리 0.20% - 농업체육성장화자금 : 상환 25년 내, 거치 3년 이내, 무이자 - 농업개량자금(※※) : 상환 12년 이내, 거치 3-5년 이내 무이자 - 농업기반정비자금(재해복구) : 상환 25년 이내, 거치 10년 이내 0.20-0.30% - 농림어업시설자금(재해복구) : 상환 20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금리 0.20-0.30% -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 상환 20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금리 0.30% <p>* “사람·농지 플랜”에 중심 경영체 등으로 자리매김한 농부들이 차입할 경우에는 당초 5년간 실질 무이자로 대부 가능</p> <p>**- 대부대상에 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사용처는 농업 개량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대출 자격-농업개량조치-은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

- 농업근대화자금

- 이용대상으로는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업자,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을 넘거나 농업조수익이 200만엔 이상인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자, 상기 농업자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자(배우자, 후계자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임의단체이다.
- 자금의 종류

종류	내용
건구축물 등 조성 자금	축사, 과수원 시설, 농기구 기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조성, 복구 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농지 또는 목야의 개량, 조성, 복구 또는 취득에 필요한 것 제외) (다만, 인정농업자 이외의 자들은 복구에 필요한 자금 이용 불가)
과수 등 식재 육성 자금	과수 기타 영년성 식물을 재배하고 또는 육성에 필요한 자금 혹은 농업인 이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은 과수, 올리브, 차, 다년생 초본, 뽕나무 또는 화목의 식재 또는 육서에 필요한 자금을 한정
가축구입 육성자금	우유 기타 가축의 구입 또는 육성에 필요한 자금
소토지 개량 자금	사업비 1,800만엔을 넘지 않는 규모의 농지 또는 목야의 개량, 조성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금. 또는 인정농업자 이외의 자는 복구에 필요한 자금 이용 불가
장기 운전 자금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 생산방식의 합리화, 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업종사의 태양의 개선 기타 농업경영의 개선의 수반에 필요한 자금 * 이용목적은 인정농업자 외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존재
대신 특인 자금	- 상기 자금 외에 농림수산상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자금 - 농촌에서의 급배수시설 개량, 조성 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 특정 농가주택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 논을 이용한 수산 동물 양식시설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 차입한도액 및 용자비율

개인 1,800만엔(지사특인 2억엔), 법인(임의단체 포함) 2억엔이다. 다만, 인정농업자 관련 대출 이율의 특례를 받은 한도금액은 개인 1,800만엔, 법인(임의단체 포함) 3,600만엔이다.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용자비율은 인정농업자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당해 보조금의 액을 공제한 액), 기타 담당 수제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80%(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당해 보조금의 액을 공제한 액의 80%)이다. 차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정농업자	원칙 차입기간 15년 이내/ 이 중 거치기간은 7년 이내
인정농업자 이외의 농업자	원칙 차입기간 15년 이내/ 이 중 거치기간은 3년 이내
인정 신규 취농자가 인정청년 등 취농 계획에 따라 취농하는 경우	원칙 차입기간 17년 이내/ 이 중 거치기간은 5년 이내

-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등21)

농림생산관계	농업기반정비자금, 경영체 육성강화 자금, 농업경영기반 강화 자금(슈퍼-L자금), 청년 등 취농자금, 농업개량자금, 축산경영환경 조화 추진자금, 진흥산촌·과소지역 경영개선 자금, 농림어업시설자금
농산물가공·유통관계	신규용도사업 등 자금, 중산간지역 활성화자금, 특정농산가공자금, 식품산업품질관리고도화추진자금, 농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농업경영개선추진자금	농업경영개선 추진자금(슈퍼-s자금)

- 기타 용자제도

부채정리자금	농업경영부담경감지원자금, 대가축 특례지원 자금(경영개선자금, 경영계속자금), 양돈 특별지원자금(경영개선자금, 경영계속자금)
상환부담경감대책	축산경영체질 강화 지원 자금

21) http://www.maff.go.jp/j/chikusan/kikaku/lin/1_zigy/attach/pdf/index-95.pdf.

(4) 축산의 질병 방지를 위한 대책(축산위생 및 축산 감염병에 대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돼지 콜레라는 돼지나 멧돼지 질병이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가령,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나 내장을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염 돼지고기가 시장에 나도는 일도 없습니다.

[축산농가 여러분께]

돼지콜레라는 돼지나 멧돼지에게 강한 전염력이 그 특징입니다.

축산농가는 사육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동시에 조기 발견을 위해 매일 확실하게 관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 가축방역대책요강

동 요강은 2009년 4월 12일 11측 A 제46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통탈로 제정된 것이며, 2018년 4월 2일 29소안 제6794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장 통지로 최종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대책의 기본적 방향

- 방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하여

일본의 축산은 근년 급속히 경영규모의 확대가 진전되어 가축·축산물의 유통량이 증대되어 광역적으로 유통되게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번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그 피해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역의 자유화가 진전되어, 해외의 가축·축산물의 유통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등의 월경성 동물 질병의 침입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동안 돼지 유행성 설사 등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질병(재흥 감염증(再興感染症))을 볼 수 있는 것 외에 동물 유래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감염증 등(동물 유래 감염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염성 해면상 뇌증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그 뒤 유럽으로 퍼지고, 2001년에는 일본에도 그 발생이 확인되어 축산 농가를 포함한 육류 업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신흥 감염증)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전대응형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방역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요강

은 이러한 정세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시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대책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방역대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 사전 대응형 방역체제 구축

최근 국내·외에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의한 발생 상황으로 볼 때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이후 방역조치를 강구하는 지금까지의 대응으로는 피해 확대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19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함) 제5조에 규정하는 발생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체제의 정비,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이하 “예방 사업”이라 함)의 계획적인 실시, 자위 방역의 적극적인 추진 등의 대응을 통해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의 미연 방지에 중점을 둔 사전 대응형의 방역 체제 구축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 위기관리 관점에 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한번 발생했을 경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만연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방역추진체제를 정비하고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상정한 방역연습 실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체가 불분명하며, 발생했을 경우의 감염력, 증상의 중독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항상 해외의 질병 발생 정보의 수집, 제공에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은 신속하게 나라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는 신속하게 조사를 위한 팀 편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국가 및 도도부현이 해야 할 역할

국가 및 도도부현(이하 “현”이라 한다.)은 가축방역 실시에 있어서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 및 만연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올바른 지식의 보급,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및 공표, 연구의 추진,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및 확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제 정비 등의 전염성 질병 대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축의 사육자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의한 손모방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자 스스로가 자위 방역으로서 일상의 위생관리의 철저, 정확한 예방접종,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위방역은 가축방역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자위방역에는 가축방역조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라는 관점에서 전국 또는 지역에서 조직적·통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현의 가축산물위생지도협회 등(이하 “협

회 등”이라 한다.)의 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가축사육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

또한, 협회 등의 단체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조직적인 자위방역에 있어서는 자위방역 실시 프로그램의 책정, 가축 사육자 등에 대한 자위방역의 중요성에 관한 보급·계발활동,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청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접종,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효율적인 자주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들 단체는 국가 및 현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가축 사육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자위 방역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가축 전염성 질병 대책에 있어서 국제 협력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더 이상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관해서 해외의 정부 기관, 연구 기관, 국제 무역 사무국(OIE)등 국제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국제적 대응에 협조하고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관한 연구와 인재 양성의 면에서도 국제적 협력할 필요가 있다.

- 방역추진체제 정비에 대해

○ 정보전달체제 강화

㉠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생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에 근거하는 신고, 법 제5조 검사 법 제51조의 입회 검사, 순회 지도 등에 의한 정보 수집에 힘을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육규모의 대형화, 축산경영의 기업화 및 민간검사기관의 정비 진전 속에서 중요한 위생 정보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정보의 신속한 수집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도축장 또는 식조 처리장에 있어서는, 도축검사 성적, 식조검사 성적 등의 유용한 가축위생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과 보다 긴밀한 연락체제를 정비해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위생상황의 파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수집한 위생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현 사이의 가축위생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현 간, 현과 관계 단체 혹은 가축 사육자 사이의 정보교환 촉진을 도모하고 유용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병성감정 실시체제 강화

가축보건 위생소에 요구되는 병성 감정 등의 검사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최신의 과학적 지식 등에 입각한 병성 감정 지침을 책정한다. 각 현은 이 지침에 근거해 정확한 병성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병성 감정 기능의 향상에 노력하는 동시에

가축 사육자, 민간 수의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보급·계발을 도모하고, 국가가 개최하는 가축위생 강습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에 의해 가축보건위생소의 기술 수준의 유지·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민간 수의사의 활용체제 강화

감시 전염병의 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수의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중요하므로 민간 수의사의 기능의 레벨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축위생 관계 법규, 가축방역 대책 요강 등에 대한 주지 철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가축보건 위생소에서는 강습회, 연구회 등을 개최하는 것 외에 민간 수의사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수의사 기술의 향상과 고위 평준화를 추진해 가축방역의 실시 체제의 내실화·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방역대책의 구체적 추진에 대하여

① 발생 예방에 대해서

축산 경영 형태의 집단화 및 기업화가 진전하고 여러 현에 이르는 경영도 출현하는 등 가축·축산물 유통의 고속화·광역화·대량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발생 예방·예측 사업의 정확한 실시를 위하여, 별기 1“감시 전염병의 감독 대책 지침”에 의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감시 전염병의 발생 상황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예방 접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사육 가축의 다양화 속에서 특용 가축에 대한 위생대책 요청의 증대도 있어 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것 외에 멧돼지 등을 포함한 기타 특용 가축에 대해서도 특용 가축 사육자에 대해 감시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전염성 질병 발생 신고

법 제4조에 의거한 신고전염병 발생 신고는 해당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새로운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방역의 원활한 실시의 전제조건이 될 것 및 법 개정에 의해 신고전염병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수의사에 대해 충분히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신고전염병의 조기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병 발생 신고 등

돼지 번식·호흡 장애 증후군(PRRS)은 질병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원인 불명의 이상산을 일으키고, 그 증상으로부터 “헤코헤코병”으로서 알려져 있었다.이와 같이 이미 알려진 가축의 전염성 질병과 그 병세 또는 치료의 결과가 명백히 다른 질병으로서 수의사로부터 법 제4조의 2 규정에 근거해 신고가 있을 경우, 가축보건위생소는 검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질병, 기존 질병 혹은 비전염성 질병인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신종병이라고 판정했을 경우, 필요한 방역조치를 강구한 후 신속하게 국가에 보고함과 동시에 발생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근거해 특정 질병으로서 검사를 실시한다.

보고를 받은 국가는 시험연구기관, 현 등과 밀접한 제휴를 취하면서 신질병의 원인 규명 등에 노력한다. 새로운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가축전염병 또는 신고전염병으로 할지를 검토한 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검사 및 주사

감시전염병의 방역에 있어서는 검사에 의한 침윤 상황 파악에 힘쓰는 동시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방접종 등 필요한 방역조치의 정확한 실시가 중요하다.

· 보고 및 통보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 또는 통보에 대해서는 이하에 의한다. 법 제12조의 2의 관계 현 지사의 범위는 해당 현과 인접하는 현 지사 및 해당 현에서 관계 가축을 계속적으로 이입하고 있는 현의 지사로 한다.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현 지사에의 통보는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 중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 규칙 별기 양식 제14호에 준하는 양식에 의한다.

⑥ 만연방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만연방지의 성패는 초동방역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느냐에 좌우된다.이 때문에, 해당 조치의 정확한 실시에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하의 사항에 유의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연 방지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환축 등의 신고, 보고 등

초기 방역을 정확하게 실시하려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의 신고 및 관련성 감정이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가축 사육자에 대해 가축 전염병의 병성에 대한 철저히 주지시키고, 이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축보건위생소, 가축진료소, 민간수의사 등 관계기관·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수의사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 대한 주지 철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의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가축 전염병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 검사 지침”(헤세이 10년 10월 22일자 10용 A 제1937호 농림 수산부 축산 국장 통지.이하 단순히 “병성감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신속히 병성을 결정한다.
- ▶ 발생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실시상황, 가축의 이동상황 등 발생예방을 위해 상일 경부터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만연방지조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홍보지 등도 활용하면서 해당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시읍면, 현 및 국가는 각각의 단계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통보 혹은 연락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 환축 등의 격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축 또는 의사환축을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때문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격리가 신속히 실시되도록 가축 사육자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살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환축 등의 도살 처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환축의 발생 양상, 가축의 사육 상황, 예방 접종 상황 등 만연 방지에 관한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확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병성 감정을 위한 도살 처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병성 감식을 위한 도살 처분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서 조치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토대로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사체, 오염물품의 소각 등.

가축전염병의 집단발생 등에 의해 다수의 시체가 생길 경우를 상정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충분히 제휴하면서 미리 시체 등의 처리요령에 대해 검토·작성하고, 처리할 장소의 선정, 처리방법, 시신운반요령 등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

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검사, 주사, 약 육 또는 투약은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이 발견된 경우에, 발생 장소 주변 지역의 가축 사육 상황, 예방 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 실시 대상 구역은 원칙적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이동 제한 구역 내의 범위로 한다. 덧붙여 그 실시에 있어서는, 아(에)에 준하여 효과적으로 만연 방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이동 제한

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축 등의 이동 제한은 가축 전염병의 종류,성 발견 후의 경과 상황 지역의 가축 사육 상황, 교통 사정, 가축·축산물 유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연 방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해야 할 범위, 기간, 대상물 등을 정하고 할 필요가 있다.이 때문에, 주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발생시의 대응을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이 때 방역상 지장이 없는 한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강구한 후, 과 축장으로 직행하는 경우에 한해 가축 구역 밖으로 이동 및 닭알 등의 생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동 제한을 발동했을 경우는, 발생 상황 및 방역 상황에 대해 관계 현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고, 현간에 있어 이동 제한을 효과적으로 조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가축집합시설의 개최 등의 제한 및 방목 등의 제한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에 근거한 가축 집합 시설의 개최 등의 제한 및 방목 등의 제한은

필요한 규칙을 정비하고 그 정확한 운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가축 집합 시설의 개최 등 및 방목 등 관계자에게 미리 위생 조치에 관련된 요령을 정하고 해당 요령에 근거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보고·통보·통보

법 제13조 제4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 또는 통보에 대해서는 이하에 의한다.

- ▶ 법 제13조 제4항 및 법 제35조의 관계 현 지사의 범위는 해당 현과 인접하는 현 지사 및 해당 현에서 관계 가축을 계속적으로 이입하고 있는 현 지사로 한다.
- ▶ 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현 지사의 전신, 전화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통보 및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수산부 대신에의 보고는, 별기 양식 1에 의한다.
- ▶ 기타 법 제13조 제4항 및 법 제35조와 관련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시에는 가축의 도입상황, 관계자의 출입, 사료의 입수처, 축사별 가축수용상황, 환축 및 의사환축 이외의 이상이 축의 발생상황,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 역학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감염경로를 규명함과 동시에,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선 발생 현 및 관계 현이 서로 연락을 취하여 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만연 방지의 철저화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 감시 전염병이 도축장 등에서 발생했다는 정보를 얻은 경우에 대해서도(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하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 출입 검사 등을 실시하고 발생 예방 및 만연 방지 철저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계획책정

현에서의 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입각한 감시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계획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 책정에 있어서는 계획 책정에 대한 생각, 지역에서의 감시 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기양식 2에 의해 책정한다. 또 해당 사업 실시도 중에서 가축 전염병의 발생 등에 따른 가축 방역상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별기 양식 3에 의한 예방 사업 계획 변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자위 방역에 대해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의 위생관리의 철저가 기본이며, 이에 더해 예방접종, 검사 등을 정확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시 전염병 외에, 그 이외의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주적 조치의 철저가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때문에, 다음에 유의하여 지역의 가축 위생 사정 등을 근거로 한, 효과적·효율적인 자위 방역이 실시되도록 관계자에 대한 지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에 있어서는 출입제한, 청소·소독의 수행, 위생 해충의 구제, 개체관찰의 철저와 그 기록의 실시, 도입 가축의 일시적 격리 사육, 환기·보온 확보, 밀사 등에 의한 스트레스 방지 등 일상의 위생적인 사육 관리의 철저 외, 지역에서의 예방접종을 포함한 위생 사육관리 프로그램의 책정 등에 대해 가축 사육자 및 관계 단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적 사육 관리의 부적당에 수반하여 손모(損耗)의 방지가 중요한 유용용자우(乳用雌子牛수)의 사육시설, 육용소 등의 방목지, 종돈장 등의 양돈시설, 부란장(ふ卵場) 등의 양계시설 및 경마장 등 말의 집단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생대책지침을 참고하여 위생대책의 지도가 필요하다.

○ 협회 등이 실시하는 예방접종 등의 자위방역사업(이하 “협회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유의하여 협회 등에 대한 지도·조언 필요하며, 가축사육자와 가축보건위생소 등이 일체가 된 지역 전체의 자위방역체제보다 한층 더 충실·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회 등의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예방접종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전염성 질병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예방접종에는 가축 사육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백신과 협회 등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 등의 백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회 등의 예방접종 사업의 계획 책정은 법 제 5조에 규정된 감시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충 예방사업 등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작성, 협회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 수의사(이하“지정수의사”라 한다.)의 순회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예방접종의 정확한 실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협회 등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가축 생산 농장의 청정화 지원, 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계획의 책정, 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협회의 사업은 특히 지정수의사로서 민간 수의사의 관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업실시에 필요한 민간 수의사의 배치 및 그 활용에 대해 조언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의 지정에 있어서는 수의사회와 조정 후 가축사육자와 통상적인 진료 관계를 가진 수의사의 지정을 우선으로 하고, 지정수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읍면, 각종 농업단체, 민간회사 등의 협력을 얻어 이들에 소속된 수의사 등의 한층 더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이상과 같이 협회사업에 대해서는 협회 등은 가축 사육자의 요망을 토대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른 협회 등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사업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회 등은 자위방역계획의 책정·조정업무의 충실화와 함께 사업내용의 다원화 등에 의해 운영기반의 정비·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월경성 동물 질병 등의 방역에 대해

구체역 등의 월경성 동물 질병이 아직도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인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동물·축산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나라로부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감시 전염병의 침입 기회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동물 및 축산물 수입에 따른 월경성 동물 질병을 비롯한 감시 전염병의 침입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방역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착지 검사 체제의 확립

수입 가축에 의한 감시전염병의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역과 수입검역 후의 수입가축 사육지의 격리사육 등의 방역조치(이하 “착지검사”라 한다.)를 일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동물 검역소 및 현에 있어서는 「수입 가축의 착지 검사 지침」에 근거한 관계자의 지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월경성 동물질병 등 방역체제 강화

㉠ 현(県)에서는 「특정 가축전염병방역지침(법 제 3조의 2제 1항에 의거한 특정 가축전염병 방역지침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역조치 요령을 검토·작성하고, 긴급방역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관계 기술자나 가축 사육자에 대한 보급·계발 운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가축의 전염성 질병으로 생각되는 불명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 제 4조의 2규정에 의거한 대응을, 확충 발생 질병이 우리나라에서의 처음 발생한 사례로 생각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국가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가축 전염병 방역 지침 및 병성 감정 지침에 근거하여 재료를 채취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동물위생연구부(이하“동물위생연구부”이라 한다)의 지참(持参) 또는 송부를 한다. 또한 병성의 최종 결정은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및 동물위생 연구부문의 연구기관과 검토 후 행한다. 이 때 해당 질병에 의해 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병성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에 만연 방지의 조치에 대해서 일단 주변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실시한 후에 신속한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국가 및 현은 월경성 동물 질병 등의 방역 조치 방법에 대해 방역 연습의 실시에 노력하고, 발생시의 효율적 방역 활동에 이바지한다. 또한 국가는 구제역 예방액 등이 필요한 만큼의 예방액을 비축하여 예측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국가는 해외의 질병 발생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월경성 동물 질병 등의 침입 방지와 만연 방지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진단체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

2)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돼지나 멧돼지에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 이 병은 진드기가 매개하는 것이나 감염축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확대된다.
- 이 병에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법은 없으며, 발생했을 경우의 축산업계에의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일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축(患畜)·의사환축(疑似患畜)의 신속한 신고와 살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 일본은 아직까지 본병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청정국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상주적으로, 러시아 및 아시아에서도 발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이 병의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 덧붙여,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는 돼지, 멧돼지 병이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은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와는 전혀 다른 병이라고 한다.

- 해외의 유제품의 위법한 반입에 대한 대응 엄격

· 임의 포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법한 반입에는 엄정 대처
· 수화물 안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의 축산물이 확인되었을 경우, 벌칙의 대상
· 수입 검사의 절차로 여권이나 탑승권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검사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만약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 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만약 육제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가려면



○ 동물검역의 대상 여부 확인

우제류(偶蹄類)의 동물(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말, 가금²²⁾, 개, 토끼, 꿀벌 유래의 이하의 것이 그 대상이 된다.

육 · 장기	- 생, 냉장, 냉동, 가열 조리가 끝난 가공품 등 어떤 형태의 것이든 동물검역 대상입니다. - 가공품의 예: 재키, 햄, 소시지, 베이컨, 고기 만두 등
달걀(알 껍데기 포함)	
뼈, 지방, 혈액, 가죽, 털, 날개, 깃, 발굽, 건	가죽 가방, 양털 스웨터 등의 완성품은 대상 밖입니다
생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흥, 오줌	
유제품(휴대품 제외).	
곡물 짚, 사료용 건초(일부 지역)	

○ 수입이 금지 · 정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

- 가축의 질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일본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나라 · 지역이 있음
-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이나 방역조치 등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나라 · 지역은 다음 참조.

아시아	없음
유럽	프랑스(Loir-et-cher)
남북아메리카	미국, 칠레
아프리카	없음
태평양주	없음

* 기존의 정지되었던 국가는 정지조치가 해제되었음

22) 가금이란 닭, 메추라기, 꿩, 타조, 뽕닭 및 칠면조, 집오리, 까마귀 기타의 목의 조류를 말한다.

·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정지된 나라·지역은 다음을 참조

아시아	없음
유럽	프랑스(Loir-et-cher)
남북아메리카	미국, 칠레
아프리카	없음
태평양주	없음

* 기존의 정지되었던 국가는 정지조치가 해제되었음

· 그 외, CWD(만성소모성 질환) 발생국으로부터의 사슴 유래 제품도 수입이 정지되고 있음.

○ 검사증명서의 취득

· 선물이나 개인 소비용일지라도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가 없는 것은 일본으로 반입 불가

·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일본용으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서 판매되는 것도 있음.

○ 일본도착시에 동물검역소의 검사 절차 이행

· 도착한 공항이나 항구 세관검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검역 카운터에서의 검사 요청

·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일지라도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기 전에 개봉된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분리를 근거로 한 침입방지책 강화(2019. 4. 22 관계성청의 합의)

2019년 4월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임의포기된 돼지고기 제품으로부터,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되어 실제로 감염력을 가진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본 물가까지 도달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수하물 등에 의해 수입금지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방일 외국인 등에 의한 수입금지 축산물의 반입을 미연에 방지

하는 동시에 불법 반입에의 엄격화에 의한 물가에서의 적발 강화나 농장에서의 바이러스 침입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하나가 되어 이하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실시에 있어서는 수입 금지 축산물 반입 방지, 공해항에 있어서의 동물 검역 실시나 야생 동물과의 접촉의 자숙 등에 대해 국민에게 넓게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1) 홍보활동 강화

- (1) 해외에서 육제품의 위법한 반입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할 것, 수하물 안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의 축산물이 확인되었을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여행회사, 항공사, 외국선박운항회사 등에 철저히 주지한다(농수산성, 국토교통성).
- (2) 우리 나라의 공항 및 항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발생국의 공항에서의 홍보 포스터 게시, 각 항공사에 있어서의 기내 아나운스의 실시, 크루즈선이나 페리의 선내에 있어서의 홍보에 의해 널리 주지한다(농수산성, 국토 교통성).
- (3) 재외공관이나 일본 정부 관광국을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을 허브로 만들기 위한 웹사이트나 SNS를 이용하여 중국어, 베트남어로의 동영상 배신을 포함한 정보를 발신함과 동시에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비자 영사창구 등에서의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포를 실시한다(농수산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 (4) 농장에서 고용되는 노동자 등(외국인 포함)에 대해 농장으로의 병원체 반입 방지에 대해 널리 주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해 제도 주지에 대한 협력을 의뢰한다(농수산성, 출입국 재류관리청, 후생노동성).

2) 물가 적발 강화

- (1) 검역 탐지견을 11머리 증두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발생 국가에서 직항 편 등 위험이 높은 편에 대해서 검역 탐지견의 탐지와 가축 방역관의 질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세관, 항공 회사, 공항 회사 등과 연계하여 운용을 검토한다(농림 수산부 재무부, 국토 교통성).
- (2) 불법적인 축산물의 반입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위반자에게 경고서를 발부하고 위반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에 정보를 공유한다.또, 악의를 가지고 반복하는 등 악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 또는 고발하는 등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한다(농수산성, 재무성, 출입국 재류 관리청, 경찰청).
- (3) 공해항에서의 구두소독 및 차량소독을 계속 철저히 하겠다(농수산성, 국토교통성)
- (4) 국제우편물 및 국제택배 검사를 리스크에 따라 강화한다(농수산성, 총무성).

3) 농장 바이러스 침입 방지책 강화

- (1) 돼지콜레라나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가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여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상황의 재확인 및 개선지도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와 관련된 지침서를 발행

하여 도도부현에 의한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상황의 것으로 및 개선지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농수산성).

(2)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등의 야생동물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 등에서의 육제품 등을 포함한 축산물의 방치 금지 등에 대해 도도부현 등에 대한 협력을 의뢰한다(국토교통성, 환경성).

(3) 야생 멧돼지에서의 포획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등의 침입 상황을 파악하기 허브로 만들기 위한 감독제도를 실시한다(농수산성, 환경성).

4. 폴로 업
대책의 실시 상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사후 조사를 한다.

- 축산관계자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발생국의 방문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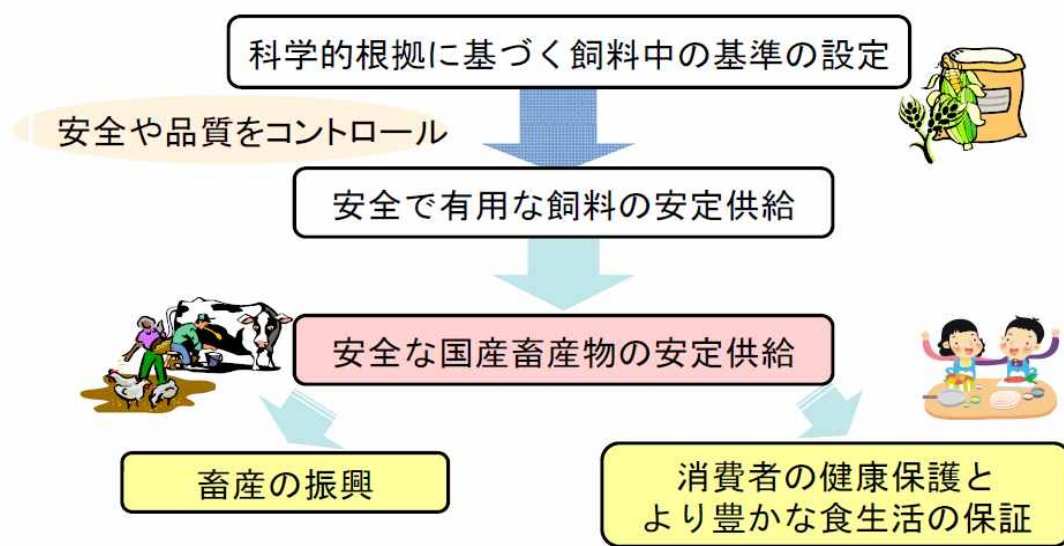
-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및 러시아, 그루지야 등의 나라들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발생국이며, 일본은 이러한 나라로부터의 동물 및 그것에서 유래한 고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축산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등에서의 출입은 최대한 삼가 주세요. 또한 부득이하게 농장 등의 축산 관련 시설에 들르거나 가축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병원체가 사람이나 물건에 부착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귀국 시에 동물 검역소의 카운터에 들러 주십시오. 일본에 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과거의 사례에서, 청정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항공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주방 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이로 줌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검역소는 정기적으로, 주방 찌꺼기가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지의 출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국으로부터의 육제품 등의 반입은 기내식을 포함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3) 사료의 안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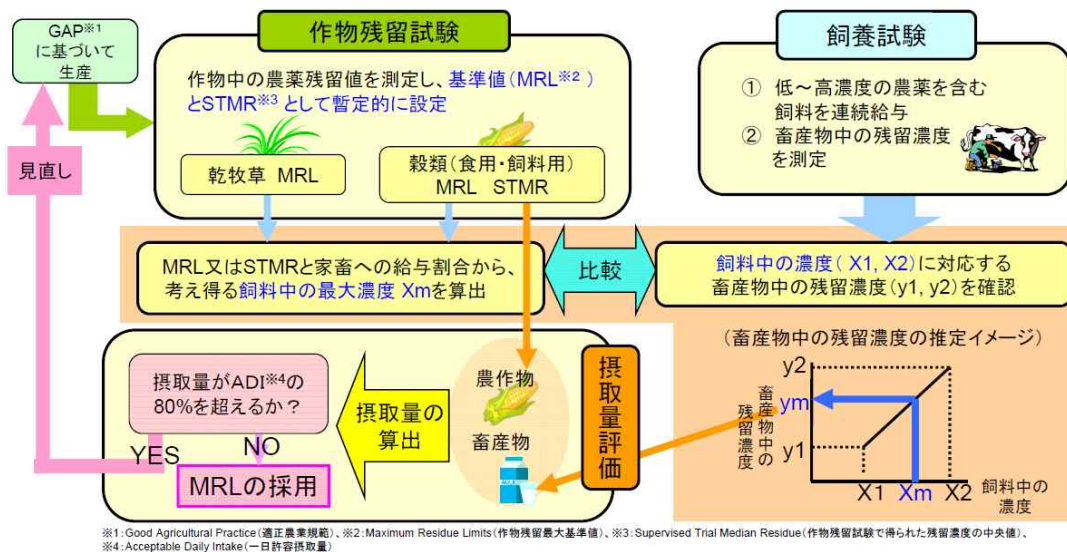
- 사료안전에 관련한 농림수산성의 조직

○ 사료란

- 1종 이상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가축의 영양에 공여할 수 있는 것
- 가축에게 안전할 것
-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인간에게 안전할 것



*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료 중의 잔류농약기준의 설정



- * 사료 중의 유해물질의 잔류기준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비소)---배합사료, 건목초, 어분 등에 기준을 설정
 - 곰팡이 독(아플라톡신 B1, 지랄 레논, 디옥시 니발레놀)---배합 사료 등에 기준을 설정
 - 잔류농약(약 90성분)---건목초, 곡류(옥수수, 보리 등), 볏짚, 벼 등에 기준을 설정
(5성분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에 축산물 잔류 기준치 개정 요청)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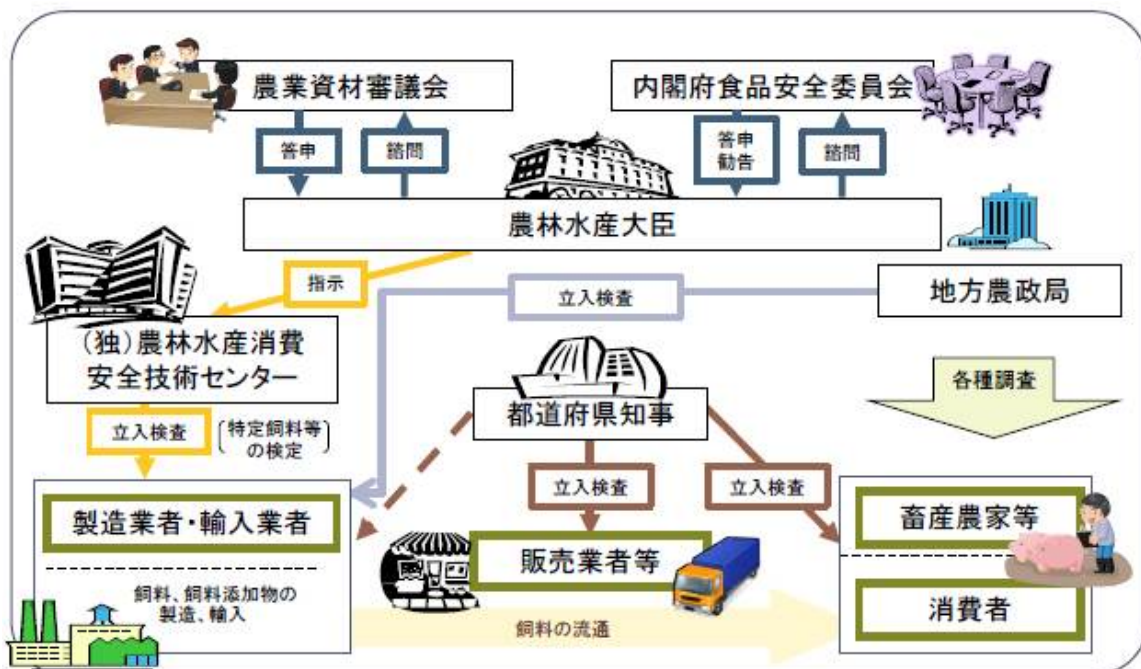
- 사료의 안전과 품질확보

○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의

㉠ 개요

목적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사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검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의 안전 확보와 축산물 등의 생산 안정에 기여.
대상동물 및 사료첨가물 지정 등	- 대상 동물 : 소, 면양, 염소, 사슴, 돼지, 닭, 수염, 꿀벌, 양식 수산 동물 등 31종류 - 사료 첨가물 : 비타민, 항생 물질 등 157품목 지정
안전의 확보	규격 및 기준의 설정, 제조 등의 금지, 특정 사료 등의 검정 및 제조업자 등록, 폐기 등의 명령
품질 개선	공정규격의 설정, 규격적합표시, 표시의 기준, 표시사항의 표시 등의 지시, 검정기관의 등록
기타	제조·수입업자 등의 신고, 사료 등의 수입 신고, 보고 청취, 출입검사 등 후생노동대신과의 관계

㉡ 사료 등의 안전 확보 체제



○ BSE관련 사료 규제

㉠ 사료규제의 기본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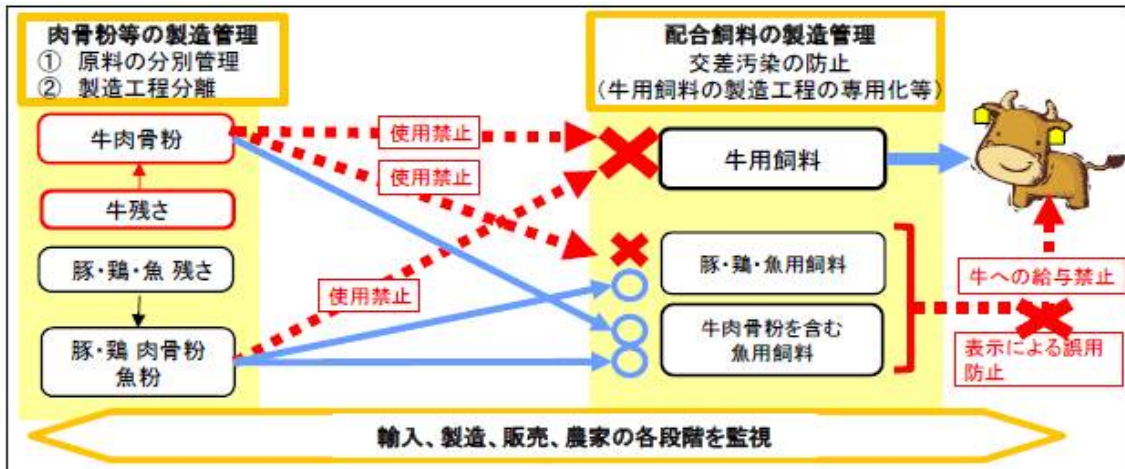
- BSE의 감염원이 되는 원료의 사료이용을 규제(원료 규제) - 육골분, 어분, 동물성 유지 등을 우용사료로 이용하는 것 금지
- 우용사료와 기타 사료의 분리(제조공정 분리) - 우용 사료와 기타 사료의 교차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사료의 제조, 출하, 운송, 보관, 급여의 각 단계에 있어서 분리

<사료규제 도입의 경위>

- 반추 동물(反すう動物) 유래 육골분 등에 대해서 반추 동물용 사료에 사용을 정지(통지, H8.4)
- 반추 동물 유래 육골분 등을 이용한 반추 동물용 사료 제조·판매·사용 금지(성령, H13.9)
- 육골분 등 동물 유래 단백질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서 사료·비료로 수입, 국내의 제조·출하를 일시 전면 정지(통지, H13.10)
- 사료 원료인 육골분 등 동물 유래 단백질의 제조 공장에서, 제조 가능한 동물 유래 단백질과 기타 백질의 제조 공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이 확인하는 제도(대신 확인 제도)을 도입(성령, H13.10)

- ㉡ 대신확인제도 등에 의하여 교차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전제로, 최신 과학지식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한 다음 순차적으로 육골분 등의 사료이용 재개를 인정하는 재검토 실시

- 돼지 유래 육골분의 돼지, 닭 및 생선용 사료로 이용 재개(성령, 돼지, 닭용 H17.4 시행생선용 H20.5년 시행)
- 햄, 소시지 및 수산 반죽 제품 등의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가축 수산 찌꺼기의 돼지, 닭 및 생선용 사료로 이용 재개(고시 H26.5년 시행)
- 소 유래 육골분 생선용 사료로 이용 재개(성령, H27.4년 시행)
- 멧돼지 유래 육골분의 돼지, 닭 및 생선용 사료로 이용 재개(성령, H28.9년 시행)
- 면 양, 염소, 말 유래 육골분 생선용 사료로 이용 재개(성령, H30.4년 시행)



주요 대상 품목	유래 동물	급여대상가족				
		소 등(*1)	돈	계	양어	
동물 유래 백질	유, 유제품	포유동물	◎	◎	◎	◎
	계란, 계란제품	가금	◎	◎	◎	◎
	젤라틴, 콜라겐	포유동물(반추동물은 소, 면양, 염소에 한한다), 가금, 어개류	○*2)	○	○	○
	혈분, 혈장흰자위	소, 면양, 산양(SRM*3)을 제외, 소, 면양, 산양과 분리되지 않는 돈(멧돼지 포함, 이하 동일), 말, 가금 포함	×	×	×	○
		돈	×	○	○	○
		말				
		가금				
	돈, 가금 혼합*4)	×	×	×	×	
	육골분, 가수분해단백, 증제골분(치킨밀, 페더 밀, 육분 포함)	소, 면양, 산양, 마(SRM을 제외 소, 면양, 산양, 마과 분리되지 않는 돈, 가금을 포함)	×	×	×	○
		돈	×	○	○	○
가금						
돈, 가금 혼합						
사슴	×	×	×	×		

주요 대상 품목		유래 동물	급여대상가축			
			소 등(*1)	돈	계	양어
	어분 등 어개류 유래 단백질	어개류	×	○	○	○
	동물유래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찌꺼기 (축수산가공품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잔해 등)	포유동물, 가금, 어개류	×	○	○	○
동물성 유지	특정동물성유지*5)	포유동물, 가금	◎	◎	◎	◎
	동물성유지*6)(불용성 불순물 0.15% 이하)	포유동물(소 등(SRM 제외)를 포함한 것), 가금	×	○	○	○
		포유동물(소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 가금	△*7)	○	○	○
	어유(어개류 이외의 단백질과 완전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된 것)	어개류	◎	◎	◎	◎
	위의 각란에 기재된 이외의 동물성 유지	포유동물, 가금	×	×	×	×
기타 *8)	골회, 골탄(일정한 조건에서 가공처리된 것)	포유동물, 가금, 어개류	◎	◎	◎	◎
	제2인산 칼슘(광물유래, 지방,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1) 「“소 등”」은 소, 면 양, 염소 및 사슴이 포함된다(사료 안전 법의 대상 가축으로, 면 양, 염소 및 사슴을 추가(정 H15.7.1))

*2) “◎”는 사용 가능, “○”, “△”은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장의 제품만 사용가능

*3) “SRM”은 소의 특정 위험 부위(30연령 초과 소의 뇌 등) 및 면 양, 산양의 특정 위험 부위(12연령 이상의 뇌 등).

*4) “폐지, 가금 혼합”의 원료는 동물 종류에 분리된 원료를 제조 공정의 원료 투입구에서 혼합한 것에 한한다.

*5) “특정 동물성 유지”는 식용 지방만을 원료로 한 동물성 유지(불용성 불순물 0.02%이하).

- *6) “동물성 유지”에는 식물성 지방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7) “△”은 포유기 송아지 육성용 대용유 배합 사료에 사용할 수 없다.
- *8) “기타”에 기재된 것은 동물유은 백질 및 동물성 유지 규제 대상의

㉔ 재조합 DNA기술 응용 사료에 대한 대응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飼料及び飼料添加物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에 따라 안전성심사를 법적으로 의무화(2003년 4월 1일 시행)

㉕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

㉖ 사료 등의 적정 제조 규범(GMP) 가이드라인(이하 GMP)

사료 관계 사업자 스스로가 유해 물질적 해이(hazard)를 적절히 관리하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관리(GMP)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2015년 6월 17일 “사료 등의 적정 제조 규범(GMP)가이드 라인”을 제정

㉗ 농약

- 농약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사용이 많은 수입 사료 원료를 중심으로 곡류 및 목초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 잔류 기준을 설정(2006년 5월 29일 시행)
- 한편, 최근 국산 사료로 가축에 대한 급여 비중이 늘고 있는 볏짚이나 볏집 발효 조사료, 벼(粃米)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 관리 기준을 설정(2018년 12월 12일 최종 개정)
- “국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사료 중의 잔류 기준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요청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2010년 2월 2일,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 국외에서만 사료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사료의 잔류 기준 설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나타내는 기준 설정을 촉진

㉘ 오염물질(곰팡이독, 중금속 등)

곰팡이독, 중금속 등에 관해서는 오염실태조사 등에 근거해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한 지도기준 및 관리기준을 설정(2019년 8월 9일 최종 개정, 2020년 2월 6일 시행)

㉔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에 관해서는 도쿄 전력(주)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강하에 따른 사료 중의 방사성 세슘의 잠정 허용치를 설정(2012년 3월 23일 최종 개정)

<p>○ 안전성을 확인한 재조합 DNA 기술 응용 사료</p> <table border="0"> <tr> <td>평지씨</td> <td>17품종</td> </tr> <tr> <td>옥수수</td> <td>29품종</td> </tr> <tr> <td>콩</td> <td>18품종</td> </tr> <tr> <td>목화</td> <td>21품종</td> </tr> <tr> <td>덴사이(てんさい)</td> <td>3품종</td> </tr> <tr> <td>알파파</td> <td>3품종</td> </tr> <tr> <td>감자</td> <td>1품종</td> </tr> <tr> <td></td> <td>계 92품종</td> </tr> </table> <p>○ 안전성을 확인한 재조합 DNA 기술 응용 사료 첨가물 11품목</p>	평지씨	17품종	옥수수	29품종	콩	18품종	목화	21품종	덴사이(てんさい)	3품종	알파파	3품종	감자	1품종		계 92품종	<p>○ 유해물질 잔류 기준</p> <p>[농약]</p> <p>수입 원료를 중심으로 곡류 및 목초에 사용되는 농약 60종류(성령) 벗짚 등에 사용되는 농약 80종류(통지)</p> <p>[중금속 등] 4종류(통지)</p> <p>곰팡이독 4종류(통지)</p> <p>[방사성물질(방사성 세슘)] 1종류(통지)</p> <p>[기타(멜라민 및 시아누르산)] 1종류(통지)</p>
평지씨	17품종																
옥수수	29품종																
콩	18품종																
목화	21품종																
덴사이(てんさい)	3품종																
알파파	3품종																
감자	1품종																
	계 92품종																

- 사료 등의 적정제조규범(GMP) 가이드라인

○ GMP의 제정

사료의 안전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원료와 최종 제품까지 전체 공정에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인 적정 제조 규범(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사업자 스스로가 도입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사료 등의 적정 제조 규범(GMP)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다(2015년 4월). 또한 사업장의 GMP가이드라인에 대한 적합성 상황은 FAMIC(독립 행정 법인 농림 수산 소비 안전 기술 센터)가 확인하는 구조로 하였다(2016년 6월).

○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

위에서 언급한 식품안전기본법(食品安全基本法)(2003년 15년 법률 제48호) 제5조에서 언급된 기본 이념인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연 방지의 관점에서, 사료 등에 대해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1953년 법률 제35호)에 근거해 농림수산성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사료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기타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 확보에 대해 제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 후 사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근년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수법에 관한 국제적인 사고방식이 종래부터의 최종 제품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것부터 공정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변화해 오고 있어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적정 제조 규범(GMP)을 착실히 실시한 후에 공정별 해저드를 분석하고, 중요한 공정을 계속적으로 감시·기록하는 공정 관리 시스템인 HACCP의 도입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근거로 푸드체인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료 등에 대해서도 원료 단계에서 최종제품까지의 전 단계에서 사업자 스스로가 이러한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GMP에 근거해 위생 대책이나 시설의 관리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공정 관리나 품질관리를 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살모넬라를 비롯한 유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곰팡이 독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이나 금속편 등의 이물질의 혼입 방지, 동물유연 백질의 분별 관리 등의 우해면상뇌증(BSE) 대책 등 다양한 해저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함유한 사료에 대해서는 적정한 첨가량이나 균일한 배합이 확보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사료 등의 적정 제조규범(GMP) 가이드라인(이하 “GMP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사업자 스스로가 이들 해저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인 GMP, 나아가 자신의 업무실태에 따라 HACCP의 생각에 기초하여 보다 고도의 안전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 동 가이드라인의 구조

조문	목차	세부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원료 등, 사료 등, 제품, 사업자, 사업장, A사료, B사료, 수산전용사료, 동물유래 단백질등, 항균성사료첨가물, 항균성사료첨가물제제, 제조지시, 로트(lot), 부적합품, 클리닝, 반송, 해저드(hazard), 공정관리 기준서
제3조	적정제조규범(GMP)	조직 및 종업원, 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조달하는 원료 등의 안전확인, 위생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기 점검, 이상시 대응, 고충처리, 회수처리, 행정이나 관계기관과의 제휴
제4조	해저드 분석에 기한 공정관리	해저드 분석, 중요관리점에서의 공정관리
제5조	센터에 의한 적합확인	
제6조	항균성사료 첨가물을 함유하는 배합사 및 사료첨가물 복합제제에 관한 제조 공정관리	
<p>사료 등 제조수량의 보고 양식, 사료 등 수입수량의 보고 양식은 다음을 참조 http://www.famic.go.jp/ffis/feed/tuti/27_1853.html</p>		

○ 동 가이드라인에 의한 확인 절차

<p>제1 확인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료 등의 적정 제조규범(GMP)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의 제3에 의거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료 또는 사료첨가물(이하“사료 등”이라 한다)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이사장에 대해 확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조업자는 신청시 사료 등의 제조사업장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청자는 1의 신청 시에, 센터가 정하는 규정에 근거해 필요한 경비를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센터 이사장은 신청자로부터 1의 신청이 있을 때는 현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자가 제3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함과 동시에 판정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3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제조 사업장마다 현지 검사의 실시, 판정 결과의 통지 및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뿐만아니라 신청자가 식품 안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민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3의 기준 일부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에는, 확인과 관련된 현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확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센터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3의 확인증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센터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5. 센터 이사장은 적합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제2 중간 확인

1. 제1에 의해 센터의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규 확인 또는 갱신으로부터 다음 갱신을 할 때까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센터에 의한 중간 확인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2. 센터 이사장은 1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장부나 기록의 기재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적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 의한 중간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확인은 제1의 5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만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 확인의 기준

1. 조직 및 종업원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1(1) 및 (2) 및 다음 점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리체제의 정비관계

- ①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업무 내용이 기재된 조직도 등이 갖추어지고, 조직에 있어서의 제조관리 책임자, 품질관리 책임자 또는 업무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해져 있을 것
- ② 제조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또는 업무관리책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위생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미리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것

(2) 교육훈련 관계

- ① 교육훈련 매뉴얼(手順書)에는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실시방법,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또한 교육 훈련의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 ② 제조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책임자 또는 업무관리책임자 또는 그 지명한 자는 외부에서 개최되는 사료안전법 등의 연수를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수강할 것.

2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2 및 다음 점을 충족해야 한다.

(1) 부지 및 시설 관계

- ① 시설의 점검 정비 대상, 점검 정비의 방법, 빈도, 책임자 및 기록의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 ② 시설 등의 오염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서 부지의 경계, 차량의 진입제한구역,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을 것. 또한 필요에 따라서, 미생물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그 이외의 구역과 구별해서 관리해야 할 구역(이하 “청정구역”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어 청정구역의 청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기적인 시험 검사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것
- ③ 부지 및 시설내의 각 구역에서 취급하는 사료의 종류(A사료, B사료 또는 수산전용사료)가 특정되어 있을 것
- ④ 환경 유래의 오염 방지의 관점에서 사료 등이 외부 공기를 접촉하는 작업 공정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을 것

(2) 설비 및 기기관계

- ① 설비 등의 점검 정비 대상, 점검 정비의 방법, 빈도, 책임자 및 기록의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 ② 청정구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정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및 기기 중, 미생물 오염 방지의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설비가 특정되어 있을 것
- ③ 급배수의 설비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을 것. 또한 상수도 이외의 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질 검사등에 의해 사용하는 물이 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것
- ④ 배수 및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설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 ⑤ 각 설비에서 취급하는 사료의 종류(A사료, B사료 또는 수산전용사료)가 특정되어 있을 것
- ⑥ 항균성 사료 첨가물 또는 이를 함유한 사료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공용설비를 포함)가 특정되어 있을 것. 또한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첨가·혼합하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상시 확인되고 있는 것.

- ⑦ 설치하고 있는 계량기기의 종류, 수, 설치장소, 계량범위 및 계량정도가 명확해져 있어 점검정비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설치하고 있는 배합혼합기의 종류, 수, 설치장소가 명확해져 있어 점검정비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혼합하는 배합 혼합기의 혼합 정밀도 확인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것.

3. 조달하는 원료 등의 안전 확인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 3 및 다음 점을 충족해야 한다.

- (1) 조달하는 원료 등의 규격 등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확인되어 필요에 따라서 규격 등의 재검토, 계약의 재체결을 하고 있을 것
- (2) 조달하는 원료 등별로 안전성 확인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또한 원료 등의 공급자에 있어서의 관리 상황의 확인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또한 조달하는 원료 등의 규격 등의 준수 상황이 시험검사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것

4. 위생관리 관계

(1) 가이드라인의 제3의 4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 ① 위생관리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관리방법, 책임자,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 ② 작업구역마다 요구되는 위생 상태에 따른 탈의나 신발 소독 등의 사람이나 자재 등의 입퇴장 관리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 ③ 소독이 필요한 공정 및 장소가 특정되고, 소독의 방법 및 사용 약제가 정해져 있을 것. 공정 내에서 결로 대책 또는 사료 등의 고결(固結)·체류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정해져 관리방법 및 고결·체류하여 변패했지만 제품에 대한 혼입방지조치가 정해져 있을 것. 해당 장소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정기적인 시험검사 등에 의해 확인될 것
- ④ 유해 조수 및 해충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가 특정되어 방제방법, 책임자, 기록의 방법 및 대책 효과의 확인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 ⑤ 사료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혼입방지의 관점에서, 청소, 소독, 유해 조수 및 해충의 대책에 사용되는 약제가 특정되어 약제 등의 사용방법, 보관방법, 책임자 및 사용기록의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이들 약제 등이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을 것
- ⑥ 폐기물이나 배수의 사료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혼입 방지 대책, 폐기물의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지정된 장소 및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이나 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 (2) 위생관리에 관한 검증 방법이 미리 정해져 검증 결과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서 매뉴얼(手順書)의 재검토 등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을 것

5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관계

(1) 가이드라인의 제3의 5의 (1)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 ① 공정관리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관리방법, 책임자, 실시자,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 ② 원료 수입시 확인절차가 정해져 있을 것
- ③ 제조 지시서, 배합비율표 등의 작성방법, 책임자, 항균성 사료첨가물을 포함한 사료 등의 제조 순위의 결정방법, 배합비율 등이 법령에 정하는 기준·규격 등에 적합한지 확인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작성된 배합비율표 등이 법령에 정하는 기준·규격에 적합할 것
- ④ A사료, B사료 및 수산전용사료의 교차오염대책, 항균성 사료첨가물을 포함한 사료와 포함하지 않는 사료를 취급할 경우의 교차오염대책 및 원료와 제품의 교차오염대책이 정해져 있을 것
- ⑤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재고 수량 등의 확인 절차, 담당자, 책임자 및 기록의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재고 수량 등의 확인이 매일 실시되고 있을 것
- ⑥ 재가공을 할 경우의 안전성 확인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
- ⑦ 표시표(表示票)의 작성 순서, 책임자 및 적절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의 확인 방법, 불필요해진 표시표의 취급 방법 등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가 법령에 정하는 표시 기준에 적합할 것
- ⑧ 사료안전법 제52조에 의거한 장부가 원료의 입하, 제품의 제조, 출하 상황 등이 로트번호 등에 의해 서로 관련있게 기재되어 있을 것

(2) 가이드라인 제3의 5의 (2)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 ① 품질관리 매뉴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의 내용, 책임자,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 ② 시험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의 실시시기 및 빈도, 대상, 방법 등을 정한 품질관리계획의 작성순서가 정해져 있을 것.
- ③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함유한 사료에 있어서의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함유량이 법령에 정하는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인 시험 검사 등에 의해 확인할 것
- ④ A사료, B사료 및 수산전용사료의 교차오염대책, 항균성 사료첨가물을 포함한 사료와 포함하지 않는 사료를 취급할 경우의 교차오염대책, 원료와 제품의 교차오염대책 등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정기적인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것

⑤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함유한 사료 등의 제조에 있어서 가열가압 처리의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전에 제품 중의 항균성 사료 첨가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것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검증방법이 미리 정해져,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서 순서서의 재검토 등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을 것

6. 시험검사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 3의 6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1) 시험검사 매뉴얼에는 시험검사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 검체의 채취방법, 시험검사의 실시방법, 실시자, 책임자, 결과의 판정방법, 결과에 근거한 대응방법, 검체의 보관방법,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실시하는 시험 검사에 관해서, 미리 검사 방법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있을 것

7. 자기점검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7 및 다음 점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체 점검에 관한 매뉴얼에는 자체 점검의 책임자, 실시자, 점검 내용, 실시 시기,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자체 점검 결과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서 순서서의 재검토 등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을 것

8. 이상시 대응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8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1) 이상시 대응에 관한 매뉴얼에는 이상시 대응 순서서가 적용되는 상황 및 판단 기준, 이상시의 연락 체제 및 정보 공유 체제, 이상이 인정된 제품 등의 처리 방법, 원인 구명 체제,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인 구명의 결과에 근거한 개선 조치로서 필요에 따라서 순서서 등의 재검토를 하고 있을 것

9. 고충 처리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9 및 다음 점을 충족해야 한다.

고충 처리에 관한 매뉴얼에는 고충 처리의 대응 순서, 연락 체제, 고충의 대상이 된 제품 등의 처리 방법, 원인 구명 체제,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10. 회수 처리 관계

가이드라인의 제3의 10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회수에 관한 매뉴얼에는 회수 처리의 대응 순서, 연락 체제, 회수한 제품의 보관 방법, 식별 방법, 처리 방법, 기록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11. 행정 및 관련 기관과 제휴 관계

가이드라인 제 3의 11 및 다음 점을 충족할 것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최신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제4 항균성 사료 첨가물 관리방법 면제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함유한 배합 사료 또는 사료 첨가물 복합 제제를 제조하는 사업장 가운데 제1에 근거한 센터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78년 9월 5일자 53축(畜) B 제2173호, 53수진(水振) 제464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수산청장 연명 통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83년 7월 6일자 58축 B 제1676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 통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85년 10월 15일자 60축 B 제2928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수산청장 연명 통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87년 12월 25일자 62축 B 제3099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수산청장 연명 통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91년 3년 6월 3일자 3축 B 제1113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수산청장 연명 통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1994년 6년 7월 18일자 6축 B 제1012호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 통지」 및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2001년 12월 19일자 13생축(生畜) 제4573호 농림수산성 생산 국장·수산청장 연명 통지」에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살리노마이신 나트륨 모넨신 나트륨, 라살로 시드 나트륨, 할로프디논폴리스틸렌셀포네이트칼슘, 셀듀라마이신나트륨 또는 나라신을 포함한 사료의 제조 로트별 분석을 면제한다.

- 항균성사료 첨가물의 위험관리 책정 지침

○ 서설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1953년 법률 제35호, 이하 “사료 안전 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사료 첨가물을 지정할 때는 “그 필요성이 높고 효과가 뚜렷해지며, 안전성이 확인된 것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료 첨가물은 해당 사료 첨가물을 포함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²³⁾ 이러한 사고는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사료 첨가물에 공통된 원칙이며,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리스크 관리 조치 책정에도 기본이 된다.²⁴⁾

항균성 사료 첨가물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재이지만 한편으로 그 사용에 의해 선택되는 약제 내성균이 축산물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리스크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식용동물에 사용하는 항균성 사료 첨가물에 관해서는, 2003년 이후, 약제 내성균의 식품을 통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스크 평가가 “가축 등에 대한 항균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선택되는 약제 내성균의 식품 건강 영향에 관한 평가 지침(家畜等への抗菌性物質の使用により選択される薬剤耐性菌の食品健康影響に関する評価指針)”(2004년 9월 30일 식품 안전 위원회 결정)(이하 “식품안전위원회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종래부터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리스크 관리를 사료안전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식품안전위원회 평가지침에 의한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 안전성 및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유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약제 내성균과 관련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과학적 식견에 근거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책정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했다. 또한 이 지침은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작업 중 리스크 관리 조치의 책정으로부터 실시까지의 범위에 관한

23) 사료첨가물의 평가기준의 제정에 대해서는 1992년 농림수산성 축산과장·수산청장관 연명 통지(農林水産省畜産局長・水産庁長官連名通知)를 참조.

24)

것이고, 각 단계에서 “농림 수산성과 후생 노동성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 매뉴얼(農林水省及び厚生労働省における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リスク管理の標準手順書)” (2005년 8월 농림 수산성 후생 노동성)(이하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지침은 현시점에서 실시 가능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제시한 것이며,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목적 및 대상

이 지침은 가축 등에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선택되는 약제 내성균에 관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조치를 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 조치의 책정에 있어서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축산물 생산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에 관한 기본적 방향 및 관련 자료

“리스크 관리 조치의 책정은 사료 첨가물의 평가 기준 제정에 대해”(1992년 3월 농림 수산성 축산국장·수산청장관 연명통지)(이하 “통지”라고 한다)를 토대로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한 후에 실시한다. 단, 식품안전위원회에 의하여 평가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에서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 평가지침을 참고로 하여 잠정적인 위험 추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자료로는 “대상이 되는 항균성 사료첨가물의 위험평가에 관한 자료(対象となる抗菌性飼料添加物のリスク評価に関する資料)(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평가결과 등)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조치선정의 판단요소에 관한 자료로 한다. 자료에 대해서는 항균성 사료첨가물 제조업자 등의 협력을 얻어서 농림수산성이 작성한다.

○ 리스크 관리조치의 책정

㉠ 실시 가능한 리스크 관리 조치

현시점에서 실시 가능한 리스크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
지정 취소	해당 사료첨가물이 국내에서 유통(사용) 금지
대상사료의 삭제	복수의 동물종용사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부의 대상동물용 사료로 사용 불가
사육기 후반 사용제한	1두(1마리)당 사료 섭취량이 많은 사육기의 후반 사용을 제한함에 의하여 사용량을 감소시킴. 나아가, 사육기 후반의 사용에 수반한 선택 압력에 의한 출하 직전의 내균성 증가 방지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의 빈도, 지점 등을 증가시킴에 따라 내성상황의 변화를 신속하게 검출한다
기타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에 응하여 리스크 관리조치를 검토

㉠ 리스크 관리 조치의 책정 방법

㉡ 1 단계

통지를 근거로 해 대상이 되는 항균성 사료 첨가물의 효과, 사용 실태(유통량) 등으로 부터 지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핀다. 일정기간 유통실태가 없는 등 지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

㉢ 2단계

제1단계에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기초한 리스크 추정 구분(고도, 중등도, 저도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 혹은 평가 불필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조치를 검토한다. 통지의 취지를 근거로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에 의해 리스크가 있는 경우(고도, 중등도 혹은 저도의 리스크)에는 원칙적으로 지정 취소한다.

식품안전위원회에 의해 위험 없음(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 혹은 리스크 평가 불필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계속 한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된 사료첨가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해당 항균성 사료첨가물의 중요성, 대체물질 또는 대체조치의 유무 및 그 경제성, 2차적 리스크, 해외 제국

의 규제 상황, 기타 리스크 관리조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판단요소(아래)를 사료안전법에 의거한 대상이 되는 축산동물별로 검토하고, 위에서 언급한 실사가 가능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필요에 따라서 강구한 후 지정 취소까지 일정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식품 안전 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겨를이 없는 경우는 농림 수산성에서 필요에 따라서 식품 안전 위원회 평가 지침을 참고로 하여 잠정적인 리스크 추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표 80> 리스크 관리조치선정 관련 검토해야 할 판단요소

판단요소	설명
축산물생산에 있어서 해당 제제의 중요성	생산현정에서의 중요도(사용실태 내지 유통량, 효과, 경제성 등)
대체물질, 대체조치의 유무 및 경제성	해당 물질과 동등의 효과를 가진 물질의 유무 및 경제성 기타 생산성의 유지 및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조치의 유무 및 경제성
이차적 리스크	그 리스크 관리 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대체물질에 대하여 내성균의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정도
리스크 저감효과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약제내성균의 선택에 관련한 발생 리스크의 감소 정도
해외 제국의 규제 상황	해당 물질의 해외 제국에서의 규제 상황
실시가능성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기술면, 행정면, 재정면 등에서의 실시가능성
기타	물질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할 판단요소

○ 리스크 관리조치의 결정·실시

위 리스크 관리조치의 책정방법 상의 리스크 관리조치에 대해서 사료안전부회의에서의 시프이 등을 경유하여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공청회(public comment) 등의 절차를 밟아 적용한다.

④ 가축 생산단계에서 사육위생관리의 향상에 대하여(농장 HACCP 등)

- 농장 HACCP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최종 제품의 발취 검사에 더해, 원료의 입하부터 제조·출하까지의 모든 공정에서, ①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②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특정하고, ③ 그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감시·기록하고, ④ 이상이 인정되면 즉시 대책을 취하여 해결함으로써, 불량 제품의 출하를 미연에 막는 위생관리 방법을 말한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의 축산농장에 있어서의 위생관리를 향상시켜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장 HACCP는 축산농장에 있어서의 위생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장에 HACCP의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위해요인(미생물, 화학물질, 이물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포인트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기록을 실시함으로써 농장단계에서 위해요인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립수산성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 HACCP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농장 인증기관 및 체제

<그림 15> 농장 HACCP인증 체제



농장인증기관으로는 공익사단법인 중앙축산회와 SMC주식회사(エス・エム・シー株式会社)이다.

- 축산농장에서 사육위생관리 향상 대처 인증기준(HACCP 인증기준)

농장 HACCP도입에 관하여 그 통일성이나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제기준(Codex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조화를 이룬 농장 HACCP인증기준을 공표하였다(2009).

그 배경을 보면, 경제사회의 발전·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이 풍족해졌지만, 한편으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는 등 일본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개의 생산농장에 있어서의 위생관리를 향상시켜 병원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리스크를 저감하고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은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제12조의 3에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육에 관한 기본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사육위생관리기준으로서 정하는 동시에 생산농장에 위해요인분석·필수 관리점(HACCP)의 사고방식을 도입해 가축의 소유자 스스로가 해저드나 관리점을 설정하고 기록하고, 생산농장단계에서의 위해요인을 컨트롤하는 사육위생관리(농장 HACCP)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일반적으로 HACCP 시스템의 구축에는 위해요인 분석 필수 관리점(HACCP) 시스템 및 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위원회))에 제시된 12순서 중의 7원칙의 적용이 기본이 된다.²⁵⁾

또한 2002년에는, 생산 단계에 있어 HACCP의 사고 방식을 도입한 사육 위생 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관점에서 「가축의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 가이드 라인(家畜の生産段階における衛生管理ガイドライン)」을 책정했다. 이것은 농장 HACCP 도입의

25) 위해요인분석을 준비단계로 5단계가 있다. 즉, ① HACCP 팀의 편성, ② 제품에 대한 기술, ③ 의도한 용도의 특정, ④ 제조공정 일람도의 작성, ⑤ 제조공정 일람도의 현장에서의 확인이다. 다음으로 위해요인분석 및 HACCP플랜의 작성과 관련하여 7단계가 있다. 즉, ⑥ 위해요인의 분석, ⑦ 중요관리점(CCP)의 결정, ⑧ 관리기준의 설정, ⑨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⑩ 개선조치의 설정, ⑪ 검증방법의 설정, ⑫ 기록의 보관이다.

전제가 되는 사육위생관리 방법을 축종별로 일반적 위생관리 매뉴얼로서 정리한 것으로, 본래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 적정농업규범)/GHP(Good Hygiene Practice : 적정위생규범)에 상당하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HACCP 시스템을 생산현장에서 도입·실시하기 위한 전제이다.

2007년부터는 농장 HACCP의 도입에 관해 그 필수사항이나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농장 생산위생관리 기술 등 향상대책 사업에 의해 코텍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조화를 이룬 인증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축산농장에 있어서의 사양위생관리 향상의 대치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으로서 공표하였다.

“인증기준”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I부는 농장 HACCP 도입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한 것으로, 경영자에 의한 HACCP팀 책임자 및 팀원의 임명, HACCP계획의 작성, 문서·기록에 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나아가, “인증 기준”은, 코텍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인증할 때의 기준이 된다. 제II부는 각 축종(젖소, 육우, 돼지, 채란계, 육용계)별로 농장 HACCP를 모델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축사의 요건, 가축 취급, 종사자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 현장에서는 반드시 제II부에서 나타내는 모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농장 HACCP의 도입은 인증을 받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농장 HACCP에 대응함에 따라 생산농장의 위생관리를 향상시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인증기준”을 공표함으로써 농장 HACCP에 힘쓰고 있는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의 사육위생관리나 가축보건위생소, 수의사 또는 축산관계 단체 등에 의한 농장의 사육위생관리 지도에서 널리 활용되어 가축위생관리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축산물생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공표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다음을 참조

젖소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dairy.pdf
육우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beef.pdf
돈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pig.pdf

채란계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layer.pdf
육용계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broiler.pdf

- 가축의 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HACCP는 일련의 작성공정에 있어서 특히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개소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 내용을 모두 기록함에 따라 공정 전반을 통하여 안전성확보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또한 HACCP시스템은 원재료의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을 경유하여 식탁까지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가축의 생산단계에 적용하는 경우, ① 우선 건강한 소축 및 사료의 도입·확보를 기본으로 하는 것, ② 다음으로 이 소축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하에서 사육관리를 함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위해의 오염방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 ③ 사육, 출하시의 가축 및 축산물의 취급 시에 HACCP의 도입절차에 따라 특정한 병원미생물을 제어, 만약 일정한 레벨까지 저하되는 관리수법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된다.

이 개념은 가축의 도입이나 작업환경의 정비 및 공정관리 등 이른바 일반적 위생관리 사항을 페이지에 HACCP 시스템을 피라미드 형 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HACCP 시스템에 의한 관리 내용을 기록에 남김에 의하여, 위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의 재검토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아가, HACCP 시스템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의 여부가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⁶⁾

⑤ 사육위생관리기준

사육위생관리기준(소, 물소, 사슴, 면양, 산양)

<p>I.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의 파악 등</p> <p>1.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의 파악 등</p>	<p>1. 스스로 사육하는 가축이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 및 만연 방지에 관해 가축보건위생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축보건위생소의 지도 등을 따를 것. 가축 보건소 등에서 개최하는 가축 위생에 관한 강습회 참가, 농림수산성</p>
---	--

26)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haccp/pdf/guide_line.pdf].

	홈페이지 열람 등을 통해 가축 방역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또, 관계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가축 보건 위생소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 것.
II.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2.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2. 자신의 농장을 위생관리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으로 나누어 두 구역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III. 위생관리구역에 대한 방원체의 지입 방지 3. 위생관리구역에 필요하지 않는 자의 진입제한	3. 위생관리구역 출입구 수를 필요최소한으로 할 것. 필요없는 자를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생관리구역에 출입 자들이 사육하는 가축에 접촉할 기회를 최소화하도록 해당 출입구 근처에 간판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관광목장의 다른 불특정하고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서 당해 출입구에서의 손가락 및 신발 소독 등 불특정하고 다수의 사람이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할 때의 병원체의 반입 및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작성하여 가축방역원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생관리구역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소독	4. 위생관리구역 출입구 부근에 소독설비(소독기기 포함, 이하 동일)를 설치하고, 차량을 진입한 자에 대하여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할 때에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소독을 시킬 것(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설비를 휴대하고 해당 출입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소독을 한 경우를 제외.
5. 위생관리구역 및 축사에 진입한 자의 소독	5. 위생관리구역 및 축사 출입구 부근에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해 위생관리구역 및 축사를 출입할 때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손가락 세척 또는 소독 및 신발 소독을 할 것(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설비를 휴대하고, 해당 출입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경우를 제외.
6. 다른 축산관계 시설 등에 진입한 자가 위생관리구역에 진입할 때의 조치	6. 당일에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한 자(가축방역원, 수의사, 가축) 출입시 조치 인공수정사, 삭제사, 사료 운반업자, 집유업자 기타 축산관계자를

	제외하거나 과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귀국한 자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7.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품 등을 위생관리구역에 진입할 때의 조치	7.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사육할 가축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위생관리구역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세정 또는 소독을 할 것. 가축의 사육관리에 필요 없는 물품을 축사로 가져가지 말 것.
8. 해외에서 사용한 의복 등을 위생관리구역에 진입할 때 조치	8. 과거 4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사용한 의복 및 신발을 위생관리구역에 반입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척, 소독 기타 조치를 강구할 것.
IV.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병원체의 침입 방지 9. 급이(給餌)설비, 급수설비 등에 eog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의 혼입 방지	9. 축사의 급이 설비 및 급수 설비 및 사료 보관 장소에 쥐, 들새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0. 음용에 적당한 물의 급여	10. 사육하는 가축에 음용에 적합한 물을 급여할 것
11. 가축의 사체 보관 장소	11. 가축 사체를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장소에 대한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V. 위생관리구역의 위생상태의 확보 12. 축사 등 및 기구의 정기적 청소 또는 소독 등	12. 축사 기타 위생관리구역 내에서 시설 및 기구의 청소 또는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할 것. 주사바늘, 인공수정용 기구 기타 체액(생유 제외)이 부착되는 물품을 사용할 때는 한 마리마다 교환 또는 소독을 할 것.
13. 공방 또는 공해치(空ハッチ)의 청소 및 소독	13. 가축의 출하 또는 이동에 따른 축방 또는 해치(송아지를 개별적으로 사육하기 위한 소형 축사를 말한다)가 비었을 경우에는 청소 및 소독을 할 것.
14. 밀사(密飼)의 방지	14. 가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한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

<p>VI. 가축의 건강관찰과 이상을 확인한 경우 대처</p> <p>15. 특정 병상이 확인된 경우 조기 통보, 출하 및 이동의 정지</p>	<p>15. 사육하는 가축이 특정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가축 위생 보건소에 통보할 것. 또한 농장에서 온 가축 및 그 시체, 축산물 및 배설물의 출하 및 이동을 하지 말 것. 필요가 없더라도 관련 위생관리구역 내에 있는 물품을 위생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말 것.</p>
<p>16. 특정증상 이외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출하 및 이동의 정지</p>	<p>16. 사육하는 가축에 특정 증상 이외의 이상 사망을 포함 이하 같아서, 가축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축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그 원인이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외)에는 즉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 가축이 감시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 농장에서의 가축 출하 및 이동을 하지 말 것. 해당 가축이 감시전염병에 걸리고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가축보건위생소의 지도를 따를 것. 또한 사육하는 가축에게 기타 특정 증상 이외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지도를 구할 것.</p>
<p>17. 매일의 건강 관찰</p>	<p>17. 매일 사육하는 가축의 건강을 관찰할 것</p>
<p>18. 가축을 도입할 때 건강관찰 등</p>	<p>18. 다른 농장 등에서 가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입 전 농장 등의 질병 도입하는 가축의 건강상태 확인 등에 의해 건강한 가축을 도입한다. 도입 가축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려 있을 수 있는 다른 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다른 가축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것</p>
<p>19. 가축의 출하 또는 이동시의 건강관찰</p>	<p>19. 가축의 출하 또는 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축에 부착한 배설물 등의 더러움 출하 또는 이동 직전에 해당 가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가축의 시신 또는 배설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누출이 생 하지 않도록 할 것</p>
<p>VII. 매물 등의 준비</p> <p>20. 매물 등의 준비</p>	<p>20. 매물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성우(월령이 만 24개월 이상 소를 말한다) 한마리당 5평방미터를 표준</p>

	<p>으로 한다)의 확보 또는 소각 혹은 화제를 위해 준비 조치를 강구할 것</p>
<p>VIII. 감염 루트 등의 조기 특징을 위하여 기록의 작성 및 보관보관</p>	<p>21. 다음에 실린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된 적어도 일년간 보존하기 (1)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종업원 제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 및 해당 위생관리구역에 출입 연월일과 그 목적(목적에 있어서는 소속 등으로부터 분명한 경우 제외) 및 해당 입국자가 과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귀국한 경우 과거 일주일 이내에 체재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명 및 해당국 또는 지역의 축산관계시설 등의 출입 여부. 다만, 관광목장의 다른 불특정하고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상정되는 시설에서, 위생관리구역 출입구에서 손가락 및 신발 소독 등 불특정 다수. 자가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할 때의 병원체 반입 및 반출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작성하고 가축 방역원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축의 소유자 및 종업원이 해외로 도항(渡航)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및 국가 또는 지역명, (3) 도입한 가축의 종류, 두수, 건강상태, 도입원 농장 등의 명칭 및 도입 또는 이동을 한 가축의 종류, 머릿수, 건강상태, 출하 또는 외부의 농장 등의 명칭 및 출하 또는 이동 연월일, (5) 사육하는 가축의 이상 유무 및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 두수 및 월령</p>
<p>IX. 대규모 소유자에 관한 추가조치 22. 수의사 등의 건강관리 지도</p>	<p>22. 대규모 소유자는 농장마다 가축 위생 보건소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다 담당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이나 등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를 받을 것.</p>
<p>23. 통보 룰의 작성 등</p>	<p>23. 대규모 소유자는 종업원이 사육하는 가축이 특정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해당 대규모 소유자(해당 대규모 소유자 이외에 관리 자가 있을</p>

	<p>경우에는 해당 대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한 것을 작성하고 이를 전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할 것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 및 만연 방지에 관한 정보를 전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할 것.</p>
--	--

이 외의 돼지, 멧돼지, 닭, 오리, 수라, 꿩, 다나비, 까마귀새, 칠면조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9593MH5J/index-2.pdf).

사육위생 관리기준 준수 지도 지침(도도부현에 의한 지도용)

○ 도도부현에 대한 가축의 사육에 관한 위생관리 상황 등에 관한 정기 보고

<p>사육위생 관리기준이 정해진 가축의 소유자는 매년 사육하고 있는 해당 가축의 두우수(頭羽數) 및 해당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 상황에 관해 도도부현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고할 때는 다음에 기재한 정기 보고 양식(양식 제14호)²⁷⁾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축기한은 축종별로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돼지, 말, 물소, 사슴, 면 양, 염소, 돼지 소유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 닭, 오리, 메추라기, 꿩, 다치요우, 호로호로조, 칠면조의 소유자는 매년 6월 15일까지.
--

○ 가축의 사육에 관련한 위생관리의 상황 등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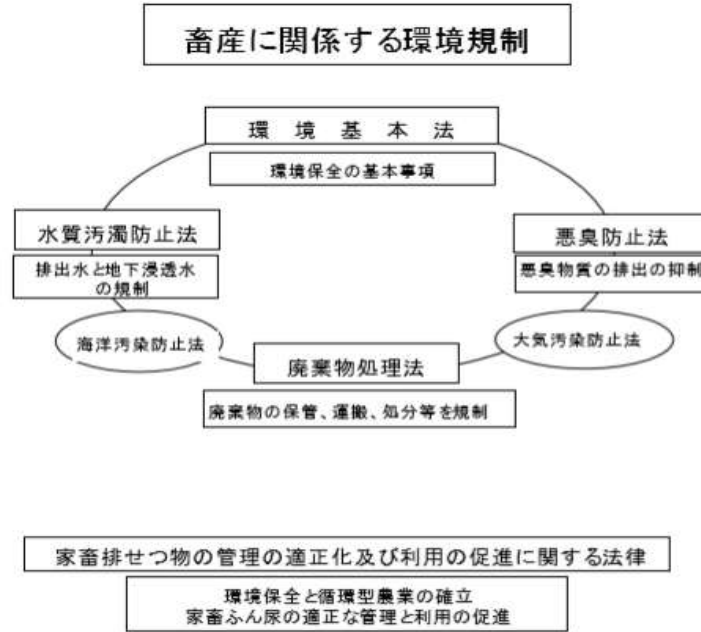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대신은 매년 사양위생관리기준이 정해진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관리 상황, 도도부현 지사가 취한 지도 및 조언, 권고 및 명령 실시 상황 및 가축방역원의 확보상황에 대해 도도부현별로 정리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²⁸⁾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shiyou/index.html].

28) 보고된 사례는 다음을 참조[전국집계관, 도도부현 별판 등,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shiyou/index.html].

5) 축산환경 대책

(가)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



(나) 환경기준법

- 목 적

환경기준법의 목적은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 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밝힘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 삶의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책무 -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책정과 실시
- 지방공공단체 - 국가에 준한 시책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자연적 책무, 사회 조건에 맞는 시책의 책정
- 사업자 책무 -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에 수반한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장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
- 환경기준 - 정부는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염, 토양의 오염 및 소음과 관련된 환경 상의 조건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자 함

<표 81>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인간의 건강에 관한 환경기준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환경기준
인간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치를 정하고자 함	각 공공용수역(하천, 호수, 해역)에 대해서 수역유형(이용목적)에 대응한 수질의 기준치를 정하고자 함
(규제대상물질) 카드뮴, 전 시안, 암모니아화 질산화 화합물, 질산화 화합물, 기타	(수질기준항목)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 군수.

(다) 가축배설물법

- 서 설

일본의 축산은, 식생활의 고도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농가당 사육 규모의 확대나 지역에서의 혼주화의 진행, 환경문제에의 관심의 고조 등을 배경으로서 가축 배설물에 의한 악취나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축산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축산환경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문제 발생은 민원 발생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축산경영에서 비롯되는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최근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 주요한 발행 요인

축산 환경 문제의 가장 큰 발생 요인은 고품상의 가축 배설물을 단순히 쌓아 방치하는 등의 “야적”이나 땅에 구멍을 파 액체 모양의 가축 배설물을 쌓아 놓는 “소굴(素掘)” 처분 등 가축 배설물의 부적절한 처리나 보관에 있다고 한다(“처리”나 “보관”을 “관리”라고 한다). 특히, 근년, 질산성 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나 크립토스포리듬(원충)에 의한 수도원의 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큰 문제와 가축 배설물과의 관계가 염려되게 되어, 축산 환경 문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표 82> 가축분뇨와 가축 배설물

가축분뇨의 성분이나 성상은 가축으로부터 배설된 후 건조하거나 미생물의 분해를 통해

서 서서히 변화해 가지만, 미생물 분해로 인해 생긴 퇴비를 “가축분뇨”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축산환경문제의 발생요인은 배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성상이 변화한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부적절한 관리가 발생 요인이 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 때문에, 가축 배설물법을 비롯하여 축산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가축으로부터 배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뇨뿐만 아니라 건조한 상태의 것이나, 미생물의 분해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가축 배설물”이라고 칭한다.

* 가축분뇨를 원료로 만든 퇴비는 “가축분뇨”라고 불리지 않고 “가축배설물”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다만, 숯이나 재와 같이, 그 성분이나 성상이 원래의 가축분뇨의 성분이나 성상과 동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가축배설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축배설물”에는 가치가 높은 퇴비나 건조물 등도 포함되므로, “가축배설물”인 것이 소위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가축배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가축배설물”로 변환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축산환경대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 가축배설물의 발생과 관리 상황

○ 가축배설물의 발생 상황

가축 배설물(가축 분뇨)의 발생량은 축종(심지어 연령)에 의해서 1두(마리)당 대략 연간 발생량(여기에서는 “원 단위”라고 합니다.)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본 전체의 연간 발생량은 축종(나아가, 월령)마다 사육 두(마리) 수에 원단위(原單位)를 곱함으로써 추정된다. 일본 전체의 1년간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의 양은 약 8천만톤으로 추산됐으며 최근에는 사육 두(마리) 수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제자리 걸음 내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18년 축산 통계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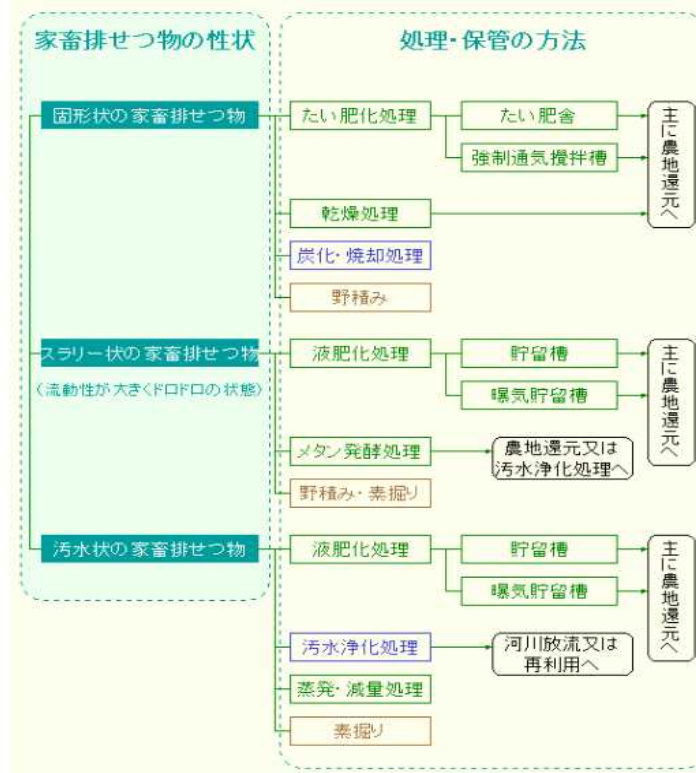
축종	발생량
젖소	2,200
육용우	2300
돈	2100
채란계	800
식용 육계	500
합계	7900

일본의 가축 배설물의 연간 발생량을 용적으로 옮기면 도쿄 돔 용적의 약 75배에 해당된다. 이는 가축 배설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식품 폐기물”(연간 발생량 약 2천만톤), “간벌재·피해목을 포함한 임지 잔재”(연간 발생량 약 4백만톤)에 비해서 매우 크고 일본의 바이오매스 자원의 총 부피(약 3억 4천만톤)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가축배설물 관리방법

가축 배설물의 관리(처리·보관) 방법에는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의 성상이나 처리 후의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본은 국토가 좁고, 도시와 농촌의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퇴비화 처리나 정화 처리가 많이 행해지는 등 다양한 처리·보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 16> 일본의 가축배설물의 일반적 처리·보관 방법



일본은 가축 배설물에 포함되는 유기물, 질소, 린 등과 같은 성분은 하천이나 지하수의 수질오탁, 질소, 린, 칼리 등과 같은 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 배설물의 관리(처리나 보관)의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수질 오염이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출·침투되지 않는 관리 방법인 동시에, 가능한 한 토양 개량 자재나 비료로서의 유효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인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이상적인 방법에 지역의 자연조건, 사회조건, 축산경영의 상황등을 고려해서, 개개의 축산경영에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 가축배설물법

○ 가축배설물법의 제정 경위

가축배설물은 야적이나 소굴(素堀)이라는 부적절한 관리에 의해서 악취 발생의 요인이 되거나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환경 문제의 발생원으로서의 측면을 가지는 한편 퇴비화 등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토양개량 자재나 비료로 유효 9용이 기대되는 등 농촌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측면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적·소굴을 해소하는 가축 배설물의 관리(처리 및 보관)의 적정화 및 가축 배설물의 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가축 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家畜排せつ物の管理の適正化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1999년에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시책의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축산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 법률은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에 대하여 법률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04년 11월 1일에 본격 시행(모든 규정이 적용)되었다.

○ 가축 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

㉠ 관리기준의 준수

- ㉠ 농림수산대신에 의하여 가축배설물의 처리·보관 시설의 구조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기준을 책정하였다.

◎ 관리기준

- ◇ 시설 구조에 관한 기준
 - 분뇨의 처리·보관 시설은, 바닥을 콘크리트 그 외의 불침투성 재료로 축조를 하고 알맞은 덮개 및 측벽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 소변이나 슬러리의 처리·보관 시설은, 콘크리트 기타의 불침투성 재료로 축조한 구조의 저장조로 할 것
- ◇ 가축 배설물 관리방법에 관한 기준
 - 가축 배설물은, 시설에 있어서 관리할 것
 - 송풍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할 것
 - 시설에 파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선을 실시할 것
 - 가축 배설물의 연간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량에 대해 기록할 것 등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른 가축 배설물 관리

㉠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필요한 지도·조언, 권고·명령의 실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 10마리 미만 · 돼지
- 닭 2000마리 미만 · 말 100마리 미만 10마리 미만

㉡ 관리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과기간(최대 5년간을 설정)

- 시설의 구조에 관한 기준 : 5년간
- 가축배설물 발생량 등의 기록 : 3년간

㉢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상기와 같이 소규모의 사육두(마리)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가축 배설물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행정지도나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법 제4조)
- 지도나 조언을 받고도 여전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취지의 “권고”(법 제5조 제1항)

- 권고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는 “명령”(법 제5조 제2항)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조)

또한 도도부현 지사는 “지도 및 조언”이나 “권고 및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축산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명하거나 직원을 사업장에 들어서게 검사하는 등 “보고 청취 및 출입 검사”(법 제6조)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7조).

○ 가축 배설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 기본방침 책정 : 농림수산대신에 의한 가축 배설물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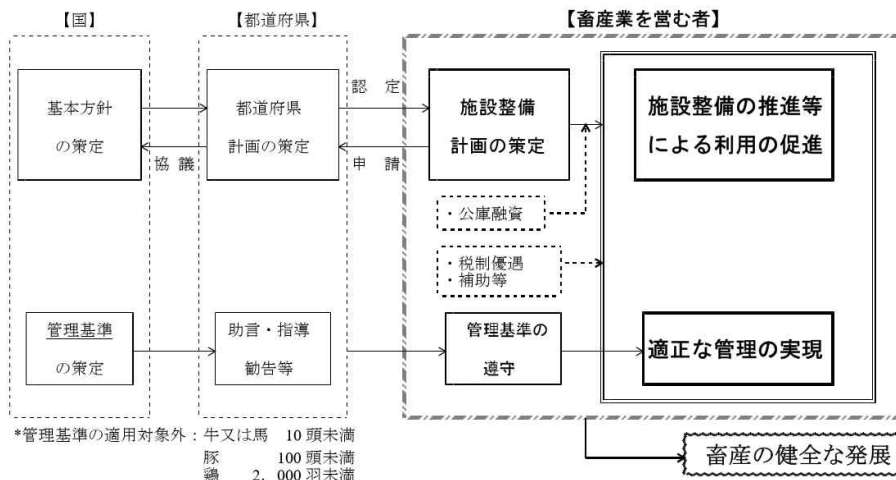
㉡ 도도부현 계획 작성 : 도도부현에 의한 지역의 실정에 따른 시설 정비의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한 계획 작성

㉢ 금융상의 지원 조치 :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작성하는 시설정비계획 인정(도도부현 지사)

- 위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용자 (시설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외, 시설·기계 임차료 전액 일시지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

<그림 17> 가축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적 구조



이 외에도 「가축배설물법」의 하위 법령으로는 「가축배설물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가축배설물 제7조에 의한 「기본방침」, 국장 통지인 「가축배설물법의 시행에 대하여」, 과장 통지 「가축배설물법의 등을 들 수 있다.²⁹⁾

- 축산경영에 관한 배수기준

○축산농업과 배수기준

「가축배설물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공용수역(하천, 호수, 향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역 및 이에 접속하는 공공구거, 관개용 수로 기타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로)으로 배수하는 경우 「수질오탁방지법(水質汚濁防止法)」에 의거해 배수 기준치를 클리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수질오탁방지법에서는 이를 “특정시설”이라 한다)을 가진 사업장(같은 법에서는 이를 “특정 사업장”이라 한다)이 대상이 된다.

- 총면적 50㎡이상의 돈방
- 총면적 200㎡이상의 우방
- 총면적 500㎡이상의 마방

배수기준에는 다양한 수질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축산농가에서 주의가 필요한 수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건강 항목(모든 특정 사업장이 대상)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화합물 및 질산화합물(질산성질소 등) 등
- (2) 생활환경 항목(하루 평균적인 배출물의 양이 50 입방미터 이상 특정 사업장이 대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량(SS)
 - 대장균 군수

2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http://www.maff.go.jp/j/chikusan/kankyo/taisaku/t_mondai/03_about/index.html].

- 질소 함유량
- 인 함유량 등

축산농업에 대해 일반 배수기준 준수가 당장 어려운 업종에 대한 경과조치로 잠정 배수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배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항목	잠정배수 기준치	기한	일반배수 기준치
질산성 질소 등	500mg/L	2023년 6월말	100mg/L
전 질소 함유량*	130mg/L (일평균 110mg/L)	2024년 9월말	120mg/L (일평균 60mg/L)
전 인 함유량*	22mg/L (일평균 18mg/L)	2024년 9월말	16mg/L (일평균 8mg/L)

* 전 질소 및 전 인에 대해서는 폐쇄성 해역에 배출하는 일평균 배출 수량 50m³ 이상인 양돈 사업장이 대상

주) 수역에 의해 적용되는 항목이 다르거나, 자치체에 의해 추가 규제를 하고 있는 등의 경우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체에 문의

○ 배수의 측정·기록·보존

2011년 4월 1일 이후 수질오염방지법에 근거한 특정 시설의 신고서에 기록 등재된 배출수의 수질항목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측정과 기록 3년간의 보존의 의무가 있다.

* 측정·기록·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된다. 현재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고, 항목에 과부족이 있으면 신고 변경을 하여야 한다.

측정항목	· 배수기준이 적용되는 항목 중에서 규칙양식 제1호 별지(배출수의 오염상태 및 량)에 기재한 항목(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측정)
측정·기록·보존	· 배출구마다 연1회 이상 측정(다만, 우수전용배출구는 제외) ·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
벌칙의 내용	· 측정결과와 기록·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질오탁방지법에 기한 자주측정

「대기 오염 방지 법 및 수질 오염 방지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大気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防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0년 법률 제31호)이 2010년 5월 10일 공포되어 관련 정성령(政省令)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축산 농업에 관련된 특정 사업장도 배출수에 대해서, 1년 1회 이상, 특정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신고 사항(질산성 질소 등에 대해서는 일배수량(日排水量)에 관계없이 특정 시설의 설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에 대해서 공정법(公定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록되지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30만엔 이하의 벌금).³⁰⁾

(라) 수질오염방지법

- 목적

같은 법의 목적은 공장 및 사업장에서 공공용 수역으로 배출되는 물의 배출 및 지하로 침투하는 물의 침투 규제와 오염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 내용

○ 배수기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공공수역(하천, 호수나 늪, 해역)으로 배수되는 물의 오염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벌칙~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등 28종류를 규제함

유해물질의 종류	허용한도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 화합물	1리터에 100밀리그램(2004년 6월 30일까지는 축산 농업에 대해서는 500밀리그램)

30) 대기오염방지법 및 수질오탁방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大気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防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HRC5UU/d019.pdf].

○ 생활환경항목

항목		허용한도	
일 반 항 목	수소이온농도	하천·호수	5.8 - 8.6
		해역	5.0 - 9.0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6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160mg/L	
	부유물질량	200mg/L	
	대장균군수(群數)	300ro/cm ³	
	질소함유량	120mg/L(일간평균60mg/L)	축산농업 H15.9.30까지 260mg/L(일간평균 130mg/L)
	인함유량	16mg/L(일간평균 8mg/L)	축산농업H15.9.30까지 50mg/L(일간평균 25mg/L)
특수항목	동, 아연, 철, 망간, 크롬, 노르마 핵산 추출물, 페놀유에 대한 규제		

* 생활환경항목에 대해서는 1일당 평균배출수의 양이 50m³ 이상의 공장, 사업장을 규제(돈방 시설 2000평방미터 이상, 우방시설 4000평방미터 이상, 마방시설 4000평방미터 이상), 또한 질소, 인에 대해서는 환경청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호수 및 해역 유입역

○ 특정시설설치의 신청

유해물질 또는 생활환경 항목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물질을 포함 또는 오염 상태에 있다고 하고, 공장 또는 사업 오수나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을 “특정 시설” 장에서 공공용 수역에 물을 배수하는 사람들은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벌칙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축산농업	돈방시설	50평방미터 이상
	우방시설	200평방미터 이상
	마방시설	500평방미터 이상

○ 개선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배출수를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오염상태가 해당 사업장의 배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출수를 배출하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거나 또는 특정시설의 사용 또는 배출수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사고시 조치

특정 사업장의 설치자는 특정 시설의 파손 기타 사고가 발생하여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이 해당 특정 사업장에서 공공용 수역으로 배출되거나 또는 지하로 침투함에 따라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끼치는 피해응급의 조치를 강구함과 더불어 신속하게 그 사고의 상황 및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개요를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 사업장의 설치자가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을 할 수가 있다.

(마) 폐기물처리법

-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분별,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등의 처리를 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내 용

○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축산관계에서의 동물의 분뇨, 동물의 사체 등을 말한다.

○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산업폐기물의 “다중배출사업자”

전년도의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를 다중배출사업자라고 한다. 다중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감량, 기타 처리에 관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경영에서의 기준			
- 젖소	50두	- 육우	100 두
- 돈	500두	- 계	20,000마리

○ 투기의 금지

누구라도 보다시피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 법인(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는 1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처리시설이나 매립시설의 설치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분뇨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설치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매립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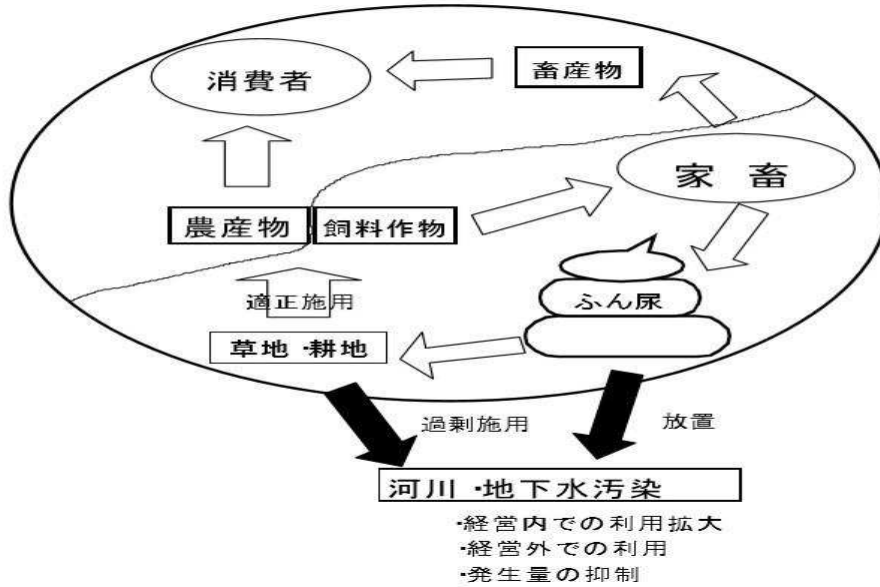
○ 분뇨의 사용 방법의 제한

비료로써 분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가적 형태에서는 다음과 같고, 그 외의 구역에서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방법을 사용할 때로 한다.

- 발효, 건조, 소각, 화학적 처리, 소변만 분리,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사용할 때
- 복토하여 사용할 때

(바) 축산환경문제의 근본

<그림 18> 가축분뇨의 순환



○ 축산환경 문제의 근본은 분뇨의 적정 이용과 의식개혁에 있다.

- 이용가능량과 관리시설 규모(처리량)가 사육두수의 상한
- 포장 살포 ≠ 적정이용
 - 적정 이용이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 (「훗카이도 시비가이드」 등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양)을 시술하는 것이며, 살포량이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투기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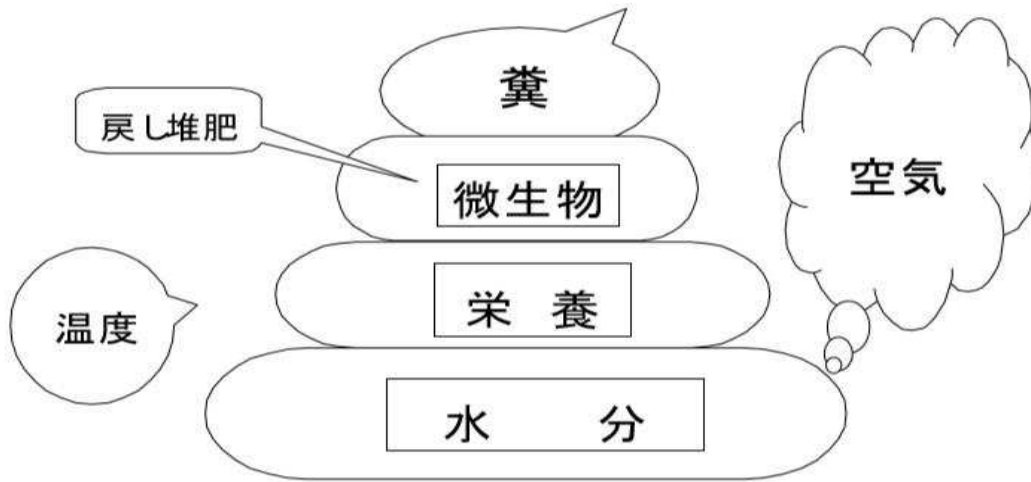
- 퇴비화의 기초

○ 퇴비화의 개념

미생물이 가축분뇨 속의 유기물을 호기적(好氣的)으로 분해·변화시켜 악취가 적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퇴비화의 주역은 호기적으로 일하는 다양한 미생물이다. 미생물은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역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퇴비를 생산한다.

○ 퇴비화의 조건

퇴비화의 주역인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환경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 영양분 - 미생물의 활동에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역분해성 유기물이 미생물 영양분이 된다. 가축 분뇨에는 유기물이 80% 함유되어 있어 특히 역분해성 유기물을 많이 포함되어 있다.
- * 수 분 - 수분은 미생물의 활동에 꼭 필요하다. 너무 적으면(건조) 미생물의 활동이 저하되고, 또 너무 많은 경우는 통기성이 나빠져 호기성(好氣性) 미생물의 활동이 저하된다.
- * 공 기 -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에는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다.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 오가쿠즈(オガクズ)나 모미가라(モミガラ) 등의 부자재를 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을 할 공기의 공급이 필요하다.
- * 미생물 - 퇴비화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생물은 생분 안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만, 스스로 만든 퇴비를 되돌려서 섞으면 퇴비화에 필요한 미생물 많이 포함되어 있어 퇴비화를 돕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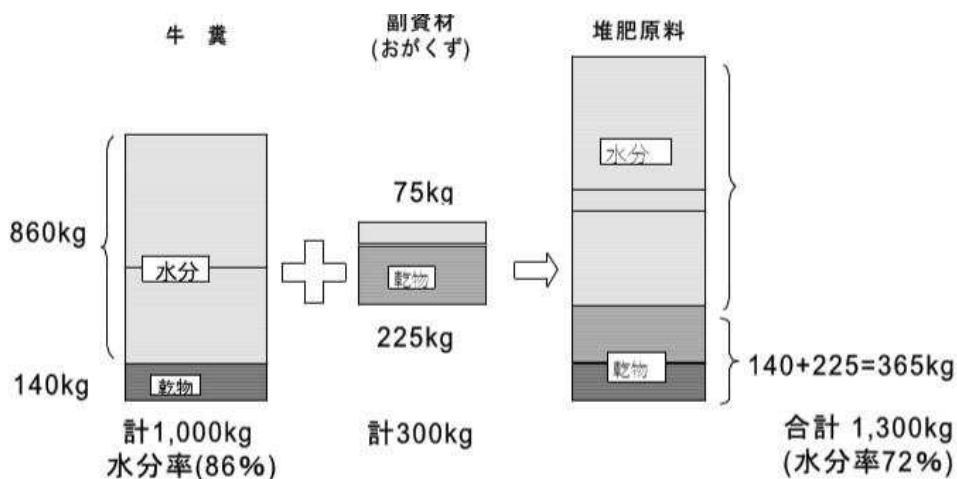
○ 수분조정

미생물이 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지나가기 쉬운 폭신한 상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하여 수분 함량을 축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70% 전후로 한다. 예를 들면, 우분은 72% 이하에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분의 수분율은 평균 86%인데, 이것을 72%로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우분 1톤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수분 72%로 하려면, 수분율은 14%로 저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을 500kg(물 전체의 58%) 증발시킬 필요가 있다(①).

수분조절을 한다는 것은 이 500kg의 물을 제거하거나 부자재를 섞어 수분율을 72%로 낮추어야 한다. 퇴비화란 “물”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재로 톱밥을 사용했을 경우의 그 필요량은 톱밥 자체에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평균 25%)으로 다음과 같습니다(②).

	원래의 분(생분)	①수분의 제거의 경우		② 부자재 첨가의 경우	
		수분제거량	수분제거후	첨가량	첨가후
수분	860kg	▲ 500kg	360kg	75kg	935kg
건물	140kg		140kg	225kg	365kg
계	1,000kg		500kg	300kg	1300kg
수분	86%		72%	25%	72%



<참고> 필요한 톱밥의 체적은 용적중(容積重)을 약 250kg/m³으로 1.2m³이 된다.

- 간이 저비용 시설
- ㉠ 북해도에 적합한 홋카이도에 맞는 분뇨처리 방법의 고찰
 - 현재의 퇴비화 기술 - 호기성 처리로 정시·정량을 처리
 - 시설이 고액
 - 교반 작업에 값비싼 기계와 인력 필요
 - 공간과 시간을 이용한 처리 방법 - 시트를 이용한 저비용 시설
 - 노력의 분산화, 생력화(省力化)
 - 시설 저비용화 : 난후기(暖候期)만의 처리(반복) , 혐기성 처리
- ㉡ 시트와 화산재를 이용한 분뇨시설의 기본적 사고
 - 관리기준에 대응한 관리
 - 자력(공동) 시설이 용이
 - 저비용
- 축산의 환경규제에 대한 의식 개혁

인식 1

가축배설물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라 생겼기 때문에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법
- 가축 배설물의 관리와 이용이 적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 수질오염방지법이나 폐기물처리법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배설물이 아니라도 관리기준과 같은 관리가 요구된다.

의식 2
 가축 분뇨처리는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별지 않는다)

- 생산성은 「생산물」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생산성에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공장이 그 처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 . . 공개기업으로서 소비자가 지탄
- 「분뇨처리는 별지 않아」(가 아니라, 「별기 위해서(번 결과)」 나온 것

인식 3
 벌금을 50만엔을 지불하는 것이 분뇨 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 싸다

- 분뇨의 부적절한 관리 실태의 공개가 지역 이미지 다운
- 목숨을 기르는 농업이 환경의 오염 원인으로 좋은가?
- 소비자의 축산물, 축산경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
- 소비자의 관심 - 식품 안전 생산 현장의 안전

6) 축산관련 인·허가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하고 있음.

(가) 축정(畜政) 관련

법령명	근거 조례	인·허가의 종류
가축상법 (家畜商法)	3조 1항	가축상(家畜商)의 면허
	3조2항 1호	강습기관의 지정
가축상법 시행령 (家畜商法施行令)	1조	면허의 신청
	5조	면허증의 서류 교부
	6조	면허증의 재교부

	7조	면허증의 반환
	8조	서류의 양식
가축상 영업보증금 규칙 (家畜商營業保證金規則)	9조	공고에 관련한 신청서가 없는 경우 그 취지, 있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증명

○ 구체적인 법조문

[가축상법]

<p>제3조(면허) 가축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전항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가축 거래 업무에 관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자 2.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가축의 거래 업무(농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하인 기타의 종업자로서 동호에 해당하는 자를 두는 것 <p>제4조(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전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조 제1항의 면허를 주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이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1985년 법률 제166호) 혹은 가축거래법(1985년 법률 제123호)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그 집행을 마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3.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취소(가축상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제외)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다만, 본조 제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된 자로서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은 제외한다. 4. 가축의 거래 업무를 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세우는 자이며, 그 중 어느 사업소에 대해서, 그 사업소에 속하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가 전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 5. 그 가축의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하인 기타 종업원을 둔 자로서, 그 자의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전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든 것(해당 업무를 행하는 사업소를 2 이상 마련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중 하나의 사업소에 대해서, 그 사업소에 속하는

동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든 것)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면허의 신청) 가축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면허 신청은 가축상 면허 신청서에 다음에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해서 해야 한다.

1. 가축의 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가축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하인 기타 종업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서면
2. 가축의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된 법 제4조의 2항의 수료증명서(이하 “수료증명서”라 한다.) 사본
3. 가축의 거래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호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4. 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및 자본금의 액수, 본점 및 가축의 거래 사업과 관련한 기타 사업소의 소재지와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5.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면허증 서류 교부) 가축상은 가축상 면허증에 기재된 제4조의 2호 또는 제3호에 제시하는 사항으로 변경을 발생한 때에는 그 교부와 관련된 가축상 면허증(해당 가축상의 가축상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하인 기타 종업원과 관련된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 전의 종업원에 대해 교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그 서환교부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그 서환교부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서환(書換) 교부를 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해당 변경에 대해 동항 후단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가축상면허증의 서환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면허증 재교부) 가축상은 가축상 면허증을 파손하거나 망실(亡失)했을 때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가축상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면허증 반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소제(消除)당한 자 또는 그 자의 상속인

혹은 청산인은 가축상 면허증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가축상은, 불필요하게 된 가축상 면허증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조(서류의 양식) 가축 상면허신청서, 수수료증명서, 등록변경신청서, 가축상면허증 기타 이 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필요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가축상 영업보증금 규칙]

제9 영업보증금의 환불을 하려는 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고에 정하는 기간 내에, 동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4호의 신청서의 제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의 교부를, 해당 신출서의 제출이 있었을 때에는 그 신청서 각 1통 및 신청과 관련된 채권의 총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전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축 위생 및 안정

법령명	근거조례	인·허가 등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21조 1항	사체의 소각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지사의 허가
	24조	사체 등 매장지를 발굴하는 경우 지사의 허가
수의료법(獣医療法)	14조	진료시설정비계획의 인정
수의료법시행령 (獣医療法施行令)	1조 1항	진료시설정비계획의 변경 인정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특정 사료 등 제조업자의 등록(제7조) 등록의 기준(제9조)
<참고> 가축보건위생소가 소관하는 업무(신고수속 등에 대해서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축위생소에 문의)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8조	4조의 2 제3항 내지 제5조의 검사 등을 하는 취지의 증명서 교부

	31조2항	31조 1항의 검사 등을 하는 경우 증명서의 교부
수의사법(獸醫師法)	22조	수의사의 신고
수의료법(獸醫療法)	3조	사육동물진료시설 개설 신고
약사법·동물용의약품 등 취체규칙 (藥事法·動物用医薬品等取締規則)		동물용 의약품 점포판매업 허가갱신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점포판매업 허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특례점포판매업 허가 갱신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특례점포판매업 허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특례점포판매지정품목 변경(추가지정)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배치종사자 신분증명서 교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배치판매업 허가 갱신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배치판매업자 허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 관계사항 변경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교환교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폐지(휴지, 재개)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종사 등록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등록 판매자 명부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종사 등록 소재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종사 등록증서 교환교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종사 등록증 교부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 갱신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 판매업 허가 신고서

○ 구체적 법조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사체의 매각 등 의무) 다음에 제시하는 가축의 시체의 소유자는 가축방역원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病性鑑定)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 소폐역, 구제. 역, 광견병, 수포성 구염, 리프트 밸리열, 탄저, 출혈성 패혈증, 전달

성 해면상뇌증, 비저기, 아프리카 말역, 소반추수, 짐승, 돼지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가금콜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니유카투스병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시체.

2. 유행성 뇌염,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말 전염성 빈혈 또는 가금살모넬라 감염증 환축 또는 의사환축 시체(와축장에서 죽인 것 제외)
3. 지정 가축의 시체

제24조(발굴의 금지) 제21조 제1항 혹은 제4항 또는 전조 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의 시체 또는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거나 혹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매몰한 토지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파서는 안 된다. 다만,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진료시설 정비계획 인정) 도도부현 계획을 바탕으로 진료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려는 자는 진료 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진료 시설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진료 시설 정비 계획이 적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진료시설 정비계획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진료 시설의 정비 목표
- (2) 진료 시설의 정비의 내용 및 실시 시기
- (3) 진료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시설 정비계획이 도도부현 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며 축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료시설 정비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 3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진료시설 정비계획의 인정 및 그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수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진료시설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 인정에 대해 준용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된 진료시설 정비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에 따라 진료 시설 정비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특정 사료 등 제조업자의 등록) 특정사료 등 제조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정사료 등의 종류에 따라 그 사업장마다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특정 사료 등 제조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특정 사료 등의 종류

(3) 해당 특정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해당 특정 사료 등의 제조를 위한 설비이며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특정 사료 등 제조 설비”라 한다.)의 명칭, 성능 및 수

(5) 해당 특정 사료 등의 검사를 위한 설비이며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정 사료 등 검사 장비”라 한다.)의 명칭, 성능 및 수

(6) 해당 특정 사료 등의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 및 검사를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이며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전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특정 사료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정하는 규정(이하 “특정 사료 등 검사 규정”이라 한다), 사업장의 도면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특정 사료 등 제조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특정 사료 등 제조 설비, 특정 사료 등 검사 장비,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 및 검사를 위한 조직 및 제9조(5)호 검사 방법에 대해서, 농림 수산 대신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항의 신청서에 제10조 제2항의 서면을 결들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등록의 기준) 농림수산대신은 제7조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정 사료 등 제조 설비가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2) 특정 사료 등 검사 설비가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3)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 및 검사를 위한 조직이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4)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지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특정 사료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가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증명서 교부) 도도부현 지사는 제4조의 23항 혹은 제5항 혹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가축 또는 그 사체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 약욕(藥浴) 혹은 투약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했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 제311조 도도부현 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가축 방역원에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가축의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의사법 및 수의료법]

수의사법 제22조(신고의무) 수의사는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한 2년마다 해 12월 31일 현재의 이름, 주소 기타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년 이듬해 1월 31일까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 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 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수의료법 제3조(진료시설의 개설 신고) 진료 시설을 개설한 자(이하“개설자”라고 한다.)는 그 개설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진료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진료 시설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체규칙]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416M60000200107_20180921_430M60000200062/0?revIndex=10&lawId=416M60000200107&openerCode=1

(다) 생산진흥 관련

법령명	근거조례	인·허가 등의 종류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4조1호	임시종축검사(臨時種畜検査)
	16조 1항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4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의 허가
가축개량증식법 시행령 (家畜改良増殖法施行令)	5조	종축(種畜) 증명서의 교환 교부
	6조1항	종축증명서의 재교부
	9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의 교환 교부
	10조1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의 재교부
낙농 및 식용 육우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 振興に関する法律)	10조1항	집약 낙농지역에서의 낙농사업시설의 신규설치의 승인
	12조	집약낙농지역에서의 낙농사업시설의 변경의 승인
양봉진흥법(養蜂振興法)	4조1항	전사(轉飼) 양보의 허가
가축거래법(家畜取引法)	3조	가축시장의 등록
	9조1항	가축시장 등록증의 교환 교부
	9조2항	가축시장 등록증 재교부
	15조	경매 또는 입찰 이외의 가축매매의 허가
	19조1항	시장 재편정비의 지정
	22조1항	시장 재편정비계획의 변경 승인
	26조1항	시장 재편정비 지역 내의 이전 허가
	27조의 2 1항	가축시장의 개장일에 있어서 시장의 거래의 허가
양계진흥법(養鷄振興法)	5조1항	표준계의 인정
	7조1항	부화업자의 등록
	7조2항	등록 부화업자의 요건 적합의 확인
	8조1항	등록 부화업자의 요건적합의 확인

○ 구체적 법조문

[가축개량증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p>- 가축개량증식법</p> <p>제7조(종축증명서의 효력의 취소 또는 정지)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5조의 검사결과, 질환에 걸려있다고 인정한 종축에 대해서, 그 질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그 교부한 종축증명서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종축의 질환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제8조(종축공시) 농림수산대신은 제4조 제1항 본문 또는 동항 제1호의 종축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축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종축증명서의 효력을 취소,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한 경우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뜻을 통보해야 한다.</p> <p>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의 종축증명서를 교부했을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종축증명서의 효력을 취소,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한 경우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p> <p>제24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의 허가)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 또는 도도부현이 개설하는 가축 인공수정소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p> <p>- 같은 법 시행령</p> <p>제5조(종축증명서 서환 교부) 종축의 사육자는 종축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발생했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교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에, 도도부현 지사가 교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서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6조(종축증명서 재교부) 종축의 사육자는 종축증명서를 더럽히거나, 손상 또는 분실하였</p>
--

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교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에, 도도부현 지사가 교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축의 사육자는 종축증명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종축증명서를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농림수산대신이 발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도도부현 지사가 교부한 종축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구종축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면허증의 서환 교부)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발생했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도도부현지사에게 면허증의 서환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증 재교부) 가축인공수정사는 면허증을 더럽히거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준 도도부현 지사에게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축인공수정사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면허를 준 도도부현 지사에게 구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가축인공수정사는 면허증을 더럽히거나, 손상 또는 분실을 하였을 때에는 더럽히거나, 손상 또는 분실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준 도도부현 지사에게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축인공수정사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면허를 준 도도부현 지사에게 구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낙농 및 식용육우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낙농사업시설 설치) 집약낙농지역의 구역 내에서 집유시설 또는 유업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낙농사업시설”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승인 신청이 왼쪽으로 제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항의 승인을 해야 한다.

1. 해당 낙농사업시설의 설치장소가 그 사업의 합리적 경영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낙농 사업 시설이 효율적이거나 그 능력이 해당 집약 낙농 지역에서의 생유의 공급량에 응할 수 있는 것일 것
3. 해당 낙농 사업 시설의 설치에 따라 해당 집약 낙농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낙농 사업 시설이 현저하게 과잉되지 않을 것.
4. 그 외 해당 낙농 사업 시설의 설치가 해당 집약 낙농 지역에 대한 집약 낙농 진흥 계획에 적합한 것인 것

제12조(낙농사업시설 변경) 집약낙농지역의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낙농사업시설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에 대해 준용한다.

[양봉진흥법]

제4조(전사양봉의 규제) 양봉업자는 다른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전사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사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전사의 장소, 벌군수 기타 사항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축거래법]

제3조(등록) 가축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신고 등) 개설자는 제6조 각 호에 제시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변경된 사항 및 변경의 연월일을 신고함과 동시에 변경된 사항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서환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을 멸실하거나 더럽힌 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가축의 매매 방법) 가축시장에서 행하는 가축의 매매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자질을 가진 가축의 매매를 행하는 경우 기타 경매 또는 입찰 방법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개설자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업무 규정을 갖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장재편 정비지역 지정) ① 도도부현 지사는 가축이 생산되는 지역이며, 그 구역 내에 개설되어 있는 지역 가축시장의 수가 그 구역 내의 가축 생산상황 및 거래상황에 비추어 과분하며, 그 구역에서의 축산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가축시장의 재편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구역을 해당 지역 가축시장의 개설자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시장재편 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정 절차 및 보고)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지정을 하고자 하는 구역 및 시장 재편 정비 계획에 대해 관계 지방 공공단체 및 가축 생산자 또는 가축상이 조직하는 법인으로 해당 재편 정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 지역 가축시장의 개설자는 시장재편 정비지역의 구역 내에 그 지역 가축시장의 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신청과 관련된 지역 가축시장의 위치가 해당 시장재편 정비지역의 구역내로 이전하여 그 운영을 하더라도 해당 시장재편 정비계획에 정하는 재편정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의 2(가축시장 개장일 등에서의 시장외거래 제한) 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가축시장 개장일과 그 전날 및 다음날(개장일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그 개장일과 그 첫날 전날 및 말일 다음날)에는 해당 가축시장으로부터 대략 1,000m 이내의 주변 구역 내에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가축시장에서 취급하는 종류의 가축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단,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계진흥법]

제5조(표준계 인정) ① 종란을 생산하는 자는 그 사육하는 닭에 대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닭이 표준닭인지 아닌지에 대한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부화업자 등록) 부화업자는, 그 모든 부화장(인공비화 방법에 의해 종란을 부화하는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부화장의 시설에서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
2. 종란의 부화에 관해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종란의 부화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1명 이상 있을 것

② 부화업자는 전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화장이 해당 부화업자의 주소지인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외에 해당 부화장이 전항 각호에 제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해당 부화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2. 부화장의 명칭 및 그 소재지
3. 부화장의 시설에서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화장에서 종란의 부화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종란의 부화에 관한 경험
5. 기타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등록부화업자가 새롭게 부화장을 개설할 때에는 미리 해당 부화장이 전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해당 부화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경영환경 관련

[가축 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 고도화 시설 정비 계획 인정)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처리 고도화 시설 정비 계획이 도도부현 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 것 기타 농립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 <http://www.pref.ibaraki.jp/nourinsuisan/chikusan/chikusei/kyoninka/kyoninka.html>)

7) 동물복지에 관한 법 규제 동향

(가) 현상과 과제

EU는 오래 전부터 산업동물³¹⁾의 복지의 이념이 침투하고 있어 산업동물의 사육보관, 수송 및 처분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복지 관련 축산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법적 규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역사문화나 국민성의 차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쌍방 측에 있어서 산업동물의 복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이해나 합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 산업동물에 관한 관심이나 이해가 낮으며 산업동물의 복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 형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산업동물의 복지향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소매가격 상승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 형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수의학협회 등의 국제기관에서 제창되고 있는 “가축복지의 5가지 자유”의 이념이 산업동물의 사육보관기준 등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 가축 복지의 5가지 자유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2. 육체적 고통과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
3. 상해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5.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따를 자유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동물 복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한다.

(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이 법에 의하면, 축산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보관 등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조

31) 산업동물이란 산업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보관하고있는 포유류 및 조류에 속한 동물을 말한다(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기준).

에 따른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5조(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생명 있는 물건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그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④ 환경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동물을 죽일 경우의 방법)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환경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항의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 생명·신체·재산에의 위해 방지, 괴로움 방지에 대해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를 정한 동물애호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으로 산업동물의 위생관리 및 안전유지, 도입·수송에 있어서 배려, 위해 방지 등의 규정이 있다.

○ “동물의 처분 방법에 관한 지침”

동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동물을 죽일 경우의 방법을 정한 동물애호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동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제장 및 사망축수취급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허가제(제3조)나 시설의 위생관리(제5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특정 지역 특정 수 이상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사육 또는 수용하는 경우의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허가제(제9조)의 규정이 있다.

○ 동물의 사육 또는 수용에 관련한 허가제

대상이 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동물의 종류	동물의 수	동물의 종류	동물의 수
소	1두	사슴	4두
말	1두	개	10두
돼지	1두	닭	100마리
면양	4두	오리	50마리

*동물의 종류는 법령에 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수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라) 가축상법

가축상에게 면허, 영업보증금 공탁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축의 거래 공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상의 면허제도(제3조), 면허의 취소 및 사업정지(제7조), 가축의 거래 사업에 관한 제한(제10조), 영업보증금의 공탁(제10조의 2), 출입검사(제 11조의 3)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가축상 면허제도

가축상이 되려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가축상명부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되며, 가축상 면허증이 부여된다. 나아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강습회를 수료해야 한다.

* 강습회 내용

- 가축의 거래에 관한 법령 : 4시간
- 가축 품종 및 특징 : 4시간
- 가축의 나쁜 버릇, 기능 장애 및 질병 : 6시간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의 진흥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해당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관리 방법에 관해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사양위 생관리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제12조의 3).

- 사양위생관리 기준을 정해야 할 가축(시행령 제2조) : 소, 돼지, 닭.
- 사양위생 관리 기준(안)의 내용

사양위생 관리 기준의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이 2004년(2004년) 7월 15일부터 2004년(2004년) 8월 13일까지의 사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양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제2절 기타 주요 국가

1. 독일

(1) 축산 거버넌스

1) 서 론

축산 관련 관할행정청은 연방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이다. 축산업(Tierzucht)과 축산(Nutztierhaltung)은 독일 농업의 중요한 기둥이다. 농장축산은 주로 식품(예를 들어 우유, 계란, 육류 등) 및 동물제품(예를 들어 양모, 가죽 등) 생산을 제공한다. 이때 대상 동물사육은 동물의 등급과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동물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범규범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경제상황과 높은 소비자의 기대 증가는 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식품·농업부는 동물복지, 환경영향, 산업안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 방법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및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2) 가금류

가금류 중에서도 닭은 독일에서 가장 흔한 농장동물이다. 틈새시장에서는 오리, 칠면조 등 다른 가금류도 있다. 칠면조는 수입으로 판매되었으며, 현재는 그 중요성이 높아져서 1990년대 초 이래로 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³²⁾ 오리들도 약 10여년 동 더 흔하게 사육되었으며, 거위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기니닭, 메추라기, 꿩과 같은 다른 가금류는 매우 적은 수로 사육되고 있다.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큰 가금류 생산국이다. 계란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가금류 육류에 대한 독일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다. 계란의 경우, 독일 역내 생산은 국내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계란과 가금류는 독일 농업 전체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³³⁾ 이 비중이 2013년에는 약 30억 유로로 그 중 75%가 가금류 육류였다.³⁴⁾

3) 소

독일 농민 절반 가량이 우유나 육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다. 따라서 소 사육은 경제적으로 독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장동물이다. 소 농민의 수가 감소하는 동안 소 무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 100마리의 동물을 키우는 농장에 있다.³⁵⁾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우유 생산국이며, 프랑스 다음으로 소고기와 송아지 생산국이다. 독일 농민들은 4분 마다 4유로의 우유와 육류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도 생산 가치는 150억 유로에 이른다. 이 중 4분의 3, 110억 유로 이상이 우유에 의한 것이다. 우유, 버터, 요거트, 치즈, 그밖에 유제품을 마시기 위해 현지 낙농장에서 거의 완전히 가공 및 처리된다. 이러한 유제품들은 거의 절반이 수출되며, 그 중 약 84%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³⁶⁾

32) BMEL, “Geflügel”, https://www.bmel.de/DE/Tier/Nutztierhaltung/Gefluegel/gefluegel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9. 9. 28).

33) Ibid.

34) Ibid.

35) BMEL, “Rinder”, https://www.bmel.de/DE/Tier/Nutztierhaltung/Rinder/rinder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9. 9. 28).

36) Ibid.

<표 83> 소 사육에 대한 주요 정보³⁷⁾

기준 : 2014년 8월 31일

구 분	주 요 내 용
재 고	약 1,250만 마리, 그 중 젖소는 420만 마리
농장 수	약 163,000 개
연간 도축 수	370만 마리
연간 생산량	육류 약 120만 톤 우유 약 3,000만 톤 이 중에서 유기농 생산 : 육류 4% 육류, 우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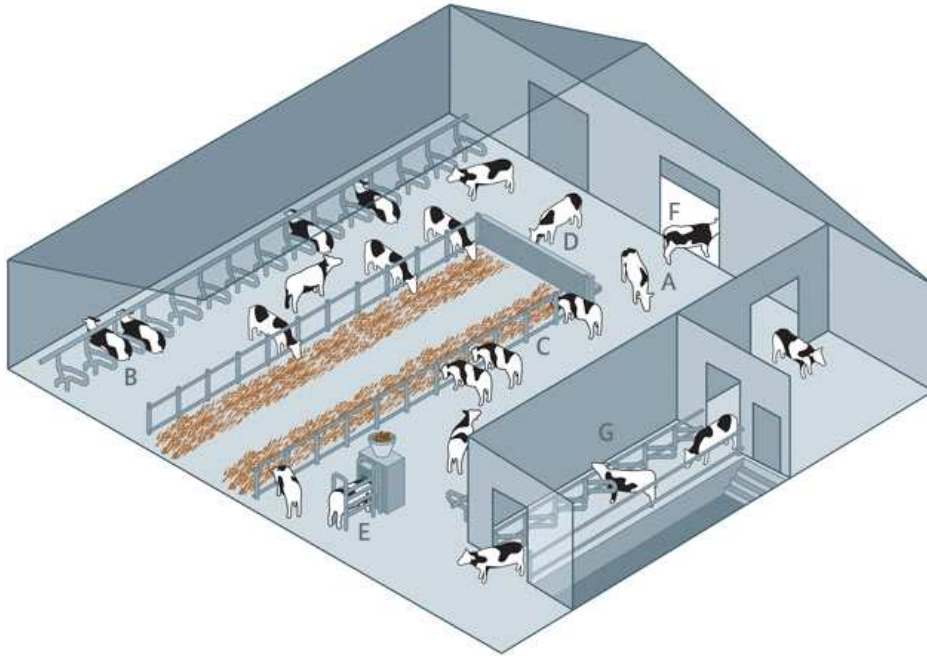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젖소가 우유를 공급하려면, 거의 매년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아야 한다. 암컷 송아지는 대부분 젖소 무리들을 위한 후손으로 쓰이며, 수컷 송아지는 살찌우게 된다. 암컷은 18~24개월 사이에 처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의 항상 인공적이다. 인공수정의 주된 이유는 더 나은 육종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 후 9개월이 지나면 송아지가 태어나고 젖소 무리로 보내진다. 송아지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먼저 칸막이 축사(송아지 박스)에서 성장하며, 특히 여유 공간이 있는 송아지 이글루에서 자란다. 8주 차부터는 가장 최근의 다른 어린 동물들과 함께 지낸다. 비육소는 1년 반에서 2년 후에 도축 무게에 도달하게 된다. 젖소는 보통 4년 반 후에 도축된다. 특히 육류소 사육의 동물친화적인 방식으로 암컷 젖소의 사육 시 암컷 젖소와 그의 송아지는 보통 6~9개월 동안 함께 머무른다. 이 젖소들은 착유되지 않는다. 암컷 젖소 사육장에서 소는 보통 목초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독일 소들은 4마리 중 3마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축사에 살고 있다. 축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축사의 범위는 바닥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넉넉한 크기의 칸막이 축사에서 각 젖소는 밀짚 등으로 채워진 휴식 공간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장에서는 여전히 소를 묶어 놓고 사육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소들이 서로 나란히 줄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누워있게 된다.

37) Ibid.

사육 형태와 관계없이 3마리 소 중 1마리 이상이 여름에 정기적으로 방목되며, 평균적으로 반 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한다. 소의 방목은 목초지 관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현대적인 젖소 축사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다.



이동면에 해당하는 ‘A’는 축사의 보행로로 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토양은 일반적으로 천공되어 있어서 배설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 소는 식사, 휴식, 반추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를 위해 축사는 밀짚과 같은 잠자리 짚으로 채워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급식 장소, 마시는 통, 칸막이 박스를 제공한다(‘B’는 칸막이 박스, ‘C’는 사료 먹는 곳, ‘D’는 물 마시는 곳). 반추동물로서 소는 최소 함량의 생섬유질을 포함한 배급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초 사료나 옥수수 사료는 기본 사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또한 높은 우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 공급량은 미네랄 사료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및 단백질이 풍부한 복합사료(주로 곡물 및 콩가루)로 보충된다(‘E’는 농축사료 제공 위치). 어떤 경우에 소들은 뜰이나 목초지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소들은 전형적인 운동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F’는 옥외 공간). 젖소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착유하며, 종종 이른바 착유 공간에서 착유된다(‘G’는 착유 공간). 완전 자동 착유시스템(착유로봇)은 작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별 동물에 맞는 착유 리듬을 제공한다.

4) 돼 지

돼지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육류공급원이며 독일 농업의 주류에 속한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며,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독일 농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돼지로 평균 70억 유로의 생산가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돼지 생산구조는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돼지농가의 수는 약 50% 감소하였고, 돼지 수는 약간 증가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농장은 새끼돼지의 생산 또는 비육과 같은 개별생산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컴퓨터 제어 급식과 환기시스템은 사육의 모든 단계를 위한 특별한 축사와 같은 표준에 속한다.

(2) 동물복지 또는 종에 적합한 동물사육

동물건강은 동물의 복지와 생산성의 중심에 있다. 안전한 사료, 수의학 의약품의 책임 있는 사용 및 효과적인 동물 질병의 예방과 통제는 동물복지에 기여한다. 국제거래의 증가와 육류, 우유 및 계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축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용동물의 사육을 위하여 입법자는 품종개량, 사육, 치료, 운송 및 도축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을 만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고통과 환경오염을 피하면서 필요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육 종³⁸⁾

육종(Zucht)은 가축의 유전적 특성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이전에 공식화된 육종 목표에 적합한 원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은 서로 짝을 이룬다. 이러한 동물을 조사하기 위해, 개별적인 동물의 특성을 수집하고 품질심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얻은 정보(사육 가치 추정)를 구한다. 소, 돼지, 양, 염소 및 말 등의 동물사육은 유럽연합 규칙 2016/1012(이른바 동물사육규칙)³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38) BMEL, "Tierzucht", https://www.bmel.de/DE/Tier/Nutztierhaltung/Tierzucht/tierzucht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9. 9. 28).

39)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16/1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zootechnical and genealogical conditions for the breeding, trade in and entry into the Union of purebred breeding animals, hybrid breeding pigs and the germinal products thereof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652/2014, Council Directives 89/608/EEC and 90/425/EEC and repealing certain acts in the area of animal breeding ('Animal Breeding Regulation')"이다.

이에 따라 육종협회는 오직 이러한 가축의 순수육종동물로 운영하는 반면에, 육종기업은 오직 하이브리드사육돼지(교배종)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육종협회와 육종기업, 특정한 말스포츠 행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유럽연합 동물사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축산 관련 법제와 주요 내용

1) 「축산법」

「축산법」(Tierzuchtgesetz, TierZG)은 특정한 농업상 유용동물의 사육을 위한 중요한 법원에 해당하다. 이 법은 소와 버팔로, 돼지, 양, 염소, 말과 당나귀 또는 그의 교배종과 같은 동물과 사육 전 동물이나 잡종(하이브리드) 사육돼지들의 사육과 거래에 적용된다.

「축산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p>제1장 일반조항 제1조(적용범위) 제2조(정의규정) 제2장 육종협회와 육종회사의 승인, 육종프로그램의 허가, 품질검사와 육종 평가에 대한 정보 전달 제3조(관할행정청) 제4조(육종협회와 육종기업의 승인) 제5조(육종프로그램의 허가) 제6조(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육종프로그램) 제7조(승인 및 허가 기간, 특별 규정) 제8조(품질검사와 육종평가에 대한 정보 전달) 제9조(위임입법)</p>	<p>제3장 유전적 다양성의 보존 제10조(모니터링) 제11조(위임입법) 제12조(행정규칙의 공포) 제4장 정자, 난소, 배아의 제공, 분배 및 사용과 순종의 사육동물 및 사전 사육 동물의 거래 제13조(사전 예약 동물의 등록확인, 동물사육증명서) 제14조(정자의 분배) 제15조(정자의 사용) 제16조(난자와 배아의 분배) 제17조(배아의 사용) 제18조(인공수정소, 배아단위, 수집단위, 생산단위) 제19조(위임입법) 제5장 역내 공동체 유통, 수입, 수출 제20조(위임입법)</p>	<p>제6장 감독, 관할, 국제거래, 벌금규정 제21조(관할, 상호정보, 국제거래, 위임입법) 제22조(관할행정청의 업무와 조치, 위임입법) 제23조(벌금규정) 제24조(몰수) 제7장 최종규정 제25조(특별한 경우에 벌금 명령) 제26조(경과규정) 제27조(경쟁제한법에 따른 가격준수의무의 면제) 제28조(법규명령의 폐지와 유럽연합법 수정을 위한 위임입법) 제29조(법규명령의 공포) 제30조(법의 폐지)</p>
--	---	---

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ierSchG)은 생명과 복지의 소산인 동물에 대하여 인간의 책임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1문). 또한 어떤 이유로든 동물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원칙이다(같은 법 같은 조 2문). 즉, 아무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도 적용된다.⁴⁰⁾

오늘날 「동물보호법」은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국가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소유, 도축, 동물에 대한 침해와 실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과 동물 사육 및 거래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행정법적으로 형성되어서, 유용동물의 사육은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 사육 시 농장동물과 그밖에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명령

이른바 동물보호·농장동물사육명령(Tierschutz-Nutztierhaltungsverordnung, TierSchNutzV)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장동물의 사육에 적용된다(같은 명령 제1조 제1항).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축산시설, 축사, 환기시스템, 발전시설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동물의 건강에 대한 상해 또는 다른 위험이 해당 업계의 기술에서 가능한 한 확실히 제거되도록 동물의 유형, 사용된 재료, 동물의 상태에 따라 각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음식과 물의 오염 침 동물간의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배치된 사료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도축 또는 살육 관련 동물보호를 위한 명령

이른바 동물보호·도축명령(Tierschutz-Schlachtverordnung, TierSchlV)은 「동물보호법」의 주요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규칙 No. 1099/2009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0) BMEL, “Artgerechte Tierhaltung”, https://www.bmel.de/DE/Tier/tier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9. 10. 4).

5) 동물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동물건강법(Tiergesundheitsgesetz, TierGesG)은 이전의 동물전염병법을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건강법은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그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서 이 법은 가축 또는 어류가 농업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한, 가축과 어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와 관련하여 「살모넬라증으로부터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gegen die Salmonellose der Rinder, RindSalmV)」, 「전염성 성병으로부터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gegen übertragbare Geschlechtskrankheiten der Rinder, RDeckInfV)」, 「백혈병으로부터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gegen die Leukose der Rinder, LeukoseV)」, 「바이러스성 설사의 감염으로부터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der Rinder vor einer Infektion mit dem Bovinen Virusdiarrhoe-Virus, BVDVV)」,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감염으로부터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der Rinder vor einer Infektion mit dem Bovinen Herpesvirus Typ 1, BHV1V)」이 있다.

그밖에 「브루셀라증으로부터 소, 돼지, 양, 염소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gegen die Brucellose der Rinder, Schweine, Schafe und Ziegen, BrucelloseV)」이 있다.

6) 돼지 사육(양돈) 시 위생요건에 관한 명령

이른바 양돈위생명령(Schweinehaltungshygieneverordnung, SchHaltHygV)⁴¹⁾은 사육 또는 비육 목적으로 돼지를 기르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7) 동물보호·운송명령

동물운송이나 가축운송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축의 운송 과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물보호·운송명령은 이러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동물운송은 유럽연합 규칙 (EC) No. 1/2005⁴²⁾의 정의를 따르며, 그의 구현은 동물보호·운송명령에 의해 규

41) 정식 명칭은 “Verordnung über hygienische Anforderungen beim Halten von Schweinen”이다.

42) 정식 명칭은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5 of 22 December 2004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을된다. 이 유럽연합 규칙에 따르면, 운송이란 척추동물이 목적지에서 하역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과 함께 적재, 하역, 환적, 휴식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같은 규칙 제2조 (a)와 (w)). 또한 이러한 개념은 상업상 운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

1) 행정규칙의 공포와 영향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적용 가능한 유전자 다양성 코드를 포함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축산법」 제12조 1문). 이 모니터링은 지역의 대표자, 단체, 해당 경제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방식품·농업부에 의해 준비된다(같은 법 같은 조 같은 문). 자문위원회는 연방식품·농업부에 의해 임명된다(같은 법 같은 조 2문). 이러한 점에서 유전자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일반행정규칙이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인·허가 의제

독일 「축산법」은 2019년도에 유럽연합 2016/1012 규칙에 맞추어 개정되면서, 특히 지금까지 육종단체 또는 육종기업의 승인절차가 현행 유럽연합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었다. 이는 육종단체 또는 육종기업의 승인과 육종프로그램의 승인을 두 가지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초로 육종프로그램의 허가를 위한 유럽 전역에 유효한 절차가 확립되었다.

육종단체 또는 육종기업이 시행하는 육종프로그램은 유럽연합 2016/1012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관할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축산법」 제5조 제1항). 육종프로그램의 지리적 영역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도 적용되는 경우, 관할행정청은 다른 국가 영역의 관할행정청에 그 신청에 대해 통보하고 신청서를 송부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1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2문). 관할행정청은 즉시 신청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된 행정청에 통보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3문).

and related operations and amending Directives 64/432/EEC and 93/119/EC and Regulation (EC) No 1255/97”이다.

관할행정청은 육종단체 또는 육종기업의 승인을 위하여 최소한 2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관할행정청은 토착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일한 품종에 대한 육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육종단체에게 그들의 육종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최근 연방정부의 「축산법」 개정안에 관한 식품·농업위원회의 결정 권고 및 보고에 따르면, 접근정보의 부여는 90일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절차의 의미에서 보다 이전에 가능해야 한다.⁴³⁾ 독일 영토에 말과의 육종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90일의 허가의제가 경과하기 전에 합법화가 이루어진다.⁴⁴⁾ 이때부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⁴⁵⁾

현행 「축산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독일 영토에 대해 유럽연합 2016/1012 규칙 제12조에 따른 말과 육종프로그램의 시행이 어긋나지 않는 경우, 관할행정청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육종단체의 신청에 따라 시행 초기에 육종프로그램에 등록된 말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등기하기 위한 접근정보를 육종단체에게 제공한다(같은 항 1문). 육종단체는 법규정에 따라 말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기해야 한다(같은 항 1문). 육종단체의 신청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관할행정청이 독일 연방식량·농업부에 통지한 시점부터 할 수 있다(같은 항 2문; 같은 법 제6조 제1항 1문).

3) 사육 기준

(가) 양돈 시 위생 요건

양돈가는 돼지를 노지에서 사육하지 않는 한, 다음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양돈위생명령 제3조 제1항; 부록 1).

43)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9/5682, 07.11.2018, S. 9.

44) Ibid.

45) Ibid.

<건축상 요건>

- 축사 및 부속공간은 구조적인 상태가 양호해야 함
- 축사에는 “돼지 사육 중 - 승인 없이 출입금지”라고 표시를 해야 함
- 돼지가 도망가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설치해야 함
- 방목은 관할행정청의 면밀한 지시에 따라 동물의 탈출을 막도록 울타리를 쳐야 함

<운영상의 요건>

- 농장의 비관계자는 양돈가와 상의하여 방목 시 돼지의 축사와 그 밖의 소재지에 출입하여야 함
- 축사 및 부속공간은 항상 충분히 밝게 조명되어야 함
- 축사 또는 이에 속한 부속공간은 신발을 씻고 소독할 수 있고 배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양돈가는 야외에서 방목하는 돼지가 자유롭게 있을 때에 다른 농장이나 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 양돈가는 사료와 잡자리 짚이 멧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여야 함

20곳 이상 700곳 이하의 비육 또는 사육장소를 갖춘 비육 또는 사육농장, 번식용 돼지를 제외하고 12주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지 않고 3곳 이상 150곳 이하의 출산장소를 갖춘 번식농장, 3곳 이상 100곳 이하의 출산장소를 갖춘 그밖에 번식농장 또는 혼합농장의 양돈가는 위의 요구 사항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따라 돼지를 사육해야 한다(양돈 위생명령 제3조 제2항; 부록 2).

<건축상 요건>

- 돼지사육을 위한 특정한 건물과 돼지의 사육 및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과 시설은 적절한 청소, 효과적인 소독, 설치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축사 또는 그밖에 장소의 출입구에는 신발의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함. 이 시설에는 축사 및 차량 바퀴를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신발 및 차량 바퀴의 세척 및 소독장치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동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운영경과>

- 농장의 비관계자는 일회용 의류나 농장내 보호복을 착용하고서 축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축사를 떠난 후 보호복을 벗어야 함

- 운영상 충분한 일회용 의류나 농장내 청소된 보호복을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청소 및 소독>

- 축사에서 모든 돼지들이 출입 시 사용한 장비와 적재 공간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돼지들의 출입 사이에 기존 장비와 물건을 포함하여 비워진 축사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분뇨 및 액체 배출>

- 분뇨는 농장에서 배출하기 전에 최소 3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액체 배출은 최소 8주 동안 보관해야 함

(5) 그 밖의 동향 : 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

2019년 11월 10일 연방식품·농업부 장관은, “가축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민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건축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연방내무·건설·국토부 장관과 합의하였다. 즉, 축산업에서 동물복지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동물복지에 기인한 미래 축사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개방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축산농민들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동물복지의 목적을 위한 현대화 조치 시 허가된 축산시설의 현재 상태의 보존을 기대하게 된다.

더 나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는 종종 농장에서 축사를 개조하거나 건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많은 농민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건축계획법상 관료적인 장애로 인하여 좌절되곤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개선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촉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야외 축산시설의 개조를 위해서 이제 건축상세계획이 요구된다. 즉,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축사를 확장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건축상세계획이나 계획안과 개발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한 조건은 시공 전에 더 이상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건축법」, 환경법에 이어 더 많은 동물복지 사이에 상충되는 목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계획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더 많은 공간과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축사 개축은 앞으로 많은 노력 없이도 농민들에게 실현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다른

한편, 현재 더 많은 동물복지 비용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개축을 재정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

2. 프랑스

(1) 축산 관련 법 체계

1) 개 관

- 프랑스는 1966년 「축산법」의 제정 이래로 농업분야에서 선진 법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부 산하의 국립인공수정센터(CNIA)나, 1984년에 도입된 가축 이력추적시스템이 그 예이다. 1998년에는 농촌법전을 제정하여 농업과 축산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였고, 농촌법전은 다시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1984년에는 가축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1998년에 농촌법전이 제정되면서 1966년의 「축산법」의 규정은 농촌법전으로 편입되었다. 농촌법전(code rural)은 그 후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으로 개편되었다.
- 2006년 1월 5일 농업 오리엔테이션 법 (loi d'Orientation Agricole du 5 janvier 2006)은 축산 및 인공수정 센터(CEIA)의 역할 및 기능을 상당 부분 수정하며 국립 인공수정연구소(centres national et d'insémination artificielle)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 위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6년 : 축산에 관한 법률 제정
 - 1984년 : 가축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1998년 : 축산에 관한 1966년 법률이 농촌법전으로 편입됨
 - 2006년 : 축산·인공수정센터가 국립인공수정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10년 : 농촌법전이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으로 변경됨.

2) 축산에 관한 1966년 법률

- 축산에 관한 1966년 12월 28일의 법(loi du 28 décembre 1966 sur l'élevage)은 농업 분야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위대한 법 중 하나이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농업부 장관인 에드거 포어 (Edgar Faure)의 고문관인 국립농업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의 유전학자 자크 폴리 (Jacques Poly)의 이름을 본따 “Poly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 Poly법은 총 4개의 장 및 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가축의 유전적 개량, 제2장은 축산에 관한 조직, 제3장은 축산개발에 필요한 건축물의 자금조달, 제4장은 보칙이다.
- 이 법은 동물 선택 및 동물 생산의 유전자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동물의 선택과 가축의 유전적 개선을 위해 국가와 기업, 협회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 식별, 계통 및 기록 점검, 유전자 색인 작업, 종축의 승인 및 선택, 가축개량 및 인공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국립농업연구소 (INRA)의 중추인 축산 기술 연구소(Instituts Techniques d'Élevage), 축산 및 인공 수정 센터 (CEIA) 등이 가축의 선택 및 유전적 개선 작업에 관여한다.

3)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

- 프랑스의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이하 농촌어업법전)에서는 농업/농촌을 넓은 의미에서 파악하여 농작물, 수목, 축산물 및 관련 식품 일체를 포함하며 매우 광범위하게 있다.
- 농촌어업법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9개의 권(livre)이며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시행령/시행규칙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농업/농촌에 관한 규정이며 제1권~제8권까지의 규정은 우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을 대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표 84> 농촌어업법전의 구성

Livre Préliminaire : Objectifs de la politique en faveur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et de la pêche maritime	서두 : 농업, 식량 및 해양어업을 위한 정책의 목표
Livre Ier : Aménagement et équipement de l'espace rural	제1권 : 농촌지역의 개발 및 설비
Livre II : Alimentation, santé publique vétérinaire et protection des végétaux	제2권 : 식품, 수의학 공중보건 및 식물보호
Livre III : Exploitation agricole	제3권 : 농업의 경영
Livre IV : Baux ruraux	제4권 : 농촌 관련 임대차 계약
Livre V :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제5권 : 농업전문기구
Livre VI : Production et marchés	제6권 : 생산 및 시장
Livre VII : Dispositions sociales	제7권 : 사회적 규정
Livre VIII : Enseignement,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éveloppement agricoles, recherche agronomique	제8권 : 농업교육, 직업훈련 및 개발, 농업 연구
Livre IX : Pêche maritime et aquaculture marine	제9권 : 해양어업 및 해양양식

- 농촌어업법전 제2권(Livre II)은 식품, 수의학 공중보건 및 식물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보면 우리의 「동물보호법」, 동물의 위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등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 ‘영양 품질, 식품안전’에 관한 제2권의 제3절(Titre III)의 제4장에서 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농업의 경영(exploitation agricole)에 관한 동 법전 제3권(Livre III)에서는 농업 관련 한 설치 및 확장이 허가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 농업경영의 통제감독과 구조는 농장 내의 농지 또는 지상의 생산작업장 개발에

적용된다.(제L331-1조)

- 농업 관련 설치 및 확장의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제L331-2조의 D) 행정청은 데크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게시하며, 허가신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동 법전 제3권 제2절(Titre II)에서는 농업개발의 다양한 법적형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축산 관련 조항이 있다.
- 축산분야에서 통합계약은 생산자가 하나 이상의 회사에 동물을 사육하거나 살찌우거나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거나 축산관리, 생산 공급 또는 완제품의 폐기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계약으로 간주된다.(제L326-2조)(cf. 농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 그룹과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상호의무를 수반하거나 하나 이상의 산업 또는 기업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또는 협약은 통합계약으로 간주된다)
- ‘농촌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제4권의 제2권은 가축의 임대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민법전에 따르고 있다.
- 가축임대는 당사장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가축을 유지, 공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민법전 제1800조)

(2) 축산 관련 법 규정

- 동 법전의 축산에 관한 일부 규정은 EU법에 따라 2019년 10월 30일에 개정되었다.
- 농업어업법전 제2권 ‘식품, 수의학 공중보건 및 식물보호’에서 축산업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영양품질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제3절의 제3장에서는 축산을 포함한 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제4장에서 규정하는 ‘축산 관련 규정’은 크게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과 축산물 위생에 있어 금지 또는 규제되는 물질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행정경찰 조치로 나뉘어져 있다.

Livre II : Alimentation, santé publique vétérinaire et protection des végétaux	제2권 : 식품, 수의학 공중보건 및 식물보호
Titre III : Qualité nutritionnelle et sé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	제3절 : 영양품질 및 식품안전
Chapitre III : Dispositions relatives aux établissements Section 1 : Mesures de police administrative Section 2 : Agrément des établissements Section 3 :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formation	제3장 : 시설과 관련한 규정 제1섹션 : 행정경찰 조치 제2섹션 : 시설의 허가 제3섹션 : 시설과 관련한 규정
Chapitre IV : Dispositions relatives aux élevages Section 1 : Registre d'élevage Section 2 : Substances interdites ou réglementées Section 3 : Mesures de police administrative.	제4장 : 축산과 관련된 규정 제1섹션 : 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섹션 :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물질 제3섹션 : 행정경찰 조치

1) 가축사육업의 등록

- 일반대중에게 소비되는 육류 또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가축사육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말 소지자는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데크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농가의 등록을 관장한다.(제L234-1조 I)
- 일반대중에게 소비되는 육류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관련 가축의 위생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등록해야 한다.(제L234-1조 II)

2) 축산 관련 시설의 공중보건

- 축산에 관한 시설이 공중보건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한있는 자는 관련 업자에게 청소, 직원교육 등 자체 점검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L233-1)

3) 축산 관련 시설의 허가

(가) 가축의 범위

○ 가축의 범위는 시설 관련한 시행령 제2권의 제3절의 제3장 제1섹션 ‘시설의 인가’에서 정하고 있음. (동 법전에서는 cheptel, amimaux를 섞어 쓰고 있고 본 조항에서는 animaux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문맥상 가축으로 번역함)

- 본 규정과 관련하여 가축은 다음을 일컫는다 : 국내 소종(들소 등 포함), 돼지, 양, 염소, 또는 나귀 또는 이들의 교배로 생산된 가축 및 모든 가금류, 부화 달걀 (제R233-3-1조)

(나) 축산물 관련 시설의 인허가

○ 사람이 소비할 예정인 동물성 제품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처리, 취급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권한있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L233-2, 1문)

- 제L233-2조에 따른 시설업의 인허가 대상은 우리의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위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시설업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는 취소된다.(제L233-2, 2문)

○ 제L232-2조에 언급된 인허가를 위한 신청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R233-1조)

○ 인허가가 발급되면 각 업자에게 관련 번호가 부여된다. 인허가 대상의 활동(영업)을 (인허가 발급 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활동(영업)을 중단한 경우 인허가는 철회/취소된다.(제R233-3-3조)

4) 가축의 보관, 유통, 판매업자의 신고

○ 가축을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제L233-3, 2문)

(3) 소 결

○ 축산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내 용	
가축의 범위	국내 소종(들소 등 포함), 돼지, 양, 염소, 또는 나귀 또는 이들의 교배로 생산된 가축 및 모든 가금류, 부화 달걀	
축산업의 등록 또는 인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사육업 외의 축산업	인허가
축산업의 등록 또는 인허가의 취소	가축사육업	가축의 위생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축사육업 외의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대상의 활동(영업)을 (인허가 발급 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활동(영업)을 중단한 경우
사육기준	없음	

3. 미 국**(1) 서 론**

- 미국의 축산업은 연방정부의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그 산하의 APHIS와 APHIS 내 부서인 USDA Animal Care에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 미국의 동물복지법인 Animal Welfare Act는 1966년 제정된 이후 여덟 차례나 개정(1970, 1976, 1985, 1990, 2002, 2007, 2008, 2013.)되면서 개정 초기의 주요 목적이었던 실험용 동물 등에 관한 복지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와 동물 및 동물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동물의 복지에 대한 근거법이 되고 있다.

(2) 축산 관련 법령

1) Animal Welfare Act(AWA)

(가) 주요 내용

- USDA(농무부) 산하의 APHIS 내의 USDA Animal Care는 동물 복지법(AWA)의 관리 주체이고, 이 연방법은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재판매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 수입에 대한 제한, 동물 싸움 금지 및 개인 애완 동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AWA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대중에게 전시되거나 애완동물로 판매되거나 연구에 사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정 동물에 대한 인도적 관리 및 치료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 규제 목적으로 규제 동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위생, 영양, 물 및 수의 관리를 제공해야하며 극한의 날씨와 온도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개를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기 전에 충족해야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 미국 전역에 위치한 고도로 훈련된 USDA 검사관은 AWA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된 모든 시설에 대해 일상적인 미공개 검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시설이 AW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검사관은 수의사(Veterinary Medical Officers, VMOs) 또는 동물 관리 검사관(Animal Care Inspectors, ACIs)으로 분류되며, 모든 VMO는 수의과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USDA Animal Care에 합류하기 전에 많은 수의사들이 개별 수의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음. ACI는 생물 과학 교육 및/또는 동물 관리 및 취급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USDA Animal Care는 특정 동물 종과 연구 또는 운송과 같은 특정 동물 전문 지식을 가진 수의사를 고용한다.
- 검사관은 AWA 표준 및 규정을 동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시설이 연방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USDA는 시설 내 동물이 인도적 관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봄. 반대로, 검사관이 연방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품목을 확인하는 경우, USDA Animal Care는 해당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품목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수정할 책임을 지도록 함.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거나 심각성이 충분한 경우, USDA는 적절한 규제 준수 및 집행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 1966년에 제정된 AWA는 모든 유형의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동물을 관리하지는 않으며, 취급대상이 아닌 동물은 다음과 같다.
 - 음식이나 섬유에 사용되는 농장 동물(모피, 가죽 등); 냉혈 종(양서류 및 파충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 물고기; 무척추 동물(갑각류, 곤충 등); 또는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된 조류, *Rattus* 속의 쥐 및 *Mus* 속의 생쥐.
 - 조류(연구를 위해 사육된 것 이외)는 AWA에 포함되지만 규제 표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음.

(나) AWA에 따른 검사

- Animal Care의 직원은 사전 라이선스 검사와 미공지 준수 검사의 두 가지 유형의 주요 검사를 수행함. AC 검사관은 일상적인 검사 외에도 AWA 라이선스 또는 등록 없이 축산 시설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포함하여 규제 시설에 대한 대중의 민원을 파악하고 있다.
-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동물 시설, 차량, 장비 또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의도된 기타 장소를 포함하여 자신의 구내 및 동물이 AWA의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함. AC 직원은 라이선스를 발행하기 전에 딜러 및 전시 업체에 대한 사전 라이선스 검사를 수행함. 이 법에 따라 사전 등록 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시설은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준수 상태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존중하고 있다.
- AC 직원은 모든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의 시설에서 AWA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공지 준수 검사를 실시함. 검사관은 구내, 시설, 축산 관행, 수의학 프로그램, 기록 및 동물 취급 절차를 검토함. AWA에 따르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 시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준수 여부를 검사함. APHIS는 또한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라이선스 사용자 및 등록자에 대한 최소 검사 빈도를 결정한다.

(다)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Risk Based Inspection System)

- Animal Care는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검사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동물 복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서보다 빈번하고 심층적인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시설에서는 더 적은 수의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다. 1998년에 시작된 이 시스템은 과거의 규정 준수 이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각 라이선스 및 등록 시설에서 최소 검사 빈도를 결정한다.
 - 저빈도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매년 1회 또는 2 ~ 3 년마다 또는 일부 경우에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한다. 고빈도 검사가 필요한 시설은 3개월마다 검사를 받게됨. 중간에 있는 시설들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받는다. 등록된 연구 시설은 AWA의 요구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됨. 이 시스템을 통해 AC는 보다 심층적인 검사를 제공하고 APHIS가 라이선스(licensee) 및 등록자와의 상호 작용을 개선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법은 APHIS가 AC의 검사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 검사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건 또는 기록을 발견 한 경우, AC는 위반 사항이 반복적 위반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마감일을 설정하고 검사 보고서에 이를 제공한다.
 - 반복된 위반의 경우에는 이미 마감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검사관은 45일 이내에 부적합 구역에서 동물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발견 된 경우 모든 시설을 재검사해야한다.
 - 동물의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경우 AC는 동물을 압수하거나 다른 곳에 배치 할 수 있음. 2010-2015년 사이 AC는 IES 및 OGC의 지원을 받아 11,000 마리 이상의 동물의 자발적인 포기 또는 압수를 진행함. 관련된 종으로는 개, 농장 동물, 헤지호그, 햄스터, 기니피그, 흑곰, 사자, 호랑이, 토끼, 고양이, 침팬지, 쿠거 및 알파카가 있음. AC는 또한 주,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에 압류 또는 포기를 지원한다.

Certificate Type	Total	Compliance	Pre-License/ Pre-Registration	Attempted
	Regulated Facilities	Inspections	Inspections	
BREEDER	3296	3516	544	722
CARRIER	284	783	0	21
DEALER	939	1215	208	164
EXHIBITOR	2764	3693	535	463
FEDERAL RESEARCH FACILITY	53	2	0	0
INTERMEDIATE HANDLER	260	188	2	15
REGISTERED EXHIBITOR	9	10	0	1
RESEARCH FACILITY	1104	1683	2	40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73	2	0	0
Not Licensed	N/A	89	102	3
All Facilities	8782	11181	1393	1429

Total Number of Inspections Performed FY 2005-2010

Fiscal Year (FY)	Number of Inspections
2010	14,003
2009	13,877
2008	15,372
2007	18,343
2006	20,311
2005	18,290

(라) AWA의 집행

- 일반적으로 AC는 주로 검사를 통해 AWA에 대한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데 검사관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치료 및 치료 영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시설을 고지 없이 방문한다.
- 개인 및/또는 사업체가 AWA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APHIS는 정보 서신(Letter of Information) 또는 공식 경고장(Official Warning Letter) 발행을 포함하여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검사 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보 서한은 AWA 비준수를 발견했으며 개인 및/또는 사업체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비공식 경고 서한이며 공식 경고문은 AWA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경고로, 개인 및/또는 사업자에게 향후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될 경우 당국이 민사 또는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APHIS의 IES(Investigative and Enforcement Services)의 직원은 라이선스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AWA를 준수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개인 또는 비즈니스가 라이선스 없이 또는 USDA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된 활동을 수행 할 때나 미준수가 관련된 동물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위반을 조사하는데 IES 조사는 규제 준수 또는 집행 조치의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개의 수입에 관하여

- 상업적 판매 또는 입양을 통해 개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이제 AWA의 적용을 받음. 의회는 2008년 이 섹션을 AWA에 추가했으며 APHIS는 2014년에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
- 재판매 목적으로 미국에 개를 가져 오려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개가 건강해야 함.
 - 광견병과 디스토펜퍼, 간염, 렙토스피라병, 파보 바이러스 및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DHLPP)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 개의 나이가 적어도 6개월이어야 함.
- 개가 미국으로 여행 할 때는 수출국에서 수의학을 시행 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영어로 발행 한 건강 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 APHIS가 발행한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APHIS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개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개 수, 수입 날짜와 목적을 포함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 Horse Protection Act(HPA)

- HPA는 파종된 말이 쇼, 전시회, 판매 또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파종된 말을 위와 같은 경우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HPA는 APHIS를 통해 USDA에 의해 관리되며, 1976년 법 개정으로 The Designated Qualified Person(DQP)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DQP는 HPA의 섹션4의 조항에 따라 파종된 말을 찾아내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말 검사를 위해 말 쇼 또는 판매 관리 처에 의해 임명 및 유지되는 사람으로 DQP는 9CFR 섹션11.7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USDA에서 인증한 HIO(Horse Industry Organizatio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The Horse Protection Act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44 -- Protection of Horses

Sections 1821-1831

- Sec. 1821. Definitions (text [↗](#)) (pdf [📄](#))
- Sec. 1822. Congressional statement of findings (text [↗](#)) (pdf [📄](#))
- Sec. 1823. Horse shows and exhibitions (text [↗](#)) (pdf [📄](#))
- Sec. 1824. Unlawful acts (text [↗](#)) (pdf [📄](#))
- Sec. 1825. Violations and penalties (text [↗](#)) (pdf [📄](#))
- Sec. 1826. Notice of violations to Attorney General (text [↗](#)) (pdf [📄](#))
- Sec. 1827. Utilization of personne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consenting States; technical and other nonfinancial assistance to State (text [↗](#)) (pdf [📄](#))
- Sec. 1828. Rules and regulations (text [↗](#)) (pdf [📄](#))
- Sec. 1829. Preemption of State laws; concurrent jurisdiction; prohibition on certain State action (text [↗](#)) (pdf [📄](#))/li>
- Sec. 1830. Omitted (text [↗](#)) (pdf [📄](#))
- Sec. 1831. Omitted (text [↗](#)) (pdf [📄](#))

3) Animal Care 프로그램

- Animal Care는 USDA의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APHIS)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 AWA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의 인도적 대우 보장
 - HPA가 적용되는 행사에서 파종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 재난 발생 시 애완동물 및 기타 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 수의사와 해양 포유류, 이국적인 고양이 및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약 200명의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AWA에 따라 매년 약 8,000개의 허가 또는 등록 시설에 대해 9,000건 이상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전시회 및 기타 행사에서 매년 1,500마리 이상의 말을 검사하여 HPA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비상 관리 파트너와의 협력 계약에 매년 4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동물 비상 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시 동물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저항력을 키우고 있다.

4) 축산 관련 민원 처리

- AWA 또는 HPA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USDA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imal Welfare Complaint

To report a concern about an animal covered under the Animal Welfare Act or the Horse Protection Act, please complete the form below.

Details of complaint

In the box below, please give a detailed description of your concern.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helpful to us include: the date of the incident; the type(s) of animal(s) present; the behavior of the animal(s); the condition of the animal(s); the condition of the facility; the actions of the person with the animals; the location of the incident; etc.

* Complaint

<p>Name of USDA licensee/registrant (if known)</p> <input type="text"/>	<p>USDA license/registration number (if known)</p> <input type="text"/>
<p>* City</p> <input type="text"/>	<p>* State</p> <input type="text"/>

(3) 동물 질병 추적성(Animal Disease Traceability)

1) 개요

- 동물 질병 추적성(Animal Disease Traceability)은 질병에 처한 동물과 위험에 처한 동물의 위치, 동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추적하고자 시행되었다. 동물 질병 추적성이 질병을 예방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이고 정확한 추적 시스템은 질병 조사와 관련된 동물의 수와 반응 시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 종합적인 동물 질병 추적 시스템은 치명적인 질병 발생에 대한 최선의 보호막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USDA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든 동물과 노출된 동물을 빠르게 추적 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출생부터 도축까지 동물을 추적하는 최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USDA는 2018.9.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 연방 및 주 동물 보건 공무원, 수의사 및 업계 간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공유함. 기본 동물 질병 추적성 데이터를 연방 동물 건강 이벤트 저장소(Animal Health Events Repository, AHER)와 공유하는 것을 포함함.
 - 데이터 전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인 식별이 필요한 동물에 전자식별 태그를 사용함.
 - 추적 데이터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출생에서 도축까지 동물을 추적하는 기능을 향상시킴.
 - 동물 건강 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가 개인 수의사에서 주 동물 건강 관리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향해 일하기 위해 국가 및 산업계 사이의 논의를 강화해야함.

2) 주간(Interstate) 축산 이동을 위한 추적성 규칙

- USDA는 2013.1.9. “주간(interstate) 축산 이동을 위한 추적성”이라는 항목의 최종 규칙 (9 CFR, 86 부)을 발표했는데 이 규칙은 가축의 공식적인 이동에 대한 가축의 공식 식별 및 문서화 요건을 설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주간으로 이동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종에 속하는 가축은 공식적인 확인, ICVI (Interstate Certificate of Veterinary Inspection) 또는 기타 이동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4) 수출입 요건

1) 수입 관련

- APHIS는 미국 농업 산업에 해충 및 질병이 없도록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출시된 수백만의 미국 농업 및 식품 제품이 수입국의 입국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함으로써 농업에 있어서의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수입 농산물이 농약 및 해충을 배제하기 위해 당국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APHIS는 원산지 지역의 동물 건강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일부 동물 및 동물 제품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의 APHIS 인식 동물 건강 상태에 따른 제한은 규제 프로세스를 통해 발령한다.
- 지역은 (a) 국가 기관 (국가); (b) 국가 단체의 일부 (지역, 카운티, 주, 주 등); (c) 지역으로 결합된 여러 국가 기관의 일부; 또는 (d) 단일 영역으로 결합된 국가 단체 (국가) 그룹.
- 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질 전환 내지는 녹아웃 쥐 및 생쥐, 햄스터, 저지, 기니피그, 토끼, 흰 족제비 및 그들의 혈액, 조직, DNA, 추출물, 항체, 대변, 혈청 및 항혈청. (혈액, 혈청, 항체 및 항혈청은 1리터 미만으로 제한됨) 등은 수입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1103).

- 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영장류, 개, 고양이, 가축, 가금류, 고슴도치, 미니 피그, 단일 클론 향채, 융합세포종, 세포 줄기. (세포/조직 배양 및 해당 제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 1120 참조)은 가이드라인 1103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수출 관련

- 살아있는 동물(정액, 배아 포함) 또는 동물 제품을 미국에서 수출하기 위한 국제 건강 증명서는 가축 및 동물의 건강 상태를 인증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며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는 공인된 수의사에 의해 작성된다(수출되는 개별 동물별로). 미국에서 동물을 수출하기 위한 완전하고 서명된 국제 건강 증명서는 유효한 서비스 지역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미국 농무부(USDA),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APHIS), 수의 서비스(Veterinary Services, VS)는 수출업자에게 특정 동물의 원산지에 대한 수입 국가 요구 사항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동물 제품 수출 규정(International Animal Product Export Regulations, IREGS)을 입안하였다.

(5) 방역 정책⁴⁶⁾

1) 방역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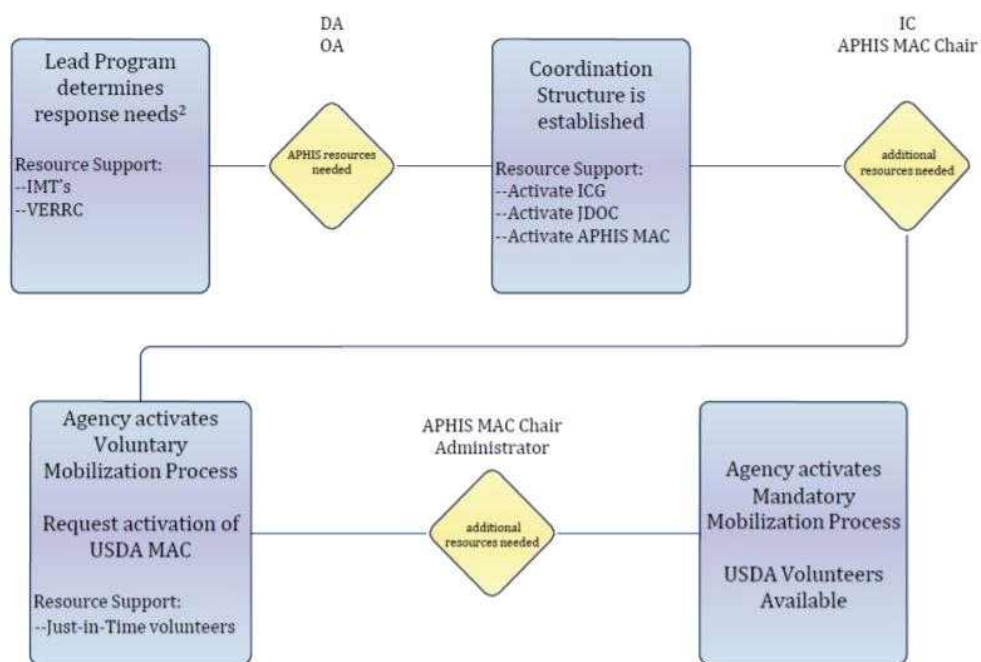
- 미국은 “구제역 대응 방역대책(FMD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PRoP)”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을 실시하는데 USDA(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 수의국의 가축방역긴급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Animal Health Emergency Management, NCAHEM)에서 중앙관리하며, 각 주정부에서는 동물위생부서(State Animal Health)가 방역임무를 수행한다.
-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매몰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살처분·매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46) 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 5. “2014-2016 구제역 백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 구제역 발생 시 캐나다·멕시코 가축위생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세 나라가 항원백신을 공동으로 국립구제역백신 은행에 비축하고 있다.
- 긴급사태 발생 시 APHIS에서는 필요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대응하고 있다.

APHIS Mobilization Process¹

(NOTE: Process map reflects steps, not time)



¹Temporary hires (e.g. NAHERC), term appointments and contractors are used as needed throughout the incident.
²The Lead Program can activate mandatory mobilization for its employees at its discretion.

Activation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1.1	Initial Response		
1.2	Notifications		
1.3	Establish Command Structure		
1.4	Identify Resource Needs		
1.5	Funding for Salaries		
1.6	Human Resources Considerations		
1.7	Funding for Response		
1.8	Cooperative Agreements		
1.9	Contracting		
1.10	Property Management		
1.11	Security		
1.12	Information Technology		
1.13	Information Management		
1.14	Resource Priorities		
1.15	Human Health		
1.16	Safety & Health		
1.17	Exemptions		

Mobilization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2.1	Mobilization		
2.2	EQS Resource Requests		
2.3	Voluntary Mobilization		
2.4	Agency Mandatory Mobilization		
2.5	Volunteer Emergency Ready Response Corps (VERRC)		
2.6	Physical and Virtual Deployments		

Deployment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3.1	Dispatch Activities		
3.2	Employee Pre-Deployment Checklist		
3.3	Making Emergency Response Travel Arrangements		
3.4	Length of Assignment(s)		
3.5	Employee Injury, Occupational Illness, and Assistance		

Demobilization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4.1	Out Processing		
4.2	Human Health		

Deactivation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5.1	Contract Close-Out		
5.2	Financial Close-Out		
5.3	APHIS MAC Group Stands Down		
5.4	NIC/Lead Program Stands Down		
5.5	Partial/Total Deactivation Procedures		
5.6	Transfer of Control		
5.7	Dispatch Close-Out		
5.8	Records Management		

Corrective Actions Program Checklist

	Task	Date/Time Completed	Verified
6.1	EQS Records Validation		
6.2	Lessons Learned		
6.3	After-Action Review and Improvement Planning		
6.4	Training, Testing, and Exercise Program		
6.5	Required Training		
6.6	Just-in-time Training		
6.7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Training		

2) 방역지대 설정 등

- 감염지역 내에서는 감수성동물의 반출이 금지되며, 생물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장비 등도 이동 금지되는데 이동제한 준수를 증대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통제지역(예: 완충지역) 내 승인 도축시설에서 즉시 도축을 위한 경우는 제외되며 최소 28일 간 추가 발생이 없고, OIE 육상규약에 의한 예찰 결과 감염의 증거가 없을 시 방역지대를 해제한다.

구 분		범 위	이동제한(조치) 내역
통제지역 (Control Area)	감염지역 (Infected Zone)	10km 이내 * 역학정보 등 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가능	- 감수성동물·생산물 반출금지 - 감수성동물의 유입 금지
	완충지역 (Buffer Zone)	면적 규정 없음 * 초기에는 감염농장 또는 접촉 농장 소재 주(State)로 설정	- 감수성동물 이동금지 - 농장(14일 간격 2번)·도축장 예찰, 혈청학적 예찰 실시
예찰지역 (Surveillance Zone)		통제지역 경계에서 10km 이내	- 신고 건에 대한 조사 - 고위험농가·도축장 예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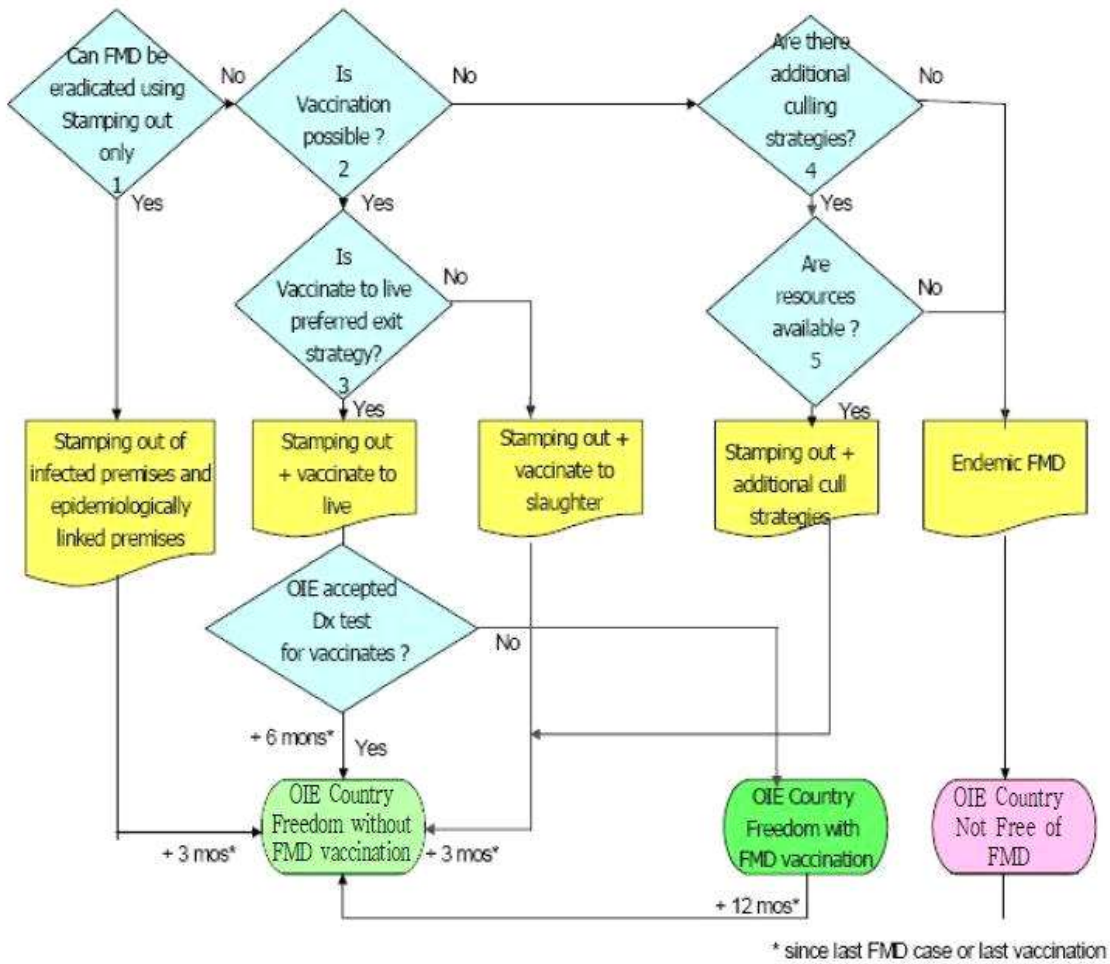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11. 『영국, 미국, 일본 구제역·AI 방역대책 비교 보고』

-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 및 접촉농장(대부분)의 감수성동물로 매몰처분을 기본으로 하며 발생농장의 감수성동물은 인도적 방법에 따라 안락사를 실시한다. 안락사 실시 전 평가 및 보상팀과 사전 협의를 거치며, 감염 농장으로 확인 후 24시간 내 안락사를 완료하고, 매물은 48시간 이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살처분 대상동물, 사료, 우유, 식육 등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대상을 72시간 이내에 살처분 가축 및 폐기물건에 대한 공정시장 가격으로 보상한다. 보상금은 판매가격, 생산비, 대상농가의 소득 등을 평가팀에서 검토한다.
- USDA 산하 APHIS는 구매, 폐기, 살처분 비용의 50%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림부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은 예외적 비상 상황인 경우 보상범위 조정(예: 시간의 100% 등) 권한을 갖는다.

3) 백신정책

- 미국은 백신 접종 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이 우선적인 방법이며, 살처분·매몰이 불가능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발생 72시간 내 예방접종 정책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긴급 백신 의사결정은 구제역 확인 후 확산될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백신을 접종하는데, 이때 전문가 그룹은 역학적 임상적 상황과 감염 원인(유래)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추정 일자,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전문가 그룹은 CVO에게 긴급 백신 접종 권고를 위하여 아래 의사결정도에 기술된 요소들을 평가해야 하며 백신 접종 시에는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업계, 연방 또는 주정부, 지방정부 등)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CVO는 장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국, 미국, 일본 구제역·AI 방역대책 비교 보고, 2011.

- 미국은 구제역 발생과 이에 따른 구제역 백신의 수요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국립항원백신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경제적·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동물보호 관련 규정⁴⁷⁾

1) 동물보호 관련 규정 개관

- 미국은 1966년에 동물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농장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 1906년의 ‘28-Hour Law’⁴⁸⁾과 1958년의 ‘Humane Slaughter Act’⁴⁹⁾ 등의 개별법에서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일부 주 단위에서 법률로 실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단위의 입법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⁰⁾
- 미국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특징은 법률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보다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동물복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 또는 레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맥도날드(McDonalds), 버거킹(Berger King), KFC, 데니스(Denny’s) 등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납품받는 축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⁵¹⁾ 세이프웨이(Safeway), 해리스티터(Harris Teeter) 등의 슈퍼마켓 체인도 납품업자에 대한 농장동물복지기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⁵²⁾
-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EU와는 달리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사육, 임신한 돼지 스톨사육 등을 인정하는 대신 적정한 면적의 제공이나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식품 유통업계가 동물보호·복지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에서 축산물 가공에 이르기까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축산물을 취급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47) 이하는 KLEI의 2018. 5.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48) 동물을 28시간 이상 중단 없이 운송하는 것을 금지함. 동물의 수송은 휴식 등을 위한 하차 없이 2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규정한 조항.

49) 도축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함.(가금류 제외)

50) 캘리포니아·플로리다·애리조나·오레곤 등에서의 모든 스톨사육 금지, 송아지 사육틀 사용 금지,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금지 등이 해당됨.

51) www.hsus.org/fram/news/pressrel/safeways_021108.html

52) www.bizjournals.com/eastbay/stories/2008/02/18/daily56.html?ana=from_rss

-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관련업체의 자체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 농장동물복지 실행 방법과 방향은 EU의 경우와 대조적이고, 이에 따라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으로서의 농장동물 복지에의 대응은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지나지 않아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사육기준

(가) 사육밀도 규제

가) 소

- 미국 USDA 제안사항으로 770kg 육우와 젖소 성우 모두의 최소 사육면적을 4.64㎡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돼 지

-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돼지의 사육밀도 규정을 단위면적(㎡)당 5~12 단계의 kg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면 슬랏과 부분 슬랏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kg~출하 시 0.74㎡/두를 최소 소요면적으로 정하고 있다.

<표 85> 바닥형태에 따른 체중별 두당 소요면적

(단위 : ㎡)

체중, kg	전면슬랏, ㎡	부분슬랏, ㎡	콘크리트바닥, ㎡
7 - 14	0.16 - 0.20	0.20 - 0.23	0.23 - 0.28
20	0.20	0.25 - 0.30	0.30 - 0.35
25	0.25	0.30 - 0.35	0.35 - 0.40
30	0.30	0.35 - 0.40	0.40 - 0.45
40	0.35	0.45 - 0.50	0.50 - 0.55
50	0.40	0.50 - 0.55	0.55 - 0.60
60	0.45	0.55 - 0.60	0.60 - 0.65
70	0.50	0.60 - 0.65	0.65 - 0.70

체중, kg	전면슬랏, m ²	부분슬랏, m ²	콘크리트바닥, m ²
80	0.55	0.70 - 0.75	0.80 - 0.90
90	0.60	0.75 - 0.80	0.90 - 0.95
100	0.65	0.80 - 0.85	0.95 - 1.05
110	0.70	0.85 - 0.90	1.00 - 1.10

* Fritschen and Muehling (1978)

다) 산란계

- 미국은 마리당 0.043m²에서 0.055m²까지 사육밀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0.0465m²이상 사육한 곳에서 계란을 공급받고 있다.

<표 86> 미국 산란계 사육밀도

산란계 사육밀도(수당)	비고
432 - 555cm ² for hens	465cm ² for producers supplying McDonalds Corp

라) 육 계 100p

- 유럽,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에서는 육계의 사육밀도 규정을 단위면적 (m²)당 kg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오리

- 미국 코넬대의 적정의 사육밀도 기준은 1주령은 마리당 0.0289m², 2주령은 마리당 0.0576m², 3주령은 마리당 0.1024m², 4주령은 마리당 0.1369m², 5주령은 마리당 0.1764m², 6주령은 마리당 2.304m², 7주령은 마리당 0.2304m²로 규정하고 있다.

<표 87> 미국 사육밀도 기준(Cornell University)

주령별	면적/수(cm ²)
1	289
2	576

주령별	면적/수(㎡)
3	1,024
4	1,369
5	1,764
6	2,116
7	2,304

William F. Dean, Ph.D., and Tirath S. Sandhu, DVM, Ph.D.

(나) 사육환경 규제

가) 돼지 스톨금지

- 플로리다 (2008), 메인 (2011), 로드 아일랜드 (2013), 오리건 (2013), 애리조나 (2013) 에서 설치 금지 캘리포니아는 2015년까지, 콜로라도는 2018년까지, 미시간은 2020년까지 매사추세츠는 2022년까지, 오하이오는 2025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나)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금지

- 캘리포니아 주(규제 성립 연도 : 2008년) 주민 투표에서 찬성이 압승, 법제화되어 배터리케이지 금지를 포함 주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매사추세츠 주(규제 성립 연도 : 2016년)는 2022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 미시간 주(규제 성립 연도 : 2009년) 의회에서 2020년까지 배터리케이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법안이 통과되었다.
- 오하이오(규제 성립 연도 : 2010년) 2010년 6월말에 일련의 동물 복지 대책에 대해 주지사, 농업 생산자 단체와 동물 애호 단체 연합이 합의. 배터리타리케이지 시설 건설 허가의 정지 조치를 즉시 시행함. 다른 주와는 달리 배터리케이지 기한을 마련 하였을 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합의에 따라 동물 애호 단체 연합에 의한 주 주민 투표 절차가 중지됨.)
- 오리건 주(규제 성립 연도 : 2011년) 의회에서 배터리케이지를 금지하고 1 마리마다 여유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엔리치 케이지”에 단계적인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6년에 전면적으로 배터리케이지 금지되었다.

- 워싱턴 주 (규제 성립 연도 : 2011년) 오리건 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엔리치드 케이지”로 전환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2026년 배터리케이지 금지되었다.

(다) 사육기준법령 비교

가) 돼 지

<표 88> 돼지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EU	미국
작성기관	EU연합이사회	미국돼지고기위원회
제목	COUNCIL DIRECTIVE 2008/120/EC of 18 December 2008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igs	SWINE CARE HANDBOOK
내용	제 1 조 (돼지의 보호를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 2 조 (정의) 제 3 조 (보증 사항) 제 4 조 (부속서의 취급) 제 5 조 (부속서의 수정법) 제 6 조 (위원회의보고 의무) 제 7 조 (조사의 실시) 제 8 조 (수입 돼지 취급) 제 9 조 (수의학 전문가의 현지 조사) 제 10 조 (식품 생산 유통·동물 위생 상임위위원회의 보조) 제 11 조 (회원국에서 발효) 제 12 조 (본 지침의 발효) - 부속서 -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돼지 분류별 조항 A 웅돈 B 경산 및 미경산 돼지 C 자돈	생산자 책임의 개요 - 제 1 장 관리 방법 및 축산 - 관찰 번식 군 관리 시스템 보육 시스템 육성 · 비육 시스템 - 제 2 장 환경 관리 - 온도 관리 환기의 필요성 환기 시스템 환경 소음 조명 분뇨 관리 및 위생 - 제 3 장 시설 및 설비 - 소재 시설 관리 건물의 레이아웃 기능 영역 복도 및 문 바닥

	벽 및 천장 먹이 그릇과 급수 장치 환경 개선 시스템 제어 및 센서 - 제 4 장 사료 및 영양 섭취 - 영양 필요량 균형 잡힌 식단 사료 첨가제 먹이 프로세스 - 제 5 장 군의 건강 관리 - 돼지 고기 품질 보증 제도 농장에서 질병 제어 안락사
--	--

나) 산란계

<표 89> 산란계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EU	미국
작성기관	EU연합이사회	미국산란생산자조합
제목	COUNCIL DIRECTIVE 2008/120/EC of 18 December 2008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	UNITED EGG PRODUCERS ANIMAL HUSBANDRY GUIDELINES FOR U.S. EGG LAYING FLOCKS 2006 EDITION
내용	- 제 1 장 - 배터리케이징 방식 이외에 적용하는 조항 - 제 2 장 - 기존 배터리케이징 방식에 의한 사육에 적용하는 조항 - 제 3 장 -	미국의 계란 산업 미국의 채란 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미국 계란 생산자 조합의 역할 과학 자문위원회 지침 비디오 제공 미국 계란 생산자 조합의 인증지침 닭장 공간 재난 대응 부리 자르기

	<p>개량형 배터리케이지 방법식에 의한 사육에 적용하는 조항</p> <p>- 제 4 장 - 최종 조항</p>	<p>제 1 단계 트리밍 제 2 단계 트리밍 털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년 12 월 31 일까지 털갈이에 관한 지침 · 2006 년 1 월 1 일 이후의 유도 털갈이의 지침 <p>취급, 운송, 도축 안락사 농장의 모든 닭 도축 준수 (부록) 미국 계란 생산자 조합의 인증 위원회 회사에 대한 요구 사항 (보충) 방사방식에 관한 지침 프로그램</p>
--	--	---

다) 육 계

<표 90> 육계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EU	미국
작성기관	EU연합이사회	전미계육협회
제목	<p>COUNCIL DIRECTIVE 1999/74/EC of 19 July 1999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p>	<p>National CHICKEN COUNCIL ANIMAL WELFARE GUIDELINES AND AUDIT CHECKLIST</p>
내용	<p>제 1 조 (본 지침의 적용 범위) 제 2 조 (정의) 제 3 조 (보증 사항, 수용 면적) 제 4 조 (관리자 등의 교육 및 가이드) 제 5 조 (닭고기 라벨) 제 6 조 (위원회의보고 의무) 제 7 조 (조사의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권고 2. 교육훈련 3. 부화장 운영 4. 성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교육 및 비상계획 · 영양 및 사료급여 · 편안함과 대비 · 건강관리와 모니터링

제 8 조 (좋은 관리 가이드) 제 9 조 (벌칙) 제 10 조 (회원국에서 발효) 제 11 조 (처리) 제 12 조 (운송) 제 13 조 (본 지침의 발효) (부속서 I) 제 1 항 급수 제 2 항 먹이 제 3 항 깔짚 제 4 항 환기 제 5 항 소음 제 6 항 조명 제 7 항 명암주기 제 8 항 관찰 제 9 항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대응 제 10 항 세척 및 소독 제 11 항 기록 제 12 항 부리 자르기 (부속서 II) 수용 조건 (부속서 III) 처리장 (부속서 IV) 교육 (부속서 V) 평가, 비상 대응 등	· 사육밀도 4. 포획 및 운송 5. 처리장 6. 감사 부록 1 육계 산업 종사자의 동물 복지 훈련을 위한 제언 부록 2 상업용 육계에서 보행 점수 부록 3 조명 프로그램 평가 부록 4 미국병리학협회(AAAP) PAW점수시스템 부록 5 아칸사스대학 동물복지관리센터 부록 6 미국병리학협회(AAAP) 육계 날개 부상 점수 안내서 부록 6 미국병리학협회(AAAP) 육계 다리 부상 점수 안내서
---	---

(라) 사육면적 기준

가) 육우

- 미국 USDA 소속의 NOSB(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이하 NOSB)는 유기농 식품 생산법 (OFPA)에 의해 설립되고 연방 자문위원회 법(FACA)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NOSB는 2010년 보고서에서 우사에서 사육되는 약 200kg의 육우는 2.3㎡, 770kg 육우는 약 4.64㎡ 그리고 1100kg 초과 육우에는 체중 약 100kg 당 0.93㎡의 면적 제공을 권고하였다.⁵³⁾

53)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나) 젖 소

- USDA 소속의 NOSB에서는 우사에서 사육되는 젖소에게도 육우와 같은 수준의 적정면적을 권고하여 약 200kg의 젖소는 2.3㎡, 770kg 젖소는 약 4.64㎡ 그리고 1100kg 초과 젖소에게는 체중 약 100kg 당 0.93㎡의 면적 제공을 권고하였다.⁵⁴⁾

다) 돼 지

- NOSB는 옹돈 5.95㎡, 모돈 및 분만돈사를 각 2.79㎡ 및 4.46㎡ 그리고 비육돈은 120kg 기준 두당 0.56㎡의 사육면적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⁵⁵⁾

라) 산란계

- NOSB는 산란계에게 평사에서 수당 0.14㎡의 사육면적을 제공하고 산란육성계에게는 수당 0.09㎡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시하였다.⁵⁶⁾

마) 육 계

- NOSB는 육계 사육에서 단위면적 당 사육총량으로는 29.5kg/㎡을 권장하였다.⁵⁷⁾

바) 오리

- NOSB는 오리 사육에서 육용오리는 수당 0.093㎡, 산란오리는 수당 0.23㎡의 사육면적 제공을 제시하였다.⁵⁸⁾

3) 사육면적과 동물복지 기준

- 미국의 농장동물복지 정책은 주로 주 단위에서 주법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의 입법은 미흡한 상황이나 자율적으로 동물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의 28시간법(28-Hour Law)은 수송단계에서의, 인도적 도살법(Humane Slaughter)은 도축단계에서의 동물복지와 연관되어 있다.⁵⁹⁾

54)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55)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56)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57)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58) NOSB. 2010.Livestock committee animal welfare discussion document stocking density.

59) 상계서

4. 영국

(1) 서론

1) 축산업 관련 거버넌스

영국(UK)에서는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에서 축산업 관련 지원 및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산하의 33개 부처 중 하나인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이하 “APHA”)에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 질병 관련 보고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축산업 관련 부지사용에 대한 허가의 경우 County Parish Holding(이하 “CPH”)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이러한 CPH의 등록은 Defra 산하의 Rural Payments Agency(이하 “RPA”)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축산식품에 대한 관련 업무는 Defra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인 Food Standards Agency(이하 “FSA”)에서 담당하고 있고, 식품 사업에 관한 등록 및 식품 안전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동물복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가 실질적으로 많은 관여를 하고 있음.

2) 축산업(동물전염병 규제 포함) 관련 법령

- 영국에서는 1981년 조류인플루엔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the Animal Health Act 1981을 제정.
- 1984년에 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로 개정되면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2002년에 다시 한 차례 개정)
- 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들어가며>

(가) Animal Health Act 1981 관련 규정

1.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압류 및 폐기.
2. 개입 권한.
3. 영토 내에서 특정 권한의 행사.
4. 감염된 장소에 대한 권한의 제한 제거.

Slaughter of Poultry Act 1967

5. 1967년 법률의 범위 확장.
6. 라이선스.
7. 실무 규정.
8. 1967년 법에 따른 개입 권한.
9. 1967년 법의 집행.

Controls over Breeding of Livestock

10. 가축의 인공 번식.
11. 섹션 10에 보충되는 조항.
12. 황소와 종마 유지에 대한 통제 제거.

Animal feeding stuffs and veterinary drugs

13. 약용 동물 사료.
14. 수의약품 판매업 등록.
15. 동물 사료의 샘플링.

(나) 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 2002 관련 규정

1.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압류 및 폐기.
2. 개입 권한.
3. 영토 내에서 특정 권한의 행사.
4. 감염된 장소에 대한 권한의 제한 제거.
5. 가축 번식에 대한 통제.
6. 가축의 인공 번식.
7. 동물 사료와 수의약품.
8. 약용 동물 사료.
9. 수의약품 판매업 등록.
10. 동물 사료의 샘플링.

(다) 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 관련 규정 분석

가) 가축의 인공 번식

① 이 섹션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인공 번식과 관련한 광고

(b) 규정의 규정 또는 그에 따른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수입 된 물건 또는 그 대신 승인 된 사람에게 수입 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압류 및 구금

② 이 항에 따른 규정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면허 또는 승인 조건이 위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관이 대신하여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합리적인 순간에 개입할 수 있음.

(a)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또는 승인 소지자가 사용하는 건물, 라이선스 또는 승인

에 의해 허가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건물

- (b) 이 조에 따른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구역

또한, 구역 또는 가축과 가축에 부착된 물건을 조사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검사 또는 기타 조사를 수행 할 수 있음.

2) 약용 동물 사료

(가) 농업 장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을 금지 할 수 있음.

- (a) 의약품이 포함 된 가축 사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 사람에 의한 판매, 판매, 공급 또는 수출.
- (b) 나.항에 언급 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의약품이 포함 된 동물 사료의 사람에게 의한 수입.

(나) 이 섹션의 가.항에 언급 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a) 이 섹션의 (1)항에 의해 규정된 금지 사항에 위배되는 의약품은 동물 사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b) 수의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 한 서면 지시에 따라 공급 물품을 판매, 판매 제공, 공급,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 (c) 관계자는 등록 기관 또는 북 아일랜드 집행 당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 들어가 있어야 함.

III.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APHA)

1. APHA의 책임 범위

- 동물, 식물 및 꿀벌의 풍토병 및 이국적 질병 및 해충의 식별 및 관리, 새로운 해충 및 질병의 감시

- 박테리아, 바이러스, 프리온과 기생충 질병 및 백신과 같은 분야의 과학적 연구; 많은 농장 동물 질병에 대한 국제적으로 참조 가능한 실험실로서의 기능 수행
- 동물, 동물 기원 제품 및 식물의 국제 무역 촉진
- 면허 및 등록을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 양봉 (꿀벌) 검사, 진단,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훈련 및 조언 프로그램 관리
-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이 먹이 사슬에 유입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부산물의 안전한 폐기를 규제

IV. Rural Payments Agency(RPA)

1. 가축 사육을 위한 토지 등록

영국에서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County Parish Holding(CPH) 번호를 받아야 함.

가축은 다음을 포함 :

- 소 동물 (소, 들소 및 버팔로)
- 돼지
- 염소
- 양
- 사슴
- 가금류 (50 마리 이상의 새가 있는 경우)

2. 가축 구역(Holding)

가축 구역은 애완동물로 기르는 가축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가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나타냄. 각 구역은 고유한 CPH 번호가 있고, 가축 사업은 하나 이상의 구역과 CPH 번호를 가질 수 있음.

단일 가축 보관소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가축 취급 구역에서 10마일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음.

- 농장 내
- 집 (가축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

3. 기록과 보고를 위한 등록

가축 이동 기록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려면 CPH 번호가 있어야 하고, 영국 정부는 이 숫자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가축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추적함.

영구 CPH 번호는 1년 이상 사용할 토지를 인정하고, 임시 CPH 번호(iCPH)는 최대 1년 까지의 토지 사용을 인정함. 가축 사육에 사용하려는 토지에 위 번호 중 하나가 없으면 등록해야만 함.

가축이동에는 다음이 포함 :

- 가축을 시장에 팔기위해 이동시키는 것.
- 쇼를 위한 가축 운송.
- 가축을 다른 농장으로 이동.
- 애완동물로 기르기 위해 가축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가축 이동 기록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4. 영구 CPH 번호 취득

사용하는 토지에 CPH 번호가 없는 경우 가축을 토지로 옮기기 전에 RPA로부터 번호를 취득해야 함.

가축을 처음 땅에 옮긴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번호를 취득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됨.

5. 이동금지 제한(Standstill restrictions)

가축(양, 양, 염소, 돼지)이 다른 CPH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이동금지 제한이 있음.

- 양, 염소 또는 소의 경우 6일간
- 돼지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 돼지는 20일 동안
- 소, 양 또는 염소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의 돼지는 6일 동안
- 가축을 도축장으로 직접 옮기는 경우 이동금지 기간 동안 가축을 구역 밖으로 이동 가능.

6. 소 결핵 검사 및 tCPH

일반적으로 tCPH에 적용되는 소 결핵 위험 영역에 대한 소 결핵 검사 주기를 따라야 합니다. 단, tCPH가 위험이 낮은 지역에 있고 영구 CPH가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다음 영구 CPH에 대한 테스트 주기를 따라야함.

tCPH가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있고 영구 영역이 위험이 낮은 영역에 있으면 다른 테스트 주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APHA는 4년에 한 번 이상 영구 CPH에 대해 소 결핵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사항은 영구 CPH와 tCPH 간의 가축 이동 횟수와 빈도에 따라 달라짐.

소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 소로 등록 된 모든 CPH 및 tCPH에 대한 이동 제한 발동되고, 위 제한은 테스트 또는 수의학적 위험 평가 후에 만 해제됨.

V. 방역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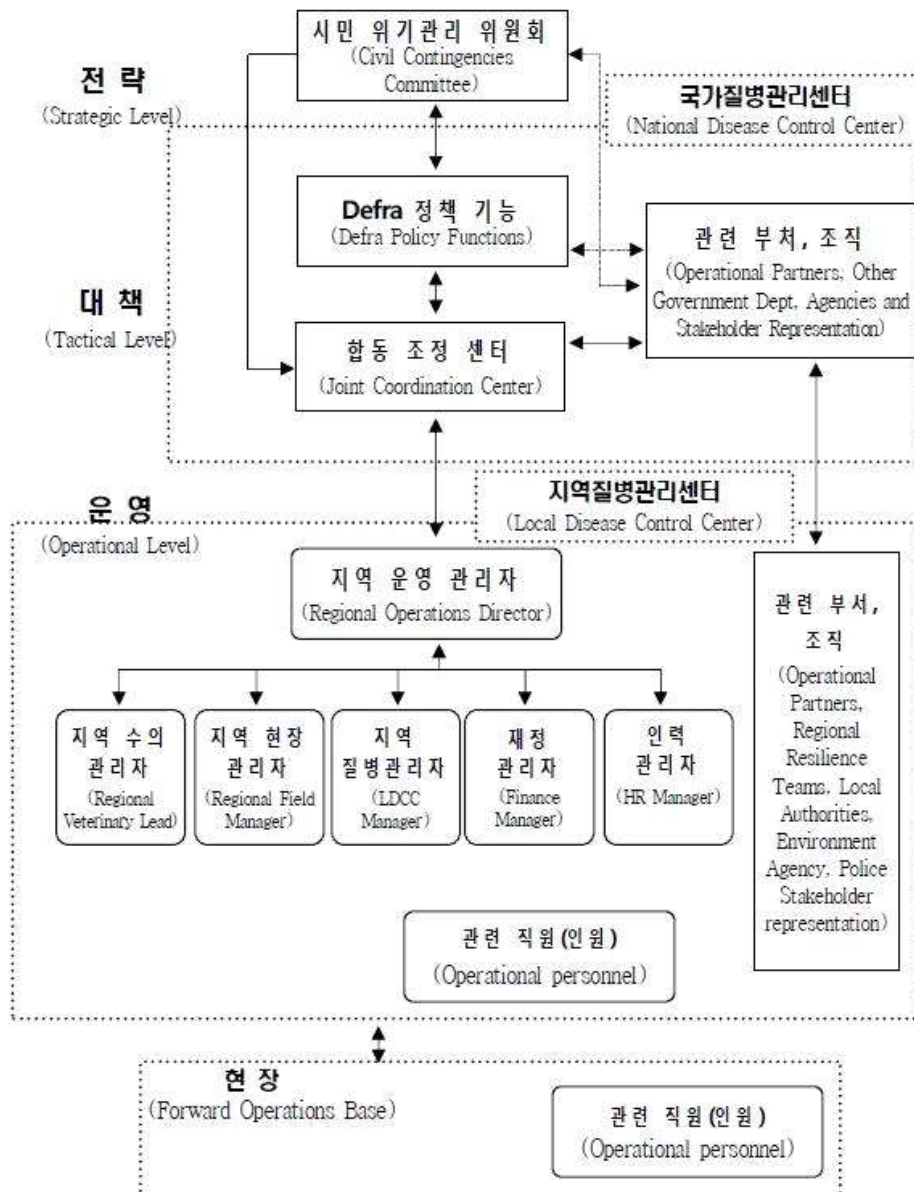
1. 방역 추진 체계⁶⁰⁾

- Defra의 국가질병관리센터(National Disease Control Centre)에서 방역에 관한 중앙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단위로 지역질병관리센터(Local Disease Control Centre)를 통하여 방역 임무를 수행함.

60) 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 5. “2014-2016 구체역 백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 외래성 동물질병 긴급방역대책(Contingency Plan for Exotic Notifiable Diseases of Animals)에 따라 질병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함.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발생농장 감수성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역학적 판단 등 위험평가 실시 후 결정함.

<표 91> 영국의 가축질병 대응 조직도



2. Contingency Plan for Exotic Notifiable Diseases of Animals⁶¹⁾

가. 동물 사육 책임

- 반려 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임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생산 상의 변화로 인하여 신고 대상 질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Defra의 농촌 서비스 헬프 라인 03000 200 301을 통해 동식물 보건기구 (APHA)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어떠한 징후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면 먼저 수의사와 상의해야하고, 신고 가능한 질병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경우 APHA에 즉시 통보해야함.
- 담당 수의사는 필요에 따라 APHA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 의심되는 이국적인 질병을 APHA에 보고하면, APHA에서 해당 보고를 검토하여, 그 의심이 적정한 경우, 공식 조사를 시작하고 수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의 검사관 파견함.
- 수의학 조사의 목적은 귀하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질병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존재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퍼졌는지 알아내는 것에 있음.
- 수의 검사관은 검사 장소에 도착하여 임시 법적 제한에 관한 서면을 부착하고, 동물 사육자가 준수해야하는 생물 보안 요건을 명시함. 예를 들어, 사육자는 구내 및 건물의 출입구에 C & D (Cleaning and Disinfection)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장소에 경고 표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음.
- 구역 내의 동물 이동을 금지하고, 라이선스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역으로의 모든 방문을 중지해야함.
- 구역 내 또는 외부로 물건을 옮기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수의 검사관과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논의해야함.

61)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tingency-plan-for-exotic-notifiable-diseases-of-animals-in-england/contingency-plan-for-exotic-notifiable-diseases-of-animals-in-england-2018>

- 사육자는 공식 검사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질병을 조사하고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함. 생산 기록에 대한 세부 사항, 동물의 움직임 및 구역 내외에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기타 물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음.
- 수의 검사관은 구내에서 보행로를 폐쇄해야하는지 조언함. 이러한 제한은 농장이든 개인 주택이든 질병이 보고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제한을 조정함.
- 수의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수의 검사관은 동물의 임상 검사와 생산 및 동물 운동 기록의 검사를 수행하고, 이 단계에서 질병을 배제 할 수없는 경우, 검사관은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채취함. 상황에서 따라서는 검사관은 동물을 인도적으로 도축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 할 수 있음.
- 관련된 질병에 따라 제한은 전체 건물 또는 개별 동물에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구내에서 출입하기 쉬운 동물의 움직임에 대한 금지가 포함됨. 또한 육류, 제품, 장비, 차량 및 비료와 같이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도 포함 할 수 있음.
- 이국적인 가축질병을 배제 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을 유지하고, 질병을 확인하면 제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며, 건물의 점유자는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 또한 질병이 의심되는 건물 주변에 임시 통제 구역(Temporary Control Zone, TCZ)을 선언 할 수 있고, 발 및 구강 질환(Foot and Mouth Disease, FMD),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돼지 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및 아프리카 말병(African Horse Sickness, AHS)과 같은 질병을 의심하는 경우에 TCZ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음. TCZ 구역 내에 농장이 있는 경우, 질병이 의심되지 않는 농장이더라도 해당 선언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다.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의 조치

- 이국적인 가축질병을 확인하면 Defra는 운영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함.

- 질병이 전염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염된 구역(Infected Premises, IP) 및 기타 구역 (접촉 구역)에 대한 조치 수행
- EU 및 국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보호 구역(Protection Zones, PZ), 감시 구역 (Surveillance Zones, SZ) 또는 제한 구역(Restricted Zones, RZ)과 같은 이동 제어 구역을 선언하고, 여기에는 질병 확산의 위험을 고려한 동물 관리 및 동물 제품 관리가 포함됨. 구제역의 경우, 영국 정부는 질병이 확인되면 영국 전역에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함.
- 확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 제한 - 예를 들어 사냥 또는 사격이 금지 될 수 있음.
- 쇼나 시장을 포함한 동물의 모이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함.
- 수출 금지를 고려함.
- 질병에 걸리기 쉬운 동물의 강제 관리를 고려함.
- 질병의 발원지를 조사하고 그 발원지로부터 질병이 더 퍼 졌는지 여부를 결정함.
- 질병의 가능한 추가 확산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감시를 완료함.
- 구역 내에서 질병이 확인되면 질병이 제거되고 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농장에서 시행되는 제한 및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함.
- 질병 관리 구역 내에 농장이 있는 경우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조건과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추가적인 생물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음.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APHA에 보고해야함.

라. 이동 제한과 라이선스

- 특정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일정 동물의 구체적이고 제한된 개별 움직임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라이선스의 부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수의학적 위험 평가 및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됨.

- 라이선스는 이동 전, 이동 중 또는 이동 후에 충족해야하는 기준(수의 검사, 세척 및 소독 및 모니터링)을 설정함.
- gov.uk에서 이동 라이선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제한 구역 내의 제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게시함.

마. 복리적 이동

- 사육자는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과밀 수용으로 동물이 고통을 겪는 경우, 그 동물을 인도적으로 도축 할 수 있으며, 인도적으로 도축 된 동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육자의 비용으로) 폐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동 제한 구역을 정한 후에는 복지 목적으로 특정 필수 이동을 허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함. 여기에는 착유를 위한 젖소의 이동, 수의사 의사의 치료를 허용하는 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모든 경우에 위험 평가가 적용되고, 이러한 라이선스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어 적절한 생물 보안 조치에 따라 그러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바. 평가 및 보상

- 이국적인 가축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동물이 도축되는 경우, 이로 인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지급 비율을 명시한 법규정이 있음.
- 보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동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질병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사용됨.
- 공인된 평가자가 동물을 평가하는 데 활용됨.
- 평가 요율표를 사용하고 고정 테이블이 사용됨.
- 지불 할 금액은 법으로 정할 수 있음.
- 특정 질병 법률에 따라 동물 사육자는 이러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사. 무역, 수입 및 수출

-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 그 질병에 따라 영국은 OIE(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의 국제적으로 질병 없는 국가 지위를 잃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더 이상 영국의 동물이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EU 내에서는 질병에 따라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감수성 동물, 동물성 제품, 육류 또는 육류 제품 및 우유 및 유제품의 거래가 금지 될 수 있고, EU 내에서 이러한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더라도 포장 등에 특정 국내 건강 마크가 표시되고 취급되는 경우 영국 시장 내에서 거래 될 수 있음.
- EU 외 국가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수입국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수출 증명서를 철회해야 할 수 있음.
-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없는 상태가 다시 확립 된 후에도 거래 제한이 오랫동안 유지 될 수 있음.

3. 구제역 발생의 경우⁶²⁾

가. 구제역 발생 대비 사전 준비

1) 인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광역)운영 관리자, 지역 현장 관리자, 지역정책고문, 가축보건사무소 직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2-3년에 1회, Defra, Sro 지역 가축보건사무소, 관련부처, 지역정부, 경찰, 내각 비상계획관 등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함.

2)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물품, 장비 적시 조달체계 마련

- 살처분, 도체 운송, 매몰, 세척, 소독 등 질병발생 시 필요로 하는 장비·물품 등 긴급구입을 위한 계약 및 판매자가 적시에 적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 등을 강구함.

62) 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 5. “2014-2016 구제역 백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 중앙단위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장비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계약 전 초기단계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비축하고, 지방단위에서는 최초 48시간 안에 10건 발생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20명의 추가 수의사에 지급될 품목을 확보함.
- 현장단위 최소 재정의 5% 수준 이상을 안전관련 부분에 책정하고, 작업과정에서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 및 훈련,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며, 긴급사태 발생 시 10주 내에 1주당 12만 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도록 조치함.

나. 구제역 발생 시 대응

- 구제역 발생 시 국가질병관리센터는 지역총괄책임자, 지역수의사협회, 지역현장매니저 등과 연계하여 질병관리, 방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 공무원이나 개업 수의사 등 인력을 확보함.
- 발생지로부터 최소 3km 이내는 보호구역, 10km는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함. 수의사는 보호구역내 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의 반출 등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를 실시함.
- 살처분은 계약에 의하여 허가된 도살업자가 실시하고, 구제역에 감염되거나 의심스러운 가축, 같은 축사·농장,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가축, 장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축에 대해 실시함.
- 살처분 가축의 처리는 계약에 의해 소각업자, 렌더링 업자가 실시하고, 처리 가축수가 많을 경우 매립 등의 조치를 취함. 허가된 상업적 매립은 소각이나 렌더링 한계를 초과하거나, 시설까지 운반이 어려울 때 허가된 매립지에 매몰함.
- 소각, 렌더링, 허가된 매립지에서 매몰하기 어려운 경우 농장 내 매몰을 할 수 있으나, 환경 및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며, 환경공무원의 확인 및 문서화된 허가를 받아야 됨. 영국은 2,500-1만톤/1주 수준의 소각·렌더링·매립이 가능함.
- 살처분 가축의 운송 등을 위해 계약에 따라 1일 5만 톤의 살처분 가축 운반이 가능하며, 36시간 내에 운송업체는 차량을 제공해야 함. 운송차량은 누출수 점검을 받고 정해진 경로로 처리장까지 가야하며 경찰 또는 응급서비스 차량의 호위를 받음.

다. 보상금 등 농가지원정책

-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EU와 회원국의 공동 재정부담을 원칙으로 하며(EU 60% : 회원국 40%), 회원국 정부에서 농가에 전액 지원한 후, EU에서 60%를 회원국 정부에 지원함.
- 농가보상 원칙은 시장가격에 따라 신속·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고, 보상 기준가격 결정 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여 사용함.
 - ◎ 방식 1 : 축종, 나이, 중량 등 중요한 변수에 따른 가격결정표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표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
 - ◎ 방식 2 : 해당 지역의 전문가(수의사)가 개별 동물의 가치를 심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4. 가금류 건강 계획(Poultry Health Scheme, PHS)⁶³⁾

가. 등록대상

아래의 사항을 원할 경우 가금류 건강 체계(PHS)의 회원이어야 함.

- 20개 이상의 조류 또는 부화란을 다른 EU 회원국으로 수출(사업이 EU 동물 건강 및 복지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
- 다른 PHS 회원에게 새나 계란을 판매
- EU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국가로 수출
- 이 제도에 따라 가축떼를 6주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살아있는 가금류 및 부화란을 다른 EU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음.

EU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려면 PHS 회원이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수출 건강 증명서(Export Health Certificate, EHC) 문구를 확인하여 PHS 회원 자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함.

63)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poultry-health-scheme-how-to-register>

나. PHS에 가입하는 방법

- 개인 또는 회사로 PHS에 가입 할 수 있고,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하며, 사업장 주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 주소를 등록해야 함.
- 멤버십은 1 년 동안 지속되며 매년 갱신 할 수 있음.
- 언제든지 제도에서 탈퇴 할 수 있지만 등록비나 멤버십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음.

다. 가입 신청 후

- 가금류 건강 계획 팀이 신청서를 받으면 수의사(Veterinary Officer, VO)를 보내 건물을 검사하고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APHA(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의 수의사는 초기 검사를 수행하지만 APHA 또는 사업자의 수의사가 갱신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음.
- 수의사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구역 또는 업무 방식에 있어서의 변경을 권장.
-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검사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가 있어야함.
- 수의사가 귀하의 구역 및 작업 방법을 승인하면 연간 회비 및 수의 검사 비용을 지불 해야 함.

라. 가입 관련 비용

- 등록
- 승인
- 갱신
- 수수료는 고정 관리 요금과 수의사가 시간당 청구하는 가변 요금으로 구성되고, 수의사 비용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됨.

Fees : business registration and approval

Activity	Variable fee £	Fixed fee £
Veterinary Officer time to license or approve for PHS (fee for per quarter hour or part quarter hour)	16	
Veterinary Officer travel time (fee for per quarter hour or part quarter hour to a maximum of £126)	21	
Annual registration as a PHS member		55
First year approval of scheme member's flock or hatchery		27
First year approval of a scheme member's combined flock and hatchery, on one site, inspection by a Veterinary Officer		27
Annual renewal of a scheme member's flock or hatchery or combined flock and hatchery, on one site, inspection by a veterinary surgeon who is not a Veterinary Officer		54
Annual renewal of a scheme member's flock or hatchery or combined flock and hatchery, additional site, inspection by a veterinary surgeon who is not a Veterinary Officer		29
Annual renewal of a scheme member's flock or hatchery or combined flock and hatchery, on one site, inspection by a Veterinary Officer		56
Annual renewal of a scheme member's combined flock and hatchery, additional site, inspection by a Veterinary Officer		31

Fees: laboratory operators approval

Activity	Fixed fee £	Variable fee £
Application for an initial laboratory approval or annual renewal of a laboratory approval	73	
Proficiency test for Salmonella bacteriology (pullorum, gallinarum and arizonae)		131 per test
Proficiency test for Salmonella serology (pullorum, gallinarum)		321 per test
Proficiency test for Mycoplasma chicken serology (gallisepticum)		321 per test
Proficiency test for Mycoplasma culture (gallisepticum and meleagridis)		281 per test
Proficiency test for Mycoplasma turkey serology (gallisepticum and meleagridis)		336 per test

VI. 동물보호 관련 규정⁶⁴⁾

1. 동물보호 관련 규정 개관

- 영국에서는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법으로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마틴법(Martin's Act)이 1822년에 제정됨.
- 1835년에는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 하는 피이즈법(Pease's Act)이 제정됨.
- 1840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1824년 설립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로 승격됨.
- 1911년에는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이 제정됨.
- 1996년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입법을 포괄하기 위한 “동물복

64) 이하는 KLEI의 2018. 5.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 (2006년 개정을 통해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도 함께 금지하고 있음)

2. 왕립동물학대방지위원회(RSPCA)

- 영국의 왕립동물학대방지위원회(RSPCA)는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단체로, 반려동물 포함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지원하고, 운영비 전액을 기부금으로 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임.
- 왕립동물학대방지위원회(RSPCA)는 주요 축종별 농장동물복지기준을 제정하여 농장동물을 보살피고 복지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위 기준은 동물의 먹이 및 음수 급여, 사육환경, 사육방법, 건강관리, 이동, 인도적 도축 등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동물이 사육되는 농장의 크기나 사육방식(방목 또는 관행)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freedom food labelling” 인증을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개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위 기준은 국내외 다양한 유통업체들의 기준 설정과 인증제도 도입에도 이용되고 있고, 이 기준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보강되고 있음.
- RSPCA는 1994년부터 Freedom Food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왕립동물학대방지위원회(RSPCA)에 희망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RSPCA의 농장동물복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으로 인증을 받음. 인증된 회원은 매년 한 번씩 재심을 받으며, 현장감시관(RSPCA farm livestock officer)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농장동물복지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함. 또한, 정기적으로 식품판매장에서 Freedom food label을 부착한 상품의 이력을 추적하고 있음.
- Freedom Food Program 참여회원농가들이 생산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는 Freedom Food label이 적용되어 일반 축산물보다 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고 있음.

3. 사육기준 - RSPCA 기준을 중심으로

가. 사육밀도 규제

<표 92> RSPCA 사육밀도 관련 규정

대상축	근거조항 번호 (Article No.)	내용			
육우	E 4.2 ⁶⁵⁾	체중(kg)	면적(m ² /두)	체중(kg)	면적(m ² /두)
		101~199	5.0	500~599	8.5
		200~299	6.0	600~699	9.0
		300~399	7.0	700~799	10.0
		400~499	8.0	800초과	11.0
- 100kg 미만은 3.3 m ² /두					
젖소	E 4.2 ⁶⁶⁾	체중(kg)	면적(m ² /두)	체중(kg)	면적(m ² /두)
		101~199	5.0	500~599	8.5
		200~299	6.0	600~699	9.0
		300~399	7.0	700~799	10.0
		400~499	8.0	800초과	11.0
- 100kg 미만은 3.3 m ² /두 - 육우와 사육면적 필요 수준이 같음					
돼지	E 5.1~4 ⁶⁷⁾	체중(kg)	면적(m ² /두)	체중(kg)	면적(m ² /두)
		10	0.15	70	0.61
		20	0.225	80	0.675
		30	0.30	90	0.715
		40	0.40	100	0.75
		50	0.47	110	0.80
		60	0.55	-	
- 미경산(후보돈) 및 1~2산 모돈 2.5 m ² /두 - 경산돈(3산 이상) 3.5 m ² /두 웅돈 7.5 m ² /두					

65) RSPCA welfare standards for beef cattle

66) RSPCA welfare standards for dairy cattle

67) RSPCA welfare standards for pigs

대상축	근거조항 번호 (Article No.)	내용									
산란계	E 5.368)	9수/㎡(수당 0.11㎡)									
	E 7.169)	- 산란육성계(16주령) 20kg/㎡									
육계	E 5.170)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형태</th> <th>단위 면적 당 개체 수(㎡)</th> <th>단위 면적 당 사육총량(kg/㎡)</th> </tr> </thead> <tbody> <tr> <td>평사</td> <td>19</td> <td>30</td> </tr> <tr> <td>방사(유기농 수준⁷¹⁾)</td> <td>13</td> <td>27.5</td> </tr> </tbody> </table>	사육형태	단위 면적 당 개체 수(㎡)	단위 면적 당 사육총량(kg/㎡)	평사	19	30	방사(유기농 수준 ⁷¹⁾)	13	27.5
		사육형태	단위 면적 당 개체 수(㎡)	단위 면적 당 사육총량(kg/㎡)							
		평사	19	30							
방사(유기농 수준 ⁷¹⁾)	13	27.5									
오리	E 5.272)	- 17kg/㎡									

- 2017년 RSPCA 규정집 내 사육밀도 관련사항은 명기되지 않았으나, 축산업 및 양식업을 대상한 RSPCA welfare standards에 사육밀도 기준이 권고되어 있음.
- 대상축종은 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칠면조, 양이며 축종 별 사육환경 권고사항 기준(RSPCA welfare standards)이 마련되어 있음.
- 산란계 사육환경 권고사항 기준만 2017년 개정 되었으며, 기타축종은 2015년 최종 개정되었음.

1) 소

- 영국은 육우와 젓소 양쪽에 적용되는 가축복지 권고안(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의 ‘cattle’편에 소의 적정 사육면적 제시가 있음.
- 성우는 전체 사육환경과 개체의 성별, 체중 및 행동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하며 군집 크기와 제각여부의 고려가 요구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정 사육면적 결정을 제시함.
- 송아지에 대해서는 체중에 따라 150kg 미만은 1.5㎡ 이상, 150kg 이상 200kg 미만은 2㎡ 이상, 200kg 이상은 두당 최소 3㎡의 사육면적을 제시함.

68) RSPCA welfare standards for laying hens 2017

69) RSPCA welfare standards for pullets (laying hens)

70) RSPCA welfare standards for meat chickens

71) EEC(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2092/91의 유기농 육계 생산 기준 인용

72) RSPCA welfare standards for domestic/common ducks

2) 돼 지

- 85kg 이상부터 0.65㎡/두를 최소 소요면적하고 110kg이상일 경우 1.00㎡/두로 함

<표 93> 장애물이 없는 바닥 기준의 체중별 두당 소요면적

(단위 : ㎡)

체중, kg	면적, ㎡	사육형태
10	0.15	군사
10 - 20	0.20	군사
20 - 30	0.30	군사
30 - 50	0.40	군사
50 - 85	0.55	군사
85 - 110	0.65	군사
110kg 이상	1.00	군사

* 영국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법률 2000. * European council 2001.

3) 육 계 100p

- 유럽,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에서는 육계의 사육밀도 규정을 단위면적 (㎡)당 kg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34kg을 추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개방계사의 경우 ㎡당 33kg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환기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환경제어가 가능할 경우 39kg까지 높일 수 있음.
- 영국의 Farm Animal Welfare Council(FAWC, 1992)는 34kg/㎡를 추천밀도로 제시했음(Defra, 2002).
- 영국의 소매업자는 38kg/㎡까지 허용하고 있음(RSPCA, 2002)
- RSPCA 복지 기준에 의한 육계 사육밀도는 30kg/㎡으로 영국정부 추천 사육밀도 34kg/㎡보다 높음.

<표 94> RSPCA 복지 기준에 의한 육계 사육밀도

평균체중(kg)	사육수수/㎡
3.0	10
2.5	12
2.1	14
1.9	16

4) 오리

- 영국의 육성오리 사육밀도기준은 슬랏 또는 철망바닥의 경우1-10일령은 50수/㎡, 10일령-3주령은 25수/㎡, 3주령-8주령은 8수/㎡, 깔짚의 경우1-10일령은 36수/㎡, 10일령-3주령은 14수/㎡, 3주령-8주령은 7수/㎡, 초지방사인 경우 2,500수/ha로 규정하고 있음.

<표 95> 영국 육성오리 사육밀도

사육방식별	최대 사육밀도	비고
슬랏 또는 철망바닥 1-10일령 10일령-3주령 3주령-8주령	50수/㎡ 25수/㎡ 8수/㎡	사료급여기, 급수기 등 포함면적임
깔짚 1-10일령 10일령-3주령 3주령-8주령	36수/㎡ 14수/㎡ 7수/㎡	사료급여기, 급수기 등 포함면적임
초지방사 3~8주령	2,500수/ha	초지 상태가 아주 양호 시 5,000/ha까지 사육가능

* Animal Welfare: Codes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 Ducks(DEFRA)

- 영국의 종오리 사육밀도기준은 슬랏 또는 철망바닥의 경우 5수/㎡, 깔짚의 경우 3수/㎡, 초지방사인 경우 4,000수/ha로 규정하고 있음.

<표 96> 영국의 종오리 사육밀도

사육방식별	최대 사육밀도	비고
슬랫이나 철망바닥	5수/m ²	사료급이기, 급수기, 난상 등 포함면적임
깔짚바닥	3수/m ²	사료급이기, 급수기, 난상 등 포함면적임
오리사와 초지방사 이용시	4,000수/ha	

* Animal Welfare: Codes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 Ducks(DEFRA)

- 영국왕립동물보호협회(RSPCA) 오리 사육밀도 기준은 최대 사육밀도는 체중을 기준으로 하며 17kg/m²를 초과해서는 안 됨.

나. 사육기준법령 비교

1) 소

<표 97> 소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호주	캐나다	영국
작성 기관	제1차산업상임위원회	캐나다농산물평가위원회	환경식량농촌부
제목	Model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Animals Cattle	Re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farmanimals	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Cattle
내용	제 1 절 기본적인 요구 물 공기의 질 사료 · 가뭄에 대응 · 날씨와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제 1 절 동물 환경 1.1 익스트림 날씨로부터의 보호 1.1.1 고온 다습 1.1.2 익스 트림 콜드 1.2 모든 소를위한 시설 1.3 젖소를 부양하기 위한 부가 시설	제 1 절 모든 소에 관한 사항 사육자 · 일반 원칙 · 관찰 · 취급 · 농장에서 운송 · 개체 식별 · 털 깎기 · 일반 원칙 몸 컨디션 점수 바이오 보안

	호주	캐나다	영국
	<p>제 2 절 집약적인 소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 가축 사육장 <p>제 3 절 송아지 인공적인 육성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 외양간 · 수용 면적 · 초유의 급여 <p>이유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 급여 <p>제 4 절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축사 고려 사항 <p>제 5 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 관찰 · 착유 	<p>제 2 절 사료와 물</p> <p>2.1 영양 및 사료 관리</p> <p>2.2 물</p> <p>제 3 절 동물 건강</p> <p>3.1 군중 건강 관리</p> <p>3.2 아프고 부상당한 소</p> <p>3.3 사육장 소와 관련된 건강 상태</p> <p>3.3.1 소 호흡기 질환의 위험 관리</p> <p>3.3.2 파행</p> <p>3.3.3 고 에너지 섭취와 관련된 영양 장애</p> <p>3.3.4 불란 - 증후군</p> <p>3.3.5 Feedlot에서 임신 한 암소를 관리하기</p> <p>3.4 안전 및 비상 사태</p> <p>제 4 절 축산업</p> <p>4.1 소의 취급 및 이동</p>	<p>보행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 · 백신 접종 및 치료 장비 · 법정 전염병 · 질병 및 상해를 받은 동물 · 발육 부전의 동물 · 기록의 보존, 먹이 및 물 공급 <p>- 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통로 및 牛床 · 수용 면적 환기 · 조명 · 설비의 점검 및 관리 · 관리 · 일반 원칙 벽과 울타리 · 유해한 잡초
	<p>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소 제거 · 꼬리짜르기 · 개체 식별 · 제각 · 교배 · 분만 및 이유 · 송아지 시장 <p>제 6 절 건강</p> <p>제 7 절 방목</p> <p>제 8 절 암소</p> <p>제 9 절 인도적인 도축 (부록 1) 가축 급수</p>	<p>4.2 복제 및 분만 관리</p> <p>4.2.1 초유 관리</p> <p>4.3 신분증</p> <p>4.4 Disbudding과 Dehorning</p> <p>4.5 거세</p> <p>4.6 이유</p> <p>4.7 프레데터 컨트롤</p> <p>4.8 테일 도킹</p> <p>제 5 절 교통</p> <p>5.1 운송 전 의사 결정 및 운송 준비</p> <p>5.2 전송 장치 정렬</p>	<p>비상사태 예방</p> <p>제 2 절 특수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과 분만 · 송아지 육성 · 일반 원칙 · 관찰 · 질병 및 상해를 받은 송아지 · 먹이 배급, 급수, 축사 · 이동 및 판매되는 송아지 · 거세, 제각 · 유두 수 <p>- 사육 동물</p>

	호주	캐나다	영국
	(부록 2) 사료 요구량	5.3 로드 및 수신 섹션 6 농장에서의 안락사 6.1 안락사와 도태 결정 6.2 농장에서의 안락사 방법 6.3 무감각과 죽음의 확인 참고 문헌 부록 : 몸 상태 득점 부록 B 육우 및 육우에 대한 양분 요구 사항 가이드 라인 부록 C 분만 : 언제 어떻게 도와야합니까? 부록 D 운송 결정 트리 부록 E Lameness 묘사 수송을 위해 타협된 동물 또는 부적당한 동물 렌더링하기 부록 F 안락사 - 2 차적인 살인 단계 : 출혈과 경련 부록 G 추가 정보를위한 자료 부록 H 참가자 부록 I 코드 요구 사항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종 관찰 · 관리 · 자연 교배 · 인공 수정 및 배아 이식 - 초음파 스캐닝 · 황소 펜 - 젖소 · 일반 원칙 · 유방염 - 로봇 착유 (부록) 유용한 간행물

2) 돼 지

<표 98> 돼지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호주	캐나다	영국
작성 기관	동물복지워킹 그룹	캐나다농업식량연구회의 (CARC)	환경식량농촌부
제목	Model Code of Practice	Recommended code of	laying hens code of

	호주	캐나다	영국
	for the Welfare of Animals Pigs (revised)	practice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farm animals Pigs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내용	<p>서문</p> <p>1. 머리말</p> <p>2. 사육자의 능력</p> <p>3. 사료 및 물</p> <p>사료</p> <p>물</p> <p>4. 시설</p> <p>돈사 시스템</p> <p>시설</p> <p>환경</p> <p>보호</p> <p>분뇨 관리</p> <p>야외에서 돼지 사육</p> <p>5. 가축 사육</p> <p>검사</p> <p>위생</p> <p>분만 및 이유</p> <p>멧돼지 관리</p> <p>돼지의 이동</p> <p>바람직한 사육 기술</p> <p>6. 운송 및 도축의 준비</p> <p>7. 안락사</p> <p>8. 품질 보증 시스템 및 기록 유지</p> <p>부록</p> <p>부록 I 돼지의 몸 컨디션 점수</p> <p>부록 II 돼지의 수분 요구량</p> <p>부록 III 돼지의 수용 면적</p> <p>부록 IV 권장 온도</p> <p>부록 V 돼지 안락사</p>	<p>서문</p> <p>머리말</p> <p>- 제 1 장 축사 및 시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스템 · 수용 및 그 시설 · 암돼지 및 아픈돼지 간호 · 환경관리 : 온도, 환기 · 조명 · 바닥재 · 급수, 급이 · 외부 건축 <p>기타의 축사 고려 사항</p> <p>- 제 2 장 사료와 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및 사료관리 · 육종 BCS · 물 <p>- 제 3 장 동물건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복지관계 · 군사관리 프로그램 · 부상 돼지 관리 · 동물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기술 · 농장 수술 · 분만 · 이유자돈 · 해충방제 · 긴급 및 안전 <p>- 제 4 장 축산관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 이동, 치료 · 동물복지 전문기술 · 돼지혼합 · 번식 	<p>서문</p> <p>머리말</p> <p>- 제 1 장 모든 돼지에 관한 사항 -</p> <p>사육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 관찰 · 취급 · 농장에서 운송 · 개체 식별 <p>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p>바이오 보안</p> <p>건강 상태 평가</p> <p>보행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생충 · 내부 기생충 <p>백신 접종 및 치료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전염병 · 질병 및 상해를 받은 동물 · 기록의 보존 <p>축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p>바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온도 <p>조명, 소음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장치 기계적 장치 <p>화재 및 기타 비상 사태 예방</p> <p>사료, 물 및 기타 자재 관리</p>

	호주	캐나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인 축산절차 (단미, 견치) - 제 5 장 · 교통 - · 사전수송계획 · 운송적합성 · 출하관리 및 시설 - 제 6 장 안락사 - · 안락사관리 ·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 · 안락사방법 · 사망확인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A - 사육돈 및 암 돼지를 위한 개별 실속 크기 결정 지침 부록 B - 그룹 주택의 암 S 지 및 암 for지에 대한 최소 바닥 공간 허용치 부록 C - 이유식 / 보육용 돼지용 공간 허용치 부록 D - 재배자 / 피니셔 돼지용 공간 허용치 부록 E - 수족관에 대한 권장 최소 공간 허용치 부록 F - 피더 디자인 부록 G - 젓꼭지의 물 섭취량, 권장 유량 및 높이 부록 H - 식스 시그마 : 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원칙 · 환경 조건의 향상 · 거세 · 断尾 · 치아의 절단 / 연마 - 자연 교배 · 인공 수정, 정관 전기사정 - 제 2 장 특정 돼지에 관한 사항 - 출산 암돼지 돼지 이유 돼지 육성 돼지 건유기 암돼지 미경산 돼지 응돈 옥외 시스템에서 사육되는 돼지

	호주	캐나다	영국
		지 심황선택을 위한 간단한 기준 부록 I - 모돈체형점수 부록 J - 안락사를 위한 의사 결정 트리의 예 부록 K - 돼지보기 및 비행 구역 부록 L - “이 돼지는 적재되어야합니까?” 결정 트리 부록 M - 온도 - 습도 색인표 부록 N - 안락사의 방법 부록 O - 추가 정보를 위한 자료 부록 P - 참가자 부록 Q - 코드 요구 사항 요약	

3) 산란계

<표 99> 산란계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호주	캐나다	영국
작성 기관	동물복지위원회(AMC)	캐나다농업식량연구회의(CARC)	환경식량농촌부
제목	Primary Industries Standing Committee Model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Animals Domestic Poultry 4th Edition SCARM Report 83	Rec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pullets, layers and spent fowl Poultry - Layers	laying hens 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내용	- 제 1 장 - 배터리케이징 방식 이외에 적용하는 조항	- 제 1 장 병아리 사육 - 축사설계 / 사육면적 병아리 수령 및 부화	- 서문 - - 머리말 -

	호주	캐나다	영국
	<p>- 제 2 장 - 기존 배터리케이지 방식에 의한 사육에 적용하는 조항</p> <p>- 제 3 장 - 개량형 바타리케이지 방식에 의한 사육에 적용하는 조항</p> <p>- 제 4 장 최종 조항 -</p>	<p>온도, 조명, 환기</p> <p>- 제 2 장 케이지사육 - 축사설계 / 바닥 사료 및 물급여 사육면적</p> <p>강화된 케이지 시스템 기존 케이지 전환 야외활동</p> <p>- 제 3 장 환경 및 관리 - 환기 및 공기품질 온도 / 소음 / 조명 / 분노</p> <p>- 제 4 장 사료 및 물 - 사료 및 수질관리 영양 / 물</p> <p>- 제 5 장 건강 및 사양관리 - 병아리 입추 건강관리계획 집단관리와 관련된 기술 질병예방 및 관리 / 검사 아프거나 다친 새 유해한 행동 비상사태관리</p> <p>- 제 6 장 닭 취급, 운송 - 사전운송계획 운송적합성</p> <p>- 제 7 장 안락사 - 안락사 계획 기술 및 지식 안락사에 관한 의사결정</p>	<p>양계 경영자, 종업원관찰 질병의 치료 기록 관리 사료, 물 행동의 자유</p> <p>- 닭장 - 일반 사항 비 케이지 방식 기존 케이지 방식 개량형 케이지 방식</p> <p>- 환경 - 환기, 온도 점등 깔짚 소음 야외 방사식 자동 또는 기계 설비 부리자르기, 날개 절제</p> <p>- 교배 방법 -</p> <p>- 포획, 운송 -</p> <p>(부록) (참조) (유용한 출판물) (추가 정보)</p>

	호주	캐나다	영국
		안락사 방법 - 제 8 장 농장 사육두수 조절 -	

4) 육 계

<표 100> 육계 사육기준 주요 국가별 법령 비교표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작성 기관	국가동물복지조언 위원회	캐나다농산물평가위원회	환경식량농촌부
제목	Animal Welfare (Broiler Chickens: Fully Housed) Code of Welfare 2003	Rec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farm animals Chickens, Turkeys and Breeders from Hatchery to Processing Plant	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Meat Chickens and Breeding Chickens
내용	1. 서문 규정의 목적 및 해석 1.1 역사 1.2 복지 규정의 자리 매김 1.3 규정 제정 절차 1.4 전망 1.5 본 규정의 내용 1.6 규정의 개정 1.7 복지 규정, 권장 및 최대한 낮은 기준의 생각 1.8 해석 및 정의 1.9 용어 사전, 어휘 2. 동물 소유자 및 사육자의 의무 3. 육계의 관리 3.1 부화장 3.2 육계의 育雛 및 육성	- 제 1 장 인사 지식 및 기술 - - 제 2 장 부화장 - 2.1 응급 관리 및 대비 2.2 부화 달걀 관리 및 부화 2.3 부화 달걀 전달 2.4 병아리 및 가금류 가공 2.5 물리적 변형 및 새 식별 2.6 병아리 및 가금의 운반, 운반 및 운반 2.7 해충 방제 2.8 부화장에서 안락사 - 제 3 장 주택 및 환경 - 3.1 영양 및 사료 관리 3.2 급수 및 수도 설비 3.3 환경 관리 3.3.1 온도, 환기 및 공기	사료 및 물 건강 · 관찰 · 질병 컨트롤 다리 건강 관리 방법 · 일반 원칙 · 부리 자르기 더빙 · 가메은 躑 爪 제거 · 전 손톱 제거 닭장 시설 · 일반 원칙 환기 및 온도 히트 스트레스 조명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p>3.3 닭장 및 다른 시설 3.4 사육밀도, 조명 관리 기준 3.5 환기 3.6 질병 및 부상의 컨트롤 3.7 인도적 도축(살 처분) 방법 4. 붙잡음, 픽업, 운송 4.1 픽업 전에 필요한 사항 4.2 포획 및 픽업 4.3 육계 픽업 밀도 4.4 수송 용기 4.5 운송 5. 품질 관리 5.1 품질 설정 시스템 5.2 기록 6. 동물 사육자 정신</p> <p>(부록 I) 방어 (부록 II) 복지 규정</p>	<p>품질 3.3.2 침구 및 쓰레기 관리 3.4 조명 3.5 스타킹 밀도 3.6 등지 (육계 육종가 및 터키 육종가) 3.7 부화 달걀 방 환경 3.8 실외 액세스, 반자동 또는 범위 생산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p> <p>제 4 장 사료와 물 4.1 영양 및 수화 4.2 육계 사육자를 위한 사료 공급 및 급수 조절</p> <p>- 제 5 장 무리 건강 관리 - 5.1 무리 건강 계획 5.2 질병 예방 5.2.1 위생 5.2.2 해충 방제 5.3 조류의 건강 보호 5.3.1 상태 모니터링 5.3.2 아프거나 부상당한 새 관리하기 5.4 응급 관리 및 대비</p> <p>- 제 6 장 축산 관행 - 6.1 장인 및 조류 취급 6.2 수유 및 부화 병아리 및 가금류 6.3 조류 옮기기 6.4 생식 관리 : 육계 사육자 6.5 생식 관리 : 터키 종축 6.5.1 정액 수집 및 인공 수정 6.5.2 Broody Hens의 관리 6.6 부화 달걀 관리 6.7 유해한 행동 관리</p>	<p>· 깔짚 긴급시의 대응 수용 면적 자동 또는 기계적 설비 방식 飼方 기록 포획, 취급 및 운송 사육 닭의 관리 계란 등의 처분</p> <p>(부록) · 유용한 간행물 · 추가 정보</p>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6.8 물리적 변경 6.9 제어 탈피 - 제 7 장 교통 - 7.1 운송 평가 7.2 적재 및 운송 준비 7.2.1 사전로드 고려 사항 7.2.2 급수 및 급수: 예하 중 로딩 7.2.3 헛간에 남아있는 새들 7.3 캐칭, 로드 및 언로드 절차 7.4 캐치 및 로딩 / 언 로딩 장비 및 컨테이너 7.4 시설 설계 및 유지 보수 - 제 8 장 안락사 - 8.1 부화장에서의 안락사 8.2 안락사에 관한 의사 결정 8.3 안락사 관련 기술과 지식 8.4 안락사의 방법 8.5 무감각과 죽음의 확인 - 제 9 장 대량 증식 -	

다. 사육면적 기준

1) 육우

- RSPCA 복지사육 규정에 의하면 800kg 육우 기준 두당 11.0㎡의 사육면적이 요구됨.

2) 젖소

- RSPCA에서는 육우와 같은 수준의 사육밀도를 젖소에게 적용하여, 800kg 젖소에게 두당 11.0㎡의 사육면적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음.

3) 돼지

- RSPCA는 웅돈에서 7.5㎡, 후보돈 및 경산돈(3산 이상)에서 두당 2.5㎡ 및 3.5㎡의

사육면적 제공을 권장하였고, 110kg 비육돈에서는 두당 0.8㎡의 사육면적 제공을 권장하였음.

4) 산란계

- RSPCA는 평사에서 산란계 9수당 1㎡의 사육면적을, 산란육성계는 20kg/㎡(약 14수당 1㎡)의 사육면적을 권장하였음.

5) 육계

- RSPCA는 평사에서 육계 19수당 1㎡의 사육면적을, 단위면적 당 사육총량으로는 30kg/㎡을 권장하였음.

6) 오리

- RSPCA는 오리 사육밀도의 경우 단위면적 당 사육총량으로 하였으며, 제곱미터 당 17kg의 오리 사육을 권장하였음.

제3절 한국 「축산법」 제도에 대한 시사점

- 제3장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일본과 주요 외국의 축산 관련법령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단일국가(unitary state)에서도 많은 축산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연방법령에서는 특정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 또는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주법령으로 그러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축산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의 축산관련 법령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요소들로 인해 축산관련 연방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을 비롯하여 축산업 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食料·農業·農村基本法」이 있으며 리나라의 「축산법」에 해당하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의 「축산법」의 관련 규정중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은 「家畜改良増殖法」에 그리고 가축거래에

관한 사항은 「家畜取引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가축상법(家畜商法)이 있다.

- 독일의 축산법이라는 명칭을 붙은 법률도 축산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축산법과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그 규율 내용은 매우 적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큰 차이는 없으며, 축산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은 그 법에서 축산시설, 축사, 환기시스템, 발전시설에 관한 내용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축산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은 축산 관련 소관부처인 식품·농업부의 부령(verordnung)으로 정하고 있다.
- 프랑스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에서는 일반대중에게 소비되는 육류 또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자는 가축사육업(말은 제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에게 소비되는 육류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관련 가축의 위생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의 축산업은 연방정부의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그 산하의 APHIS와 APHIS 내 부서인 USDA Animal Care에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에 동물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농장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미국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특징은 법률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보다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동물복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 또는 레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EU와는 달리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사육, 임신한 돼지 스톨사육 등을 인정하는 대신 적정한 면적의 제공이나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영국의 관련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는 다소 가축 사육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밀집사육은 하되, 다소 넓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축산 관련 통합공고 및 현장점검표

제1절 서론

1. APHA의 책임 범위

- 국내외 기관과 법령 등 통합공고 시행 사례 발굴
- 질병, 환경, 안전 분야 등 통합점검 방안 발굴
- 농가 자체점검, 합동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 발굴
- 범위와 절차에 대한 통합공고 방안, 현장 의견 조사 및 연구(농가와 지자체)
- 통합공고 시행이후 개별법 제정 등에 따른 관리 방안 발굴

2. 현행 통합공고 입법례

현재 통합공고는 모두 3가지가 있으며 형식은 모두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들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2) 「대외무역법」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통합 공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통합공고는 다른 개별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해 놓은 고시를 의미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기타 참고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수출·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축산법에서의 통합광고의 근거 규정

(1) 근거 규정

통상 통합광고에 대한 근거 규정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관련 장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2장(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총칙’ 제4조(외국인투자 자유화 등) 제4항에서, 「대외무역법」은 제3장(수출입거래) 제1장(수출입거래 총칙) 제12조(통합광고)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생각건대, 축산법 관련 통합광고의 목적은 허가 및 등록 기준, 사육밀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의 축산법 전반에 대하여 농가의 자가 점검을 하도록 하여 축산 경영의 안전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축산법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총칙”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법 총칙 제1조에서 4조까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제4조 다음 “제4조의 1”에 통합광고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제4조의 1(통합공고)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은 이 법과 이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 산재해 있는 축산 시설 등 축산 환경에 대하여 축산 농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고 한다)할 수 있다.

(2) 통합공고 속에 포함될 법률

축산정책국 소관 법률은 축산법 등 18개가 있으며, 타부서 소관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 있다.

구분	주요 법률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료관리법 - 초지법 - 폐기물 관리법
유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 수의사법 - 도축장 구조조정법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부처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식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악취방지법(환경부 대기관리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세계무역기구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제2절 통합공고

1. 통합공고 규정

통합공고

제1조(목적)

통합공고란 축산법 제4조의 1에 근거하여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축산업 대상의 사육밀도 및 시설·관리기준 등에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축산농가가 이를 점검할 때 많은 혼란을 초래되는 바, 이를 하나로 통합·고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효율적인 자가 점검과 축산 경영의 안전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1. “요건확인대상”이라 함은 축산업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등록, 신고, 신청, 검사 및 점검, 검역 등을 받도록 하는 대상을 말한다.
2. “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축산업 관련하여 허가, 등록, 신고, 신청, 검사 및 점검, 검역 등의 축산업 경영 관련 요건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요건확인대상)

- ① 제3조의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요건확인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1호·제4호(축산업)에 근거한 다음 각 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종축업 : 돼지, 닭, 오리
 2. 부화업 : 닭, 오리
 3. 정액 등 처리업 : 소, 돼지
 4. 가축사육업 : 소, 돼지, 닭 및 오리
 5. 기타 위의 각 호에서 포함되지 않은 가축
- ② 제1항의 요건확인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은 제3조에서 정한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요건확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주무부처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법령 등)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서 해당 축산 대상의 요건 및 절차, 의무 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2. 가축전염병 예방법
3. 사료관리법
4. 초지법
5. 폐기물관리법
6. 낙농진흥법
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9. 동물보호법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12. 약취방지법
13. 건축법

②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의 작성)

- ① 법 제4조의 1에 따라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 ②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공고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요건확인대상에 대한 점검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조에서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요건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대상에 대한 요건확인서 발급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3항에 따른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따른다. 다만, 달리 정함이 없다면 축산법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상 주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이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0-00호, 2000. 0. 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별 표

(1) 목 차

1. 생산단계

1. 축산업

-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정액증명서 등
- 축산업의 허가 등
- 영업의 승계
-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 출생 등의 신고
- 개별식별번호의 부여
- 귀표 등의 부착 등
-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
- 이력번호의 신청
-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 수입신고시 이력번호 표기
-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 거래신고 등
-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 식별대상의 작성·기록/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누락사항의 조치
- 보고 및 출입·검사 등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

-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력 및 검역 의무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 보존 등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의 관리 등
- 방역기준의 준수
- 사체의 처분 제한
-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 축사 등의 소독

4. 초지법

- 초지조성의 제한
- 초지조성의 허가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 지위승계
- 허가의 취소
-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 국유지·공유지의 대부
-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 허가·인가 등의 의제
-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 초지의 전용 등
- 전용허가의 취소 등
- 원상회복
-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5.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기준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폐기물 재활용시 환경성평가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
- 생활폐기물의 처리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무
-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 권리·의무의 승계 등

II. 유통단계

1. 낙농진흥법

- 낙농진흥회의 설립
- 원유의 계약 생산
-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의무거출금의 납부
- 과오납금의 환급

III. 기 타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계열화사업의 등록
- 변경신고
- 계열화 사업 등록 결격사유
- 등록 취소 등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신의성실의 원칙
- 계약서의 작성 등
- 가축사육실적 평가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 계약
- 비용의 지급 등
- 준수사항
- 정보공개서의 등록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2. 동물보호법

- 적정한 사육관리
- 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의 운송
- 동물의 도살방법
- 동물의 수송
- 동물의 소유권 취득
- 동물의 분양 기준
- 부정행위의 금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가축사육의 제한 등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배출시설의 설치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 방류수 수질기준
- 퇴비액비화 기준 등
-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4.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의 도살 등
- 위생관리기준
- 안전관리 인증 기준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의 취소 등
- 부정행위의 금지
- 축산물의 포장 등
- 가축의 검사
- 축산물의 검사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축산물의 재검사
- 합격표시
-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5. 악취방지법

- 배출적용기준
- 악취관리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 시설 신고 등
- 악취방지 시설의 공동설치 등
- 관리의무의 승계
-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 보고 검사 등

6. 건축법

- 건축물의 허가(신고)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허가(신고) 변경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사용승인

(2) 생산단계

1) 축산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자 신고 및 수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농림축산식품부령) ○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는 다음 사유에 대하여 30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정액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 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축산업의 허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 14조의2, 14조의 3,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추어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준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위 제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함(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에 의함 ○ 위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 구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p>14조의 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27조의2, 27조의3, 27조의4, 제28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추는 것</p> <p>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p> <p>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준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p> <p>○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면제</p> <p>○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p>○ 위의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축사·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대통령령에 의함</p> <p>-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대통령령에 의함</p>		
<p>영업의 승계</p>	<p>○ 제6항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p> <p>○ 영업을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p>	<p>제24조/ 같은 시행규칙 제29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p>○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15, 16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호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 처분 ○ 제22조 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항 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 목적의 점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 -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 	<p>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p>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 필요한 경우 제22조 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점검 및 처분 요구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별도 신고 ○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출생 등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⁷³⁾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73) 농장경영자라 함은 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가축시장개설자란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축거래상인은 「축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 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귀표 등의 부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위의 귀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함 ○ 귀표 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농장식별 번호의 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10조	

법」 제34조의 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p>가금 농장식별 번호의 표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여 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제2항). ○ 위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함. 	<p>제8조의2</p>	
<p>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 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제1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의 이동 금지.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 제외) 	<p>제9조</p>	
<p>농장식별 번호가 없는 가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제8조의 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 동신고서 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제1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 	<p>제9조의2</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이동 금지 등	<p>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의 이동 금지.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금이동신고서 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 금지.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귀표 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 ○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그 국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13, 1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 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p>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의 표시(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 신청하여야 함(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 	<p>제11조의2</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에게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함.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관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관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관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이력번호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 식별표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함. ○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함. 	제14조	
수입유통 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의 금지.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 제외)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함.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거래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도 신고 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 판매 제외)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p>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 위의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 가능.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p>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20, 21조</p>	
<p>식별대장의 작성·기록/ 식별대장의 관리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 식별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함(제19·20조) ○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p>제19, 20, 21, 22조/ 같은 법 시행령</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수정 등/ 누락사항의 조치	<p>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 요구 가능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3, 24조	
보고 및 출입·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음. ○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음. ○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p>제5조/ 같은 법 시행령</p> <p>제2조의 3, 제2조의4,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p> <p>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p>3의2. 가축방역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p>7의2. 도축장의 종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위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외국인 근로자(제3-6항)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검사·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 등의 입국·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6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제1·2항의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함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의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 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 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검사 결과 가축 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수의사 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p>소유자 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 ○ 위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p>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음. 	<p>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18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의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5조의2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음(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소유자 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5항) ○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함(제3항) ○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음(제6항). 	<p>20, 20조의 2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음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였는지 여부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함. -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함. 	제17조의2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1.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갈짚·난과·가금부산물 운반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2.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권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p> <p>3.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p> <p>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나아가, 운전자는 이와 관련한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됨. ○ 만약 위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가능 		
방역기준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제17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조	
사체의 처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사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 등이나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함.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됨. ○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 제1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p>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함.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제22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축사 등의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함. 	제25조	

4) 초지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초지 조성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2. 채종림(採種林)·시험림(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 조성을 할 수 있음		
초지 조성의 허가	○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 허가의 신청,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공유지의 관리권자·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 ○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 가능. 이 경우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 6조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 	제11조	
허가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2조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 관계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 	제15조의2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p> <p>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 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유지 · 공유지의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함 ○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함 ○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 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 제13조의2 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국유지 · 공유지의 대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 · 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허가 · 인가 등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5항 및 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이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제1항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 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초지에서 의 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조	
초지의 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9조제1항에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 제16조의2, 제16조의3 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p> <p>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p> <p>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p>○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p>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 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함.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전용허가의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원상회복	○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초지조성 토지의 매각	○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 ○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함.	제27조의2	

5) 폐기물관리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폐기물 처리기준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	제13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 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제13조의 2;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 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p> <p>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으로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 것</p> <p>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5.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금지, 제한</p> <p>1. 폐석면</p> <p>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p> <p>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p> <p>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p> <p>○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p>	제14조의 3	
폐기물 재활용시 환경성 평가	<p>○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 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도 동일)</p>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p> <p>○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p>	제13조의 3; 시행령 제7조의 4; 시행규칙 제10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 가능 ○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승인 취소 시 폐기물 재활용 중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 ○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 금지 	제13조의 5;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14조의 13	
생활 폐기물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의무(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14조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 대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가능 ○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 가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p>제15조 제14조시 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p>	
<p>생활 폐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 	<p>제15조; 시행령</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p>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도 동일) ○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가능. 이 경우 공동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15조의 2; 시행령 제8조의 4; 시행규칙 제16조의 5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	제17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p>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도 동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확인 의무. 다만, 「자동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확인받아야 함</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p> <p>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p> <p>○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p> <p>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의 준수</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함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 	제18조; 시행령 제37조의2 ; 시행규칙 제17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음.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가능</p>		
<p>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 	<p>제18조의 2; 시행규칙 제22조</p>	
<p>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함 ○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 	<p>제19조; 시행규칙 제26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p>		
<p>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p>제2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3조</p>	
<p>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p>제30조; 시행규칙 제41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금지.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3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33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29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를 승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함 ○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p>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 상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 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함. 		

(3) 유통단계

1) 낙농진흥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낙농 진흥회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 목적 ○ 진흥회의 구성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 함. ○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변경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5조	
원유의 계약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회는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 및 구입 가능. ○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진흥회는 위 제2항을 고려 원유 구입가격을 결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원유생산 계약의 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가가 계약 내용 변경시 진흥회에 이를 통지 동의받아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만으로 변경 가능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음.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의무거출금의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축산업자가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 의무거출금 대납. 이 경우 중도매인 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 청구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18조	
과오납금의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 기 타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적용대상	○ 이 법의 적용대상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의 영위 금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조의3	
변경신고	○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5조의4	
계열화사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 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제5조의5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아니한 자</p> <p>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p> <p>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등록 취소 등</p>	<p>○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조의 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등록 후 6개월 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营业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营业을 한 경우 8.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p>○ 시·도지사는 营业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p> <p>○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p>	<p>제5조의6</p>	
<p>행정처분 효과의 승계</p>	<p>○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 6 제1항 및 제5조의 7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p>	<p>제5조의8</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신의성실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다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함. ○ 위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서의 작성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p> <p>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과 추가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 및 사육자재의 공급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13.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가지급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p> <p>14.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p> <p>15.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 위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육 준비, 시설 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p>		
가축사육 실적평가	<p>○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p> <p>○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p>	제7조의2	
계약농가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	<p>○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음.</p> <p>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p> <p>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 지급보증계약</p>	제7조의3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계열화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와 다르거나 유사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 그 밖에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비용의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간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의함.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 발급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육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20일 초과 가능. ○ 위의 본문을 위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령일(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간주. ○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가지급금을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농가부담금의 지급기일은 농가지급금의 계약농가 수령일 	제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로 하고, 지급 방법·시기 및 지급기한의 연장 등 세부사항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함.</p>		
<p>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사업자의 금지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 8호(삭제됨) ○ 위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 가능. ○ 계약농가의 금지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p>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p>정보공개서의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등록 ○ 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 	<p>제9조의2</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신고, 공개의 방법·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p>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위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p>제9조의5</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 체결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p>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p>	<p>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의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의 산정서를 계약체결일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p>제9조의6</p>	

2) 동물보호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적정한 사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 ○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 위의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p>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 등은 동물의 유기(遺棄)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의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 가능</p> <p>○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 할 수 있음.</p>		
동물의 도살방법	<p>○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됨.</p> <p>○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함(매몰도 동일)</p> <p>○ 위의 방법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p>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7, 8, 9, 10조	
동물의 수술	<p>○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함.</p>	제11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p>○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p> <p>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p>	제20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의 분양·기증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 ○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 9조	
부정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30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 가능(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음. ○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 금지 ○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함(제5항). ○ 위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가능함 	<p>제5조/ 제3조의4 조</p>	
<p>가축사육의 제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p>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시행규칙 제3조의5 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수변구역</p> <p>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p> <p>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축 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 7,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위의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도 동일. ○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것 금지 	<p>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5, 6, 7조</p>	
<p>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 	<p>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함.</p>		
<p>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함.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p>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8, 9, 19조</p>	
<p>방류수 수질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p>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퇴비액 비화기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함. 	<p>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시행규칙 제11조의2 조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 승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과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됨. -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 가능. - 위의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 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확인하여 신청일부더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p>○ 위의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 제4항, 제5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p>○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p> <p>○ 위의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p>	<p>○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 	<p>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4</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시 사용하려는 경우</p> <p>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p> <p>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p> <p>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p> <p>○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함.</p>	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p>○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임</p> <p>1.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p> <p>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p> <p>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p> <p>○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p>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p>○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p> <p>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13, 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3, 14,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p>○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15, 16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 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5) 타부처 소관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가축의 도살 등	<p>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 	<p>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2조의 5 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제5조의 2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함.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 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하여야 함. ○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 가능,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함. ○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p>위생관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p>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p>○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안전관리 인증기준	<p>○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p> <p>②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외됨.</p> <p>○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음.</p> <p>○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작업장·</p>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라는 명칭을 사용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인증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가능.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조	
인증의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8. 그 밖에 제2호·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	
축산물의 포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12, 제7조의 13 조	
가축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 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됨.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함.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10, 13, 17, 18조	
축산물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 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12, 13, 14, 15, 16, 17, 1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음.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 제5항·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 제4항 또는 제12조 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p>		
<p>축산물의 재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p>	
<p>합격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p>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p>	
<p>미검사품의 반출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 	<p>제17조</p>	
<p>검사 불합격품의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p>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p>	
<p>소비자 등의 위생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p>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등 요청	<p>「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시설 또는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0조	

2) 악취방지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배출허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위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p>악취관리 지역의 악취배출 시설 설치신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p>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10, 11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합. -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 가능.</p>		
<p>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 시설 신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과 관련,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위의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위의 신고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 가능 	<p>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9, 10, 11조</p>	
<p>악취방지 시설의 공동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음. 	<p>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3 조</p>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함. ○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권리·의무의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9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제16조	
보고·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p>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에 약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음. ○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3) 건축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건축물의 허가(신고)	<p>① 건축물의 건축 내지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같은 조 ①).</p> <p>② 위의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같은 조 ③).</p> <p>* 각 호란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제18호);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및 신고(제23호)를 말함(건축허</p>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고
	<p>가를 받으면 제18호 내지 제23호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p> <p>*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법 제11조 ⑪ 제2호 및 영 제9조의 2 ①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① 제1의 4호 참조) -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설계도서(별표 2) - 법 제11조 ⑤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결합건축협정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한) 		
건축물의 허가(신고)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②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서류 첨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허가·신고대상(그 밖의 시설군 : 동물 관련 시설) ③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주가 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완료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제22조 ①). * 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완료도서 첨부 ②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 ③)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근거 법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권자가 2년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③ ①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11.29] 5. 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시행규칙 제16조</p>	

제3절 현장점검표

1. '종축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종축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준수 여부		
	(1) 종축확인 * 종돈업 : 혈통증명서 또는 혈통확인서, 질병검사 결과 * 종계·종오리업 : 계통보증서 또는 검정확인서, 질병검사 결과		
	(2) 사육시설 구비 여부 : 종축사육시설, 결리시설, 케이지 시설(종계), 집란시설(종계), 종란보관시설 및 운습도 유지시설(종계·종오리업) 등		
	(3) 차단, 소독,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종돈업 : 소독조 시설,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 울타리·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등 * 종계·종오리업 : 터널식/고정식 및 분무용 소독시설, 신발소독조, 차단장치, 울타리·담장, 안내판,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차단망, 출입로 구분, CCTV 등		
	(4) 인력 보유 여부(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환기·방한·방서·방충시설, 원유냉각기, 저장조, 정화시설 등		
(5) 집란실 구비 여부(산란계사육업만 해당) : 방충·방서·환기시설,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 시설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가축사육업>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및 보관, 적정사육기준 이내 사육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중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⑧ 가축 분뇨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총축업 현장점검표-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 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 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축산법 제22조 ①, ②)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이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종돈	(1) 성장단계별 가축사육시설면적 (마리당면적)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응돈</th> <th colspan="4">번식돈</th> <th colspan="3">비육</th> </tr> <tr> <th>임신돈</th> <th>분만돈</th> <th>중부대기돈</th> <th>후보돈</th> <th colspan="2">새끼돼지</th> <th>비육돈</th> </tr> <tr> <td>6.0</td> <td>1.4</td> <td>3.9</td> <td>1.4(스틀) 2.6(군사)</td> <td>2.3 (군사)</td> <th>초기</th> <th>후기</th> <th>육성돈</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0.2</td> <td>0.3</td> <td>0.45</td> <td>0.8</td> </tr> </thead> </table>			응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중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비육돈	6.0	1.4	3.9	1.4(스틀) 2.6(군사)	2.3 (군사)	초기	후기	육성돈						0.2	0.3	0.45	0.8
	응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중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비육돈																												
6.0	1.4	3.9	1.4(스틀) 2.6(군사)	2.3 (군사)	초기	후기	육성돈																												
					0.2	0.3	0.45	0.8																											
(2) 경영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일관경영</th> <th>번식경영-1</th> <th>번식경영-2</th> <th>비육경영-1</th> <th>비육경영-2</th> </tr> </thead> <tbody> <tr> <td>0.79</td> <td>2.42</td> <td>0.90</td> <td>0.62</td> <td>0.73</td> </tr> </tbody> </table>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중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 형태</th> <th>면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계·산란계</td> <td>케이지</td> <td>0.075m²/마리</td> <td></td> </tr> <tr> <td>평사</td> <td>9마리/m²</td> <td></td> </tr> <tr> <td>산란육성계</td> <td>케이지</td> <td>0.025m²/마리</td> <td>100일령까지 사육</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중계·산란계	케이지	0.075m ² /마리		평사	9마리/m ²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중계·산란계	케이지	0.075m ² /마리																																	
	평사	9마리/m ²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종오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마리당 면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산란용 오리</td> <td>0.333m²/마리</td> <td></td> </tr> <tr> <td>육용 오리</td> <td>0.246m²/마리</td> <td>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²/마리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용 오리	0.246m ² /마리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용 오리	0.246m ² /마리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종돈	<table border="1"> <tr> <td>종축</td> <td>(1) 혈통확인서(번식용 혈통확인서)/질병검사결과(음성) 보유 여부</td> </tr> <tr> <td>사육시설</td> <td>(1) 종돈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내구성재료/환기시설, 사육단계(분만·포유·육성)시설의 구분 설치(벽·칸막이) 등) (2) 외부유입종돈의 격리시설 갖추었는지의 여부(일정 기간) (3) 정액처리업 또는 돼지사육업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건물 설치 여부</td> </tr> <tr> <td>인력</td> <td>(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보유 여부 *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방문지도·관리받는 경우 제외) (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td> </tr> </table>	종축	(1) 혈통확인서(번식용 혈통확인서)/질병검사결과(음성) 보유 여부	사육시설	(1) 종돈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내구성재료/환기시설, 사육단계(분만·포유·육성)시설의 구분 설치(벽·칸막이) 등) (2) 외부유입종돈의 격리시설 갖추었는지의 여부(일정 기간) (3) 정액처리업 또는 돼지사육업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건물 설치 여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보유 여부 *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방문지도·관리받는 경우 제외) (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종축	(1) 혈통확인서(번식용 혈통확인서)/질병검사결과(음성) 보유 여부							
	사육시설	(1) 종돈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내구성재료/환기시설, 사육단계(분만·포유·육성)시설의 구분 설치(벽·칸막이) 등) (2) 외부유입종돈의 격리시설 갖추었는지의 여부(일정 기간) (3) 정액처리업 또는 돼지사육업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건물 설치 여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보유 여부 *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방문지도·관리받는 경우 제외) (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00 기 타	중돈관리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종계· 종오리	종 축	(1) 계통보고서 또는 일반검정확인서 보유 여부 (2)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의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	
	사 육 시 설	(1) 사육시설 구비 여부(내구성 재료 사용·단열시설 및 환기시설/품종별·세대별 및 사육단계별 사육시설의 구분 설치 여부(벽·칸막이 등)/부화시설과 격리 설치·구획 여부)/케이지시설 이용의 경우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요건 구비 여부)	
		(2) 집란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여부	
		(3) 종란 보관시설 별도 설치 여부(부화업 함께하는 경우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 보유 가능)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스보 유지 시설 설치 여부	
인 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보유 여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방문지도·관리받는 경우 제외) (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기 타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 및 판매기록 대장 구비 여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 독 시 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터널식, 고정식)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방 역 시 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5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육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돼지	허가	면적 1,00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비허가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 이상 500㎡ 미만		
	닭·오리	허가	면적 3,000㎡ 이상		
		비허가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 메추리 면적 200㎡ 이상으로 함		
방목 사육	- 돼지 36마리 이상 - 소·젓소 9마리 이상 - 닭·오리 1,500마리 이상 * 초지법에 따른 초지 가축사육, 자연순환농법으로 논 오리사육의 경우 제외				
퇴비화 기준	모든 가축	종류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과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염분		2.55 이하			
액비화 기준	모든 가축	종류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과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염분		2.55 이하			

6) 약취 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 돼지 50㎡ 이상 - 닭·오리 150㎡ 이상		<약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허용 기준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 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 제3항을 위함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2. ‘부화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부화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준수 여부		
	(1) 중축확인종란확인 : 계통보증서		
	(2) 부화시설 구비 여부 : 부화장(부화실, 병아리방), 부화기, 격리시설, 종리나보관시설 및 온습도 유지시설 등		
	(3)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세차시설, 터널식/고정식 및 분무용 소독시설, 신발소독조, 차단장치, 울타리·담장, 안내판,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차단망, CCTV 등		
	(4) 기타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고시)의 시설·장비기준 준수, 종란 수급대상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부화업> 종계·종오리 알, 육용 씨숫탸(오리)와 산란용 씨암탸(오리) 간 교배로 생산된 알만 부화 여부,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발급 여부, 부화되지 않은 알 폐기처분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⑧ 가축 분뇨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부화업 현장점검표 -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 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 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 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닭	종계/산란계	케이지	0.75㎡/마리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평사	9마리/㎡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오리	산란용 오리	0.338㎡/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무창 또는 고정식 시설은 0.15㎡/마리)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종란	(1)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고있는지의 여부		<축산법> 1.시정 명령 2.과태료 (50. 200. 300)
부화 시설	(1) 부화장 및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 설치 여부 (가) 부화장에는 부회살과 병아리방 설치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재료 사용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중오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였는지의 여부		
	(3) 종란 보관시설의 별도 설치 여부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 유지 시설 설치 여부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⑤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준수 여부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대장 구비 여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 (터널식, 고정식)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 (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5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허가대상	- 면적 3,0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비허가대상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이상 3,000㎡미만 - 메추리 면적 200㎡ 이상으로 함		
방목 사육	- 닭·오리 1,500마리 이상 * 초지법에 따른 초지 가축사육, 자연순환농법으로 논 오리사육의 경우 제외			
퇴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괴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6) 악취 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 닭·오리 150㎡ 이상					
허용 기준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악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 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함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 을 받지 안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3. '정액등처리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정액등처리업'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가. 시설 및 장비 준수 여부	(1) 종축 및 정액 등 확인 * 소 : 보증씨수소(5마리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 등 * 돼지 : 혈통등록된 시수돼지(30마리 이상), 산육능력검정성적 확인, 혈통등록된 씨암돼지 등	
		(2) 사육시설 구비 여부 : 축사(종축보유시), 제조실 차단·격리시설 등	
		(3) 차단, 소독,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소독조 시설,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 울타리·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등	
		(4) 장비 보유 여부 : 인공 질, 모형암돼지, 채란기, 현미경, 항온수조, 정자수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스트로인쇄기, 스트로봉합기, 동결기, 정액보관고 등	
		(5) 인력 보유 여부 :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1명 이상	
		(6) 기타 : 종축관리, 정액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 질병검사 결과서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정액등 처리업>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수정란증명서 발급 여부, 사용이 제한된 정액·난자·수정란 공급·주입·이식 여부, 종축에 대하여 연2회 이상 검진 여부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⑧ 가축 분뇨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정액등처리업 현장점검표 -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명령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2.과태료 (50. 200. 300)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이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중돈	(1) 성장단계별 가축사육시설면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용돈</th> <th colspan="4">번식돈</th> <th colspan="4">비육</th> </tr> <tr> <th rowspan="2">임신돈</th> <th rowspan="2">분만돈</th> <th rowspan="2">종부대기돈</th> <th rowspan="2">후보돈</th> <th colspan="2">새끼돼지</th> <th rowspan="2">육성돈</th> <th rowspan="2">비육돈</th> </tr> <tr> <th>초기</th> <th>후기</th> </tr> </thead> <tbody> <tr> <td>6.0</td> <td>1.4</td> <td>3.9</td> <td>1.4(스톨) 2.6(군사)</td> <td>2.3 (군사)</td> <td>0.2</td> <td>0.3</td> <td>0.45</td> <td>0.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마리당면적)</p>	용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 (군사)	0.2	0.3	0.45	0.8		
	용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 (군사)	0.2	0.3	0.45	0.8																							
(2) 경영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일관경영</th> <th>번식경영-1</th> <th>번식경영-2</th> <th>비육경영-1</th> <th>비육경영-2</th> </tr> </thead> <tbody> <tr> <td>0.79</td> <td>2.42</td> <td>0.90</td> <td>0.62</td> <td>0.73</td> </tr> </tbody> </table>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한우 육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 형태</th> <th>번식우</th> <th>비육우</th> <th>송아지</th> </tr> </thead> <tbody> <tr> <td>방사식</td> <td>10.0</td> <td>7.0</td> <td>2.5</td> </tr> <tr> <td>계류식</td> <td>5.0</td> <td>5.0</td> <td>2.5</td> </tr> </tbody> </table>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젖소	(1)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형태</th> <th colspan="2">경산우</th> <th rowspan="2">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th> <th rowspan="2">육성우 (6개월 이상 12개월령 미만)</th> <th rowspan="2">송아지 (3개월 이상 6개월령 미만)</th> </tr> <tr> <th>착유우</th> <th>건유우</th> </tr> </thead> <tbody> <tr> <td>깔짚 방식</td> <td>16.5</td> <td>13.5</td> <td>10.8</td> <td>6.4</td> <td>4.3</td> </tr> <tr> <td>계류식</td> <td>8.4</td> <td>8.4</td> <td>8.4</td> <td>6.4</td> <td>4.3</td> </tr> <tr> <td>프리스톨 방식</td> <td>8.3</td> <td>8.3</td> <td>8.3</td> <td>6.4</td> <td>4.3</td> </tr> </tbody> </table>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방식	8.3	8.3	8.3	6.4	4.3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방식	8.3	8.3	8.3	6.4	4.3																										
(2) 일관경영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형태</th> <th>깔짚방식</th> <th>계류식</th> <th>프리스톨방식</th> </tr> </thead> <tbody> <tr> <td>마리당 면적</td> <td>12.8</td> <td>8.8</td> <td>9.0</td> </tr> </tbody> </table>	시설형태	깔짚방식	계류식	프리스톨방식	마리당 면적	12.8	8.8	9.0																							
시설형태	깔짚방식	계류식	프리스톨방식																												
마리당 면적	12.8	8.8	9.0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중축 및 정액 등 소	(1) 정액 생산시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 여부(젖소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 (가) 국내 검정 완료의 경우 법 제7조②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나) 외국 검정 완료의 경우 법 제29조③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 기준을 구비할 것																															
	(2) 난자 및 수정란 생산시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 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위①의 기준에 적합한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돼지	① 정액 생산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돼지(번식용 씨수돼지의 경우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를 30말 이상 보유하였는지의 여부																															
	② 정액 생산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 4개 항목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 새끼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농장검정기준으로 90kg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품종</th> <th colspan="2">90kg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증가량</th> <th rowspan="3">사료요구율</th> <th rowspan="3">등지방 두께 (cm)</th> <th rowspan="3">생존새끼수 (마리)</th> </tr> <tr> <th rowspan="2">90kg도달 일령</th> <th colspan="2">1일 체중증가량(g)</th> </tr> <tr> <th>농장</th> <th>검정소</th> </tr> </thead> <tbody> <tr> <td>랜드레이스/요크셔</td> <td rowspan="2">135 이하</td> <td rowspan="2">700 이상</td> <td rowspan="4">1,000 이상</td> <td rowspan="4">2.2 이하</td> <td rowspan="2">1.4 이상</td> </tr> <tr> <td>두록</td> </tr> <tr> <td>버크셔/햄프셔 및 기타 종</td> <td>155 이하</td> <td>600 이상</td> <td rowspan="2">1.5 이하</td> </tr> <tr> <td>번식용 씨돼지</td> <td>132 이하</td> <td>715 이상</td> </tr> <tr> <td>재래돼지</td> <td>233 이하</td> <td>300 이상</td> <td>2.0 이하</td> </tr> </tbody> </table>	품종	90kg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증가량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새끼수 (마리)	90kg도달 일령	1일 체중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햄프셔 및 기타 종	155 이하	600 이상	1.5 이하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3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품종	90kg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증가량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새끼수 (마리)																							
	90kg도달 일령							1일 체중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햄프셔 및 기타 종	155 이하	600 이상			1.5 이하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3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사육 시설	(1) 종축보유시 사육시설 설치 여부																															
	(2) 제조실 : 정액 등 위생처리시설 설치 및 구비 여부																															
	(3) 사육시설과 제조실 별도 건물 구비(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 제조실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4) 외부에서 들어온 종축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결시시설 별도 구비 여부(다른 장소 일정 기간 격리후 들어오는 경우 제외)																															
장비	구분	기계·기구명	비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시 해당																													
		모형 암돼지 1대	돼지 정액 생산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table border="1"> <tr> <td>봉합용</td> <td colspan="2">스트로 봉합기 1대</td> </tr> <tr> <td>동결용</td> <td>동결기 1대</td> <td>동결된 정액·난자 acl 수정란 생산시 해당</td> </tr> <tr> <td>보관용</td> <td colspan="2">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td> </tr> </table>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acl 수정란 생산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acl 수정란 생산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인력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 보유 여부(*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 생산시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기록장부 구비 여부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 제출 및 그 결과 질병발생 사실 없는지의 여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의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 (터널식, 고정식)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 (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5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기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허가 대상	돼지	면적 1,00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한(육)우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비허가 대상	젖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따라 (100~1000)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한(육)우	돼지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면적 50㎡ 이상 500㎡ 미만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젖소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방목 사육	- 돼지 36마리 이상 - 소·젖소 9마리 이상				
퇴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귀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소·젖소	염분	2.55 이하			
액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귀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mg/kg이하			
	아연	170mg/kg이하			

6) 약취 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돼지 50㎡, 소·말 100㎡					
허용 기준	복합약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약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4. ‘가축사육업(소)’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가축사육업(소)’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1) 사육시설 구비 여부 : 가축사육시설, 격리공간, 환기시설 등		
	(2) 소독시설 구비 여부 : 차량 소독시설 및 차단바/방문차량 소독 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분문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신발 소독조(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사육시설) 등		
	(3)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울타리·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물품반입 창고 등(닭·오리 사육업은 방역실, 전실, 차단망 등)		
	(4) 착유실 등 구비 여부(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환기·방한·방서·방충시설, 원유냉각기, 저장조, 정화시설 등		
	(5) 집란실 구비 여부(산란계사육업만 해당) : 방충·방서·환기시설,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 시설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가축사육업>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및 보관, 적정사육기준 이내 사육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⑧ 가축 분노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가축사육업 현장점검표(소) -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한우 육우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젖소	(1)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갈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틀 방식	8.3	8.3	8.3	6.4	4.3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2) 일관경영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형태	깔짚방식	계류식	프리스톨방식		
마리당 면적	12.8	8.8	9.0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사육면적	- 한우·육우 : 500m ³ 초과 - 젖소 : 640m ³ 초과	- 한우·육우 : 500m ³ 이하 - 젖소 : 640m ³ 이하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가축 사육시설 설치 여부		
	(2) 외부에서 들어온 소 및 번든 소 격리 공간 확보 여부			
착유실 등	(1) 착유시설 설치 여부	(1) 착유시설 설치 여부		
	(2) 착유실의 오염방지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시설 설치 여부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 이나 착유실과 별도 독립 공간 설치 여부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 별도 독립 공간 설치 여부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한 온도조절가능한 밀폐형 또는 가방형 냉각기 설치 여부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한 온도조절가능한 밀폐형 또는 가방형 냉각기 설치 여부	(4) 착유실의 세척수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 설치 여부		
	(5) 착유실의 세척수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 설치 여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 (터널식, 고정식)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 (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500)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허가	한(육)우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젖소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비허가	한(육)우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젖소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방목 사육	- 소·젖소 9마리 이상			
퇴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소·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귀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염분		2.55 이하		
액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귀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구리	70mg/kg이하			
	아연	170mg/kg이하			

6) 약취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 100m ³ 이상			<약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허용 기준	복합약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 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함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 을 받지 안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5. ‘가축사육업(돈)’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가축사육업(돈)’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1) 사육시설 구비 여부 : 가축사육시설, 격리공간, 환기시설 등		
	(2) 소독시설 구비 여부 : 차량 소독시설 및 차단바/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분문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신발 소독조(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사육시설) 등		
	(3)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울타리·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물품반입창고 등(닭·오리 사육업은 방역실, 전실, 차단망 등)		
	(4) 착유실 등 구비 여부(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환기·방한·방서·방충시설, 원유냉각기, 저장조, 정화시설 등		
	(5) 집란실 구비 여부(산란계사육업만 해당) : 방충·방서·환기시설,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 시설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가축사육업>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및 보관, 적정사육기준 이내 사육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⑧ 가축 분노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가축사육업 현장점검표(돈)-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1) 성장단계별 가축사육시설면적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응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번식돈</th> <th colspan="4">비육</th> </tr> <tr> <th rowspan="2">입신돈</th> <th rowspan="2">분만돈</th> <th rowspan="2">중부대기돈</th> <th rowspan="2">후보돈</th> <th colspan="2">새끼돼지</th> <th rowspan="2">육성돈</th> <th rowspan="2">비육돈</th> </tr> <tr> <th>초기</th> <th>후기</th> </tr> </thead> <tbody> <tr> <td>6.0</td> <td>1.4</td> <td>3.9</td> <td>1.4(스톨) 2.6(군사)</td> <td>2.3 (군사)</td> <td>0.2</td> <td>0.3</td> <td>0.45</td> <td>0.8</td> </tr> </tbody> </table>	번식돈				비육				입신돈	분만돈	중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 (군사)	0.2	0.3	0.45	0.8		
	번식돈				비육																									
입신돈	분만돈	중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 (군사)	0.2	0.3	0.45	0.8																						
(마리당면적)																														
(2) 경영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종축	(1) 혈통확인서(번식용 혈통확인서)/질병검사결과(음성) 보유 여부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사육 시설	(1) 종돈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내구성재료/환기시설, 사육단계(분만·포유·육성)시설의 구분 설치(벽·칸막이) 등)		
	(2) 외부유입종돈의 격리시설 갖추었는지의 여부(일정 기간)		
	(3) 정액처리업 또는 돼지사육업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건물 설치 여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보유 여부 *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거나 축산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방문지도·관리받는 경우 제외) (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기타	종돈관리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터널식, 고정식)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 (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5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허가대상	면적 1,000㎡ 이상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비허가대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 이상 500㎡ 미만		
방목 사육	- 돼지 36마리 이상			
퇴비화 기준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피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염분	2.55 이하		
액비화 기준	항목	기준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피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염분	2.55 이하		

6) 악취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 돼지 50㎡ 이상				
허용 기준	복합악취	구분		<악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함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안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6.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적	
②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부	
③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④ 허가 기준 (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준수 여부		
	(1) 사육시설 구비 여부 : 가축사육시설, 격리공간, 환기시설 등		
	(2) 소독시설 구비 여부 : 차량 소독시설 및 차단바/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분문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신발 소독조(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사육시설) 등		
	(3) 방역시설 구비 여부 : 울타리·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물품반입창고 등(닭·오리 사육업은 방역실, 전실, 차단망 등)		
	(4) 착유실 등 구비 여부(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환기·방한·방서·방충시설, 원유냉각기, 저장조, 정화시설 등		
	(5) 집란실 구비 여부(산란계사육업만 해당) : 방충·방서·환기시설,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 시설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 기준 준수여부(최초 허가시점 기준으로 확인)			
⑤ <공통> 위생관리, 출입제한, 작업복·신발착용, 소독기록부,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가축사육업>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및 보관, 적정사육기준 이내 사육 등(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별표3의3])			
⑥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토록 했는지 여부(법 제25조제1항)			
⑦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허가 1년에 1회 이상, 등록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⑧ 가축 분뇨 배설시설 신고 기준 및 퇴배·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⑨ 약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			
⑩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⑪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입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가축사육업 현장점검표(닭·오리)- 세부내용

1) 공통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축산업 영업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1.과태료 (200,400,800) 2.허가취소
	(2)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신고 여부(법 제22조제6항)		(250,500,1000)
	(3)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법 제24조제2항)		200,400,600)
매몰지 확보	(1) 매몰지 확보 여부(외부매몰지 확보 포함)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가축전염병 예방법(22②)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적합 여부 -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제외		
지역 기준	(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경우만 해당 (가)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하였는지의 여부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닭	중계 · 산란계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오리	산란용 오리	0.338㎡/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 무창 또는 고정식 시설은 0.15㎡/마리				

3) 시설 및 장비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사육 시설	(1) 아래 기준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 여부 (가)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축산법> 1.시정명령 2.과태료 (50, 200, 300)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	<1천300제곱미터 초과>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
	(1) 집란실 설치 여부	(1) 집란실 설치 여부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 설치 여부	(2) 환기 시설 설치 여부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 여부(에어컨 등)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 소독 장비·시설 설치 여부 (터널식, 고정식)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3) 출입자 방문기록부 구비 여부		
	(4)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를 설치 여부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여부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 설치 여부 *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법> 과태료 (100, 400, 800)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 여부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p>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비</p> <p>(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설치 여부 *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p> <p>(6) 축사 입구에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 설치 여부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p> <p>(7)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p> <p>(8)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p>		

4)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방역	(1)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할 것 (외부인 포함)		<축산법> 과태료 (100, 250, 500)
	(2)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여부(1년 동안 보관)		
	(3)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여부 -「약사법」 제85조제2항,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기록	(1)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 여부(1년 동안 보관)		
교육	(1) 축산관련종사교육 이수 여부(법 제33조의2) * 최초교육 후 허가 매 2년, 등록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과태료 (20, 50, 100)

5)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시설 면적	허가대상	- 면적 3,000㎡ 이상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비허가대상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이상 3,000㎡미만 - 메추리 면적 200㎡ 이상으로 함		
방목 사육	- 돼지 36마리 이상 - 소·젓소 9마리 이상 - 닭·오리 1,500마리 이상 * 초지법에 따른 초지 가축사육, 자연순환농법으로 논 오리사육의 경우 제외			
퇴비화 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귀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가분법> 과태료 초과비율에 따라 (100~1000)

6) 악취배출기준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적용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	- 닭·오리 150㎡ 이상					
허용 기준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악취 방지법>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권고		
			공업지역	기타 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희석배수)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이하		15-20	10-15
		* 축산농가는 기타지역에 해당					

7)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00, 100, 100)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함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7.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현장점검표

양식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현장점검표

농가·법인명(대표자)		축종		점검일	2020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면적 (㎡)		점검자		(서명)	(서명)

(1) 총괄표

점검 항목	적합 여부	비고
①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받았는지? -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 필요	적	
② 가축거래상인 신청 및 등록사항이 실제와 맞는지?	부	
③ 휴업·폐업·영업의 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했는지?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다시 개업, 등록사항 변경(주소지, 거래가축 종류 등)		
④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는 해당 시설 관계자가 육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하는지?(준수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		
⑤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는지?(준수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		
⑥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가 있는지?		
⑧ 기타 위반 및 특이사항		
⑨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는지?(준수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		

☆ 별첨 :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내역 증빙자료(서류·인증사진 등) 반드시 첨부

(2) 세부내용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1) 가축거래상인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34조의 3에 따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4조의 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6개월)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점검사항	위반 여부	위반시 처벌사항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바)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이내)
(2)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56조 ①제13호) (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나) 폐업한 경우 (다)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100, 200, 300)
(3) 위의 제34조의 4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제56조 ① 제14호)		과태료 (100, 250, 500)
(4) 제34조의 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56조 ① 제15호)		과태료 (100, 200, 400)

제5장 축산법령 체계화 방안

제1절 현행 축산법령 체계 분석

1. 체계화 필요성

축산 관련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축산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므로 이에 따라 부처 별로 다양한 축산 관련 법령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축산 관련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무 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병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항들이 있어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즉, 많은 축산관련 업무가 단체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법령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농림축산부의 소관 법률이다. 이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소관법률이며, 축산업과도 관련되어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축산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공동 소관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동물보호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법률로서 농업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1월 16일 제정된 「농업기본법」은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다시 2009년 11월 2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규율대상도 확대되었다. 이 기본법은 농정방향을 확립하고 농업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된다.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는 농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축산업을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법」보다는 축산업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축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축산업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의 축산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6호 가목은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범주에 축산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은 축산업의 기본법이기도 하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축산법」은 가축, 축산 외에도 축산업 및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고 있다. 「축산법」 제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강구하여야 할 다양

한 분야의 축산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축산 분뇨의 처리와 자원화, 가축위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법」 외의 다른 법령 등에서 「축산법」과의 연계 규정 없이 「축산법」의 관련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관련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제2장에서는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에 대해,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에서는 축산업이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3. 기타 부처의 축산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아래의 법령은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부의 소관 법률이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닌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은 가축분뇨의 환경오염과 방지 관련 사항만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고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으로 새로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특히 제8조의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여없이 환경부 소관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9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타 부처의 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행사 근거와 방법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타 규정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아래의 법령은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법률이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4. 축산관련법상의 가축과 축산물의 범주 비교 분석

(1) 가축의 범주

아래에서 보드시피, 개개의 축산법관련법의 적용범주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가축과 축산물의 범주가 각기 다르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가축의 범주

(가) 「축산법」상의 가축의 범주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돼지·사슴·닭	1. 기러기, 2.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3. 꿀벌, 4.	1. 짐승(1종):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십자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제2조 제1호)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빨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지렁이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가축의 범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고시: 미제정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제2조 제1호)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가축의 범주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제2조 제1호)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은 가축과는 개념이 다르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상의 동물과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범주도 다를 수 있다.

2) 환경부 소관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가축의 범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제2조 1호)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제2조)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축산물위생법」상의 가축의 범주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 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2조 제1호)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제2조 제1항)

(2) 축산물의 정의와 범주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젓· 알·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 함한다]·원모, 뼈·뿔·내 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 제리·화분·봉독·프로폴 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 기 (제2조 제3호)	식육·포장육·원유(原乳) ·식용란(食用卵)·식육가 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제2조 제2호)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젓, 알과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 축의 생산물 (제2조 제1호)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 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젓, 벌꿀 및 알 (시행규칙 은 제2조제1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제2조 제2호).

제2절 일본의 축산관련법 체계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일본의 「食料·農業·農村基本法」에서는 농업의 범주에 축산업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가축이나 축산업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지만, 食料·農業·農村政策審議會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농업의 범주에 축산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축산법」에 해당하는 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축산법」의 관련 규정중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은 「家畜改良増殖法」에 그리고 가축거래에 관한 사항은 「家畜取引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위키디피아의 일본의 축산관련법 카테고리에서는⁷⁴⁾ 다음 14개의 법령(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열거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가축보건위생소법(家畜保健衛生所法), 가축상법(家畜商法), 가축개량증식법(家畜改良増殖法), 가축개량증식법에 근거한 가축등록기관에 관한 省令(家畜改良増殖法に基づく家畜登録機関に関する省令), 가축배출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家畜排せつ物の管理の適正化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가축거래법(家畜取引法), 광우병대책특별조치법(牛海绵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식용조류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죽은 가축처리장 등에 관한 법률(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방목령(厩牧令), 젖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省令(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등이다. 그러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법(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 낙농 및 육용우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加工原料乳生産者補給金等暫定措置法),

74) <https://ja.wikipedia.org/wiki/Category:%E6%97%A5%E6%9C%AC%E3%81%AE%E7%95%9C%E7%94%A3%E9%96%A2%E9%80%A3%E6%B3%95%E8%A6%8F>.

사료수급안정법(飼料需給安定法), 육용송아지생산안전등특별법(肉用子牛生産安定等特別措置法), 도살장법(畜場法) 등도 축산관련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본의 축산업의 기본법도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유사한 「食料·農業·農村基本法」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현행 「축산법」의 체계화 방안

1. 의 의

(1) 현행 「축산법」의 위상정립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농업의 범주에 축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축산법」을 축산업관련 기본법화 할 경우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축산법」은 다른 축산관련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다른 축산관련법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예컨대 축산자조금 등)을 두고 그 다른 축산관련법령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축산법」의 전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다른 축산관련법령과의 유기적인 관련성도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법」의 가축, 축산물, 축산업의 정의가 다른 축산 관련 법령과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축산법」이 다른 축산관련법보다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넓게 잡고 있으므로 현행 「축산법」을 실질적인 축산업 기본법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컨대, 「축산법」을 축산업 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축산업진흥법」등의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 관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현행 「축산법」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법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축산법」의 기본법화에 대한 예를 들면, 축산업 허가에서 축사, 그 밖의 축산시설/장비기준, 소독/방역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도 역시 「축산법」상의 축산업 허가 관련 부분에서 특별한 인증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동물복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축산법」에 상호 연결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이나 독일의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등 외국법령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4장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4장의 조문은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 인증의 승계 등 3개 조문에 불과하다.

(2) 현행 「축산법」의 분법화 방안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법령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내용이 복잡하여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데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전에는 단일한 법령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회가 복잡화, 분업화되면서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된 경우나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특정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경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을 분법하여 새로운 다수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나의 법률은 그 법률이 규율하려는 대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① 해당 법률이 기본법의 성격이 있는 법률이어서 각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률의 적용 대상 중에서 특별한 성격이 있는 대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 분야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률 전체의 구조상 해당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법률과 다른 법률을 서로 연결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보통 “~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제2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축산법」의 관련 내용들이 여러 개의 법률로 분법화되어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축산법」은 일본의 분법화되어 제정되어 있는 「가축개량증식법」 및 「家畜取引法」 등 보다는 그 내용이 분법화할 정도로 풍부하지 않다.

(3) 결 어

산재된 축산법령을 체계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축산법」을 축산업 관련 기본법화하되,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보다는 축산업진흥법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다른 부처의 축산업 관련 업무에 대해 깊게 관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축산법」 조문 구성 개선안

현행 「축산법」은 축산발전기본법, 축산업진흥법 또는 축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명칭 하에 편제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관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소관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현행 「축산법」을 사실상 축산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 외에도 전염병예방, 가축분뇨와 환경 보호 등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제3항).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는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등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기 제4호에 불과하다. 제1호는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며, 제2호의 가축분뇨의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하는 것이나 제3호의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하는 것은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제5호에서 그 밖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도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뿐이다(제5항). 사실 환경부 소관 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표 101> 「축산법」 조문의 체계화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제1조부터 제4조는 현행법과 동일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p>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3조(수정사의 교육)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5조 - 삭제됨 제16조 - 삭제됨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p> <p>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정 사유)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의2(과징금 처분)</p>	<p>제2장 가축의 개량·증식 및 거래 등 제1절 가축의 개량 제6조(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7조(개량목표의 설정) 제8조(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개량을 위한 가축의 등록) 제10조(가축의 개량을 위한 검정) 제11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3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관련 사항은 제2장으로 통일하고 제1절 가축의 개량, 제2절 가축의 증식, 제3절 가축의 거래 등으로 재편(현행 제4장의 가축 거래시장 관련 조문을 제3절로 이동시킴) - 현행 제9조 → 제6조 (“동물유전자원”은 “가축 유전자원으로 변경”) - 현행 제5조 → 제7조 - 현행 제5조의2 → 제8조 - 현행 제6조 → 제9조 (“가축의 등록“을 ”개량을 위한 가축 등록 “으로 변경)” 모든 가축이 등록 - 현행 제7조 → 제10조 (“가축의 검정“을 ”개량을 위한 가축 검정 “으로 변경) - 모든 가축이 등록 또는 검정 대상이 아니므로 가축의 등록을 “개량을 위한 가축의 등록”으로, “가축의 점검”을 “가축의 개량을 위한 점검”으로 명칭 변경 - 현행 제8조 → 제9조 - 현행 제10조 → 제12조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p>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p> <p>제27조 - 삭제됨</p> <p>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p> <p>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p> <p>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p> <p>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p> <p>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p> <p>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p> <p>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 등)</p> <p>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p> <p>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p> <p>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p>	<p>제2절 가축의 증식</p> <p>제14조(가축의 인공수정 등)</p> <p>제15조(수정사의 면허)</p> <p>제16조(수정사의 교육)</p> <p>제17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p> <p>제18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p> <p>제19조(정액증명서 등)</p> <p>제20조(정액 등의 사용제한)</p> <p>제21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p> <p>제2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p>	<p>- 현행 제29조 → 제13조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과 연계시킬 필요성 있음)</p> <p>- 인공 수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식이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일본은 가축개량증식법(家畜改良増殖法)과 가축거래법(家畜取引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p> <p>또한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축산업을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이라고 하고 있음</p> <p>-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 → 제11조부터 제22조</p>
<p>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p> <p>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p> <p>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p> <p>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p> <p>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p>	<p>제3절 가축의 거래 등</p> <p>제23조(가축시장의 개설 등)</p> <p>제24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p> <p>제25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p> <p>제26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p> <p>제27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p>	<p>- 제2장 제3절은 현행 제4장의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의 가축의 거래와 관련된 조문을 이동시켜 새롭게 편성(“가축 시장”을 “가축의 거래 등”으로 제목 수정)</p>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p>등록취소 등)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 기관 지정)</p> <p>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자금의 차입)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p> <p>제6장 보칙</p>	<p>제28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29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p> <p>제3장 축산의 환경개선·진흥 및 축산업의 허가·등록 등</p> <p>제1절 축산의 환경개선 및 진흥 제30조(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31조(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32조(가축의 분뇨관리 처리 및 자원화 촉진)→ 신설 제33조(가축의 위생) → 신설 제34조(동물복지축산) → 신설 제35조(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36조(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 센터의 설립 등) 제37조(축산자조금의 지원)</p>	<p>- 현행 제34조부터 34조의 6을 제23조부터 제28조로 이동 - 제32조는 제29조로 이동(현행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축산물보다는 가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2장 제3절 가축의 거래 등으로 이동)</p> <p>- 축산 및 축산업 관련 조항은 제3장으로 편성하되, 제3장 제1절을 축산 환경개선과 진흥으로 제목을 붙이고 현재 「축산법」 외의 다른 축산관련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의 근거를 마련</p> <p>- 현행 제42조의2 (축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을 제3장 제1절로 이동시키고 가축의 분뇨관리 처리 및 자원화 촉진, 가축의 위생, 동물복지축산 조항들을 신설(제32조부터 제34조 신설)</p> <p>- 현행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p>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p>제49조(수수료) 제50조(청문)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7장 별칙 제53조(별칙) 제54조(별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p>	<p>제2절 축산업의 허가 등 제38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39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 사유) 제40조(영업의 승계) 제41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42조(과징금 처분) 제43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45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46조(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p> <p>제4장 축산물의 등급화 등 제47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48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49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50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51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52조(등급의 표시 등) 제53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4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55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56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p>	<p>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를 제3장 제1절에 이동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 등을 제3장 제2절에 배치(현행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에 축산업의 허가 관련 사항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함) - 현행 제22조의 2부터 제28조 → 제38부터 제44조 - 현행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 제45조 및 제46조 - 제4장 축산물의 등급화 등에서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등과 축산물 수입 관련 사항을 규정 *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간단한 조항 신설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현행 제35조부터 제40조의2 → 제47조부터 제53조 -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 제54조 및 제55조

현행 「축산법」 조문	정비 후 「축산법」 조문	비교
	<p>제5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p> <p>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58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59조(기금의 재원) 제60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61조(자금의 차입) 제62조(기금의 용도) 제63조(기금의 운용·관리)</p> <p>제6장 보칙 제64조(수수료) 제65조(청문)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7장 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양벌규정) 제71조(과태료)</p>	<p>- 현행 제41조 및 제42조 → 제56조 및 제57조</p> <p>- 제5장 이하의 조문 번호만 변경하고 종전 규정 유지</p>

제6장 결 론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의 소관이 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본연의 업무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축산법」은 다양한 사항들이 다른 축산 관련 법에 규정되어 축산 관련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축산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과 가축 사육 관련 효율적인 통합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현행 「축산법」체계화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의 필요성과 인·허가 의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 「축산법」은 다른 축산관련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사항들이 많으며 특정한 분야만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는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허가, 축산물 등급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축산 관련 법률에서는 어떠한 인·허가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시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축산법」상의 사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축산관련 인·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많지만, 영업허가 또는 특정한 영업의 수행과 관련된 허가 사항등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는 그 영업이 매우 다양하고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안별 소관 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축산관련 법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축산관련하여서는 인·허가 의제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축사의 설치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축산법」상의 축사의 설치 허가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축산법」에서 축사의 설치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축사와 장비 등의 구비가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일 뿐이다.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상 규정을 준수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없으므로 인허가의 의제가 필요하지 않다.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1) 한우·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오리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국내외 염소 및 사슴에 대한 사육면적 허가 기준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염소의 경우 동물복지 사육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염소사육이 방사형태로 이루어져 사육밀도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방사형 염소사육이 17.9%로 낮아짐에 따라 사육면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염소 최소사육면적은 성축 2.5㎡/마리, 육성축 0.5㎡/마리, 자축 3.0㎡/마리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과징금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축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볼 때, 과징금 최대 1억은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므로 최소한 5억 내지 10억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과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영업정지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하나의 별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축산법」에 해당하는 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축산법」의 관련 규정중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은 「家畜改良増殖法」에 그리고 가축거래에 관한 사항은 「家畜取引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가축보건위생소법」(家畜保健衛生所法), 「가축상법」(家畜商法), 「가축개량증식법」(家畜改良増殖法), 「가축개량증식법에 근거한 가축등록기관에 관한 省令」(家畜改良増殖法に基づく家畜登録機関に関する省令), 「가축배출물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家畜排せつ物の管理の適正化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가축거래법」(家畜取引法), 「광우병대책특별조치법」(牛海绵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식용조류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용종류검사에 관한 법률」(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

善に関する法律),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죽은 가축처리장 등에 관한 법률」(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방목령」(厩牧令), 「젓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省令」(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등이다. 그러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법」(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 「낙농 및 육용우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加工原料乳生産者補給金等暫定措置法), 「사료수급안정법」(飼料需給安定法), 「육용송아지생산 안전등특별법」(肉用子牛生産安定等特別措置法), 「도살장법」(畜場法) 등도 축산관련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축산 관련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축산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므로 이에 따라 부처 별로 다양한 축산 관련 법령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축산 관련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무 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병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항들이 있어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즉, 많은 축산관련 업무가 단체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법령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축산농가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필요한 처벌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현장방문 공무원들이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사항을 모아 통합공고와 현장점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고란 주무부서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점검을 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허가 및 등록 기준, 사육밀도 및 시설·관리기준 등의 점검 사항을 하나로 통합·고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가 점검과 축산 경영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다만, 통합공고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가의 자가 점검 사항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 복수의 법과 관련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현장점검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오리), 가축 거래상인으로 구분하고, 그 체계는 공통사항,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기타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기준 및 퇴비·액비화 기준, 약취배출기준,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순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이 외에도 점검할 사항이 더 있으나, 이번 현장점검표는 허가와 관련된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번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점검을 해 본 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산법」은 다른 축산 관련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다른 축산 관련법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예컨대 축산자조금 등)을 두고 그 다른 축산 관련법령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축산법」의 전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다른 축산 관련법령과의 유기적인 관련성도 없다. 산재된 축산법령을 체계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축산법」을 축산업 관련 기본법화하되, 축산업진흥법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다른 부처의 축산업 관련 업무에 대해 깊게 관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법게 언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에 관한 근거조항도 「축산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환경부 소관 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